

2024 2025

서울장신대학교 요람

교회와 민족을 위한 **밀알교육 · 밀알신앙 · 밀알목회**
믿음과 지성으로 실천하는 밀알인재 양성



Seoul Jangsin University



서울장신대학교
SeoulJangsin University

대학이념

+ 교육이념

서울장신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본교 건학 정신인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는 말씀에 기초하여, 서울장신이라는 교육공동체 안에서 색다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며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밀알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 교육목적

나의 고유한 가치를 세우고, 글로벌 밀알 인재로 도약

+ 교육목표

'나를 찾는 밀알인재', '비전을 실현하는 밀알인재', '존중하고 협력하는 밀알인재', '뻗어나가 공헌하는 밀알인재'

+ 인재상

SEED(밀알) - Seek, Excellence, Empowering, Dedication

Seoul Jangsin University



배움의 열정이 미래의 결실로 자라납니다.
더 넓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믿음과 지성으로
실천하는 **밀알인재** 양성

서울장신대학교

Seoul Jangsin University



SEEK(탐구)

꿈과 가치를 **찾는** 서울장신인



EXCELLENCE(전문성)

탁월한 능력을 갖춰 비전을 실현하는 서울장신인



EMPOWERING(힘실어주기)

함께하며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서울장신인



DEDICATION(헌신)

지역사회와 세계에 **헌신하는** 서울장신인



+ 2024학년도 학사일정

< 1학기 >					
월	일(요일)	학사일정	월	일(요일)	학사일정
2024 1	2(화) 8(월) 8(월)-12(금)	시무식 학위논문제출 성적열람/교수·학생간 성적이의 신청 복학신청 재입학신청	5	15(수) 27(월) 27(월)-6.14(금) 29(월)-6.14(금)	교회음악과 교수연주회 체육대회 사회복지상담대학원 학위인정 시험2학기 장학금신청
	8(월)-12(금) 8(월)-12(금)				
2	1(목) 5(월)-9(금) 5(월)-8(목) 13(화)-15(목) 19(월)-24(토) 22(목) 26(월)-27(화)	제67회 전기 학위수여식 1학기 대학원 수강신청 논문신청서제출 1학기 재학/복학생 등록 1학기 학부수강신청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편입생 수강신청	6	3(월)-7(금) 3(월)-7(금) 5(수) 10(월)-13(목) 14(금) 17(월) 17(월)-21(금) 17(월)-7.5(금) 26(월)-30(금) - -	교회음악과 학기말 실기시험 휴학신청 종강예배 학기말시험 하계방학 박사종합필기시험 수업보강기간 수업평가 교직원수련회 신대원 신입생 통합수련회 전국신학대학교수세미나
3	1(금) 7(목) 13(수)-15(금) 18(월)-22(금) 25(월)-29(금)	개강(정상수업) 개강예배 춘계신앙수련회 학부 수강철회 신청 대학원 수강철회 신청	7	1(월) 8(월)-12(금) 29(월)-8.2(금) 29(월)-8.2(금) 29(월)-8.2(금) 29(월)-8.2(금) 29(월)-8.2(금)	논문심사결과보고서제출 성적열람/교수·학생간 성적이의신청 학위논문제출 복학신청 재입학신청 2학기 대학원 수강신청 논문신청서 제출
4	3(수) 4(목) 11(목) 15(월)22(월) 22(월)-26(금) 22(월)-26(금)	교회음악과 정기연주회 수업일수 1/3선 개교 70주년 기념예배 개교기념일수업일수 1/2선 중간시험 대학원 현장학습			

<2학기>					
월	일(요일)	학사일정	월	일(요일)	학사일정
8	1(목) 19(월)-24(토) 20(화)-22(목)	제67회 후기 학위수여 2학기 학부 수강신청 2학기 재학/복학생 등록	12	2(월)-6(금) 5(목) 6(금)	교회음악과 학기말 실기시험 종강예배 신대원 신학계속추천서 제출 마감 학기말시험 휴학신청 동계방학 수업보강기간 박사종합필기시험 수업평가 논문심사결과보고서제출
				9(월)-13(금) 9(월)-13(금) 14(토) 16(월)-20(금) 16(월) 16(월)-1.3(금) 16(월)-1.3(금)	
9	1(일) 2(월)-6(금)	개강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 (정상수업) 개강예배	2025 1	2(목) 6(월)-10(금)	시무식 성적열람/교수·학생간 성적이의 신청 학위논문제출
	5(목) 11(수)-12(목) 23(월)-27(금) 23(월)-27(금)	추계신앙수련회 학부 수강철회신청 대학원 수강철회신청		6(월) 6(월)-10(금) 6(월)-10(금) 20(화)-24(금) 20(화)-24(금)	학위논문제출 복학신청 재입학신청 1학기 대학원수강신청 논문신청서제출
10	5(토) 21(월) 21(월)-25(금) 21(월)-25(금) 23(수) 24(목) 30(수)-31(목)	수업일수 1/3선 자연치유페스티벌 학부 3학년 현장학습 중간시험 수업일수 1/2선 실용음악인의 밤 축제 및 종교개혁제	2	6(목) 10(월)-15(토) 11(화)-13(목) 24(월) 26(수)-27(목)	제68회 전기 학위수여식 1학기 학부수강신청 1학기 재학/복학생 등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편입생 수강신청
11	1(금) 4(월)-8(금) 5(화) 13(수) 20(수) 25(월)	사회복지인의 밤 교회음악과 졸업연주회 신학인의 밤 교회음악과 교수연주회 교회음악인의 밤 사회복지상담대학원 학위인정시험 2025-1학기 장학금신청			
	25(월)-12.13(금)				



CONTENTS

	교육목적·교훈	2
	학사일정	4
	연 혁	8
I 학교법인	이사회임원	12
II 기 구	기 구 표	14
	행정조직 및 보직	15
	교 직 원	17
	사무직원	25
III 대 학	학 칙	28
	학칙시행세칙	44
	교과과정 안내	80
	교양학과 교과과정	81
	신학과 교과과정	94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	107
	교회음악과 교과과정	119
	실용음악과 교과과정	125
IV 대학원	대학원 학칙	130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148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161
	목회연구과정 운영내규	169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운영 시행세칙	170
	일반대학원(Th.M., M.A.)교과과정	180
	신학대학원 교과과정	190
	목회연구과정 교과과정	204
	사회복지상담대학원 교과과정	209
	문화예술대학원 교과과정	212
	자연치유선교대학원 교과과정	216
	예배찬양사역대학원 교과과정	219
	상담심리대학원 교과과정	223
	영성치유대학원 교과과정	226
	예배리터지대학원 교과과정	229
	박사과정(Ph.D., Th.D.)교과과정	231
	박사과정(D.M.) 교과과정	247

V 행정부서 및 학술정보관 업무안내

전략기획처	252
교육혁신처, 학생성장지원처	253
경건실천처	256
행정지원처	257
학술정보관	258
평생교육원	262
산학협력단, 출판부	264

VI 학생생활

대학 장학금 지급 규정	266
국가장학금 운영 규정	270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272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277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278
서울장신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281
공익제보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286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88
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292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294
장애학생 지원 규정	298
학생복지시설 운영 규정	301
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	302
학생공상처리 내규	304
대학 경건실천처 규정	305
신학대학원 경건실천처 규정	307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309
군종사관(장교)후보생 지원안내	312
학생예비군 사무안내	313
국외대학과의 학생교류 규정	314
총학생회 회칙	316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323
신대원 회칙	325
선거 시행세칙	330
학생생활 준칙	332

VII 부속기관

학술정보관 규정	336
출판부 규정	344
출판부 시행세칙	346
생활관 규정	347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35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352
사회봉사센터 운영 규정	354
사회봉사활동 운영 규정	356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358
학생상담 및 지도 규정	359
보건소 운영 규정	360
취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361

VIII 산학협력단 정관

산학협력단 정관	364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	368



+ 연혁

- 1954. 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9회 총회에서 ‘총회 야간 신학교’로 설립하여 동년 7월
서울시 중구 동자동 동성교회에서 개교. 초대 교장에 김규당 목사 취임
- 1962. 9 교사를 서울시 중구 도동 한성교회로 이전하고 2대 교장에 강신명 목사 취임
- 1963. 1 학제를 혁신하고 학교명칭을 서울장로회신학교로 개칭
- 1969. 1 교사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새문안교회로 이전
- 1982. 6 문교부로부터 학교설립계획을 승인받음
- 1984. 12 광주캠퍼스 문교부로부터 4년제 대학과정(각종학교)설립인가 받음, 신학과(40명)
- 1985. 2 3대 교장에 곽선희 목사 취임
- 1987. 2 4대 교장에 박근용 목사 취임
- 1987. 9 광주캠퍼스 문교부로부터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로 지정받음
- 1987. 12 광주캠퍼스 신학과 정원조정(60명) 및 사회복지학과(40명), 교회음악과(40명)
- 1996. 3 신설됨.
5대 교장에 이용원 목사 취임
- 1997. 12 교육부로부터 4년제 정규대학(서울장신대학교)으로 개편승인
- 1998. 3 초대 총장에 이용원 목사 취임
- 1998. 10 엘림관 제3회 경기도 건축물 대상 수상
- 2002. 3 2대 총장에 민경배 목사 취임
- 2002. 9 제87회 총회에서 신학대학원(신학과 50명, 목연과 50명) 개설을 허락받음
- 2002. 11 전국대학종합평가 교육기본시설 최우수대학교 평가
- 2003. 7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교육원 설립 인가를 받음
- 2004. 4 창립50주년 기념 예배 및 선언문 선포
- 2004. 3 교회음악대학원과 사회복지대학원 신설
- 2004. 9 자연치유선교대학원, 교역대학원, 목회상담대학원, 예배찬양사역대학원 신설
- 2006. 3 일반대학원 신설
- 2006. 3 3대 총장에 문성모 목사 취임
- 2008. 3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 2008. 4 개교 54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서울장신50주년기념관(해성홀) 기공예배, 곽선희 목사 명예이사장 추대 및 제
8대 주성훈 목사 이사장 취임식
- 2009. 3 서울장신 비전 2020 수립
- 2009. 4 개교 55주년 기념예배 및 강신명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2010. 1 광주시청소년지원센터 수탁 운영
2010. 3 4대 총장에 문성모 목사 취임, 신학박사(Th.D.) 과정 개설
2011. 4 개교 57주년 기념예배 및 음악 박사 과정 개설 감사예배
2012. 4 개교 58주년 및 학교법인 광명학원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2012. 4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11명, 사회복지대학원 6명, 전인치유선교대학원 5명)
2012. 9 석박사통합과정(Th.D.) 과정 개설 및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에 목회상담학 개설
2013. 4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세부전공으로 자연치유학 개설
2013. 6 제1기 밀알국외봉사단 발족식 개최
2014. 3 5대 총장 안주훈 목사 취임
2014. 4 개교 60주년 기념예배
2015. 4 개교 61주년 기념예배
2015. 12 제 10대 김홍천 이사장 취임
2016. 3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디아코니아 세부전공 개설
2016. 4 개교 62주년 기념 감사예배
2016. 12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2017. 4 개교 63주년 기념 감사예배
2017. 6 영성심리치유대학원 개설
2018. 3 6대 총장 안주훈 목사 취임
2018. 4 개교 64주년 기념 감사예배
2018. 10 제 11대 최기학 이사장 취임
2019. 4 개교 65주년 기념 감사예배
2021. 5 제 12대 한홍신 이사장 취임
2022. 3 7대 총장 황해국 목사 취임
2022. 4 개교 68주년 기념 감사예배
2023. 4 개교69주년 기념 감사예배
2024. 4 개교70주년 기념 감사예배
2024. 6 제13대 이사장 오구식 목사 취임
2024. 7 7대 총장 한홍신 목사 취임

2024 2025

서울장신대학교 요람

Seoul Jangsin University

I 학교법인

· 이사회임원



+ 이사회임원

임원현황 - 2024.09.04. 현재

직 위	성 명	연 령	임 기	구 분	현 직(주요경력)
이사장	오구식	66	2024.09.04.~ 2028.09.03.	개방(경남노회)	성은교회 담임목사
이사	한홍신	66	2024.09.04.~ 2028.06.30.	총장	서울장신대학교총장
이사	김대권	70	2021.02.04.~ 2025.02.03.	유지(서울서노회)	염천교회 장로
이사	홍성호	66	2021.12.03.~ 2025.12.02.	교단,교육(순천남노회)	순천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사	조주희	61	2021.12.03.~ 2025.12.02.	교단,교육(평양노회)	성암교회 담임목사
이사	한동우	63	2023.10.05.~ 2025.12.02.	교단(포항남노회)	청림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사	박병철	61	2022.09.23.~ 2026.09.22.	유지(경기노회)	오산교회 담임목사
이사	김강진	61	2022.11.30.~ 2026.11.29.	교단,교육(경기노회)	햇불미암교회 담임목사
이사	장용석	60	2023.02.03.~ 2027.02.02.	교단(서울북노회)	자작리교회 담임목사
이사	최충원	65	2024.06.27.~ 2028.06.26.	동문(경기노회)	평택성민교회 담임목사
이사	신세신	59	2024.09.01.~ 2028.08.31.	교단,교육(부천노회)	부광교회 담임목사
이사	김준기	66	2024.09.04.~ 2028.09.03.	개방(함해노회)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이사	이명덕	66	2024.09.04.~ 2028.09.03.	개방(용천노회)	한사랑교회 담임목사
이사	조용선	57	2024.09.04.~ 2028.09.03.	개방,교육(서울강남노회)	온무리교회 담임목사
이사	박기상	62	2024.09.04.~ 2028.09.03.	교단(영등포노회)	시온성교회 장로
감사	김원재	66	2023.04.20.~ 2025.04.19.	개방(서울강남노회)	묘동교회 장로
감사	김태호	66	2022.11.30.~ 2024.11.29.	교단(대전서노회)	대전성지교회 장로

2024 2025

서울장신대학교 요람

Seoul Jangsin University

Ⅱ 기 구

- 기 구 표
- 행정조직 및 보직
- 교 직 원
- 사무직원



+ 기구표



+ 행정조직 및 보직

대학본부 및 총장직속

부총장	정병준
행정지원처장	조영진
전략기획처장	이상은
교육혁신처장	류삼준
학생성장지원처장	이진석
경건실천처장	송인설
입학지원처장	정병준
대외협력처장	이민규
홍보실장	안찬용

학과장

신학과장	심우진
사회복지학과장	차유림
실용음악과장	주진
상담심리학과장	안명숙
교회음악과장	조경화
교양학부장	김세희

대학원장

일반대학원장	윤동녕
신대원장	송인설
사회복지상담대학원장	차유림
교회음악대학원장	조경화
자연치유선교대학원장	장석종
예배찬양사역대학원장	권광은
영성심리치유대학원장	안명숙
예배리터지대학원장	김정
영성치유대학원장	송인설

부속기관장

학술정보관장	송인설
생활관장	이민규
학보사주관	정병준
출판부장	안택윤
보건소장	윤동녕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박선미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류삼준
학생상담센터장	조영진
사회봉사센터장	김정
취창업지원센터장	장신재
성과관리센터장	류삼준

부설연구소

신학연구소장	
교회음악연구소장	조경화
밀알사회복지연구소장	장신재
미션네트워크센터장	단안드레
성지연구원장	홍순화
새움향디자인연구소장	
디아코니아연구소장	김한호
성서고고학연구소장	강후구
자연치유연구소장	장석종
미래목회와미래교육연구소장	송인설
피아노음악연구소	김세희

부속기관

평생교육원장	윤동녕
--------	-----

위탁기관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표	안명숙
----------------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	송인설
--------	-----



제 위원회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교무위원회	총 장	각 처장, 각 대학원장, 각 학과장, 학술정보관장, 평생교육원장, 학보사주간, 생활관장
입시기획·관리 위원회	입학지원처장	대학원: 각 대학원장 대학: 각 학과장
교원인사위원회	교육혁신처장(임명)	총장이 임명하는 4인의 교원
대학평의회	위원중 호선	교원대표 3명, 직원대표 2명, 학생대표 2명, 동문대표 2명,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 2명
장학위원회	학생성장지원처장	대학원: 학생성장지원처장, 전략기획처장, 신학대학원장, 일반대학원장, 행정지원처장(직원대표)
		대학: 학생성장지원처장, 전략기획처장, 행정지원처장(직원대표), 각 학과장
교과과정위원회	교육혁신처장	각 학과장, 기타위원
교양교육위원회	교양학부장	각 학과장
생활관운영위원회	생활관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성장지원처장, 행정지원처장(직원대표)
규정기획위원회	전략기획처장	일반대학원장, 교육혁신처장, 행정지원처장(직원대표), 추천위원
학생지도위원회	학생성장지원처장	경건실천처장, 각 학과장, 행정지원처장(직원대표)(교직원 관련 사안의 경우)
대학원위원회	대학원장(임명)	각 대학원장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인권센터장	경건실천처장, 행정지원처장(직원대표),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대표 2인(여교원 1인 포함), 학생대표 1인(총학생회의 여학생 임원), 직원대표 2인(여직원 1인 포함, 직원 관련 사안의 경우)
학생복지위원회	학생성장지원처장	원우회 및 총학생회 임원(각 3명), 사업자대표 및 안전 담당자
공간조정위원회	전략기획처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성장지원처장, 행정지원처장(직원대표), 신학대학원장, 학술정보관장, 각 학과장, 비서실장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전략기획처장, 학생성장지원처장, 행정지원처장(직원대표), 학술정보관장, 생활관장
대학발전 기획위원회	전략기획처장	각 처장, 각 학과장, 일반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자체평가추진위원회	전략기획처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성장지원처장, 행정지원처장(직원대표), 성과관리센터장, 학술정보관장
커리큘럼개혁· 조정위원회	총 장	전략기획처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성장지원처장, 교양학부장, 각 대학원장, 각 학과장, 학과별위원
등록금심의위원회	전략기획처장	교원대표 2명, 직원대표 2명, 학생대표 4인(원우회 2명, 총학생회 2명) 관련전문가(외부) 1명
기금운용위원회	총 장	교원, 직원, 학생, 외부전문가,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
인권센터운영위원회	인권센터장	교원대표 2명, 직원대표 2명, 학생대표 2명 각 대표 남녀 1명씩

+ 총 장

한 홍 신 총장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맥코믹 세미나리

M.P.S.
D.Min.

+ 전(겸)임교원

신학과

조 광 호 교수

건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장로회신학대학교
독일 Kirchliche Hochschule Bethel(Bielefeld)

신약학
사학과
신학대학원

Dr.Theol.
문학사
M.Div.
Ph.D.

송 인 설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공법학과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Th.D.
B.L.
M.Div.
Th.M.
Th.M.
Th.D.

안 택 윤 교수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뉴저지 공과대학원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미국 Drew University

조직신학
화학공학
철학과
철학과

Ph.D.
공학사
문학사
M.A.
M.S.
M.Div.
Ph.D.

장 남 혁 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교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학
경제학과
종교학과
신학대학원

Ph.D.
문학사
M.A.
M.Div.
Th.M.
Ph.D.

**정 병 준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미국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호주 Melbourne College of Divinity

교회사

신학과
신학대학원

Th.D.
Th.B.
M.Div.
Th.M.
Ph.D.

류 호 성 교수

연세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독일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신약학

신학과
신학대학원

Dr.Theol.
B.A.
M.Div.
Dr.Theol.

윤 동 녕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미국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미국 Drew University
미국 Drew University

구약학

독일어과
신학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Ph.D.
B.A.
M.Div.
Th.M.
M.Phil.
Ph.D.

이 상 은 교수

단국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조직신학

독문과
신학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Dr.Theol.
B.A.
M.Div.
Th.M.
Dr.Theol.

강 후 구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미국 듀북신학교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성서고고학

신학과
신학대학원

Ph.D.
B.A.
M.Div.
M.A.R.
M.A.
Ph.D.

심 우 진 부교수

연세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독일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신약학

신학과
신학대학원

Dr.Theol.
B.Th.
M.Div.
Dr.Theol.

성 창 환 부교수

고신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계명대학교대학원
백석대학교대학원

기독교교육학 Ph.D.
기독교교육학 B.A.
신학대학원 M.Div.
기독교교육전공 Th.M.
기독교교육학과 Ph.D.

류 삼 준 조교수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교
Emory University, Candler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기독교교육학 Ph.D.
신학과 B.Th.
신학과 Th.M.
신학대학원 M.Div.
Th.M.
Ph.D.

김 정 조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Emory University
Boston University

예배설교학 Th.D.
영어과 B.A.
기독교교육학과 M.A.
신학과 M.Div.
Th.M.
Th.D.

홍 순 화 겸임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미국 San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실천신학 D.Min.
기독교교육과 문학사
신학대학원 M.Div.
대학원 Th.M.
D.Min.

김 한 호 겸임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독일 Osnabruk University

디아코니아 Ph.D.
신학과 Th.B.
신학대학원 M.Div.
대학원 Ph.D.

강 희 창 겸임교수

서울대학교자연대학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Th.D.
식물학과
대학원 Th.M.

전 만 영 겸임교수

서울장신대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실천신학 Th.D.
신학과
신학대학원 B.D.
대학원 Th.M.
목회전문대학원 Th.D.in.Min.

**황 인 식 겸임교수**

뉴욕공과대학교(NYIT)
뉴욕대학교(NYU)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박 경 배 겸임교수

백석대학교
중앙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 은 미 교수**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장 신 재 교수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장 혜 림 부교수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 진 석 부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차 유 림 부교수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담,코칭학 박사

커뮤니케이션 전공 Ph.D.
매체생태, 커뮤니케이션, 영화 전공 학사
연합신학대학원 상담학 석사
대학원 상담, 코칭학 석사 Ph.D.

문화예술경영

문화예술경영 석사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 학사
문화예술경영 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Ph.D.
사회사업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사회복지학과 Ph.D.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Ph.D.
사회사업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사회복지학과 Ph.D.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Dr.Theol.
가정관리학과 B.A.
가정관리학과 M.A.
가정학과 Ph.D.
사회복지학과 Ph.D.

가족복지학

가족복지학 Ph.D.
법학과 B.A.
법학과 M.A.
사회복지대학원 M.A.
사회복지대학원 Ph.D.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Ph.D.
사회복지학과 B.A.
사회복지학과 M.A.
사회복지학과 Ph.D.

강 성 옥 겸임교수
 서울장신대학교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원

기독교사회복지 Ph.D.
 사회복지학과 B.A.
 사회사업학과 M.A.
 신학과 Ph.D.

상담심리학과

안 명 숙 교수
 성균관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목회상담 Ph.D.
 교육학과 B.A.
 신학대학원 M.Div.
 연합신학대학원 Th.M.
 대학원 Ph.D.

조 영 진 조교수
 연세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상담학 Ph.D.
 신학과 B.A.
 신학대학원 M.Div.
 연합신학대학원 Th.M.
 일반대학원 Ph.D.
 (상담학, 코칭상담학)

교회음악과

김 세 희 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Indiana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Artist
 Manhattan School of Music Professional
 University of Hartford

피아노 D.M.A.
 피아노 음악학사
 음악석사
 Diplom
 Diplom
 음악박사

조 경 화 교수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이태리 Osimo Academia
 이태리 Trino Conservatorio Di Musica

성악 Diploma
 성악과 음악학사
 Diploma
 Diploma

차 영 회 겸임교수
 서울장신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ton

성악 학사
 합창지휘 석사
 합창지휘 음악학박사



실용음악과

안 찬 용 교수

송실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예배기획,보컬 M.W.M.

교회음악과 B.M.

예배찬양사역대학원 M.W.M.

주 진 조교수

고려사이버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대학원

보컬전공 및 뉴미디어음악학 박사

법학과 학사

음악공학 석사

뉴미디어음악학 박사

최 영 호 조교수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대학원

실용음악 뮤직퍼포먼스 예술학 석사

신문방송학 학사

실용예술학과 예술학 석사

최 주 영 겸임교수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공학 석사

JAZZSTUDY 학사

음악공학 석사

교양학부(신학과 소속)

김 광 건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미국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미국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기독교리더십,선교학 Ph.D.

화학공학과 B.S.

M.S.

M.Div.

Ph.D.

장 석 종 부교수

세종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Georgia Toccoa Falls College
중부대학교대학원

한약자원학 박사

회계학과 B.A.

자연치유선교대학원 M.N.M.

문학사

한약자원학 박사

권 광 은 부교수

계명대학교
영국 London Reformed Baptist Seminary
영국 Wesley College, University of Bristol

예배찬양 M.T.M.

화학과 B.S.

Diplom

M.T.M.

박 선 미 조교수

방송통신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사
자연치유선교대학원 자연치유학석사
자연치유학전공 Th.D.

이 은 하 겸임교수

순천향대학교대학원
순천향대학교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육학석사
청소년상담심리전공 교육학박사

명예교수**이 용 원 교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학 D.Miss.
철학과 문학사
신학대학원 M.Div.
대학원 Th.M.
 Th.M.
 D.Miss.

홍 정 표 교수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독일 Berliner Kirchenmusikschule

지휘
종교음악과

최 인 기 교수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구약학 Ph.D.
신문방송학과 문학사
신학대학원 M.Div.
대학원 Th.M.
 Ph.D.

김 기 원 교수

고려대학교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Dalls)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Dalls)

사회정책학 Ph.D.
행정학과 문학사
대학원 M.A.
대학원 Ph.D.

김 세 광 교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장로회신학대학교
미국 Yale University Divinity School
미국 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예배설교학 Th.D.
약학과 약학사
신학대학원 M.Div.
 S.T.M.
 Th.D.

**이 은 주 교수**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미국 Indiana University
미국 Indiana University
연세대학교

오르간

종교음악과

D.M.A.

음악학사
M.M.
박사과정수료
음악박사

대학원

장 숙 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울대학교
독일 Hochschule Fur Musik Koln
독일 Hochschule Fur Musik Koln

성악

성악과
대학원

Konzert Examen

음악학사
음악석사
Diplom
Konzert Examen

김 준 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독일 Hochschule Fur Musik Koln
독일 Hochschule Fur Musik Heidelberg-Mannheim

피아노

기악과

Konzert Examen

음악학사
Diplom
Konzert Examen

임 재 홍 교수

이태리 Siena Alfredo Kraus Accademia
이태리 Parma Conservatorio
이태리 Parma Orfeo Accademia
독일 Karlsruhe Opernschule
독일 Theater Karlsruhe

성악**Diploma**

수료
Diploma
Diploma
수료
실습및연구과정수료

+ 사무직원

비서실	이남용 목사	비서	
전략기획처	김부연 주임	전략기획처	성과관리센터(겸무), 광주시청소년상담센터(겸무) 교양학부(겸무)
교육혁신처	이인준 차장 권소은 선생 박경백 선생	총괄 교원인사·연구 대학수업학적, 증명발급 대학원 수업학적, 증명발급	산학협력단(겸무), 전산정보(겸무) 산학협력단(겸무) 보건소(겸무)
행정지원처	황미숙 과장 최병선 주임 연수진 선생 윤여준 주임 박태준 주임 최윤수 선생 황사성 야간경비 김승진 야간경비	총무과(회계) 총무과(총무·인사) 총무과(총무·인사) 시설지원구매 시설지원구매 시설지원구매 야간경비 야간경비	대외협력처(겸무), 법인(겸무) 인권센터(겸무), 전략기획처(겸무) 입학지원처(겸무)
학생성장지원처	이강욱 주임 이한희 선생	대학 장학 학생복지	대학원 장학(겸무), 경건실천처(겸무) 센터통합지원(겸무)
입학지원처	장석호 선생	입학지원	홍보실(겸무), 교수학습개발센터(겸무)
대외협력처	양지원 주임 윤지영 선생		
학술정보관	천혜민 선생 이동희 선생 황휘현 선생	학술정보 전산정보 학술정보	출판부(겸무) 대학직장예비군(겸무), 입학지원처(겸무)



평생교육원

김나현 선생

평생교육

인권센터(겸무)

교수학습개발센터

윤혜영 선생

교수학습개발

평생교육원

이민규 관장

생활관장

예비군중대

나승주 중대장

예비군중대

생활관(겸무)

2024 2025

서울장신대학교 요람

Seoul Jangsin University

Ⅲ 대 학

- 학 칙
- 학칙시행세칙
- 교과과정 안내
- 교양학과 교과과정
- 신학과 교과과정
-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
- 교회음악과 교과과정



+ 학 칙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이념에 따라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교회의 발전에 공헌 봉사할 기독교 교역자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학부, 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교에 설치되는 학부, 학과, 전공과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칙 경과조치 참조) <개정 2015.1.28., 10.23., 2016.3.17., 2016.6.1., 2017.9.6, 2021.2.19., 2022.3.16., 2023.4.21., 2023.7.19., 2024.4.3., 2025.5.7.>

학 부	학 과	입학정원
신학부	신학과	23명
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학과	44명
	상담심리학과	
예술학부	교회음악과 (성악, 피아노, 오르간)	16명
	실용음악과 (보컬, 드럼, 건반, 기타, 베이스, 작곡, 싱어송라이터)	21명
계		104명

-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정원 외 전담 학과를 설치·운영한다.
<신설 2024.4.3.>

모집단위(학과)	입학정원	비 고
건강관리학과	제한없음	정원 외 전담 학과
문화예술학과	제한없음	정원 외 전담 학과

제 2장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 제3조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년한은 8년으로 한다. 단, 전·편입 학생의 재학년한은 잔여수업 연한의 2배로 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중증 장애학생 등은 재학년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9.9.4>
- ②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년 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 3장 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4조 (학년·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 1학과 제 2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다만,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일반학기 이외에 계절수업, 야간수업, 시간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또는 현장실습 수업 등을 개설할 수 있다. 단, 계절수업은 하기·동기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개설하며 학생은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소기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강할 학과목, 수강대상자의 자격 등 그 시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30주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정기휴업)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기방학 2. 동기방학 3. 일요일 및 국경 공휴일

제7조 (방학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험 또는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4장 입학(전·편·재입학 포함)

제 1절 입학시기

제8조 (입학시기) ①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재입학 및 편입학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2절 입학자격

제9조 (입학자격) 본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앞의 각호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4. 신학과 지원자는 수세후 1년 이상 경과된 자.

제10조 (편입학) ① 본 대학교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의 각기 전급 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그 학년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학 수 있다. 다만, 3학년 입학정원 5%를 초과하지 못하며, 학과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 (재입학)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소정의 지원서류를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의 2 (전과) ①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1학년 1학기 이상의 과정을 마친 자로서 3학년 1학기 전까지 신청가능하고, 학기별 등록 개시 전 소정기간 내에 전과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학과 입학정원의 50% 이내의 인원으로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삭제>
- ⑥ <삭제>



- 제12조 (정원의 입학) ① 대학학생정원령 제 2조 제 3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 (위탁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특례입학, 학사편입학,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전문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은 정원 외로 한다.
- ②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례입학의 학년별 총 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2%를 학과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농·어촌학생 특별전型的 학년별 총 학생수는 입학정원의 4%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과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특성화(전문계)고교출신자 특별전型的 학년별 총 학생수는 입학정원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과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정원의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절 입학절차

- 제13조 (입학절차) ① 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수험료를 첨부하여 소정 기일내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입학원서
 2.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동 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4. 기타 입학요강에 지정한 서류
- ②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전항 1호 내지 4호의 서류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다.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수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 제14조 (입학사정) ① 입학자의 선발은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학교별고사의 성적을 병합한 성적에 의하되, 면접고사, 실기고사, 신체검사를 병과하여 이를 사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과에 따라 학교별고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4조의 2 ① 재입학자의 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하고 신체검사를 과할 수 있다.
- ② 편입학자의 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필기고사, 실기고사, 신체검사를 따로 과할 수 있다.
- 제15조 (시험과목·시기·방법) 전조 선발 시험의 과목, 시기,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 제16조 (입학수속) ① 입학이 허가된자는 소정기일내에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등록금 납부, 기타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밟아야한다.
-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7조 (보증인) ① 보증인은 정·부 2인으로 하되 정보보증인은 학생의 부형 또는 친척으로 한다.
- ② 보증인은 학생의 학업, 신앙, 기타 신상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보증인의 주소와 신앙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의 2 (입학허가의 취소)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①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②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 ③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신설2021.3.3>

제 5장 등록 및 수강신청

- 제18조 (등록) 학생은 매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 제19조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학과장 경유 교육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0조 (수강신청 변경) 일단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납득할 만한 사유를 명시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 변경코자 하려면 변경신청서(청원서)를 제출 교육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1조 (미등록 제적) 소정기일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

제 6장 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제 1절 휴학·복학

- 제22조 (휴학) ① 질병·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법정 전염병환자, 정신병 질환을 가진자 또는 학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③ 재학생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했을 경우와 만 16세 이하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학 중 1년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7, 2024.12.4)
- 제23조 (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기간 중 2회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락 하에 1회에 한하여 1년간 휴학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과 재학생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 및 만 16세 이하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인한 육아 휴학기간은 이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7, 2024.12.4)
- 제24조 (복학) ① 휴학자의 복학은 학기초 등록기간중에 한하여 소속학과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② 전역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2절 퇴학 및 제적

- 제25조 (퇴학)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써 그 사유를 구비하여 소속학과장 경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26조 (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학과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1. 매학기 소정 기일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 후 소정기일내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제 3조에 규정된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전과정의 이수를 필하지 못한 자.
 4. 무 계출로 1개월 이상 결석한 자.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6. 타교에 입학한 자.
 7. 성적불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이 가망 없다고 인정되는 자.
 8. 학사경고를 재학중 통산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제 7장 교과와 이수

제 1절 교과과정과 수업

- 제27조 (교과) ① 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② 교양과목으로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③ 본 대학교의 교과과정은 교과과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④ 교과과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28조의 1 (학점 및 복수전공) ① 과정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체육 등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학교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이수자도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과 같이 복수전공을 실시 할 수 있다.
 1. 복수전공학과의 전과정을 완료하였을시 제1, 제2 전공학위를 수여한다.
 2. 복수전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28조의 2 (융합전공) ① 다음과 같이 융합전공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2017.9.1>
 1. 융합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과정을 완료하였을 시 주전공, 융합전공 학위를 수여한다.
 2. 융합전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28조의 3 (이중전공) ① 다음과 같이 이중전공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2.6.>
 1. 이중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과정을 완료하였을 시 제1전공, 제2전공 학위를 수여한다.
 2. 이중전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29조 (폐강) 선택과목으로서 수학하고자 할 학생수가 8명 미만일 때에는 이를 개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담당 교수-학과장(교양학부장)-교육혁신처장의 협의 하에 해당과목을 폐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2.3.>

제 2절 이수의 인정·수료·졸업 및 학위

- 제30조 (학점인정) ① 규정에 따라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한다.
 ③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취득으로 인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군 복무 중 학점취득) 군 복무 중인 자가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 이내까지 인정한다.
 1.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적용시기와 성적은 복학시점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이수범위는 열린사이버대학교 컨소시엄(OCU) 참여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으로 하 되, 우리대학 신학과 소속 교양학부에 개설된 교과목과 중복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9.11.6>
- 제31조 (이수)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2015.3.4.,2017.6.7개정>
- 제32조 (수료, 졸업 및 학위)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2017.3.16개정>
 ②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 1학년 - 30학점 제 2학년 - 60학점 제 3학년 - 90학점 제 4학년 - 120학점
 <2017.3.16.,2017.6.7개정>

③ 소정의 과정을 필하고 졸업사정을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신학부는 신학사, 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학과는 문학사, 상담심리학과는 상담심리학사, 예술학부는 음악학사를 수여한다.

④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1년의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19.9.4>

제33조 (편입학 학점이수)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 재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케 한다.

제34조 (졸업논문) <삭제>

제35조 (졸업증서 수여) 본 학칙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실기발표와 졸업에 필요한 고사에 합격한 자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3절 시험 및 성적

제36조 (시험) 시험은 매 학기말에 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 및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37조 (3분의 1 결석)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 시험에 응할 수 없다.

제38조 (평가) ①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평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예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

제39조 (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을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하며, D0급 이상과 P급을 급제로 하고 F급과 NP급은 낙제로 한다.

실 점	등 급	평 점
95 - 100	A+	4.5
90 - 94	A0	4.0
85 - 89	B+	3.5
80 - 84	B0	3.0
75 - 79	C+	2.5
70 - 74	C0	2.0
65 - 69	D+	1.5
60 - 64	D0	1.0
0 - 59	F	0.0
합격	P	불 계

제40조 (우등생) ①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를 학기 우등생으로 하며, 학년간 성적이 전부 학기 우등생인 경우는 학년 우등생으로 한다.

②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0이하인 자는 학사경고하며 통산하여 학사경고 3회에 해당되면 제적 처분한다.

<개정 2019.10.2.>

제41조 (추가시험) ① 병역·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소속학과장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②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사유종료 직후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추가시험은 B급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2조 (부정행위)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학기 해당과목 또는 전과목 (각종고사 포함)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일단 인정한 성적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성적을 취소한다.

제 8장 규율과 상벌

- 제43조 (학생의 자질)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심 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신앙심을 기르며 교양을 높여 교회와 국가사회의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 제44조 (질병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5조 (표창) ①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심덕이 탁월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사회봉사 우수자 포함)
② 포상의 결정은 필요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46조 (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을 성취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학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5. 허가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
 6. 이중학적을 가진 자.
 7.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② 징계 및 징계 해제는 필요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에 심의 할 수 있다. 학생지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9장 등 록 금

- 제47조 (등록금)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내에 수업료 및 기타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48조 (납부연기 및 분납) 등록금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납부연기 및 분납을 할 수 있다.
- 제49조 (등록금 금액 및 기일공지)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초 전에 이를 공지한다.
- 제50조 (등록금 반환금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해당할 시에는 반환한다.

제 10장 장 학 금

- 제51조 (장학금)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에게는 장학 급여 규정에 의

하여 장학금을 급여한다.

제52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또는 징계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장학금을 급여치 않는다.

제53조 장학금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 11장 공개강좌

제54조 (공개강좌) 본 대학교에 실무,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학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55조 (공개강좌 규정)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시간, 장소, 수강자격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56조 (공개강좌 수강허가)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에 지장이 없는 한 개강 중 수시 허가할 수 있다.

제57조 (공개강좌 비용징수)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2장 직 제

제58조 (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별도로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3장 교 수 회

제59조 (교수회)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학과 교수회를 둔다. (이하 “교수회”라 한다)

제60조 (교수회 구성) 교수회는 전임강사 이상으로 구성한다. 교수회는 학과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1조 (교수회 의결)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62조 (교수회 심의결의)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목의 설치·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입학에 관한 사항
4.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5. 총장이 자문하는 운영사항
6.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4장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

제63조 (교무위원회)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두며, 총장, 각 차·실장, 각 대학원장, 각 학과장, 학술정보관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의2 (대학평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4조 (교무위원회 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5조 (교무위원회 심의결의)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부설기관의 설치·운영·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기타 제규정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학에 관한 일체의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6조 (교무위원회 의결)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5장 학생활동

제67조 (학생회 설치)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건학이념에 입각한 학생 자치 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울장신대학교 학생회 (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상태시에는 학생회의 활동이 정지된다.

③ 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8조 (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 (학생단체 조직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 (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1조 (금지활동) 학생은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성토·시위·농성·등교거부·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72조 (활동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1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개최일시·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73조 (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4조 (징계) 총장은 학생이 본 장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75조 (재입학 또는 편입학 불가)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 16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제76조 (부속기관 및 시설)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기관 및 시설을 둔다.

1. 학술정보관
2. 생활관
3. 학보사
4. 출판부
5. 보건소
6. 시청각교육실
7. <삭제>
8. <삭제>
9. 장애학생지원센터
10. <삭제>
11. 교수학습개발센터(CTL: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12. 학생상담센터 <개정2017.3.16>
13. 사회봉사센터 <개정2017.3.16>
14. 취·창업지원센터

② 부속기관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76조의 2 (학술정보관) <신설.2017.01.31>

우리 대학교의 학술정보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정보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학술정보관운영위원회는 학술정보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본 대학 각 학과별 조교수 이상의 소속교원 중 3명과 직원 1인을 학술정보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② 학술정보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정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학술정보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학술정보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학술정보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술정보관의 시설 및 학술정보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술정보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술정보관은 「대학학술정보관진흥법」 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술정보관 규정」에 따른다.

1. 학술정보관 운영과 관련한 대학학술정보관의 예산, 조직, 학술정보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학술정보관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학술정보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3.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 시간
4. 시설 및 학술정보관자료

제77조 (부설기관 및 시설)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설기관 및 시설을 둔다.

1. 신학연구소
2. 평생교육원
3. 밀알사회복지연구소



4. 교회음악연구소
5. 미션네트워크센터
6. 기독교리더십연구소
7. 성지연구소
8. 자연치유연구소
9. 새음향디자인연구소
10. 기독교영성연구소 (삭제2015.10.23.)
11. 글로벌영어연구소 (삭제2015.10.23.)
12. 기독교한국문화연구원 (삭제2015.10.23.)
13. 디아코니아연구소
14. 원격평생교육원 (신설 2014.3.5.)
15. 성서고고학연구소 (신설 2017.11.1.)
16. 국제교육원 (신설 2018.9.5.)(삭제 2025.05.12.)
17. 심리전기연구소 (신설 2022.9.7.)
- ② 부설기관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77조의2 (서울장신대학교 산학협력단) ①우리 대학교에 산학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장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제77조의3 (장애학생지원센터) 우리 대학교에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제 17장 (시간제학생 등록) (삭제)

제78조 (시간제학생 등록) (삭제)

제 18장 학점은행제

제79조 (학위수여요건)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학위요건에 따라 교양 30학점, 전공 60학점 이상(전필포함), 총 14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3.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교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1호에 의거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1. 표준교육과정에 의한 전공 필수 및 선택 48학점 이상 이어야한다.
2. 전공 필수 및 선택 48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한 경우에 한해 총장이 수여하는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80조 (학위수여 절차 및 종류) ① 제79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대학의 장의 학위 수여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대학의 장 학위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대학내 평생교육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위수여여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3.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번호 부여한 후 그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하며 학위번호는 '대학-학점-연도-일련번호' 형식으로 한다.
- ② 학위수여된 자에게 학위증,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학위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③ 제79조 학위수여 가능한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정규학과 교육과정 중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에 한한다.
 2. 전공명이 유사할 경우 유사전공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사성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④ 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종 별표는 아래에 따른다.

학위명	전공명
신학사	신학전공

제 19장 자체평가

- 제81조 (자체평가) ① 총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 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년도 자체평가로 같음할 수 있다.
-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0장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 제82조 (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 등에 대한 특별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1장 학칙의 개정

- 제83조 (학칙개정) 학칙의 개정은 개정안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사전 공고하고, 대학평의회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의 심의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 제84조 (학칙외 세부규정)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규정, 학칙시행세칙 또는 내규, 지침으로 정한다.
제85조 (절차의 생략) 부서 및 직위 변경사항, 경미한 사항 등은 대학평의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9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 학칙 시행으로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정원을 제 2조(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이 신학과 57명으로 증원하고, 교회음악과는 30명으로 감원하여 적용한다.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교회음악과 지휘, 작곡 전공폐지는 재학생 전원이 졸업시까지 존치키로하고, 교회음악과 미디작곡 전공신설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키로한다.

이 학칙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7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으로 2023학년도 이후 신입생부터는 제2조 (학부, 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을 적용하고 기존의 학생은 개정 전 기존 학칙의 제2조(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을 적용한다. 단, 2023학년도부터 기존 학칙 중 신학과 초등대안교육전공과 자연치유전공은 폐지한다.

이 학칙은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제 호

학 위 증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 함.

년 월 일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 ○ ○

학위번호 : 서울장신대 학

[별지서식 제2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전 공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 ○ ○

학위번호 : 서울장신대-학점-연도-일련번호



✦ 학칙시행세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서울장신대학교학칙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등 록

제2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학기의 학생 자격을 얻는다.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제3조 (학점등록) ① 4학년 2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나 총장이 인정하는 중증 장애학생 등은 학점등록을 허가하며 이에 준하는 수업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2015.9.2)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 3장 수강신청과 수업

제4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서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교과목 코드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수강신청을 인정받지 못한다.

제5조 (수강신청절차) 수강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 받아 교과과정표와 수업시간표를 참고하여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컴퓨터로 입력 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조교에게 제출하고, 조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혁신처에 일괄 제출한다.

제6조 (수강신청학점) ① 매 학기 수강신청학점은 15학점 이상 24학점 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4학년의 경우 6학점 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졸업보류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4학년 2학기에 신청학점을 현행 24학점에서 30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③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최초학기(제1학기)는 탐색학기로서 청원서 사전제출에 의하여 9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 단, 국가장학금의 신청을 위해서는 최저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4.3.6.>

제7조 (선수과목우선이수) 교과목 중 선수과목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수강신청변경)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강의시간 변경이나 개설강좌의 폐강 등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 (수강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된 기간 (개강 후 3~4주내)에 해당과목 담당교수와, 교육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수강신청학점이 15학

점(4학년의 경우 6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제5조(수강신청학점) ③항에 의거하여 최소 9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3.6.>

- 제10조 (중복수강금지) ① 삭제
- ②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시간이 중복된 수강신청은 해당과목 전체를 신청무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 (재수강) ① 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D0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이 가능하고, 총3과목 한학기 1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 ② 재수강 후 최고 성적은 B+까지 부여된다.
- ③ 취득한 학점이 F인 경우 재수강 제한이 없다. 단, 제①항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 ④ 필수과목을 낙제(F등급)하였을 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한다. 단,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재수강 대상 과목이 폐지되어 대체과목이 지정된 경우는 대체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2015.5.4.>
- ⑤ 교회음악과와 실용음악과의 연주와 전공실기는 4학년 1, 2학기에 재수강할 수 있다. 단, 학과장의 판단에 따라 재수강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 <신설 2024.9.4.>
- 제12조 (학점의삭제) 학칙 및 이 세칙에 의한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의 경우에는 일반선택, 전공선택, 교양선택 순으로 하여 우선하는 과목의 학점을 삭제한다.
- 제13조 (수강신청의효과) ①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수강철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적으로 그 과목은 낙제가 된다.
- ② 삭제
- ③ 지정된 기간 내 수강신청을 추가하지 못하였으나 졸업요건에 영향이 있는 과목에 지속적 출석으로 성적부여가 가능한 경우 수강신청을 추가하려면 해당학기 내에 변경신청서(청원서)를 제출 후 교육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지정된 기간 내 수강신청을 삭제 또는 변경하지 못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삭제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학기 내에 변경신청서(청원서)를 제출 후 교육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자격증 관련 과목의 이수구분은 변경신청서(청원서)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의 의견을 수렴 후 변경할 수 있다
- 제14조 (수강제한) ① 본인이 속한 학과의 교과목과 타과의 교과목 이름이 같을 경우 타과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단, 교육혁신처의 승인을 얻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강제한 교과목의 취득성적은 무효로 한다.
- 제15조 (학점취득과장학금) 장학금 지급 규정의 운영에 따른다.
- 제16조 (교과목의폐강) 전공선택과 교양선택 과목은 수강 학생이 8명 미만일 경우 해당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단, 담당교수-학과장(교양학부장)-교육혁신처장의 협의 하에 해당과목을 폐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6조의 2 (수업) <삭제>
- 제16조의 3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30주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 영성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춘계·추계 수련회는 수업일수에 포함한다.
- 제16조의 4 (집중강좌) 집중강좌는 교수 및 강좌 특성상 단기간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좌를 말하며, 학기중이라도 다른 교과목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집중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제16조의 5 (분반)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강좌는 분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사정과 강좌운영 및 특성에 따라 분반 또는 분반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강생이 70명 이상일 때
 2. 외국인 교·강사가 담당하는 강좌로 수강생이 30명 이상일 때
 3. 전공실기 및 부전공실기과목할 수 있다.
- 제16조의 6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 ①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 ②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보충을 위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학습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제 4장 교과과정 편성과 이수

- 제17조 (교과과정구분) 교과과정은 일반교양과 전공으로 구분하고 일반교양은 다시 교양필수, 교양선택, 일반선택, 전공은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 제18조 (학점이수)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총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2017.3.16>
② 학점이수는 입학년도의 당해학과 교과과정에 의하여 별표 1의 학과별 최저 이수 요구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9조 (학점인정) D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각각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그 취득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 5장 시험과 성적

- 제20조 (시험의 종류)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험 : 중간시험, 기말시험
 2. 부정기시험 : 교과목에 따라 학기도중 수시로 시행하는 시험
 3. 추가시험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게 과하는 시험
- 제21조 (부정기시험) 교과담당 교수는 학기도중 수시로 과제를 부과, 실기시험 또는 학습세미나 등의 부정기 시험을 과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학기말 종합성적 평가에 반영한다.
- 제22조 (추가시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혁신처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본인의 질병 (진단서 첨부)
 2. 병역법상의 의무이행 (징병검사통지서, 교육훈련소집통보서 사본 첨부)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삼촌이내)의 사망 (사망 진단서 또는 부고장 첨부)
 4. 기타 부득이한 사정 (증빙서류)
- ② 전항의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말시험 (중간시험 미응시) 또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미응시)의 성적을 추가시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추가시험 장소 및 일시는 정기시험 종료 후 교내 게시판에 공고한다.
- ④ 추가시험 성적등급은 B급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3조 (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평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상대평가 분포비율은 A0~A+을 40%이하로 (90점 이상을 40%까지 평가로) 한다. <개정 2015.1.28., 2017.6.7., 2024.1.23.>
② 장애학생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등의 지원을 한다. <신설2018.6.7>
- 제24조 (성적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낙제(F)처리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한 자의 성적 (해당과목 또는 전과목)
 2. 출석미달자의 성적
- 제25조 (군입영휴학자의성적인정) 중간시험 종료 후 군입영휴학을 할 경우 학생이 원할 경우 중간시험 성적을 그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한다.
- 제26조 (성적이의신청) ①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생은 담당교수에게 직접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성적정정은 담당교수의 실수 또는 착오 등의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

제 6장 출석과 결석

- 제27조 (결석) 무단결석, 강의도중 무단퇴실, 학교행사 불참 등은 결석으로 처리하며, 지각과 조퇴는 2회를 1회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 제28조 (출석인정) 다음 각호1의 사유로 결석한 자는 증빙서류를 교육혁신처로 제출 하여 허가를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가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사망 (5일이내) <개정2014.5.7>
 2. 병역법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한 소요기간
 3. 본인 또는 2촌 이내 가족의 중병으로 인한 진료 또는 입원(2주 이내) (응급치료 확인서, 의사 진단서 제출)<개정 2014.5.7., 2024.12.4.>
 4.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회의나 행사에 참가한 해당 시간<개정2014.5.7>
 5. 교육실습, 학과 학술 답사여행 등으로 인한 소요기간
 6. 기타 총장이 허락한 행사 등의 참석으로 인한 소요기간
 7. 배우자의 출산 (3일이내)<개정2014.5.7>
 8. 총회 및 노회고시 응시(해당일)<개정2014.5.7>
 9. 교육부의 취업률로 인정된 취업의 경우<신설 2016.12.7>
- 제29조 (공결원제출) 전조의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였을 경우 사후 1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결원을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장 학사경고 및 제적

- 제30조 (학사경고)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0이하인 자에게 학사경고 한다. 단, 학점등록 학생은 학사경고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9.10.2>
- 제31조 (제적) ① 학사경고를 재학 중 통산하여 3회 받은 자는 제적처리 한다.
- ② 교회음악과 전공실기를 재학 중 통산하여 3회 이상 과락한 자는 제적처리 한다(98년도부터). 단, 중증 장애학생 중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 전문가의 소견을 근거 자료로 하여 이 조항에 예외 사항을 둘 수 있다.<개정 2018.6.7>

제 8장 휴학·복학

- 제32조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해학기 수학이 불가능할 경우에 하는 휴학 (개정 2016.9.7)
 2. 군입영휴학 : 재학 또는 일반휴학시 군에 입영할 경우에 하는 휴학 (개정 2016.9.7)
 3. 육아휴학 : 재학생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와 만16세 이하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휴학 (개정 2016.9.7, 2024.12.4)
- 제33조 (휴학원제출)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휴학원에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영장 사본)를 첨부하여 교육혁신처에 등록기간동안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일반휴학 기간 중 군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군입영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제34조 (휴학기간) ①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하며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인해 학업을 진



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락 하에 1회에 한하여 1년간 휴학할 수 있으며, 학점등록 학생의 경우는 1학기 휴학이 가능하다.

② 군입영휴학은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복학하기 개시일 전까지를 휴학기간으로 한다.

③ 1학년 1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단, 질병 또는 군입대 휴학은 예외로 한다.

④ 전역을 하여 군입영휴학기간이 만료하였지만 직업 군인으로서 군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된 경우, 군기관에서 발행한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와 학생의 복학계획서를 제출 시 직업군인으로 복무기간을 군휴학기간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9.3.6>

제35조 (휴학과등록금) ① 등록을 마친 후 수업일수 1/3 이내에 일반휴학을 할 경우, 복학시 기 납부한 등록금을 대체할 수 있다

② 등록을 마친 후 수업일수 1/3을 초과하여 일반휴학을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을 마친 후 군입영휴학을 할 경우 복학시 다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④ 자퇴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한다.

당해학기 개시일(신·편입생의 경우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날로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4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날로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3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제36조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 연락 없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 9장 재입학·편입학·학사편입학

제37조 (재입학) ① 학칙에 의하여 퇴학 또는 제적되었을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매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원서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38조 (재입학의 제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1. 각종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제39조 (편입학) 편입학은 3학년에 해당학과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매학기 초에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 (편입학생의 교과이수) ① 전적 학교의 교과목중 본교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교과목은 3학년의 경우 6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교육혁신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4.3.5.,2017.6.7>

② 전적 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일지라도 편입학년 이상의 필수과목은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졸업에 필요한 교양 및 전공의 이수학점은 별표1에 의하되 인정학점을 포함한다.

④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 및 편입 할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 할 수 있다. <신설 2016.6.1>

제41조 (학사편입학) ①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으로 제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제42조 (편입생의교과이수) ① 전적 학교의 교과목중 60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2014.3.5.,2017.6.7>

② 편입생은 3, 4학년의 전공필수 교과목 이외에 별표2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되,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총 12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14.3.5.,2017.6.7>

제 10장 계절학기

- 제43조 (계절학기) 계절학기는 여름,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필요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 제44조 (개설교과목) ① 개설 교과목은 교육혁신처장이 따로 정하여 발표한다.
 ② 계절학기 교과목 개설은 본 학기에 개설하지 않은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 MOU대학의 학점교류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교육혁신처장의 승인으로 개설 할 수 있다. <개정 2015.3.4>
- 제45조 (수업시간) 1학점 당 강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45조의 2 (수업일수) 계절학기 실 수업일수는 15일 이상, 1일 수업시간이 해당 시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3.4>
- 제46조의 2 (등록금) ① 계절학기에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절학기 등록금은 본 학기 등록금에 준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 수강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성지순례·수도원순례등 본교가 기획하여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참가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등록금을 대체할 수 있다.
- 제47조 (삭제)
- 제48조 (성적처리)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과 학점은 별도학기로 처리하며 졸업학점 및 총 평점 평균에는 포함된다.

제 11장 (삭제)

-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 <삭제>
 제52조 <삭제>

제 12장 졸업논문

- 제53조 (졸업논문) 학과에 따라서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학과에 따라서는 실기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4조 (졸업논문제출자격) 졸업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최종 학기에 등록을 필한 자라야 한다.
- 제55조 (졸업논문신청서의 제출) 졸업논문 제출 대상자는 4학년 1학기 초에 소정 양식의 졸업논문신청서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6조 (지도교수배정) ① 학과장은 교육혁신처로부터 졸업논문신청서를 인수받아 학과 교수회의에서 졸업논문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그 명단을 교육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혁신처장은 배정받은 지도교수에게 졸업논문지도를 위촉한다.
- 제57조 (논문지도) 논문지도교수는 배정된 학생의 논문작성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지도하여야 한다.
- 제58조 (논문규격) ① 용지는 400자 원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컴퓨터 등으로 작성할 경우 A4용지에 상, 하, 좌, 우 각각 20mm, 20mm, 25mm, 15mm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 제59조 (논문분량) ① 논문 제목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국문 20자 이내, 영문 50자 이내 이어야 한다.
 ② 논문의 분량은 400자 원고지 50매 이상 이어야 한다. 단, 컴퓨터 등으로 작성할 경우 20,000자 이상 이어야 한다.
- 제60조 (논문제출) 양식, 규격에 맞춘 논문을 제본한 후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기일 내에 본인이 교육혁신처에 제출한다.
- 제61조 (논문심사) ① 총장의 위촉을 받은 논문심사위원회 판정에 따라 합격, 불합격으로 결정하여 불합격자에게는 12월말 까지 통보한다.
 ② 졸업논문은 '96년 2월부터 '98년 2월 졸업생까지는 Pass로 인정하고, 그 이전 졸업생들은 3학점 으로 인정하며 '99년 2월부터 2000년 2월 졸업생까지는 2학점으로 인정한다. 또한 신학과, 사회복지학과는 없으며 교회음악과는 전공필수로 졸업연주 2학점을 인정한다.
 ③ 불합격자는 졸업이 1년 보류되어 유급처리 되며 1년 이내 (군복무기간 제외)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제62조 (논문의인정)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요건에 미달되어 유급되어도, 합격한 졸업논문은 인정된다.
- 제63조 (실기발표) ① 교회음악과의 실기발표는 교회음악과 학과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실기발표의 심사는 교회음악과 학과장의 위촉을 받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
 ③ 실기발표의 합격자, 불합격자는 졸업논문의 합격자, 불합격자에 준한다.

제 13장 졸 업

- 제64조 (졸업의 요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단, 조기졸업 및 편입학생은 예외로 함.
 2. 별표1의 학과별 최저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이수
 3. 졸업논문 또는 실기발표에 합격한 자
 4. <삭제>
 5. 경진회에 8학기 합격한 자. 단, 조기졸업 및 편입학생은 예외로 함.
 6.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때까지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설 2025.2.3.)
- 제65조 (조기졸업) ① 학칙 제 3조에 의거 수업연한을 단축함을 뜻하며, 6학기까지 취득학점이 118학점을 이수한 학생 중 매 학기 평점평균이 4.0이상이고, 7학기까지 총 평점평균이 4.30이상자가 조기졸업심사를 거쳐 1학기를 조기 졸업할 수 있음을 말한다.
 ② 조기졸업 신청은 6학기 말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기졸업신청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입생, 학사경고를 받은 자, 각종징계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 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④ 조기졸업자는 학적부에 기록한다.

제 14장 조 교

- 제66조 (조교 구분) 본교 조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행정조교: 각 부서/센터 및 학과 조교
 개인조교: 전임교수 조교
- 제67조 (선발기준 및 근로기준) 본교 조교의 선발기준과 근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선발기준)

행정조교: 대학원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생 선발이 어려울 경우 학부생으로 선발한다.

선발기준은 소속부서 및 학과에서 공정성 있는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하고 선발기준은 자체 보관한다.

개인조교: 전임교수의 업무 보조에 적합한 학생을 전임교수가 결정하여 선발한다.

2. (근로기준)

행정조교: 소속부서에서 행정조교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행정조교의 근태를 관리한다.

개인조교: 학기당 80시간이상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에대한 조교일지를 교육혁신처로 제출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9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0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02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0월 8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09년 4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09년 8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1년 5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1년 7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2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2년 4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2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3년 6월 5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3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5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4년 5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4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5년 5월 4일 부터 시행하되,

제11조(재수강)은 2016년 1학기부 터 적용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2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제28조(출석인정) 9항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소급적용 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7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2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학과별 졸업에 필요한 요구학점

학과명	졸업필수요건	졸업학점 계
신학부 신학과·목회사역학과	2025학년도 신학부 신학과 신입생의 경우, ① 교양 30학점이상 이수 ② 전공 42학점이상 이수 ③ 전공필수는 필수이수(30학점) ④ 졸업학점계는 120점 이상 ※졸업에 필요한 요구학점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120
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학과	① 교양 30학점이상 이수 ② 전공 51학점이상 이수 ③ 전공필수는 필수이수 ④ 졸업학점계는 120점 이상	120
복지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① 교양 30학점이상 이수 ② 전공 42학점이상 이수 ③ 전공필수는 필수이수 ④ 졸업학점계는 120점 이상	120
교회음악과	① 교양 20학점이상 이수 ② 전공 54학점이상 이수 ③ 전공별 필수과목 이수 ④ 전공필수는 필수이수 ⑤ 졸업학점계는 120점 이상	120
예술학부 실용음악과	① 교양 20학점이상 이수 ② 전공 51학점이상 이수 ③ 전공별 필수과목 이수 ④ 전공필수는 필수이수 ⑤ 졸업학점계는 120점 이상	120

※ 교회봉사는 졸업요건에서 제외한다.

(기타학점은 교양선택, 전공선택, 타학과교과목중에서 수강할수 있음)

- ※ 2013학번 이전 학생은 교양필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교양 졸업요건을 충족한다. 실천(교회실천)은 졸업요건에서 제외한다. (기타학점은 교양선택, 전공선택, 타학과교과목중에서 수강할 수 있음)
- ※ 단 중증장애 학생 중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 전문가의 소견, 소속 학과 결정 및 총장 승인을 얻어 졸업 필수 요건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9. 4.>
- ※ 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현장실습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 소속학과 회의를 통해 실습 없이 졸업은 가능하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별도로 사회복지사협회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3.12.6.)
- ※ 졸업요건 중 2025학년부터 교양 필수 해당사항을 신설함
- ① 사회봉사1 필수이수
 - ② 1학기'진로탐색'또는'취업의길을물다'또는'창업의길을물다'중 2개를 필수 이수
 - ③ 교양 교과과정 중 전문성 영역에서 선택하여 1개를 필수 이수
 - ④ 교양 교과과정 중 힘 실어주기 영역에서 선택하여 1개를 필수 이수 즉, ① + ② + ③ + ④로서 교양필수가 총 5개

2024학번 이후 신학과 의 졸업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2023학번 이전 신학과 의 졸업요건은 동일함)

(1) 2023학번 이전 신학과: 예전 신학과 교과과정 중 선택적(전공) 필수였던 과목

과목명(가나다순) (※괄호안은 대체과목임)			
구약개론	기독교교육개론(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당학개론 (2024학년도 폐강)	기독교역사와사상 (교회사개관)
네러티브로읽는복음서 (2024학년도 폐강)	모세프로젝트	미디어의운용과기획 (2024학년도 폐강)	선교학 (선교학개론)
설교학기초 (예배와설교의기초)	신약개론	신약신학	예배학기초 (예배와설교의기초)
조직신학개론 (조직신학1)	하나님의선교 (2024학년도 폐강)		

- (i) 2023학번 이전 목회실천학부 신학과 목회신학(사역)전공: 위의 과목 중 7과목 이상 이수
- (ii) 2022학번 이전 목회실천학부 신학과 예배찬양사역전공: 위의 과목 중 7과목 이상 이수
- (iii) 2023학번 이전 목회실천학부 목회사역학과: 위의 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
- (ix) 2020 ~ 2023학번의 신학과 편입생은 위 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

(2) 2024학번 이후 신학과: 2025학년도 새로운 신학과 교과과정 중 전공필수 과목

과목명			
신약특토리얼('25년 신설)	성서의역사적배경('25년 신설)	구약개론	기독교역사와사상
신약개론	기독교교육개론	조직신학개론	예배학기초
선교학	신약신학		

- (i) 신학과 2024학번은 2025학년도 신학과 교과과정의 전공필수 과목 중 선택하여 21학점(7과목) 이상 이수
- (ii) 신학과 2025학번은 2025학년도 신학과 교과과정의 전공필수 과목 30학점(10과목) 모두 필수이수
- (iii) 2024 ~ 2025학번의 목회사역학과는 2025학년도 신학과 교과과정의 전공필수 과목 중 선택하여 12학점(4과목) 이상 이수
- (ix) 2024 ~ 2025학번의 신학과 편입생은 2025학년도 신학과 교과과정의 전공필수 과목 중 선택하여 12학점(4과목) 이상 이수
- ※ 졸업에 필요한 요구학점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2. 일반/학사 편입생 필수 교과목

학과명	편입생 1,2학년 필수 교과목	비고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할 때는 학년별 단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14.3.5. 2017.6.7)
교회음악과	화성법1,2 음악과 1,2 예배와 음악1 단, 전공실기(1,2,3,4) 교회음악연주실습(1,2,3,4)은 예외로 함	(개정2017.6.7)



✦ 복수전공에 관한 학칙시행세칙

-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28조에 따라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 제2조 (신청자격과 신청시기)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 하는 자는 최소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복수전공 신청시점까지의 총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라야 하고 신청시기는 2학년 말까지 할 수 있다. 단, 편입생, 학사경고를 받은바, 각종 징계를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제3조 (복수전공학과와의 범위) ① 전 학과를 대상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교회음악과의 경우 전공실기 능력을 인정 받은 자에 한한다.
② 복수전공은 학과의 수용능력, 인원 등을 감안하여 전공자의 수를 학과별로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 (신청 및 허가)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안에 주전공 학과장과 복수전공 학과장을 경유하여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학점이수)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주전공의 학기 내에 복수전공학과와의 교과과정표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7.)
- 제5조 ② 학과별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은 최소42학점으로 한다.
③ 주전공과 복수전공 이수는 총 12학기 이상을 이수할 수 없다.
④ 주전공학과와 복수전공학과와의 동일과목일 경우 상호학점을 인정한다.
⑤ 복수전공자는 수강신청시 학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학과명	복수전공 필수이수 과목
신 학 과	과목명
	신학 튜토리얼
	성서의 역사적 배경
	구약개론
	기독교 역사와 사상
신 학 과	신약개론
	기독교교육개론
	조직신학개론
신 학 과	예배학기초
	선교학
신 학 과	신약신학
신학과 복수 전공생은 개편 교과과정의 전공필수를 포함한 위 표 중 총 7개 이상의 과목(21학점)을 수강하면 복수전공 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인정함	
사회복지학과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개론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할 때는 학년별 단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복수전공선택 나머지 12학점은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법정이수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함)
교회음악학과	• 공통필수: 전공실기3~8, 화성법1~2, 성가를위한시창청음1~2, 음악사1~2, 교회음악개론1, 예배와음악1, 졸업연주 • 피아노전공: 교회음악전공문헌(피아노) • 성악전공: 교회음악전공문헌(성악) • 오르간전공: 교회음악전공문헌(오르간)

- 제6조 (이수취소) ① 복수전공을 취소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복수전공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을 취소한 자는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과목을 주전공의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7조 (학위수여) ① 복수전공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학위를 수여한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가 주전공의 학위만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전공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전공현장실습 시행규정

- 제1조 (목적) 각 학과의 학문성과 현장경험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장교육(세미나, 심포지엄, 학술대회, 공개레슨, 음악캠프)을 통하여 전공에 관련된 교육의 훈련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전공현장실습 학점제) 신학과와 교회음악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활발한 활동을 지양하고자 전공현장실습 학점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① 전공현장실습 학점제의 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전공선택 과목으로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P(합격), NP(불합격)으로 평가한다.
 - ② 전공현장실습 학점제는 평점에는 합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으로는 인정한다.
 - ③ 전공현장실습 학점은 3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는 1학점, 41시간 이상은 2학점을 부여하며 재학중 총 4학점 까지 이수 할 수 있다.
 - ④ 전공현장실습을 원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에 수강신청을 한다.
 - ⑤ 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실습 마감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필한 실습 평가 보고서를 학과에 제출한 후,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혁신처에 제출한다.
 - ⑦ 교육혁신처에서는 학생의 이를 근거로 하여 학점의 이수여부를 결정한 후, 최종 교육혁신처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2년 8월 22일 직제변경으로 교육혁신처를 교학처로 한다.
3.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20년 3월 1일 직제변경으로 교학처를 교육혁신처로 한다.

✚ 전과에 관한 학칙시행세칙

-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11조의 2에 의하여 전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자격) 1학년 1학기 이상의 과정을 마친 자로서 총 평점평균이 2.0 이상 이어야 한다.
- 제3조 (허용범위) ① 각 학과(신학과, 목회사역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교회음악과, 실용음악과)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24.1.23.>
- ② 전과는 전과대상학과 입학정원의 50% 이내에서 허용한다.
- ③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 한다.
- ④ 3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가 2학년으로, 5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가 3학년으로 학년을 하향한 전과는 허가하지 않는다.
- ⑤ 전과 합격 후 취소한 자는 다시 전과에 지원할 수 없다.
- 제4조 (선발기준) ① 전과 지원자에게 학과면접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과에서 별도의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학과면접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결시한 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학과면접 일정, 진행방식은 학과에서 결정하며, 학과면접은 학과장을 포함하여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 제5조 (신청 및 허가) ① 전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과신청을 해야 한다.
- ② 전과지원자는 전과원서, 성적증명서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입하는 학과의 학과장은 전과 면접결과보고서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혁신처장은 총장의 결재를 득해 전과를 허가한다.
- 제6조 (학점인정과 교과이수) ① 전적학과에서 기이수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② 전과한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요구학점(학칙시행세칙 제18조 2항 별표1)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전과한 자는 전입한 학과(전공)의 전공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과 이전 학년의 전공필수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한 과목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 제7조 (등록) ① 전과허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허가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② 전적학과에서 등록금을 기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 납부 또는 환불한다.
- ③ 전과가 확정된 후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을 하여야 한다.
- 제8조 (장학금 수혜 제한) 전과한 자는 전과를 한 학기의 성적우수장학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제9조 (전과취소) 전과허가를 받은 자가 전과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 전 지정된 기일까지 소속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소정의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시행세칙은 202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사회봉사학점 시행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봉사 활동 장려를 통하여 본 대학교의 설립정신 구현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학생 사회봉사 영역) 학생의 사회봉사 영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사회복지시설, 기관 봉사활동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역사회 복지관 등)
 - ② 공공기관 봉사활동
(구청, 동사무소, 소방서, 우체국, 도서관, 보건소, 학교 등)
 - ③ 사회공익 봉사활동
(헌혈, 환경보호활동, 청소년 지도활동, 시민 공익단체 등)
 - ④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 ⑤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봉사활동, 탄광촌 봉사활동, 수해지구 봉사활동 등)
 - ⑥ 가정복지 활동
(장애인 가정,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봉사활동 등)
 - ⑦ 교내 봉사활동(학과행사, 학교행사, 예배안내 등) 및 관련 교육 이수(단, 7번 사항은 장애인만 해당) <개정 2019.9.4.>
- 제3조 (학점제) 학생 사회봉사 활동을 육성·지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활동 학점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① 사회봉사 학점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교양필수 과목으로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P(합격), NP(불합격)로 평가한다.
 - ② 사회봉사 활동은 30시간 이상 활동에 2학점을 부여한다.(단, 장애인만 20시간 활동에 2학점을 부여함) <개정 2019.9.4.>
 - ③ 사회봉사 활동을 원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에 수강신청을 한다.
 - ④ 학점의 이수여부결정은 성적평가 기준(이론교육 필수 이수, 중간 모니터링 자료·기말 보고서·봉사활동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사회봉사 교과목 담당교수가 한다. <개정 2024.3.6., 2025.3.1.>
 - ⑤ 학점 인정시기는 수강 신청 학기로 한다. <개정 2024.3.6., 2025.3.1.>
- 제4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2년 8월 22일 직제변경으로 교무처를 교학처로 한다
3. 이 시행세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20년 3월 1일 직제변경으로 교학처를 교육혁신처로 한다.

부 칙 <2024.3.6.>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융합전공에 관한 학칙시행세칙

- 제1조 (목적) ① 융합전공을 통해 학과간 전공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전공 선택폭을 확대하고, 새로운 전공을 신설함으로써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②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28조의 2에 따라 융합전공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 제2조 (이수자격 및 취소) ① 해당 학과 재학생은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각 전공의 특성에 따라 신청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융합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융합전공 취소신청서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이수한 융합전공 과목은 주전공의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 제3조 (신청 및 허가)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기부터 6학기 기간 중 소정기간 내에 융합전공 신청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육혁신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 (융합전공 운영위원회) 융합전공의 교과과정운영 및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합전공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 (융합전공 이수학점 및 졸업인정 등) ①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전공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해당 융합전공 교과과정에 따라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융합전공 구성학과 소속으로 융합전공 이수를 승인 받은 학생이 융합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21학점 이내에서 주전공의 전공선택으로 중복 인정한다.
③ 융합전공 구성학과 소속으로 융합전공 이수를 승인받지 않은 학생이 융합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주전공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융합전공 구성학과 소속이 아닌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④ 융합전공학생이 융합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융합전공 관련 교과목은 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융합전공이수 승인 및 수강신청과 이수 지도는 해당 학과장이 담당한다.
⑥ 소속 학과의 졸업요건과 융합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해당 융합전공의 이수를 인정하며 학위증에 이수전공을 병기한다.
- 제6조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성지·선교현장 답사 학점 시행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의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성지·선교현장연구 답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범위) 활동 범위는 본교가 기획하여 개설한 경우로 한정하며, 총장이 허락한 활동에 대해 교무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 (학점제) 본교 학생의 유능한 전문인 양성과, 책임 있는 세계인 양성을 위해 성지·선교현장 답사 및 해외봉사 활동에 대해 학점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① 수강신청은 활동에 참가 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1회 3박 4일 이상의 활동에 3학점을 부여하며, 최대 2회 6학점까지 인정한다.
 - ③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답사 및 봉사 실습 보고서를 제출 후 교육혁신처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⑤ 활동 결과는 P(합격), NP(불합격)으로 평가한다.
- 제4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교육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시행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관리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기취업자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학점인정의 적용대상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서 졸업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하고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 중 국내·외 산업체에 취업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결손에 따른 출석인정
 2. 해당학기 교양 및 전공 교과목 학점인정
- 제4조 (학점인정) ① 조기 취업자의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평가 자료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1.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결과
 2. 전공 관련 과제물 등
- ② 제1, 2호는 의무 평가자료이며, 담당부서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학점인정 절차)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조기취업자는 학과장의 허락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공결원[별지서식1] 및 취업허가신청서[별지서식2]를 작성하여 취업 10일 전까지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취업 후 2주 이내에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혁신처는 이를 자체 보관하여 조기 취업자 학점인정 등의 증빙서류로 활용한다.
- 제6조 (제출서류) 조기 취업자의 학점인정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결원[별지서식1]
 2. 취업허가신청서[별지서식2]
 3. 증빙서류
- * 대상별 증빙서류

대 상	자격요건	증빙서류	비고
재직자	전일제 취업자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 (갑과을의 날인이 된 것)	
1인 창(사)업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 연계 취 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합소득신고서 (월별신고세액이 나오는 경우 당해연도 월별 신고서)	

* 취업확인서[별지서식3]

4. 각서[별지서식4]

5. 과제물

6. 기타 학과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

제7조 (준수사항) 조기 취업자의 효율적인 학점인정을 위해서 해당학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1. 취업 증빙서류에 의거한 취업자 및 미취업자 확인 철저
2. 미취업자의 출석 및 수업관리 철저
3. 제4조에 의거한 학점인정
4. 취업증빙 및 평가자료 구비 철저

부 칙

1. 이 시행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결 원(학부/대학원)

학과		학년/차수		학번		이름	
----	--	-------	--	----	--	----	--

<학칙시행세칙>

1. 가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사망 (5일 이내)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망확인서)
2. 병역법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한 소요기간 (해당 확인서 및 공문 제출)
3. 본인의 중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이와 동등한 질병 (2주 이내) (입원확인서 제출)
4.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회의나 행사에 참가한 해당 시간 (공문 일주전 제출)
5. 교육실습, 학과 학술 답사여행 등으로 인한 소요기간 (기안 (학과장협조) 일주전 제출)
6. 기타 총장이 허락한 행사 등의 참석으로 인한 소요기간 (기안 일주전 제출)
7. 배우자의 출산 (3일 이내)
8. 총회 및 노회고시 응시 (해당일) (응시 관련 서류 제출)
9. 교육부의 취업률로 인정된 취업의 경우 (취업 10일 전 제출)

※ 사후 1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미제출시 출석인정 안됨)
 ※ 단체공결시 단체명단 첨부합니다. (명단파일송부)

☐ 공결사유(구체적으로)

☐ 공결기간

☐ 공결처리과목

요일	시간	과목	과목담당 교수확인	비고
			담당교수확인 (인)	
			담당교수확인 (인)	
			담당교수확인 (인)	
			담당교수확인 (인)	
			담당교수확인 (인)	
			담당교수확인 (인)	
			담당교수확인 (인)	

20 년 월 일

※학칙시행세칙에 의거 교학처장 직인 확인후 위 과목을 출석인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신대학교 교무처장(인)



[별지 제2호 서식]

취업허가신청서

신청인	학 과		학 번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전화	집 :
	주 소		번호	H·P :
취업 업체명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명		근무부서	
	근무 예정일		전화번호	

위와 같이 취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학 과 장

신청인

본 인 (인)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귀하

☐ 취업 학생 증빙서류

대상	자격요건	증빙서류	비고
재직자	전일제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갑과을의 날인이 된 것)	
1인 창(사)업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 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현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신고서(월별신고세액이 나오는 경우 당해연도 월별신고서)	

상기 학생의 취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담 당	교무처장

[별지 제3호 서식]

취 업 확 인 서			
학 과		학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집) (HP)
상기 학생의 취업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직 종 : 주 소 : 근무부서명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명 : (직인) 서 울 장 신 대 학 교 총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학 과 명:

학 번:

성 명:

상기 본인은 학기 중 취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정기고사에 필히 응시한다.
2. 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하는 과제물은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3. 취업한 직장에서 퇴사했을시는 곧바로 강의에 출석한다.
4. 타직장으로 재취업시는 처음과 동일한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다.
5. 취업중 학생의 도리를 다하고, 모교의 명예를 빛내며, 만약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
6. 위 1,2,3,4항을 위반하였거나 학점 미취득으로 졸업 연기시에는 취업허가 취소 등 학교의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한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귀하

✚ 경인지역대학(교)학점 교류 시행규정

- 제1조 (목적) 경인지역 대학간의 학부학생 교류 및 학점을 상호인정 함으로써 대학간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학점교류 참여대학) 경인지역 대학 학부학점 교류에 참여하는 대학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6]
- 제3조 (실시구분) 정규학기 및 동·하계 계절학기로 한다.
- 제4조 (실시시기 및 지원자 신청) ① 계절학기 : 200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대학별 자체 일정에 따라 별도 실시한다. 단, 受·與·共히 본교에 계절학기를 개설할때 학점교류를 인정하고, 매학기 교내신청학점수와 별개로 신청한다.
- ② 정규학기 : 매 학기 사전 수강신청기간에 실시하고, 매학기 교내신청학점수와 교류대학 신청 학점수를 포함하여 18-22학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단, 4학년의 경우 매학기 교내 신청학점수와 교류대학신청학점수를 포함하여 1학기에 신학과, 사회복지학은 10학점 이상을 교회음악과는 6학점 이상을 2학기에는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교회음악과 6학점 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 (학점교류, 이수범위) ①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 과목으로 한다.
- ②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의·치·한·약학 계열과 예·체능 계열은 동일계열에 한 한다.
- ④ 야간학부(과)학생은 야간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에 한 한다.
- 제6조 (지원자격)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은 1학년이상 수료한 학생으로서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제7조 (추천 및 결정)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소속대학(교)의 총장이 교류대학(교)의 총장에게 추천하면 교류대학(교)의 자체심사를 거쳐 교류대학(교) 총장이 학점교류 학생으로 결정한다.
- 제8조 (수강 및 의무) 학점교류 학생은 당해 학기에 소속대학에 등록하여야 하고, 교류 기간에 드는 비용 일체는 본인이 부담하며,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절학기는 교류대학에 본인이 직접 납부한다. 다만, 경인지역 대학(교) 학점교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제9조 (취득학점 인정) ① 학점교류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교육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적부에 기록한다.
- ②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교양과목으로만 인정받는다. 단, 반드시 학과장 책임하에 관련 담당교수와 협의, 심의 한다.
- ③ 본교에서 취득한 과목 또는 해당 학기(계절학기) 본교에 이미 개설된 과목이 교류대학의 이수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 제10조 (수강료) 정규학기는 교류대학 학점당 등록금으로, 최종서류와 함께 본대학에 납부해야 하고, 계절학기는 수강하고자 하는 교류대학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6]
- 제11조 (지원절차) <삭제> [개정 2012. 11. 26]
- 제12조 (협약서 준용) 이 내규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경인지역대학(교) 학부학점교류 협약서에 의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 해외대학(교)학점 교류 및 해외연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 2013.02.01

- 제1조 (목적) 해외대학과의 학부학생 교류 및 학점을 상호인정 함으로서 대학간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학점교류 대학) 우리대학과 MOU체결을 맺은 대학으로 한다.
- 제3조 (실시학기) 정규학기 및 동.하계 계절학기로 한다.
- 제4조 (실시 시기와 지원자 신청 및 어학) (개정2018.9.5)
- ① 정규학기: 본교 학기 개시 3개월 이전에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이 공동으로 공개선발하며 선발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본교 재학생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선발된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육혁신처에 제출한다. (개정2018.9.5)
 1. 교환학생 수학 신청서 1부
 2. 학과장 추천서 1부
 3. 성적 증명서 1부
 4. 재학증명서 1부
 5. 기타 필요한 서류
 - ② 교류대학과의 학점교류기한은 최대 1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2018.9.5)
 - ③ 계절학기는 해당 대학별 자체 일정에 따라 별도 실시하고 필요한 서류는 정규학과 동일하다. (신설2018.9.5)
 - ④ 어학: 교류대학의 언어 테스트를 거쳐 선발한다. (신설2018.9.5)
- 제5조 (학점교류, 이수범위) ① 학기중 또는 방학중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과목으로 한다.
- ② 국내 학점교류를 포함하여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방학중 개설되는 과목은 6학점 까지만 인정한다.
- 제6조 (지원자격) 해외대학 학점교류 신청은 학칙에 의해 정계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제7조 (수강 및 의무) (개정2018.9.5)
- ① 학점 교류 학생은 당해 학기에 소속대학에 등록하여야 하고 해당 등록금은 교환 대학에게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타 수강료 및 교류 기간에 드는 비용 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 ②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 (취득학점 인정) ① 학점교류학생이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교육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적부에 기록한다.
- ②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류 대학이 발급한 교과목 이수 증명서 등을 교육혁신처에 제출할 시 소속대학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본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소속 대학의 학과장이 소속 대학 교과과정 표에 상응하는 유사 과목으로서 지정하는 경우 대체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이수학점은 성적의 등급 대신 P(급제)로 처리하며 졸업에 필요한 취득 총점에는 가산하되 전체 평점 평균 환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계절학기 이수학점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2018.9.5)
- 제9조 (해외연수) ① 해외연수기관은 우리대학과 MOU체결을 맺은 대학 및 기관으로 한다.
- ② 어학연수 등 해외연수학점은 60시간 이상 이수시 교육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 2학점으로 인정한다.
- ③ 어학연수는 졸업시까지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 제10조 (기타) 이 내규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이 제정내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은 201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 편입생의 학점관리 사항

1. 학점인정과 취득해야 할 학점 (개정2015.3.5.,2017.6.7)

학 년	학점인정	취득해야할 학점	졸업학점
3학년 편입	60	60	120

2. 학과별로 구성되어 있는 별표2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3. 전적학교 이수과목 중 우리학교 교과과정과 일치, 유사과목은 선별하여 인정한다. 단 학과의 확인을 거쳐 교육혁신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편입학년 이상의 (3, 4학년) 모든 필수과목은 전적 학교에서 이수하였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이수 하여야 한다.
5. 경건회에 반드시 합격하여야 한다.
6. 신학과로 편입할 경우 본교 학부 신학과 재학생으로서 자퇴하여 추후 재입학하거나 편입할 경우 편입생 필수과목 중 이전에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 부모(교수)-자녀(학생)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모(교수)-자녀(학생)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 및 학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수강지도 및 사전안내) ① 수강신청 전에 수강신청 학생의 부모(교수)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관련 내용은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택 및 교양 교과목은 부모(교수)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필수 교과목도 부모(교수)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 (사전신고제)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 해당교수는 교육혁신처에 해당 사실을 사전에 [별첨1 부모(교수)-자녀(학생)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서]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 (성적 평가 및 관련 자료 보존) ① (성적평가) 해당 교수는 사전신고 후, 최종 성적 부여 시에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성적의 공정여부를 [별첨2 학과장의 부모(교수)-자녀(학생) 간 성적 부여 공정성 검토확인서]에 의거 확인한 후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적 평가 관련 자료 보존) 시험 및 성적관리와 관련된 자료는 최소한 5년 이상 보존한다.
- 제5조 (위반 시 제재조치) 교수 자녀가 해당 교수 본인의 강의를 수강한 경우, 미신고 및 성적산출 근거자료 미제출 등 사항 각종 위반 시 확인서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에 의거 제재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1. 이 제정규정은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첨 1]

부모(교수)-자녀(학생)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서

구분		내용		비고	
해당년도/해당학기					
자녀(학생)	인 적 사 항	이름			
		생년월일			
		소속학과/학년			
		학번			
부모(교수)	인 적 사 항	이름			
		소속학과			
		직급			
자녀(학생)의 부모(교수) 교과목 수강신청 여부		해당(), 해당 없음 ()			
해당 시	교과목의 구분 (v 표시)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과목명				
	교과목 개설학과				
	교과목 학년/학기				

해당학기 시작 전에 위 내용(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학생(자녀) (인)

교수(부모) (인)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귀하



✦ 원격수업 운영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실시간 원격수업”은 화상강의가 가능한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교수·학습 활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2. “비실시간 원격수업”은 교수자가 제작한 강의 콘텐츠를 본 대학교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탑재 후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말한다.
 3. “재난대응 원격수업”이란 전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총장이 정책적으로 학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 ②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수단(수업자료의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3조 (교과목 분류와 개설기준) ① <삭제>
- ② <삭제>
- ③ 학기당 전체 15주 대면수업 중 20% 이내(약 1 ~ 3주 정도)에서 공휴일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휴강하는 경우 원격수업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01.23.>
 - ④ 원격수업 교과목 및 그 방식은 학과 및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위원회에서 정하며, 단 정원의 입학 외국인 학생의 원격수업 교과목 및 그 방식에 대해서는 대외협력처에서 정한다.
 - ⑤ 감염병 및 국가재난상황 등의 특수한 경우 대면수업을 재난대응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 전환 및 수업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제4조 (교과목 관리 및 운영) ① 원격수업과 관련한 교과목의 개설 및 성적평가, 학사운영 등의 관리는 교육혁신처에서 주관하며, 단 정원의 입학 외국인 학생은 대외협력처에서 주관한다. 기타사항은 본교 학사 관련 규정 혹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② 이 외에 원격수업의 실제적인 운영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른다.
- 제5조 (이수기준, 이수가능학점) ①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한 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② 원격수업으로 이수가능한 학점은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한다.
- 제6조 (평가관리,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기준) ① 원격수업의 평가관리를 위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온라인 또는 출석시험으로 진행하거나 과제물, 퀴즈,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원격수업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가 원칙이나 위원회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 ③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은 모두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7조 (출결관리, 폐강 및 분반기준) ① 원격수업의 출석인정 및 결석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원격수업의 출석인정기준, 결석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원격수업의 폐강기준은 서울장신대학교 수업관리내규 제11조(폐강과목)을 준용한다.
- ④ 원격수업의 분반기준은 서울장신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6조의 5(분반)을 준용한다. 다만, 정원의 입학 외국인 학생에 관련한 분반 기준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 (수업시간) 원격수업 콘텐츠 진행시간은 최소 25분(1학점 기준)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제9조 (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원격수업 관련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은 교수학습개발센터가 담당한다.
- 제10조 (외부 콘텐츠 사용 및 인정기준) 다른 대학 제작 영상 및 타 플랫폼 탑재 영상 등은 원격수업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 (강의평가) ① 교수강의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장신대학교 강의평가기준을 준용한다.
 ② 강의평가는 학기당 2회 이상(중간강의평가, 기말강의평가) 실시하고 강의평가결과는 학교 인트라넷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원의 입학 외국인 학생의 강의평가는 대외협력처에서 주관한다.
- 제12조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한다.
 1. 원격교육 계획과 기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
 2. 원격교육 강좌 품질 관리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③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처장이 되며 위원은, 전략기획처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대외협력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 대학교 교원, 직원, 학생대표 혹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혹은 2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고 재적위원 2분의 1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 (시설 및 설비)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서버·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갖춘다.
- 제14조 (학칙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재입학 시행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1조와 학칙시행세칙 제37조에 따른 재입학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대상 및 자격) ① 학칙에 의하여 자퇴 또는 제적되었을 경우 재입학할 수 있다.
② 각종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제3조 ① 최근 2개년도 신입생 미충원 인원 + 3~4학년 제적(자퇴)자(4월 1일/10월 1일 기준) - (전과전입자 + 전년도 또는 해당년도 편입학자) + 전과전출자 = 학과별 재입학 여석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2(재입학)에 의거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정원 내외 구분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 제4조 (시기 및 절차) ① 재입학 신청시기는 해당학기의 등록 전학기로 한다.
② 재입학은 매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원서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입학은 재입학심의위원회의를 거쳐 학과 여석수 만큼 재입학 대상자를 선발한다.
- 제5조 (등록) 재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재입학금과 해당학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 (학점의 이수 및 인정) 재입학 시 이수한 학기와 학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 제7조 (수강신청) 재입학을 허락받은 사람은 등록 후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이중전공 시행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8조의 3에 따른 이중전공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중전공”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등)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중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자격 및 신청) ① 이중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1학년 1학기 말부터 2학년 말까지 소정의 기간에 이중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편입생은 우리대학교에서 1개 학기 이수 후 이중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 각종 징계를 받은 자는 이중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 제4조 (허용범위와 선발기준 및 전형방법) ① 학생은 모든 학과(부)를 이중전공으로 이수를 할 수 있다.
 ② 이중전공 신청자는 소정의 선발전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이중전공 신청자의 선발전형은 지원자 중에서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하고 선발기준에 관하여 학과(부)별 내규를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④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과에서 별도의 시험(오디션)을 부과할 수 있고 학과 시험(오디션)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결시한 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고 학과 시험(오디션) 일정과 진행방식은 학과에서 결정한다.
- 제5조 (정원) 학과의 이중전공 정원은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학과 입학정원의 130~150% 이내에서 학과 (부)의 수용력에 따라 이중전공 학생제한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 (등록) 실용음악과의 이중전공 신청 시 전공실기(렛슨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 (학점의 이수 및 인정) ① 이중전공학생은 이중전공 학과(부)의 교과과정표에서 정한 전공과목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목회실천학부 신학과와 목회사역학과 및 복지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는 전공과목 최소학점을 4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학과와 예술학부 실용음악과는 전공과목 최소학점을 51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이중전공학생이 이중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이중전공 해당 과목은 이중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8조 (이수포기) ① 이중전공 허가를 받은 학생이 그 이중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중전공 포기 신청기간은 매 학기 수강철회 기간으로 한다.
 ③ 이중전공을 취소한 자는 이미 이수한 이중전공과목을 주전공의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9조 (졸업의 사정 및 시기) ① 졸업사정위원회는 이중전공 이수자의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1전공 대학(학부)에 통보한다.
 ② 이중전공학생은 제1전공 및 이중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전까지는 졸업을 할 수 없다.
- 제10조 (학위수여) 이중전공 학생이 제1전공 및 이중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 제11조 (증명서) 이중전공의 이수에 대해서는 졸업증명서에 제1전공 및 제2전공을 함께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학과명	이중전공 필수이수 과목			
신 학 과	과목명			
	신학 튜토리얼	성서의 역사적 배경	구약개론	기독교 역사와 사상
	신약개론	기독교교육개론	조직신학개론	예배학기초
	선교학	신약신학		
	신학과 이중 전공생은 개편 교과과정의 전공필수를 포함한 다음의 과목(윗 표) 중 총 7개 이상의 과목(21학점) 을 수강하면 이중전공 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인정함			
사회복지학과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개론(10개 과목, 30학점)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할 때는 학년별 단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상담심리학과	매체인형치료, 심리학개론, 관계맺기와인간이해, 이상심리학, 가족상담, 기독교 상담,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상담현장실습(9개 과목, 27학점)			
실용음악학과	양상블 3-8, 위클리3-8, 전공실기3-8, 졸업작품워크숍1-2(20과목, 48학점)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단, 2024학년도부터 이중전공을 실시할 때 시행 대상을 기본적으로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함(교과과정위원회회의 결의에 의함, 2023. 10. 27.)

2. 이 규정은 202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24 2025

서울장신대학교 요람

Seoul Jangsin University

Ⅲ 대학 교과과정

- 교과과정안내
- 교양학과 교과과정
- 신학과(목회사역전공) 교과과정
- 신학과(미디어·영상·무대예술전공) 교과과정
- 신학과(예배찬양사역전공) 교과과정
-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
- 교회음악과 교과과정
- 교회음악과실기교사 자격취득 안내
- 실용음악과 교과과정



+ 교과과정 안내

1. 교과과정의 구성

교과과정은 일반교양과정(교양필수과목, 교양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과, 전공과정(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2. 교과과정의 이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20학점(학칙 제32조)이며, 학과별 교과과정에 의한 최저 이수학점은 학과별 교양필수 및 전공의 교과과정에 의한다. (개정2017.6.7)

3. 교과과정 해설

가. 일반교양과정

(1) 교양필수, 교양선택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양을 습득시키고 전인적인 품성을 기르기 위해, 전공분야에 앞선 입문과목으로서 교양필수와 교양선택 과정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교양필수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선택은 개설과목 중 선별하여 이수할 수 있다.

(2) 일반선택과정

교양필수나 교양선택처럼 별도로 개설되는 교과과정이 아니라 타학과의 교양 또는 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 그 과목의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993학년도 입학생 까지는 일반선택의 취득학점을 교양선택으로 인정한다.)

나. 전공과정

전공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되고, 각 학과별로 지정되는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선택과목은 개설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선별하여 요구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과정에서 전공필수, 선택을 포함하여 필히 신학과 60학점 이상, 교회음악과 60학점 이상 사회복지학과 6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2017.6.7)

4. 교과과정 운영 지침

- (1) 교과과정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2) 교과과정은 신입생 및 재학생(복학생 포함)함께 적용한다.
- (3) 교과과정별 교양필수 이수시 졸업가능(입학기준)
- (4)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신학과 60학점 이상, 교회음악과 60학점 이상 사회복지학과 6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2017.6.7.)
- (5) 미취득한 필수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 대체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단, 대체과목이 없을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 교양학과 교과과정

구분		1학기			2학기	
핵심역량 (인재상)	세부역량	과목명	학점-강의- 실습	세부역량	과목명	학점-강의- 실습
탐구	자기이해	애니어그램초급과정	3-3-0	자기이해	성경이란무엇인가	3-3-0
		마음과심리적인간이해(합)	3-3-0		청년기갈등과자기이해(합)	3-3-0
	자기개발	논리적말하기와자기표현	3-3-0	자기개발	대학생의글쓰기(변경)	3-3-0
		체질과자연치유	3-3-0		인체와근육건강	3-3-0
	진로개발	진로와소명	3-3-0	진로개발	*취업의길을묻다(P/P)(필수)	2-2-0
		신학이란무엇인가	3-3-0		*창업의길을묻다(P/NP) (필수)(30명 제한)	2-2-0
		*진로탐색(P/NP)(필수)	2-2-0			
	자기관리	성서와삶(합)	3-3-0	자기관리	행복한인격이란무엇인가	3-3-0
		대학체육1	3-3-0		예술치료(합)	3-3-0
	전문성	문제해결	물질,성경적경제원리	3-3-0	문제해결	마인드풀니스
매체인형치료(합)			3-3-0	자연건강과푸드테라피		3-3-0
창의		미디어크리에이터(P/NP) (15명 제한)	3-3-0	창의	유튜브크리에이터(P/NP) (15명 제한)	3-3-0
		기독교와예술(합)	3-3-0		대중음악사2(합)	3-3-0
융합		신앙의눈으로본과학	3-3-0	융합	음악의이해와감상(합)	3-3-0
		신앙의눈으로본문학	3-3-0		베이직철학(합)	3-3-0
		신앙의눈으로본정치경제학	3-3-0		기독교와예술2(합)	3-3-0
디지털		전산실무(워드프로세스) (P/NP)	3-3-0	디지털	영성세계와가상세계: 메타버스	3-3-0
		언택트시대의문화와직업과 신앙	3-3-0			
힘써 어 주 기		공감	애착과상담(합)	3-3-0	공감	애니어그램중급과정
	죽음과상실에대한이해 (30명 제한)		3-3-0	사랑은어떻게변하는가		3-3-0
				관계맺기와인간의이해(합)		3-3-0
	협동	합창1(합)	2-2-0	협동	합창2(합)	2-2-0
	소통	가족체계와의사소통	3-3-0	소통	기독교와21세기이슈들	3-3-0
		커뮤니케이션선과상담(합)	3-3-0			
	배려	사회복지의이해	3-3-0	배려	메타인지와기독교교육	3-3-0
		교육학개론	3-3-0			



구분		1학기			2학기	
핵심역량 (인재상)	세부역량	과목명	학점-강의- 실습	세부역량	과목명	학점-강의- 실습
헌신	책임	*채플1·3·5·7(필수)	0-0-1	책임	*채플2·4·6·8(필수)	0-0-1
		*교회봉사1·3·5·7(필수)	0-0-1		*교회봉사2·4·6·8(필수)	0-0-1
	글로벌	신화와예술이야기	3-3-0	글로벌	미래사회와미래지도력	3-3-0
		영어1	3-3-0		영어2	3-3-0
	시민의식	한국교회와이단	3-3-0	시민의식	고용복지서비스정책	3-3-0
		*사회봉사1(P/NP)(필수)	2-0-3		*사회봉사2(P/NP)(필수)	2-0-3
	리더십	뮤직비즈니스(합)	3-3-0	리더십	찬양인도의실제	3-3-0
		레크리에이션의이론과실제	3-3-0		멀티제너레이션리더십	3-3-0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상담이론및실제(합)	3-3-0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상담(합)	3-3-0
	무대 전문인	무대음향(3)(합)	3-3-0	무대 전문인	무대음향실무(합)	3-3-0
		무대예술(합)	3-3-0		무대기술실무(합)	3-3-0
	건강 가정사	가족과젠더	3-3-0	건강 가정사	여성과사회	3-3-0

* (합)은 합강으로서 각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시 개설함

※ [2024학년부터 교양필수 해당사항]

① 사회봉사1 필수이수

② 1학기 '진로탐색', 2학기 '취업의길을묻다', '창업의길을묻다' 중 2개를 필수이수

즉, ① + ②로서 교양필수가 총 3개

[2017 ~ 2023학번]

① 사회봉사1 필수이수

② 1학기 '진로탐색', 2학기 '취창업의길을묻다(24학년도 폐강)', '취업의길을묻다', '창업의길을묻다' 중 1개를 필수이수

즉, ① + ②로 교양필수가 총 2개

[2016학번]

① 사회봉사1을 필수이수

[2014 ~ 2015학번]

각 학과별로 요구하는 교양학점(신학과 30학점, 사회복지학과 30학점, 교회음악과 20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양의 <상담이론및실제>는 자격증 취득과목으로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신학과, 목회사역학과, 교음과, 실용음악과는 **전공선택**으로 선택 가능합니다(전공선택으로 해야 청소년상담사3급 자격시험응시가능)

※신학과, 목회사역학과, 교음과, 실음과 학생이 청소년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따려면 상담이론및실제, 학습이론, 청소년상담, 심리측정및평가 등 4개의 과목을 재학기간 동안 이수해야 하고, 4개 과목이 전공선택으로 표기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됩니다.



+ 교양학과 교과목 설명

◆ 가족과젠더 (Family and Gender)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문제는 젠더의 이슈와 분리할 수 없기에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하여 가족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고찰함으로써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하게 기대되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확립하고 양성평등적 사회를 지향하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족체계와 의사소통 (Communication Skills Within Family System)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좌절과 상처 및 불행을 겪는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회변화와 맞물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환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간에 발생하는 긴장과 불화, 폭력, 분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역기능적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원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와 행동문제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현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관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 감성과표현 (Expression of Emotion)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일꾼의 사명을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기도글을 쓰며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체험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지도한다.

◆ 고대이집트문명 (Ancient Egyptian Civilization)

고대이집트문명은 인류문화 발전의 기원이었던 세계 4대 고대문명 중 하나로서 서구문화의 토대가 된 그리스 문명과 히브리, 기독교 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고대 이집트 문명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역사적, 종교적 배경, 피라미드와 �핑크스 등 고고학 유적, 신화와 종교 등 이집트 문명의 다양한 모습들을 고찰한다.

◆ 공동체리더십훈련 (Group Leadership Training)

리더십과 공동체의 두가지 키워드로 기독교 사역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삶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목이다. 이를 위한 리더십 이론과 공동체론을 배우며 적절한 훈련과 개발에 대해서 공부한다.

◆ 교육고전읽기 (Reading Educational Classics)

이 과목을 이수하면 동서양의 교육 고전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학생 상호간의 상호 소통 기술을 익히며 자신의 내면적 소양을 증진하여 미래의 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통찰하게 한다.

◆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Pedagogy)

교육학의 기본적인 이론이나 원리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교육의 실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 역할을 가진다. 그 주요 내용은 본질적, 목적론, 방법론으로 조직되어 있다.

◆ 교회를위한사운드디자인기초 (Introduction to sound-design for church)

멀티미디어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사역 및 선교 현장 등에서 컴퓨터 및 영상, 음향 등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은 매우 활용도가 높으며 유용하다. 컴퓨터와 디지털 사운드의 이해, 녹음 기술과 EQ, Compressor, Reverb, Delay 등 디지털 이펙트의 관계 및 이를 통한 사운드 콘솔(믹서) 활용법, 큐베이스를 활용한 영상 사운드 편집과 실용적인 멀티미디어 활용 방안을 연구한다.

◆ 기독교문화와세계관 (Christian Culture and Worldview)

다양한 세계관이 판을 뒤섞여 있는 세계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시각의 차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복음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본 수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모색을 통해 건설한 기독교 세계관을 지닌 사회공헌형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독교와위십 (Christian Worship)

누구나 쉽게 교회 안에서 무용이라는 예술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조명하고, 기독교와 무용의 관계를 성서와 신학적 이론으로 접목한다. 앞으로의 기독교 무용이 추구해야 할 가치관과 교회에서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토의하여 올바른 기독교 무용 예술의 정착을 돕는다.

◆ 기독교와자연과학 (Christianity and Natural Science)

과학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참된 기독교신앙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학과 믿음은 충돌하는 것인가, 아니면 동반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과학과 기독교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세계라는 대전제의 이해를 위해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본 수업을 통해서 창조론, 진화론 등 다양한 주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기초독일어 (Deutsch für Anfänger)

독일어의 기초적인 회화와 문법을 익히고 발음과 액센트에 관한 기초를 쌓는 것이 목표이다. 독일유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바람직하고, 성악과 학생들에게는 디션을 심화하는 과정으로 유익한 과정이다.

◆ 돈이란무엇인가 (Value of Money)

본 수업은 “돈”에 대해 관찰하는 시각을 키움으로써 “돈”과 경제라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기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경제관 설정과 경제 관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어떻게 삶을 구성해 나갈지를 고민해보는 수업이다.

◆ 만남과영성 (Spirit and Prayer)

하나님과 자기자신, 이웃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체험을 통해 가정,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학습한다. 성경말씀과 영성 서적을 읽고 자신을 성찰하는 영성일기와 기도글을 작성하고 이를 나눔으로써 영적 성장을 이룩한다.

◆ 미디어의이해 (Understanding of Media)

미디어의 종류, 역사 그리고 내용을 공부하고 각 미디어의 활용을 연습한다. 이를 통하여 뉴미디어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양인을 양성하고 미디어의 활용도를 높여 전공과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미래사회와문명 (Society and Culture in the Future)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미래문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미래에는 변할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어떻게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읽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을까? 본 수업은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 미술치료 (Art Therapy)

미술치료란 창작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킴으로 원만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 방법이다. 심리치료의 다양한 방법 중 전문적이고 실용적 상담기법의 하나인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재를 익힘으로써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한다.

◆ 바이블잉글리시 (Bible English)

본 강좌의 목적은 영문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회화를 중심으로 학습함으로써 영어성경을 재미있고 친숙하게 접근토록하며, 수강자들의 신앙과 성경지식, 영어 학습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이다.

◆ 부모되기교육 (Understanding Parenthood)

부모교육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모교육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이해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교회, 가정에서의 부모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안목과 적용능력을 갖추게 한다.

◆ 북한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North Korean Society)

본 강좌의 목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북한 사회에 대한 수강자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본 강좌에서는 주 교재를 중심으로 영화와 비디오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 북한의종교 (Religions in North Korea)

본 강좌의 목적은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 실태, 주민들의 종교생활, 남북 간 종교 교류 등 북한의 종교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특히 북한 기독교의 역사와 실태, 한국 교회의 대북 교류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 복음과문화 (Gospel and Church)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다루고 그 가운데 위치한 교회가 복음과 문화 양자 사이에서 복음적 정체성을 갖고 문화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 비교종교학 (Comparative Science of Religions)

우리의 신앙체계와 다른 종교의 신앙체계에 대한 비교의 시각을 제공한다. 이슬람, 불교, 힌두교와 같은 여러 종교들 뿐 아니라 한국혼합종교 및 통일교와 같은 이단종교에 대한 개괄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이단과 혼합 종교의 도전 속에서 비교종교적 시각을 통해 종교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둔다.

◆ 빅히스토리의세계 (Big History and World)

빅히스토리는 인문학과 과학의 역사를 통합적이며 통섭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서, 세계 역사를 인문학과 과학 그리고 기술 등의 관점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인문학적 역사와 과학적 역사 뿐만 아니라 종교사도 연구하여 빅히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문제점도 보완한다.

◆ 사고와표현 (Thinking and Expression)

본 수업의 목적은 책을 읽고 이를 동료들과 토론하고 그 결과를 글쓰기를 통해 표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수업에서는 우선 짧은 글 읽기와 짧은 글 쓰기를 연습해 보다 길고 복잡하며 전문적인 글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봉사 (Social Service)

지역과 세계를 섬기는 밀알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봉사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활동을 통한 경험을 배양함으로써 섬김의 리더십을 체득화한 밀알인재를 양성하는데 과목의 목적이 있다.

◆ 사회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

사회학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정립하기 위하여 사회학의 개념,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하여 사회학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와 연구영역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본 강좌를 통하여 현대사회의 현상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상담이론 (Counseling Theory)

본 수업의 목표는 첫째, 상담의 기본 이론들을 익히고 이해하고, 둘째 상담의 기본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심리 및 성격 이해에 적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본 수업은 청소년 상담사 국가자격증 시험 필수 과목이므로 졸업 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신학과, 교회음악과 학생은 전선으로 선택할 것을 권유함.

◆ 생활속의자연치유 (Everyday's Natural Therapy)

자연치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이며 가장 자연적인 것이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도하고 또는 선교지에서 아무런 도구 없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될텐데, 생활 속의 자연치유 수업을 통하여 우리가 자연치유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적용해 보아 삶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보자.

◆ 서양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Western Literature)

서양문학의 흐름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더불어 선별된 문학작품과 영화 등을 읽고 감상하면서 (현대)서양문학을 올바로 이해하고 즐기며 다양한 문화구조의 작동과정에서 문학의 기능을 이해하는 경험을 목적으로 한다.

◆ 서양음악의이해 (Western Music A to Z)

이 과목은 음악사와는 달리 서양음악의 배경이 되는 시대정신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 사회의 흐름 속에서 영향을주고받는 음악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한 음악사에서 다루지 않는 주변국가의 종교와 문화가 서양음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이 수업의 목표이다.



◆ 선교영어 (English for Mission)

본 과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바탕위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확립시키며, 타 문화권 선교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소양과, 국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목적을 둔다.

◆ 성경과고대제국 (Bible and Ancient Empires)

본 과목은 성서의 내용과 역사 이해를 돕고자 고대 근동 지역의 주요 제국들을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고대 제국들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성서속의 역사적 사건들을 좀 더 큰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성경통독 (Reading the Bible)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먼저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성경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시대의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공부한다. 또한,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과 인격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토론을 통해 학습한다.

◆ 세계화시대의국제관계 (International Relationship)

본 강좌에서는 세계화시대 지구촌의 아젠다와 국제관계를 정치, 경제, 남북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한다.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되, 영화와 동영상 자료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21세기 변화하고 있는 국제관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스포츠마사지 (Sports Massage)

본 과목은 인체의 근육과 피부 및 장부에 직접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과 임파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경기능의 향진과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어 신체의 변조를 정리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학습한다.

◆ 시민교양이란무엇인가 (What is Civil Culture)

시민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개념과 용어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기독교인이 갖는 의미, 그리고 갖추어야할 상식과 교양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 신화와예술이야기 (Myth and Art)

이 강좌는 각 문화권마다 있는 신화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 창조, 영웅, 심판 등등 - 이를 살펴보고, 이런 신화가 문학과 예술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신화를 연구하는 방법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본 것이다.

◆ 실천 (Praxis)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교회나 봉사단체에서 실천토록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건강한 기독교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봉사정신을 함양한다.

◆ 심리측정과평가 (Psychometrics and Evaluation)

본 수업은 심리측정도구로서의 몇 가지 기본적인 심리검사의 원리 및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심리검사의 신

뢰도 및 타당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평가 및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 CCM과 대중음악의 역사 (History of CCM and Folk Music)

본 수업은 ccm과 대중음악의 역사를 살펴보고 ccm과 대중음악을 비교한다. 수업에서는 이 둘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구분 지을 수 있는지를 직접 음악을 들으면서 비교 해보고자 한다.

◆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Beauty)

아름다움을 어떻게 설명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본 수업은 수강생으로 하여금 전인적 교양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길을 제시하는 교양수업이다.

◆ 애니메이션의 이해 (Understanding of Animation)

이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애니메이션의 정의와 형태를 알게 한다. 2. 애니메이션의 감상을 통해 현대 애니메이션의 형태와 조류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한다. 3.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한다. 이 수업을 마치면 예술가는 아니어도 작은 애니메이터의 정신을 가지게 된다.

◆ 에니어그램과 묵상 (Enneagram and Meditation)

묵상의 방향성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묵상의 방법을 알고 올바른 기도를 삶 전체에 익혀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로 한다.

◆ 에니어그램과 치유 (Enneagram and Healing)

인간의 9가지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형성된 거짓 자아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아에 도달하는 길을 도모한다.

◆ 에니어그램 초급 (Basic Enneagram)

본 수업은 에니어그램을 상담치유학으로 접근한 에니어그램심리역동체계(Enneagram Psycho logical Dynamic System)를 배우고 익힘으로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자신과 타인의 성격역동을 이해하고 상담치유적 적용을 실습하는 과정이다.

◆ 여성과 사회 (Women and Society)

그리스도인으로 가정·교회·사회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도록 지도한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천하는 관계와 영성을 훈련하도록 지도한다.

◆ 영어 (English Language)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 읽기와 쓰기를 통해 전반적인 영어 이해와 사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실용적 목적을 기본으로 하되 교양과 학문을 위한 영어의 소개도 병행한다.

◆ 영화로 보는 독일 문화 (German Culture in Movies)

종교개혁 500주년과 더불어 독일 문화를 영화를 통해서 쉽고 친근하게 알아본다. 영화 안에 담겨진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



해서 토론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위한 고민거리를 나누며 균형있고 폭넓은 지성적인 세계관에 대해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영화와심리치료 (Movies and Cinema Therapy)

영화는 내 마음에 다가가는 접촉의 도구이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는다. 삶을 공유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예술의 마법과 인연으로 살아가게 한다. 이 수업은 인생 상담의 여정과도 같고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며 시네마 테라피이다.

◆ 예배와찬양 (Choir in Worship)

본교 화요채플의 찬양을 담당하며 교회력에 맞는 찬양 곡의 선택과, 또한 예배음악이 진정한 찬양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하고 해석하는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 본 수업의 목표이다.

◆ 21세기리더십 (Leadership in the 21st Century)

리더십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들과 목표 성취의 차원에서 유용한 실천적인 도구이다. 이 리더십의 21세기적 환경의 변화들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독교적 리더십 패러다임의 정립과 그 적용에 대한 이해가 본 과목의 목표이다. 리더십의 기초 이론과 적용을 접하되 기독교적 시각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상황화하는 리더십을 공부한다.

◆ 인간과상징 (Human and Symbols)

이 수업을 통해 1. 꿈의 중요성, 2. 꿈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신화적 세계를 탐구, 3. 꿈과 자아의 문제, 4. 꿈의 세계를 표현한 시각 예술, 5. 꿈의 사례를 분석하기 그리고 6. 꿈과 과학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 인간관계와의사소통 (Human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본 과목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사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성숙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습득 하여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인간관계는 신앙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미 있는 지침을 주게 되므로 인간관계의 훈련은 신앙인으로서의 훈련이기도하다.

◆ 인도네시아어 (Basic Indonesian)

3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2억 8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인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학습을 통해 향후 위의 나라의 본교 자매학교와의 교환학생으로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원하는 학생과, 견습선교사 및 장,단기 선교사로 헌신할 학생들의 언어 및 문화이해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한다.

◆ 인류학과스포츠 (Anthropology and Sports)

먼저 이 수업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하며, 또한 공허함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되었다. 인간(-자신)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제반의 학문 분야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왔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해 본다.

◆ 인성발달과상담 (Human Nature Development and Counseling)

인성의 개념과 발달 단계를 공부하고 이를 상담에 적용토록 하여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을 공동체에 편입시킬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공부한다. 인성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목이다.

◆ 인성계발과영성 (Enlightenment of Humanity and Spirituality)

인성을 계발할 수 있는 방안과 환경을 공부하며, 종교적 영성을 통하여 사회적 인성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부한다. 인성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목이다.

◆ 인성이해와성경 (Personality and Bible)

본 수업을 통하여 인성의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운동 내지 행동적 영역의 세 영역을 의식적 수준, 잠재의식적 수준, 그리고 무의식적 수준의 모든 수준의 균형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배운다.

◆ 자연건강과푸드테라피 (Wellbeing and Food Therapy)

본 교과목은 자연과 교감하는 5감(색, 향, 맛, 소리, 느낌)을 활용하여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자연 건강법을 학습하며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푸드테라피와 한방원리와 생활약초와 색채, 소리, 경락, 근육을 이용한 건강법을 학습한다.

◆ 전산실무 (워드프로세스)

학교 및 향후 직장에서 자주 다루는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고 자격시험에 대비한다.

◆ 정의란무엇인가 (What is Justice)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기독교적 정의가 무엇이고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보는 세상은 어떤 것이며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할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기독교의 정의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 인식하게 될 것이다.

◆ 종교와영성 (Religion and Spirituality)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우고 영성 생활을 훈련하여 세계를 품는 지도자가 되도록 지도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삶을 체험하고 이웃을 섬기도록 지도한다.

◆ 중국어회화 (Chinese Language)

본 강의는 기초적인 실용 중국어 회화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 중국어로 간단히 의사소통하고,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어 발음과 액센트에 관한 기초를 연습하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묘사한 중국어 표현들을 접하면서 좀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중국어에 다가가고자 한다.

◆ 진로탐색 (Exploring Career)

이 수업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과목이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1) 자신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특성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다양하고 역동적인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진로와 직업에 대한 건강한 직업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2)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고 개발하며 자신의 미래 지도를 그려볼 수 있다. (3) 심리검사와 활동을 통해 이해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다.



◆ 찬송가학 (Hymnology)

기도를 위한 기도거나 복음을 노래하는 대중적인 복음가, 혹은 전도용으로 쓰이는 곡들이나 예배가 아닌 종교적 집회를 겨냥한 노래가 아니라 순수 예배에 쓰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찬송가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예배학적, 음악적 배경을 이해하고 올바른 찬송가 선곡의 기준과 이에 따르는 반주법에 이르기 까지 전문적인 판단력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이다.

◆ 찬양인도의실제 (Practical Leading Worship)

예배현장에서 많이 요구되어지는 찬양에 대한 이해와 찬양구성 그리고 실제 인도를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을 통해 찬양인도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수업목표이다.

◆ 창업의길을문다 (Exploring Ways of Start-up)

이 수업은 '참된 실천인'이 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성경적, 경제적, 경영적 이론을 배우고, 실제 창업의 과정을 공부하는 과목이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 시대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창업의 과정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 채플 (Chapel)

매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묵상한다. 또한 채플을 통해 전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기독교적 공동체성을 공고히 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 청년기갈등과자기이해 (Identity crisis in adolescence)

청년기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청년기에 겪게 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역들에 대한 배움과 논의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자기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이론에 대한 강의 및 8가지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발제와 이에 대한 교수의 코멘트, 학우들의 적극적인 토론이 진행된다.

◆ 청소년상담 (Counseling for Youth)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 발달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청소년 상담 이론의 개념 습득을 토대로 사례와 문제들을 다루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과 상담에 적용함으로써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본 과목의 목표가 있다.

◆ 체질과자연치유 (Constitution and Natural Healing)

우리 인체는 체내의 이상을 스스로 정상으로 유지, 회복하려는 항상성(HOMEOSTASIS)인 자연치유력을 지니고 있다. 본 교과목은 성경적 원리로 다양한 자연치유 방법론을 통해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원리를 학습하며 개인의 기질적 특성인 형상 체질을 통해 자기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오감을 활용한 오감멀티 테라피인 자연치유법을 학습한다.

◆ 탈무드와기독교교육 (Talmud and Christian Education)

탈무드란 유대교의 구전율법인 미쉬나의 내용을 두고 랍비들이 벌인 토론 내용을 종합하여 편집한 것으로서 유대 민족의 신앙과 교육에 하나의 바탕이 되는 지적인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강의와 토론을 통해 탈무드의 개념을 정립

하고 그 내용을 조감하여, 탈무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향상을 목표로 한다.

◆ 치유의글쓰기 (Writing for Healing)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일꾼의 사명을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기도글을 쓰며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체험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지도한다. 기도글을 쓰며 바른 글을 쓰는 훈련을 하도록 지도한다.

◆ 토론과소통을위한명저읽기 (Reading Classics For Discussion and Communication)

명저 읽기를 통해 교양인, 전문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지적인 토론의 기술을 연마하여 현대사회에 맞는 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

◆ 한국수어기초 (Basic Korean Sign Language)

본 과목은 청각장애인과 수화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 학습이론 (Learning Theory)

기초적인 학습이론의 개요를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 행복한인격이란무엇인가 (What is the Happy Personality)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이타적 인성의 실종이다. 사실상 전 국민이 인성교육의 결핍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사는 것인가를 물어야한다.



✦ 신학부 신학과 교과과정

(2021학년도부터 ~ 2022년도까지 신학과 목회신학전공에 해당하고 2023학
년도 ~ 2024학년도 목회실천학부 신학과에 해당)

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1		전공필수				
		전공선택				
매년 개설	2	전공필수	구약개론	3-3-0	예배학기초	3-3-0
			기독교역사와사상	3-3-0		3-3-0
	전공선택	성서와삶(합)	3-3-0	3-3-0	이스라엘역사	3-3-0
			3-3-0	3-3-0	신약시대의역사적배경	3-3-0
		신약개론	3-3-0	3-3-0	교회와미래사회 (교회란무엇인가:이전 과목명 변경)	3-3-0
			모세프로젝트	3-3-0	3-3-0	베이지철학(합) (기독교철학: 이전 과목명 변경)
		복음과문화		3-3-0	3-3-0	교회학교설교
			복음서관람하기	3-3-0	3-3-0	
	3	전공필수	조직신학개론	3-3-0	기독교교육개론	3-3-0
	4	전공필수	선교학	3-3-0	신약신학(미개설)	3-3-0
격년 개설	3~4 학년	2024학년도 (짝수년) 전공선택	히브리어	4-4-0	성서와고고학	3-3-0
			기독교사상사	3-3-0	교회사인물연구	3-3-0
			복음주의와에큐메니즘	3-3-0	리더십과문화	3-3-0
			설교학기초	3-3-0	디아코니아학개론	3-3-0
			한국교회사	3-3-0	요한계시록	3-3-0
			교회학교운영의실제	3-3-0	헬라어	4-4-0
			청소년교육	3-3-0	전도와선교	3-3-0
			한국교회와이단	3-3-0	제자의삶과영성개발	3-3-0
			신학과현대세계	3-3-0	한국교회인물사	3-3-0
			성서지리	3-3-0		
			기독교인문학	3-3-0		
		2025학년도 전공선택	다원주의사회에서의복음	3-3-0	구약의문화와생활	3-3-0
			기독교유아아동교육	3-3-0	실천신학개론	3-3-0
			상담과기독교교육(신설)	3-3-0	교회교육프로그래밍	3-3-0
					기독교영성교육	3-3-0
					구약의영성	3-3-0
					영성고전읽기	3-3-0

* (합)은 합강으로서 교양학부와 동시 개설함

※ 2024학년도 목회실천학부 신학과 신입생은 1학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이 없지만 1학년 기간 동안 자유롭게 교양학부 과목을 수강하면서 앞으로의 학업계획에 대하여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함(수강추천: 교양학부의 '신학이란 무엇인가(류삼준 교수)' 등을 수강하면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이중전공을 희망하는 신학과 신입생은 '사회복지의이해(강성옥 교수)' 등을 수강하면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음. 또한 '마음과심리적인간이해(조영진 교수)', '매체인형치료(안명숙 교수)', '애착과상담(조영진 교수)', '커뮤니케이션과상담(홍정미 교수)' 등을 수강하여 상담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상담이론및실제(안명숙 교수)' 등을 수강하여 상담 및 심리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음. 그 외 목회사역학과의 '무대예술(박경배 교수)' 등을 수강하여 무대전문인 과정을 준비할 수도 있음)

※ 2024-1학기 '교회란무엇인가(이상은 교수)'는 '교회와미래사회'로, 2024-2학기 '기독교철학(합)(이상은 교수)'은 '베이지철학(합)'으로 교과목을 변경함

※ [주의 !!] 목회실천학부 신학과 목회신학전공 졸업요건 변경사항

가. 2023학번 이전 신학과 재학생은 이전 졸업요건(기초신학 및 목회신학1)을 대체하여 개편 교과과정의 전공필수를 포함한 다음의 과목(아래표) 중 **총 7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면 2024학년도부터 해당 과목의 폐강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인정함

나. 단, 수강신청 시 학년 및 학기에 유의해야 하며(신학과 교과과정표 참고) 필요에 따라 대체 과목을 인정할수 있음

다. 본 졸업요건은 2023학번 이전 신학과 의 예배찬양사역전공생, 초등대안교육전공생, 편입생, 복수전공생, 그리고 이 중전공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과목명(가나다순) (※괄호안은 대체과목임)			
구약개론	기독교교육개론(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학개론 (2024학년도 폐강)	기독교역사와사상 (교회사개관)
네러티브로읽는복음서 (2024학년도 폐강)	모세프로젝트	미디어의운용과기획 (2024학년도 폐강)	선교학 (선교학개론)
설교학기초 (예배와설교의기초)	신약개론	신약신학 (2024학년도 미개설)	예배학기초 (예배와설교의기초)
조직신학개론 (조직신학1)	하나님의선교 (2024학년도 폐강)		

※ 이전 신학과 졸업요건 중 기초신학과 목회신학1을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폐지함



✦ 목회사역학과(미디어·영상·무대예술전공) 교과과정

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1	전공필수	무대음향(1)(미개설)	3-3-0	무대음향(2)(2025년 개설)	3-3-0
		무대예술	3-3-0	무대기술(2025년 개설)	3-3-0
2	전공필수	무대음향(3)	3-3-0	무대음향실무(2025년 개설)	3-3-0
		무대법규안전(미개설)	3-3-0	무대기술실무(2025년 개설)	3-3-0
3	전공필수	미디어리터러시의이론과 실제(미개설)	3-3-0	비주얼리터러시의이론과 실제(미개설)	3-3-0

※ [주의 !!] 목회실천학부 목회사역학과 졸업요건 변경사항

가. 2023학번 이전 목회실천학부 목회사역학과 재학생은 이전 졸업요건(기초신학 및 목회신학1)을 대체하여 개편 교과과정의 전공필수를 포함한 다음의 과목(아래표) 중 총 4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면 2024학년도부터 해당 과목의 폐강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인정함

나. 단, 수강신청 시 학년 및 학기에 유의해야 하며(신학과 교과과정표 참고) 필요에 따라 대체 과목을 인정할 수 있음

과목명(가나다순) (※괄호안은 대체과목임)			
구약개론	기독교교육개론(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학개론 (2024학년도 폐강)	기독교역사와사상 (교회사개관)
네러티브로읽는복음서 (2024학년도 폐강)	모세프로젝트	미디어의운용과기획 (2024학년도 폐강)	선교학 (선교학개론)
설교학기초 (예배와설교의기초)	신약개론	신약신학	예배학기초 (예배와설교의기초)
조직신학개론 (조직신학1)	하나님의선교 (2024학년도 폐강)		

✚ 신학과(예배찬양사역전공) 교과과정

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전공필수	전공실기5	1-1-0	전공실기6	1-1-0
		위클리5	2-2-0	위클리6	2-2-0
		양상블5	2-2-0	양상블6	2-2-0
	전공필수	전공실기7	1-1-0	전공실기8	3-3-0
		위클리7	2-2-0	졸업공연	3-3-0
		공연리허설과연주	3-3-0		

※ [주의 !] 목회실천학부 목회사역학과 졸업요건 변경사항

가. 2023학번 이전 신학과 예배찬양사역전공 재학생은 이전 졸업요건(기초신학 및 목회신학1)을 대체하여 개편 교과과정의 전공필수를 포함한 다음의 과목(아래표) 중 **총 7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면 2024학년도부터 해당 과목의 폐강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인정함

나. 단, 수강신청 시 학년 및 학기에 유의해야 하며(신학과 교과과정표 참고) 필요에 따라 대체 과목을 인정할 수 있음
다. 2023학번 이전 신학과 예배찬양사역전공 편입생의 졸업요건은 아래표 중 (6개가 아닌) **총 5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함

과목명(가나다순) (※괄호안은 대체과목임)			
구약개론	기독교교육개론(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학개론 (2024학년도 폐강)	기독교역사와사상 (교회사개관)
네러티브로 읽는 복음서 (2024학년도 폐강)	모세프로젝트	미디어의운용과기획 (2024학년도 폐강)	선교학 (선교학개론)
설교학기초 (예배와설교의기초)	신약개론	신약신학	예배학기초 (예배와설교의기초)
조직신학개론 (조직신학1)	하나님의선교 (2024학년도 폐강)		



+ 신학과 교과목 설명

■ 신학과 전체 필수과목

◆ 구약개론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구약을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로 구별하여 개론적 연구와 각권별 중심적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의미를 찾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역사화 되었는가를 관찰한다.

◆ 신약개론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를 둘러싼 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 본다. 그리고 신약 27권을 각권 별로 저자, 저작 연대, 저술적 동기 및 그리고 주요 주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 교회사개관 (Overview of Church History)

세계 교회의 역사를 고대, 중세, 종교개혁, 근현대로 구분하고, 시대별로 교회의 신학과 사상의 특징과 흐름을 파악한다. 교회의 사건의 신학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를 갖는지 사고한다.

◆ 조직신학개론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기독교 조직신학 이해를 위한 기초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신학의 과제, 요소, 신학의 학문성, 계시 등을 다루는 신학 방법론이 소개되며, 여기에 입각하여, 신론, 기독교론, 성령론 및 삼위일체론, 교회론과 종말론이 간단하게 소개된다.

◆ 기독교교육개론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이해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교회,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기독교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안목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응능력을 갖추게 한다. 특히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성서적, 신학적, 심리 발달적, 역사적으로 이해하며 그 목적을 분명 하게 인식하게 한다.

◆ 기독교상담학개론 (Introduction to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상담은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에 기초하여 인간생활과 발달 및 변화에 대해 신학과 심리학의 치료적 맥락 속에서 도움을 주는 활동과 과정이다. 이 수업은 기독교 상담의 역사적 개관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론을 살펴봄으로서 목회적이고 효율적인 기독교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예배와설교의기초 (Introduction to Worship and Preaching)

예배자로서 은혜로운 예배 경험을 공유하고, 예배 인도자가 되며, 설교청중으로서 청취력을 훈련하고, 예배 설교자로서 신학적 이해와 목회적 안목을 형성시킨다.

◆ 선교학개론 (Introduction to Missiology)

선교학의 다양한 분야의 기본 내용들을 연구한다. 특히 선교를 성서적 관점, 역사적 관점, 신학적 관점, 문화적관점, 전략적 관점에서 연구함으로 선교학의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뿐 아니라 선교적인 영성을 체득하여 기독교인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선교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 예배찬양사역전공 필수과목

◆ 강신명목사의생애와사상 (The Life and Thought of Rev. Gang Sin-Meong)

강신명 목사의 삶과 사상이 한국교회사에 남긴 교훈과 업적을 연구한다. 특히, 그의 밀알사상, 목회철학, 예언자적 정신, 애국애족 정신, 에큐메니칼 사상이 우리의 영성과 교회개혁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지 연구한다.

◆ 교회교육프로그래밍 (Programing for Church Education)

교회 교육에 대한 목적과 이해를 기독교교육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배우고 이해하며, 각 교회의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을 배우고 연구함을 목표로 한다. 이 수업을 마치면 교회 학교 월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 교회사인물연구 (Case Study on Christian Leaders in Church History)

교회사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신학과 사상을 중심으로 교회사를 고찰함으로써,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역사신학적 안목을 배양한다.

◆ 교회와리더십 (Church and Leadership)

리더십의 기독교적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이것을 교회 상황에 적용하는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목회 및 기타 여러 교회 사역에서 기독교적 리더십의 실행을 배운다.

◆ 교회와영성 (Church and Spirituality)

신학생으로 학문을 배우며 영성 생활을 훈련하여 세계를 품는 지도자가 되도록 지도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삶을 체험하고 이웃을 섬기도록 지도한다.

◆ 교회음악입문 (Introduction to Church Music)

교회음악 전반에 관하여 미학적, 신앙적, 성경적, 예배학적, 음악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살펴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판단력을 갖추도록 한다. 세부적으로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사상과 입장, 예전음악(회중찬송과 찬양대를 포함)과 집회용 교회음악의 차이점, 절기음악, CCM, CWM 등의 교회음악 전반에 걸친 이론과, 전문 교회 음악인, 음악목사 등의 제도적 구성에 관하여 알아보고 교회음악의 한국화 등을 살펴본다.

◆ 교회학교운영의실제 (Practice of Christian Education in Church)

교회교육 현장을 건강하게 가꾸는데 필요한 본질적이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교회 공동체의 부서 운영과 졸업 이후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준다.

◆ 구약연구 (Old Testament Study)

구약의 책별, 또는 구약의 단위별로 주석적 연구를 통해 구약의 메시지와 의미를 해석하며, 적용, 선포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 구약원전강독 (Readings in Hebrew Old Testament)

구약 BHS의 Hebrew Texts를 기초로 히브리어와 구문론 해설을 통해 강독함으로써 구약원전에 친숙하게하며 나아가서는 구약주석의 기초단계인 원어적 접근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 구약의문화와생활 (Social Life and Cultures in the Old Testament)

구약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구약에 표현된 의식주 및 정치, 경제, 종교 체제와 다양한 문화들을 탐색하여, 오늘날 이들 문화가 우리 신앙과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핀다.

◆ 구원론 (Soteriology)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구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여, 목회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설들을 성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죄의 정황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 성취로서의 속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며, 여기에 근거하여 전통적 “구원의 순서”(ordo salutis)를 단계별로 소개한다.

◆ 군대와선교 (Military Service and Mission)

국방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하도록 돕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서 총회 군경교정선교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한다. 군대는 선교를 위한 중요한 영역이므로 군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여 개설하였고, 이를 위해 준비된 학생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 기독교리더십과통일 (Christian Leadership and the Unification of Korea)

기독교 리더십의 기초적 이해를 공부하고 그 리더십의 실행상황으로서 한국통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기독교적 리더로서 한국 통일의 필요성과 그 선교적이고 정치사회적인 의미와 그 리더십의 적절한 상황화에 대해서 공부한다. 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과 함께 선교적 상상력에 의한 리더십적 동인 등을 배워서 시대적으로 적절한 리더들을 개발하고 준비시키는 데에 그 목표를 둔다.

◆ 기독교사상사 (History of the Christian Thought)

고대의 교부신학, 중세의 스콜라 신학, 신비 신학, 종교개혁 신학, 정통주의 신학, 모더니즘, 쉐라이어마허와 자유주의 신학, 칼 바르트, 포스트모던 신학의 사상사를 다룬다.

◆ 다문화사회속의복음 (Gospel in Multi-cultural Society)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배경의 문화권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문화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을 배양함으로써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 새로운 문화상황 속에서 창조적인 복음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개발하고자 한다.

◆ 디아코니아학개론 (Introduction to Diakonia)

‘점김’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디아코니아(diakonia)는 기독교 신앙에서 본질적이며 실천적인 요소이다. 본 수업은 디아코니아학(이론)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교회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를 살피고(역사),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디아코니아적 해석과 적용(실천)을 함께 살펴본다.

◆ 리더십개발 (Leadership Development)

기독교적 리더 모델들을 정립하고, 이러한 리더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해 연구한다. 이를 위해 리더십의 기초 이론과 적용을 공부하면서 특히 기독교적인 밀알정신의 시각으로 개발하는 교육에 중점을 둔다. 리더십의 후천적 개발 이론에 근거하여 실천적 차원에서 리더십의 발전을 도모한다.

◆ 목회현장의기초 (Basis of Understanding for Ministry Field)

교회현장의 실제 모습과 현실을 고찰하고 목회자로서의 자질 및 실천을 연구 모색하며, 교회의 심방, 선교, 행정, 성찬, 교회법 등을 통한 목회현장의 기초를 다진다.

◆ 바이블잉글리쉬 (Bible English)

영어로 신학 강의를 듣고 이해하며 영어로 발표하는 연습을 한다. 성경의 핵심 인물인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Bible Study 형식으로 진행한다.

◆ 복음주의와에큐메니즘 (Evangelicalism and Ecumenism)

복음(evangel)은 세상(oikoumene)의 구원을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다.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은 본질상 분리되지 않는다. 선교는 말씀과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목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을 대립적으로 보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근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극단을 피하면서 통전적 신학과 선교를 이해하는 것이다. 복음주의에 대한 개관을 먼저 제시하고 에큐메니칼 신학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 사도행전 (Acts)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서인 사도행전을 체계적으로 배움으로서 저자인 누가가 이 역사적인 서술 형식을 통해 말하는 선포의 핵심에 대해 익히며, 또한 초기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 선교적교회개척과사회적기업 (Missional Church Planting and Social Enterprise)

선교적 교회개척의 이론과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사례들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교회개척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사역 현장에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사회적 기업과 선교적 교회 개척을 함께 공부하여 미래적 사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역의 장을 개척하는데 공헌한다.

◆ 성경교수법 (Bible Teaching Method)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법을 배우고, 삶에 적용시키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훈련한다. 성경공부의 다양한 방법들(경건회식, 주제별, 본문중심, 사례별, 귀납법적, 일대일, 개인별)을 익히고 종합연구와 분석연구를 한다.

◆ 성경의역사와지리연구 (Biblical History and Geography Studies)

성서지리를 통해 나라 별로 배운 지식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리를 중심으로 역사와 연결시켜 성경을 연구한다. 성서 지리에서 더 나아가 성경의 역사를 지리와 종합하면서 성경의 중요한 지명을 더 깊이 연구하여 성경연구와 설교의 기본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 선교현장연구및실습 (Mission Field Research and Practice)

방학 중 일정기간 동안 선교사역지를 직접 방문하여 선교현장을 연구하며 실습하는 과목이다.

◆ 성서연구방법론 (Biblical Interpretation)

본 과목은 성서 방법론을 본문에 올바르게 적용시켜 본문으로부터 올바른 신학과 메시지를 이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해석 방법론의 두 가지 흐름인 역사비평 방법론과 공식비평 방법론의 정의와 방법론을 살펴보고 본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진다.

◆ 성서와고고학 (Old Testament and Archeology)

성서고고학을 통하여 알려진 고대의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적 정황가운데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경해석에 기여점을 찾고 성서와 고고학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성서지리 (Geology of the Bible)

성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 역사의 무대였던 성서의 지리를 연구하여 성서해석과 적용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성지순례를 위한 예비지식을 갖게 한다.

◆ 신약신학 (New Testament Theology)

신약 성경 27권 전체에 흐르고 있는 통일된 주제를 살펴본다. 곧 기독론, 종말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에 대해 신약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본다.

◆ 신약원전강독 (Reading of the Cheek New Testament)

신약성서 헬라어 본문을 읽고 우리말로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주석적 원리 및 신학적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 신약의문화와생활 (Social Life and Cultures in the New Testament)

신약에 담겨있는 정치, 경제, 종교와 다양한 문화들을 탐색하며, 오늘의 문화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탐구하도록 한다.

◆ 신학과논리철학 (Philosophical Logic and Theology)

20세기의 새로운 논리철학이 언어적 진술로서의 신학과 신앙의 삶을 이해하는데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대 논리철학의 중심적 주제들이 일상적 언어로 소개될 것이며, 그 신학적 함의가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논구된다.

◆ 신학생을위한합창과발성법 (Vocalization & Choir for Theological Students)

신학생들에게 찬송가를 부르는 음악적 발성법과 설교를 위한 전문적 발성법의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귀한 목소리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발성법을 터득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이다.

◆ 신학에세이작성법 (Essay Writing in Theology)

논리적인 신학적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글쓰기의 실제 훈련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신학 에세이 작성과 논문 작성법을 익힌다.

◆ 실천신학개론 (Introduction to Practical Theology)

신학의 실천신학적 성격을 고찰하는데, 교회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서 성서적 진리가 어떻게 해석 되고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 영성의역사 (History of Spirituality)

교회사 속에서 주요인물과 집단들의 영성적 신학과 경험을 시대별로 분야별로 공부하여 나의 영성과 이웃의 영성에 도움이 되게 한다.

◆ 예배와문화 (Worship and Culture)

참된 예배자, 유능한 예배인도자, 예배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획되었다. 문화신학에 대해 이해하고, 현대 예배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예배의 환경이 되는 문화적 요소들, 즉 멀티미디어와 컴퓨터 등의 테크놀로지, 조명, 이머징, 폐제, 연극, 음악, 영화, 공간, 예술, 멀티미디어, 전통문화, 치유예배 등에 관해 관찰 및 토의 한다.

◆ 요한계시록 (The Revelation of John)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신학생들은 이들을 월등히 뛰어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수업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기 말에는 이단 들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비판해보도록 한다.

◆ 이스라엘역사 (History of Israel's Formation)

성서, 역사자료 그리고 고고학 자료를 통해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들을 살핌과 동시에 이를 통한 성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올바른 성서적 역사관을 형성한다.

◆ 전도와선교 (Evangelism and The Mission)

전도의 신학적 의미, 복음의 핵심 내용, 전도의 실제와 전략을 학습하며, 특히 청소년 전도에 관심을 갖게 하고, 개인전도 실습을 통해 전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 종교심리학 (Psychology of Religion)

종교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과 다양한 이론에 기초하여 습득한다. 또 종교심리학의 역사를 통해 학자들의 이해와 종교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며 인간이 가진 종교성 또한 종교현상을 살피고 이에 자신의 종교성과 내면을 살펴보고 신학도로서의 기본 심리학을 이해한다.

◆ 청소년교육 (Education for Youth)

교회학교 청소년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습을 배운다. 청소년을 미성년으로 보지 않고 그 특성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기독교 교육을 시도한다.

◆ 청소년설교 (Preaching for Youth)

청소년을 지도하는 사역자들과 청소년 사역을 준비하는 예비 사역자들이 효과적인 청소년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설교에 관한 제반 이론과 실재를 습득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설교에 대한 이론, 청소년의 특성과 문화, 청소년에게 맞는 설교의 준비 및 실재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 초급라틴어 (Rudimenta Linguae Latinae)

기초라틴 문법을 학습하여 라틴 언어로 기록된 기본 단문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며, 교의학 및 중세교회 신학 연구의 기초를 강화한다.

◆ 칼빈신학 (Theology of Calvin)

칼빈의 생애와 그의 신학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여, 오늘의 개혁 교회의 신앙적, 신학적 삶의 태도를 반성하도록 한다.

◆ 한국교회사 (A Church History in Korea)

한국 개신교회가 교육, 의료, 사회사업 등을 통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점, 일제하 민족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통해 민족의 일원으로 정체성을 세워가는 과정, 분단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 정치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1970-80년대 민주화와 통일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시민사회운동에 기여한 측면을 공부한다. 반면 신사참배, 정교유착, 교회분열, 정치편향 등의 부정적인 부분을 반성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 헬라어 (New Testament Greek)

헬라어에 대한 알파벳, 단어와 문법, 그리고 문장론을 배움으로서 신약성서를 원어로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 현대사회와기독교윤리 (Modern Society and Christian Ethics)

교회와 세상 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중심성의 신학으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신학자들의 관점을 배우고, 현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문제를 살펴봄에 신학적, 윤리적 답을 얻도록 한다.

◆ 현대신학 (Modern Theology)

현대 신학자들의 견해를 연구하여 전통적인 신학의 문제들을 오늘날의 세계관과 경험의 지평에서 새롭게 고찰하고, 이해하며, 해석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아와 세계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전망을 수립하고 나아가 오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필요한 복음의 의미들을 재발견한다.

◆ 히브리어 (Biblical Hebrew)

히브리어는 학자와 목회자로서 성경공부와 설교를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뿐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기독교 지성인이 배워야 할 고전 언어이다. 구약성서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인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고 기초적인 문법을 배워 히브리어 문장들을 읽게 된다.

■ 예배찬양사역전공 필수과목

◆ 공연리허설과연주 (Worship Planning Theory and Performance)

현대 예배의 흐름과 특징을 분석하여 기획, 조직구성, 운영, 진행, 역할에 대한 이해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연구하며 각 교회와 예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앙상블 (Ensemble)

장르와 스타일을 배우고 실제로 연주한다. 인도자, 연주자, 보컬의 위치에서 듣고 부르고 연주하는 음악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전문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실습한다.

◆ 위클리 (Weekly Recital)

훈련한 과정의 내용을 무대 연주와 예배 인도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무대 및 강단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가고 구체적 검증을 받아 수정 및 보완을 이룬다.

◆ 전공실기 (Major Private Lesson)

1:1 개인 지도를 통해 실기 능력을 개발하여 연주활동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실습한다.

◆ 졸업공연 (Graduation Recital)

대학생활에서 발전시켜온 최종 결과를 공연을 기획하여 무대에서 발표한다.

■ 예배찬양사역전공 선택과목

◆ 송라이팅 (Song-writing)

직접 창작한 곡을 사용하여 예배 인도, 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이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예배 음악들을 분석하고 예배 음악 작곡을 위한 음악적인 기본 지식을 익혀, 스스로 예배 음악 및 연주 음악을 작곡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실용음악화성학 (Applied Harmony)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악을 분석하고 응용하는 훈련을 통해 예배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 코러스와합창 (Chorus and Choir)

예배, 공연, 레코딩의 실제 현장에서 함께 노래하는 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팀원들과 밴드 구성원을 적절하게 교육하도록 돕는다. 가장 주된 목적은 예배현장에서 예배팀의 보컬 파트를 예배에 적합한 형태로 풍성하게 만들고 팀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 클래식화성학 (Classic Harmony)

연주 및 창작을 돕기 위한 음악의 기초 이론들을 학습한다. 음악을 이해, 분석, 학습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화성이론을 공부한다.

◆ 대예배와실용음악사 (Modern Worship and History of Applied Music)

현대예배의 뿌리인 예배신학의 역사와 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배신학 원리를 이해하고 예배현장사역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며, 실용음악의 역사를 이해하여 현대예배와의 접합점을 찾아 예배현장에서 건강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표

학 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담당 교수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담당 교수
1	전필	사회복지학개론	3-3-0	차유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3-0	장혜림
	전선	사회복지진로탐색	3-3-0	강성옥	영화와 사회복지(20명)	3-3-0	장혜림
		국제사회복지의 이해	3-3-0	박은미	청소년복지론	3-3-0	박은미
2	전필	사회복지실천론	3-3-0	박은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3-0	차유림
		사회복지행정론	3-3-0	장신재	사회복지조사론	3-3-0	장신재
	전선	자원봉사론 ¹⁾	3-3-0	장신재	장애인복지론	3-3-0	장혜림
		의료사회복지론	3-3-0	미정	가족상담과 가족치료	3-3-0	이진석
		아동복지론	3-3-0	장혜림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²⁾	3-3-0	박은미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3-0	차유림			
3	전필	지역사회복지론	3-3-0	장혜림	사회복지정책론	3-3-0	이진석
					사회복지현장실습 2-1	3-3-0	차유림
	전선	사회복지실천과 자기이해	3-3-0(P)	차유림	사회복지자료분석론 ³⁾	3-3-0	이진석
		학교사회복지론	3-3-0	박은미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3-3-0	장신재
		사례관리론	3-3-0	박은미	기독교사회복지론	3-3-0	강성옥
		노인복지론	3-3-0	이진석	정신건강사회복지론	3-3-0	김시아
4	전필				사회보장 정보화 이해	3-3-0(P)	김성동
	전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3-3-0	이진석			
		사회복지거시분석적이해 I	3-3-0(P)	장신재	사회복지거시분석적이해 II	3-3-0(P)	이진석
		사회복지미시분석적이해 I	3-3-0(P)	박은미	사회복지미시분석적이해 II	3-3-0(P)	장혜림
					가족복지론 ⁴⁾	3-3-0	이진석
					사회복지실무역량강화	3-3-0	강성옥

1) 격년 개설. 2025년 1학기 개설 예정

2) 격년 개설. 2025년 2학기 개설 예정

3) 2024년 2학기에는 과목 개설하지 않고 2025년도 2학기 개설 예정

4) 2024년 2학기에 개설하고 2025년부터는 1학기에 개설 예정

✚ 사회복지학과 교과목 설명

◆ 가족복지론 (Social Work with Family)

가족(구조, 관계, 기능, 생활주기 등), 가족문제, 가족복지에 대해 이해하며, 가족문제의 예방, 해결을 위한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학습한다.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방법과 가족 치료적 개입모델(가족치료학과별), 가족치료대상자에 대한 사정과 가족치료의 평가방법, 가족문제에 개입하는 임상사회사업가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훈련한다.

◆ 가족상담과가족치료 (Family Counselling and Family Therapy)

가족치료와 가정상담의 기초와 주요 상담 및 치료이론과 실재를 체계적으로 강의하고, 가족체계의 기능과 적응력을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배양한다. 가족상담 및 치료의 이론과 기법만이 아닌 가족상담 및 치료의 특성, 가족체계 이해, 가족상담 및 치료이론 적용사례, 실제 가족상담 및 치료의 과정과 문제 유형별 적용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 공공부조론 (Public Assistance)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조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개별적인 공공부조 분야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한다.

◆ 교정복지론 (Correctional Social Work)

교정분야와 관련된 기본개념과 이론을 학습하고 우리나라 교도행정 및 서비스의 실태와 교정사회사업가로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접근방법 등을 연구·고찰한다.

◆ 기독교사회복지론 (Christian Social Welfare)

기독교와 사회복지간의 상호관계성을 연구하고, 기독교사회복지의 역사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공동체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복지프로그램과 제도를 교회 및 사회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노인복지론 (Social Welfare for the Aged)

현대사회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의 발생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을 실제로 접근하여 파악해보고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문 점을 알아본다. 또한 노인문제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전문지식과 이론, 기술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실천해봄으로서 전문사회사업의 개입방법을 모색한다.

◆ 논리적글쓰기와자기표현 (Logical writing and self-expression)

사회복지 분야에서 문서작업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해 가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 함양의 가장 기초단계로써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글쓰기 작업의 기초를 익히고 연습한다.

◆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사례관리의 개념을 정리하고, 사례관리의 발달과 사례관리의 모델을 고찰한 뒤, 사례관리의 실천과정으로서 초기과정, 사정과정, 계획과정, 중재, 점검과 평가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사례관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한 조건인 지역사회 서비스 조직들간의 협력체제도 분석하고, 사례관리의 기록과 실천윤리도 이해하도록 한다.



◆ 사회문제론 (Social Problems)

고전적 현대 사회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 이론들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의 관점에서 빈곤, 소득분배, 노사문제, 교육문제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 가족해체, 인구문제, 환경문제 등의 사회해체적 문제, 청소년비행, 정신지체, 알콜 중독 등의 탈선적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 사회보장론 (Social Security)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복지사회의 기본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의의와 본질을 검토하고 그 배경과 의의를 개관하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비교 분석한 후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공적부조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사회복지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 문제를 생활문제로 인식하고 문제의 소재와 그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개념, 가치관, 이데올로기, 사회복지 발달사에 관하여 강의한다.

◆ 사회복지거시분석적이해 (Macro-analytic Understanding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의 거시적 분야인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행정, 사회보장 등의 분야를 상호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함으로써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적 틀과 복지현장에서의 상황적응능력을 함양한다.

◆ 사회복지미시분석적이해 (Micro-analytic Understanding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의 미시적인 분야인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등의 분야를 상호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미시적인 실천이론과 모델들을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미시적 복지 지식과 실천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함양한다.

◆ 사회복지발달사 (Social Welfare History)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사회복지발달의 역사적 전개를 비교사적 방법으로 살펴보면서, 사회복지 비교 연구의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 사회복지법제 (Social Welfare Laws)

사회복지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해 봄으로써 법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적절한 법 제정과 개선에 대한 대책을 연구한다. 또한 사회복지 실무에서 활용할 사회복지관련 법규를 익힌다.

◆ 사회복지비전과 자기주도적학습 (How to do Self-Directed Learning)

강의와 실습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의 핵심요소인 학습목표를 세우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학습 전략을 짜는 것,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과 학습환경을 관리하는 것을 익히도록 한다. 나아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학을 이해하는 기반을 닦도록 한다.

◆ 사회복지상담의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for 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상담 상황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사의 능력과 태도를 함양시키고, 다양한 사회복지상담이론의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연마하여 사회복지실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필요한 상담의 기본이론, 상담철학, 상담자의 자질과 역할, 상담기법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높인다.

◆ 사회복지서비스와법 (Social Welfare Service and Law)

사회보장의 영역 가운데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중시되는 노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다문화가족복지서비스, 영유아복지서비스, 사회복지공동모금 등이 실천되는 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공공부조법과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운영되는지에 관해 논의한다.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I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I)

개인과 가족 집단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숙지해야 하는 다양한 실천기술, 기법, 지침 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사례연구와 역할 연습을 통해 실제에 개입하고 평가하는 연습을 강조한다.

◆ 사회복지실천론 (Foundations of 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 실천대상 가운데 개인, 집단,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사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가치, 기초 지식, 사회복지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 면접, 사회복지 실천과정, 실천 대상에 따른 기초적 개입 기술과 기법, 기록 등을 검토한다. 특히 사례연구와 역할연습을 통해 실제에 개입하고 평가하는 연습을 강조한다.

◆ 사회복지실천에서의죽음과상실 (Death and Loss in Social Work Practice)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정립하도록 돕고, 죽음 및 상실과 관련된 이론과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죽음과 상실에 개입할 수 있는 가치적, 지식적, 기술적 기반을 닦도록 한다.

◆ 사회복지원강 (Reading Comprehension on Social Welfare)

현대사회의 사회문제,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기초이론과 역사, 접근모델 그리고 사회복지실천 분야와 관련된 영문문헌 등을 강독한다.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Ethics and Philosophy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직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와 배경철학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올바른 실천윤리를 함양하고, 나아가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 사회복지인턴 (Social Work Intern)

사회복지기관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복지기관의 행정·프로그램·실천방법·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에 관해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실제 수행하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Statistical Data Analysis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분야에서 조사된 정보를 사용해 모집단이나 표본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는 기술 통계기법과 추출된 표본에서 얻은 특징들을 이용해 모집단의 특징을 일정한 신뢰도를 갖고 추정하는 추리통계 기법을 습득한다. 변수 상호간의 상호관계와 인과관계를 상관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기법을 통해 파악한다.

◆ 사회복지자원개발과마케팅 (Social Welfare Resource Development and marketing)

현대사회의 시장지향성 복지다원주의는 국내 사회복지기관들에게 예산 및 운영적 측면에서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조직의 미션 실현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써 사회복지 마케팅과 효과적인 자원개발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효과적인 모금전략을 학습한다.

◆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과 역동적인 복지환경을 학습하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제시되는 정책 대안들을 분석하며, 이들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한 후 최선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사회복지조사론 (Social Research Design and Evaluation)

사회복지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처리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조사방법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 질문문안의 작성과 용어사용, 표본추출방법, 면접자·응답자·조사기관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의 분석과 해석, 오차의 의미와 가능성, 오차요인별 대응방안, 사회조사의 과학성과 실용성 제고방안 등을 연구한다.

◆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기관과 요원들이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기획, 집행평가하고 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복지행정의 역사, 기초이론, 행정관리, 의사결정, 의사소통, 지도력, 기획, 조정평가,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사무관리, 프로그램관리, 정보체계, 서비스 전달체계, 평생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사회복지현장실무의이해 (Understanding Of 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현장에 재직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이상 근무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체험 현장의 정보와 이론, 실천 기술 등을 습득하고 각 시설 법인의 미션 및 비전 제시 등을 이해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복지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1·2 (Field Work Practice 1·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실습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전문지식, 원조기술을 습득하도록한다.

◆ 산업복지론 (Industrial Social Welfare)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현대사회의 산업영역을 이해하고, 산업체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기업체, 노동조합의 차원에서 고찰하며, 이에 산업복지의 이론적, 실천적 지식체계를 연구 한다.

◆ 상담과 자기이해 (Self-Understanding as a Counselor)

상담자의 올바른 자기이해는 성공적인 상담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강의시간 중 MBTI 성격유형검사, 감정 반응유형검사, 의사소통 유형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유능한 상담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아동복지론 (Social Welfare for Children)

아동과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실천방법을 학습하여 아동복지 분야에서 활동할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 아동복지의 역사, 정책과 제도, 실천대상과 관련 서비스, 실천방법과 기술 등의 이해를 도모한다.

◆ 여성복지론 (Social Welfare for Women)

여성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공적, 사적 차원에서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강구한다.

◆ 영화와 사회복지 (Social Welfare in Cinema)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와 윤리, 발달사 그리고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학교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 정신보건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를 즐겁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의료사회복지론 (Medical Social Welfare)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고, 의료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료복지정책 및 의료전달체계에 관해 학습함으로써 예비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의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자질을 함양한다.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환경 안에서 생활하는 인간(person-in-environment)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간과 사회환경의 상호작용을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개인, 소집단, 지역사회 등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과학과 사회과학이론을 학습한다. 또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생애주기(life cycle)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발달단계 별로 직면하는 발달과업과 문제 등을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사회사업서비스)과 관련지어서 전문가로서의 관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훈련한다.

◆ 인턴십 1·2 (Internship 1·2)

사회복지학과목을 전반적으로 이수한 후 현장 인턴십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실천 영역들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폭을 넓힌다. 취업 현장의 경험을 통해 겪게 되는 시행착오와 문제들을 논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강화한다.

◆ 자원봉사론 (Voluntarism)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조 노력의 대표적 체계인 자원봉사의 이념과 실제에 대해 조망하고 체계화하고 활용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조직 능력에 대해 학습한다.



◆ 장애인복지론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사회문제로서의 장애인 문제, 장애에 대한 이해(개념, 원인, 유형 등), 장애인 복지(개념, 이념, 제도, 기관 등)에 대한 이해 등을 학습하며, 장애인복지 실천현장, 재활영역, 재활서비스과정,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에 대한 학습과 훈련을 한다. 또한 재활서비스 케이스 및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전산관리,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양식 등과 관련된 실무 등을 익힌다.

◆ 정신건강론 (Physiology and Mental Health)

사회사업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인간에 대한 기초이해 과정으로서 골격계, 근육계, 현관계, 신경계, 뇌분비계등의 인체구조 및 생리적 현상과 두뇌의 기능, 정신과정 등 정신보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 정신보건복지론 (Mental Health Welfare)

정신보건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학습하고, 실천영역과 서비스,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서비스 전달체계와 인력 체계에 대해 조망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정신보건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고 전문서의 개발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한다.

◆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사회복지로서 대두되고 있는 지역복지에 관한 일반이론과 실천방법, 기술을 익히고 지역복지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실천분야를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해봄으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한 전문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한다.

◆ 청소년문화론 (Youth Culture)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은 크지만 막상 청소년문화에 다가가서 그것을 이해하고자 할 때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생활세계와 청소년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청소년문화론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를 배우며 기성세대와 다른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 청소년복지론 (Social Welfare for the Youth)

사회복지분야의 한 영역으로서 청소년문제와 복지에 관한 제반이론과 실천을 학습한다. 특 히 청소년의 발달이해, 사회적 서비스, 정책 및 제도 등을 취급하며,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 실천능력의 배양에 대해 연구한다.

◆ 청소년상담 (Youth Counseling)

청소년상담의 개념과 목적,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청소년 대상 상담 업무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학습하고 실제수행 과정을 익힌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특성, 문제분석, 개입 계획과 설계 및 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며 그에 따른 실행 과정을 학습하며 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 평가에 대한 쟁점들을 논의한다.

◆ 학교사회복지론(구 학교사회사업론, School Social Welfare)

환경 속의 개인(person-in-environment)의 사회사업적 관점에서 개인과 환경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가족, 친구집단, 사회제도 등 양 측면에서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꾀하기 위한 지식, 이론, 기법, 기술정책 등을 다룬다.

✚ 복지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교과과정표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전필	2	이상심리	3-3-0	가족상담	3-3-0
				기독교상담	3-3-0
	3	발달이론	3-3-0	집단상담	3-3-0
				긍정심리학과 코칭	3-3-0
	4	상담현장실습	3-3-0		
전선	짝수 년도	마음과심리적인간이해(합)	3-3-0	관계맺기와인간이해	3-3-0
		매체인형치료(합)	3-3-0	예술치료	3-3-0
		애착과상담(합)	3-3-0	마인드풀니스	3-3-0
		커뮤니케이션과상담(합)	3-3-0	청소년상담	3-3-0
		상담이론 및 실제(합)	3-3-0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3-3-0
	홀수 년도	나르시시즘과 자기심리학	3-3-0	현대 심리학	3-3-0
		좋은부모되기	3-3-0	학습이론	3-3-0
		심리측정 및 평가	3-3-0	교류분석	3-3-0

※ 취득가능 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3급(국가자격)
-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2급(국가자격)
- 전문상담사 3급(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 인형심리상담사(자격번호:2016-001542) 2급 (한국인형치료학회)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관련 4개의 과목은 다른 학과의 학생들도 교양선택 또는 전공선택으로 수강가능함

※ 2024학년도 복지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신입생은 1학년 전공선택 과목이 있고 전공필수 과목이 없지만 1학년 기간 동안 자유롭게 교양학부 과목을 수강하면서 앞으로의 학업계획에 대하여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함 (수강추천: 이중전공을 희망하는 상담심리학과 신입생은 교양학부의 '신학이란 무엇인가(류삼준 교수)' 등을 수강하면서 신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사회복지의이해(강성욱 교수)'등을 수강하면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음. 또한 '마음과심리적인간이해(조영진 교수)', '매체인형치료 (안명숙 교수)', '애착과상담(조영진 교수)', '커뮤니케이션과상담(홍정미 교수)'등을 수강하여 상담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상담이론및실제(안명숙 교수)' 등을 수강하여 상담 및 심리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음. 그 외 목회사역학과의 '무대예술(박경배 교수)'등을 수강하여 무대전문인 과정을 준비할 수도 있음)



✦ 상담심리학과 교과목 설명

◆ 성격심리학

성격심리학은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의 성격을 조망한다. 이 과목에서는 인간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과 타인의 성격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성격이론들의 관점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관점들을 개관하고, 성격심리학의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인문학적 및 상담 소양과 역량을 키운다.

◆ 집단상담

이 과목은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재를 겸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강의와 더불어 반구조화, 비구조화 집단상담을 실습함으로써, 집단원들이 집단과정의 역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간관계 행동에 대한 탐색과 함께 자기이해와 수용, 타인이해와 수용을 조력한다. 그리하여 수강생의 인간관계에서 균형잡힌 집단지도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 청소년상담

청소년은 발달 중인 과정에 있기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은 정보화, 세계화, 고령화, 문화적 급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하여 문제에 직면해있다. 청소년 발달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청소년 상담에 적용함으로써 청소년 이해도를 높이고 청소년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본 과목의 목표가 있다.

◆ 가족치료

본 수업은 현대사회와 교회 안의 다양한 가족 문제들 속에서 가족 정체성의 위기 또는 기회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가족치료의 전반적인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현장에서 가족상담적 접근을 통해 사려 깊은 이해로서 평가 및 응용할 수 있는 치료접근법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가족치료 관련 다양한 이론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실습을 통한 심화학습을 진행한다.

◆ 상담이론

상담이란 회복, 치유, 성장을 향해 가는 긴 인생의 여정이며 이는 용서와 사랑의 여정이다. 본 수업은 기본적인 상담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심리를 이해하고 상담역량을 키우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본 수업의 목표는 상담의 기본 이론들을 익히고 이해하여 상담 적용의 기초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 기독교상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목회 현장을 맞이하게 될 신학도들이 목회의 현장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목회 돌봄 및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습을 진행한다. 이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이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기독교상담학의 이론과 실천의 토대 위에 섬김과 돌봄의 기독교 상담의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심리측정 및 평가

본 수업은 심리측정도구로서의 몇 가지 기본적인 심리검사의 원리 및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심리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도가 높은 몇 가지 심리검사를 선정하여 실습을 통해 평가 및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상담기법 인형치료

인형치료는 심층심리학, 가족체계이론, 트라우마가족치료의 이론을 바탕으로 동물인형과 가족인형을 통해 내담자와의 면담 속에서 무의식적인 재료들을 인형을 통해 표현하고 치료적 효과 및 문제를 사정하고 진단하는 기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수업을 이수하게 되면 한국인형치료학회(www.figuretherapy.org/bbs/viewPage/60)의 인형심리상담사2급 자격과정의 중급단계까지 인정받게 된다

◆ 발달심리학

이 과목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결과들을 개괄해 보는 과목이다. 인간의 삶과 행동이해를 위한 발달심리학적 인간이해는 심리학의 오랜 연구 주제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개괄해 보고 인간의 삶과 성장을 돕기 위한 현장에의 적용 가능성들을 탐구해 본다.

◆ 정신분석과상담

정신분석은 인간의 정신현상을 이해하는데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심리치료를 실시함에 있어 길잡이가 된다. 본 수업은 정신분석 이론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병리와 심리치료 실제에 관한 지식을 넓혀간다.

◆ 대인관계의심리학

지금 시대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대인관계에 대하여 심리학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근간으로 인간관계의 실제적 주제를 선정하여 다루어 봄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인관계의 상황에 적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해 보고자 한다.

◆ 애착과상담

애착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적인 연결과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며 이를 학문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건강한 애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 상담사례연구

상담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내담자와 만났을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자세를 학습하고, 다양한 임상 유형별 사례에 대한 심층교육 및 사례지도를 통하여 전문적인 상담자로서의 자질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다.

◆ 예술치료

상담은 왜곡된 자아 이미지를 해체하고, 자신의 본성과 자존감의 구축을 하는 것이다. 이에 상담실습의 한 방법론으로서 창의성과 무의식의 활성화를 통한 자기치유, 회복, 성장, 실현의 효과적인 방법인 예술매체를 통한 상담기법을 다루게 된다. 상징, 색채, 미술, 이미지 등을 다루는 예술상담이론을 익히고 이를 이용한 상담방법들을 실습한다.



◆ 생태치료

생태계의 위기와 인간 위기의 현상을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인간의 소외와 마음의 질병들에 대해 서구 심리학의 일반적 성향은 증례중심적 인간중심적 피상적 해결책이었다면 생태요법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 근원과의 결합, 즉 자연과의 합일과 조화의 삶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인간이 포함된 생태계 위기의 근원과 그 치유의 방안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치료 및 상담의 임상 상황에 적용한다.

◆ 음악치료

음악치료는 음악을 사랑하는 상담자가 음악을 활용하여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치료 방법이다. 수업 과정에는 음악치료의 역사와 이론, 음악치료의 원리와 기법,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 실습과 이론 강의로 구성된다. 상담 기술로서 음악치료는 음악을 통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분야이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음악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다.

◆ 고급 심리측정 및 평가

이 과목은 심리측정도구로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몇 가지 투사 및 지필 검사의 심층 학습과 실습에 중점을 두어 심리검사를 통해 내담자에 대한 평가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마인드풀리스(Mindfulness)

마인드풀리스(Mindfulness) 스트레스 관리, 우울증 및 불안 완화, 감정 조절, 집중력 향상, 창의성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주는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기 개발적인 기술이다. 정신 건강과 웰빙 촉진하는 기법이며 수업에서는 마인드풀리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습함으로써 수강생들은 생각과 감정에 대한 관찰자가 되고, 그들에 대한 판단이나 반응을 자제함으로써 더 큰 내적 평화와 안정성을 찾는 치유자로서의 숙련을 하게 된다.

◆ 융심리학과 상담

이 과목은 융(C.G. Jung)의 인간 심성 이론인 분석 심리학의 상담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 심리학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꿈 분석의 원리를 연구하고 상담 현장에서 적용하는 상담자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 이상심리학

심리적 부적응 및 정신장애에 대한 입문과정이다. 마음의 이상을 이해하는 응용심리학으로서 심리학적 이론들과 정신장애의 주요 진단기준에 대해 배운다. DSM-5에서 변화된 진단기준을 검토하고, 주요 심리장애의 원인과 양상을 숙지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제반 고려사항을 다룬다.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이 수업은 학교폭력의 원인과 유형, 이와 관련한 정신건강과 병리,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상담뿐 아니라 교육과 예방, 법률적 처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며 이를 위하여 실제적이고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다루어 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종교심리학

종교심리학은 인간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종교적 경험, 감정, 행동 등의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발전되어 온 학문이다. 본 수업은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다양한 종교적 현상의 주요 주제들을 심리학적인 접근과 이론을 통하여 다루어 보고 이를 통하여 종교란 무엇이며 나아가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심층적 조망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 커뮤니케이션과상담

현대 시대는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와 부족함은 인간관계와 나아가 삶 전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본 과목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론과 이를 통한 임상적 지식을 습득하여 좀 더 건강하게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교류분석

치료자의 기술이나 신념의 실현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긍정성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성을 극복하고 각본에 의해 고정된 삶을 자발적인 자유와 책임으로 재결단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치료 기법에 대한 교육이다.

◆ 긍정심리학과코칭

코칭은 지금 시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주제이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수업은 긍정심리학과 코칭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이러한 코칭의 영역이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영역과 방법, 기술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봄으로써 코칭이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팩트폴리스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현대 사회에서 퍼지는 잘못된 정보, 거짓정보, 허위 소문 등으로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을 학문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재구성해 보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자기이해와상담

본 수업은 자기이해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 보고 또한 적성, 흥미, 성격, 성향, 습관 등의 삶의 주제를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이를 기초로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성인발달과상담

이 과목은 성인기의 심리 발달과 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특히 성인중기(중년기)와 성인후기(노년기)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다. 본 과목은 성인발달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들을 개괄해 보고, 나아가 중년/노년들의 삶의 이야기에는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건강한 성인기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담적 도움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본다.



◆ 학습이론

이 과목을 이수하면 사람이 어떻게 배워가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배움에 관한 교육, 심리, 사회, 두뇌 신경섬유의 이론들을 섭렵하고 자신과 학습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피력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적용하는 수업들을 설계할 수 있다.

◆ 좋은 부모되기

완벽한 부모는 없다. 다만 충분히 좋은 부모가 있을 뿐이다. 좋은 부모는 자녀의 리듬을 따라가며 믿어주고 함께 있고 격려해준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필요할 때 충분히 자신을 줄 뿐더러 떠나보내야 할 때는 독립을 축하해준다. 충분히 좋은 부모됨의 모델은 성육신하시고 임마누엘로 공감하실 뿐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힘을 부여하시는 성서의 장면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수업은 부모됨의 개념을 발달단계의 리듬에 따라 살펴보고 적응적인 부모 자녀됨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상담기관 현장실습1

상담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문 상담사로서 필요한 전문지식, 원조기술을 습득하도록한다

◆ 상담기관 현장실습2

상담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문 상담사로서 필요한 전문지식, 원조기술을 습득하도록한다

✚ 교회음악과 교과과정

구분	과목	학점, 학기	총학점
전공 필수	전공실기 (1~8)	2학점 8학기	16
	연주실습 (1~6) P/NP	1학점 6학기	6
	화성법 (1~2)	2학점 2학기	4
	음악사 (1~2)	3학점 2학기	6
	예배와음악 -1학기 개설	2학점 1학기	2
	졸업연주 -2학기 개설	2학점 1학기	2
공 통	시창청음 (1~2)	2학점 2학기	4
	합창 (1~8) P/NP	2학점 8학기	16
	글로벌리아싱어즈 (1~8) P/NP	2학점 8학기	16
	교회음악개론(짜수해)-2학기 개설	2학점 1학기	2
	현대성가반주법(짜수해) (1~2)	2학점 2학기	4
	건반화성(홀수해) (1~2)	2학점 2학기	4
	찬송가학(홀수해)-2학기 개설	2학점 1학기	2
	기초음악이론-1학기 개설	2학점 1학기	2
	실용음악화성법-2학기 개설	2학점 1학기	2
	취창업전략-1학기 개설 P/NP	2학점 1학기	2
	반주실습 (1~2)	1학점 2학기	2
	부전공클래스-성악(1~4)	1학점 4학기	4
	부전공클래스-피아노(1~4)	1학점 4학기	4
	부전공클래스-오르간(1~4)	1학점 4학기	4
	부전공클래스-지휘(1~4)	1학점 4학기	4
성 악	딕션1-1학기 개설	2학점 1학기	2
	딕션2-2학기 개설	2학점 1학기	2
	한국가곡클래스-1학기 개설	2학점 1학기	2
	성가클래스 (1~2)	2학점 2학기	4
	성악문헌(짜수해) (1~2)	2학점 2학기	4



구 분	과 목	학점, 학기	총학점
피아노	기악양상블 (1~2)	2학점 2학기	4
	피아노문헌(찍수해) (1~2)	2학점 2학기	4
	피아노교수법(찍수해) (1~2)	2학점 2학기	4
오르간	성가반주법(홀수해) (1~2)	2학점 2학기	4
	오르간클래스(찍수해) (1~2)	2학점 2학기	4
	오르간문헌(찍수해) (1~2)	2학점 2학기	4
지 휘	합창지휘클래스 (1~8)	2학점 8학기	16
	교회음악전공문헌-지휘(찍수해) (1~2)	2학점 2학기	4

✦ 교회음악과 교과목 설명

◆ 교회건반화성 (Church Music Keyboard Harmony)

교회음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능화성적 기초를 습득하고, 이를 찬송 및 찬양 반주에 활용하여 풍부한 음악적 표현을 추구한다.

◆ 교회음악개론 (Introduction to Church Music)

전반적인 교회음악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며 기본적인 예배와 음악, 찬송가학, 성가대와 기악, 교회력, 현대의 예배형태와 음악 등을 배움으로써 교회음악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 교회음악부전공클래스 (Church Music Minor Class)

성악, 기악, 작곡, 지휘, 오르간 등 다양한 장르가 합하여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교회의 중요한 특성이 있으므로 한 가지 전공 외에 또 다른 장르를 공부함으로써 예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들을 폭넓게 익힌다.

◆ 교회음악연주실습1·2·3·4·5·6 (Church Music Performance)

지도교수로부터 배운 음악적 기량을 무대 위에서 실습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기량을 측량하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졸업 후 교회에서의 교회음악 지도자로 성장해 간다.

◆ 교회음악전공문헌 (Church Music Literature)

시대별 해당 전공에 대한 교회음악 문헌을 연구하고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 글로리아싱어즈1·2·3·4·5·6 (Gloria Singers)

정교한 성가합창음악을 배우고 익히며 교회 예배에서 쓰이는 음악을 잘 연주하도록 한다.

◆ 미디어음악작편곡1·2

광고, 영화, 드라마, 게임을 위한 보편적인 음악 제작 환경을 살펴보고 간략한 이론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스킬을 연구한다. 보편화된 홈레코딩을 위한 DAW(Digital Audio Workstation)인 'Cubase'를 기본으로 베가스, 사운드포지 등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과 함께 실질적인 미디어 음악 제작의 기초를 파악하고 실습한다.

◆ 성가딕션1·2 (Diction for Church Hymn)

참된 신앙인, 참된 전문인, 참된 실천인을 목적으로 두고 교회음악을 공부하는 성악도로서 이탈리아, 영국, 미국 성가곡, 가곡 등을 공부하기 위한 외국어 발음 기초 방법을 알아간다.

◆ 성가를위한시창청음 (Ear Training and Sight Reading for Church Hymn)

시창훈련을 통해 교회 현장에서 처음 접하는 악보를 부르고 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처음 듣는 곡도 청음 훈련을 통해 기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의 음악 전공분야에서의 학습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 성가반주법1·2 (Organ accompanying for church music)

교회 오르가니스트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예배 음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전통적 예배에서 오르가니스트의 연주 영역은 회중찬송 인도, 예배의 전주 및 후주, 찬양대 및 독창자 반주 등이다. 성가반주법에서는 찬양대 및 독창자의 반주를 위한 연주 테크닉을 익힌다. 이를 위해 피아노 악보나 오케스트라 악보를 오르간으로 편곡, 연주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많은 레퍼토리를 실제로 다룸으로써 몸에 익힌다.

◆ 성가반주실습1·2 (Church Music Accompanying)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다양한 찬양과 함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반주능력을 요구한다. 위 과목에서는 성악레슨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곡들의 반주를 익히며, 또한 다른 연주자와 앙상블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성가클래스1·2 (Sacred Song Class)

예배와 교회연주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한국, 외국 성가를 소개하며 작곡가와 곡의 특성, 기교, 가사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 연주 발표하며, 교회력에 맞추어 교회음악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성가합창1·2·3·4·5·6·7·8 (Church Choir)

교회에서 사용되는 성가곡과 합창곡들을 예술적인 합창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발성의 기본 훈련, 발음, 악상표현 등을 합창을 통하여 완성시킨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앙상블을 만들어가며 완성된 합창음악을 경험하도록 한다.

◆ 성가합창지휘클래스1·2·3·4·5·6·7·8 (Conducting class for Church music)

교회합창곡들을 연습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곡을 분석하고 연습 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루며 진행한다. 지휘하는 자와 합창하는 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하며 수업한다.

◆ 악기론과오케스트레이션1·2 (Instrumentation and Orchestration)

주로 서유럽에서 발전해온 서양 악기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각 악기의 특성과 주법, 음색, 음역 등을 면밀히 고찰한다. 나아가 개별 악기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작품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클래식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뿐만 아니라 재즈와 대중음악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주요 악기들도 함께 살펴본다.

◆ 예배를위한기악앙상블 (Instrumental Ensemble for Worship)

예배에 드려질 여러 다른 악기와 앙상블을 통하여 다양한 악기의 특성을 배우고 교회음악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한다.

◆ 예배를위한오르간클래스1·2 (Organ Class for Worship Service)

예배의 인도자로서 오르가니스트가 갖추어야 할 제반 능력을 키우는데 이 강좌의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회중찬송의 인도, 효과적인 성가대 및 독창 반주, 교회력을 비롯하여 조건을 고려한 전주와 후주 선곡 및 레퍼토리 등을 다룬다.

◆ 예배와음악 (Worship and Music)

예배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배의 역사와 음악의 변화 및 여러 교파의 예배와 음악을 연구한다. 그리하여 예배정신에 입각한 예배의 봉사자로서의 예배음악을 추구하도록 한다.

◆ 음악사1·2 (History of Music)

서양음악의 역사를 통하여 음악을 이해하는 데 이 수업의 목적이 있다. 고대로부터 바로크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음악의 스타일과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연주자로서, 창작자로서 음악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석의 근거를 가지고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음악소프트웨어와미디1·2 (Music Software and MIDI)

컴퓨터를 활용하여 음악을 기록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익히는 것에 목표를 둔다. 현대 DAW(Digital Audio Workstation)의 대명사인 'Cubase'를 중심으로 작곡, 편곡 및 믹싱, 마스터링 작업의 독자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재즈화성학1·2 (Jazz Harmony)

재즈음악을 이루고 있는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배운 내용들을 실제 여러 가지 음악 형태에 잘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전공실기1·2·3·4·5·6·7·8 (Applied Major)

주1회 전공분야 개인교수를 통해 각자의 전공실기를 연마하고 지도받으며 매 학기말 전공실기 시험을 치러 평가를 받는다.

◆ 졸업연주 (Graduated Performance)

각 전공별로 4학년 2학기 졸업연주회를 갖으며, 반드시 Pass하여야 한다.

◆ 찬송가학 (Hymnology)

신학적, 교회사적, 문학적, 음악적 측면에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찬송가의 가사와 음악을 분석, 평가하여 교회활동에 있어서 적절한 찬송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 한국성가클래스1·2 (Korean Sacred Songs Class)

서양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끼친 영향과 시대별 역사에 따른 한국성가곡의 변천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와 한국성가곡의 연계성을 설명하고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

◆ 화성법1·2 (Harmony)

음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과목으로써 음악도들에게 전공을 불문하고 배워야하는 중요한 과목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 과목은 고급화성위주의 세부적인 이론적 지식을 쌓아 음악성의 향상과 음악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회음악과 전공실기에 관한 내규사항〉

- (1) 실기시험은 지정된 교과과정에 의한 곡으로 암보를 원칙으로 한다.
- (2) 부득이한 형편상 실기시험을 못 치르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3) 콩쿨과 특별한 연주를 하는 경우 교과과정외의 곡도 허용될 수 있으나, 해당학기 실기곡목 제출일까지 교회음악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4) 연주시간의 곡과 전공실기의 곡은 다른 곡으로 해야 한다.

✦ 교회음악과 실기교사 자격취득 안내

1. 실기교사자격증 취득요건(2011학번 이전 학번까지만 취득가능)

- (1) 아래에 해당하는 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 분	교과목명	정규등록학기수	이수학점
교직과목	교육학개론	교양선택	2학점
	실기교육방법론	전공선택	2학점
기본이수영역	시창·청음 1, 2	전공필수	6학점
	전공실기 1~8	전공필수	6학점

(2) 실기교사자격증 신청

4학년 2학기(11월중)에 실기교사자격증신청서(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작성하여 교육혁신처에 제출한다.

(3) 교직적성·인성검사(심층면담등)을 1회 이상 통과하여야 한다.

✚ 예술학부 실용음악과 교과과정표

학 년	구 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강의 실습	담당교수	과목명	학점강의 실습	담당교수
1	예술 학부	공통 필수	기초음악이론	2-2-0	김세희			
			시창청음 1	2-2-0	강주영	시창청음 2	2-2-0	조경화
	전공	필수	기초악기연주법1 ✓✓	3-1-2	최주영	기초악기연주법2 ✓✓	3-1-2	최주영
			재즈화성학1 ✓✓	3-3-0	최주영	재즈화성학2 ✓✓	3-3-0	최주영
			앙상블1	2-0-2	최영호	앙상블 2	2-0-2	최영호
			위클리1	2-0-2	진 주	위클리 2	3-0-3	진 주
			전공실기1	1-0-1	지도교수	전공실기2	1-1-1	지도교수
						메이커뮤직-에듀케이션1 ✓✓	3-1-2	진 주
		선택	대중음악사1(교합)	3-3-0	최주영	대중음악사2(교합)	3-3-0	최주영
			기독교와예술1(교합)	3-3-0	안찬용	기독교와예술2(교합)	3-3-0	안찬용
		보컬앙상블1	2-0-2	주 진	보컬앙상블2	2-0-2	진 주	
2	예술 학부	공통 필수	클래스피아노1	2-0-2	김세희	클래스피아노2	2-0-2	김세희
		선택	가사문학의이해	3-3-0	주 진		2-0-2	김세희
	전공	필수	기초악기연주법3 ✓✓	3-1-2	최주영	기초악기연주법4 ✓✓	3-1-2	최주영
			미디1	2-2-0	조현석	미디2	2-2-0	조현석
			앙상블 3	3-0-3	최영호	앙상블 4	2-0-2	최영호
			위클리 3	2-0-2	안찬용	위클리 4	3-0-3	안찬용
			전공실기 3	1-0-1	지도교수	전공실기 4	1-0-1	지도교수
						메이커-뮤직-에듀케이션2 ✓✓	3-1-2	진 주
		선택	보컬앙상블3	3-3-0	진주	보컬앙상블4	2-0-2	진 주
			뮤직비즈니스	3-3-0	안찬용	음악의이해와감상	3-3-0	안찬용

※ 예술학부 공통필수와 공통선택은 졸업 때까지 1번은 꼭 이수해야 함

※ 예술학부 공통선택은 졸업 때까지 이수하면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 ✓✓으로 기재된 강의는 1, 2학년 함께 수강하는 강의임.

※ <보컬코러스&콰이어>는 과목명을 <보컬 앙상블>로 변경함

※ <기초악기연주법>은 피아노로 편성함

※ <대중음악사1,2>, <기독교와 예술1,2> (교합)은 교양학부와 공동개설함

※ 실용음악과 2학년은 실용음악과 1학년 전공필수인 <재즈화성학1,2>를 졸업때까지 꼭 이수해야 함



✦ 실용음악과 교과목 설명

◆ 양상블 1~6

다양한 음악 스타일의 합주 경험과 곡의 내용과 해석에 대한 토론을 토대로한 편곡 실습을 진행하여 음악적 능력 향상과 능동적 연주의 기초를 마련함에 목표를 둔다. 실용화성학 1~4실용음악에서 이루어지는 화성 진행의 원리와 기법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서양 음악의 구조와 형식인 화음의 체계와 음악적 구성 원리 등을 교육한다.

◆ 위클리 1~6

무대연주 실연을 통해 무대 및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가고, 개인이 준비하고 학습한 음악 과정의 내용을 연주로 발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검증 받아 아티스트 완성에 따른 수정 및 보완을 이룬다.

◆ 보컬 코러스&콰이어 1~2

코러스, 콰이어 수업을 통해 바른 자세, 하나된 호흡, 발성의 합, 콰이어 요소(리듬, 프레이징, 그루브, 디션, 하모니)의 음악적 목표를 이루고 공연 및 레코딩, 다양한 환경과 무대에서의 매너와 발표, 운영을 배우는데 목표한다.

◆ 기독교와 예술

한국 대중문화 예술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예술의 역사와 작품들을 분석한다. 또한 문화예술과 음악을 교회사역과 예배, 선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 기독교적 문화예술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한다.

◆ 리듬연구

전세계 음악안에 있는 다양한 리듬의 역사와 배경을 분석하며 음악적, 문화적, 사회적 이해도를 넓혀 다양한 음악과 연주 활용도를 높이는데 목적인다.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이해와 사례와 함께 리더십커뮤니케이션, 조직커뮤니케이션, 스피치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과 예술, 문화, 인문학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학습한다.

◆ 컴퓨터와 미디 1~2

컴퓨터 음악의 기초와 미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기초 지식을 배우며 자신의 창작 음악을 컴퓨터 미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실제 음원을 실현화 하는 과정을 습득한다.

◆ 송라이팅 1~2

대중음악의 시대적인 흐름과 필요를 통찰하고 직접 작사, 작곡, 살연을 하여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음악적 역량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인다.

◆ 보컬 앙상블 1~2

공연, 레코딩의 실제 환경에서 함께 노래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커뮤니티 아트가 잘 운영되도록 하며, 음악 예술 현장에서 보컬 파트를 공연 및 콘텐츠에 적합 한 형태로 풍성하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플랫폼 비즈니스의 이해와 적용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음악 구성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항목들을 배운다. 음반제작, 기획력, 재정 운영, 창작, 미디어, 유통, 법적 권리, 계약, 비즈니스 등의 복합적 요소들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다.

◆ 뮤직&아트 1~2

공연 및 음반 등의 홍보 및 발매를 목적으로 아티스트의 이미지 등을 설정하고 자켓의 디자인, 뮤직 비디오,, 스타일링, 로고 홍보물제작 등의 비주얼 아트분야와 아이돌의 경우 세계관 구축 및 버추얼 브랜딩 이미징 분야로 세분화 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음악산업에서 음원매출 중심의 아티스트의 수요 및 매출이 급증하면서 앨범 제작 단계 및 단가의 효율성을 위해 그 지식의 중요성 또한 상승하였다. 1. 음악시장에 대한 분석 방법론(STP, PEST, SWOT, 3C등) 활용 기술을 학습하여 적용한다. 2. 디자인 편집 능력과 관련한 OA를 활용하여 기획된 앨범 콘셉트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비주얼 아트(앨범 자켓 디자인, 뮤직비디오 등)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레코딩 실습 1~2

기초적인 레코딩 이론과 편곡을 통해 홈 레코딩과 스튜디오 레코딩의 운영 방법을 확인한다. 프로듀서의 역할과 곡의 연출, 보컬에 따른 음악적 배치, 레코딩 운영에서 연주자와의 소통까지 실습하며 학습한다.

◆ 실용음악편곡법 1~2

공연, 음원 제작시 각 분야의 성격과 대중의 선호를 이해하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을 다양하게 편곡하여 음악의 완성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편곡 관련 프 로그램 활용하여 학습하며 실습한다.

◆ 창작과 감상

대중예술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시대적인 역사와 흐름이 되었던 음악 예술과 콘텐츠 영상을 접함으로써 음악의 지경을 넓히고 이후 새로운 창작 활동에 창조적 아이디어 어를 합하는 과정이다.

◆ 콘텐츠 기획

대중예술 문화인 공간, 공연, 음악, 시각,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의 흐름과 사례들을 분석하여 기획, 운영, 진행, 역할에 대해 이해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세계사로 본 팝음악사

국내외 대중음악의 역사를 통하여 실용음악을 이해하는데 목적하며 재즈와 흑인음악부터 현대의 EDM 힙합뮤직까지의 음악 스타일과 방식을 보며 이해하고 실연자로 서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음악과스토리텔링 기법연구

음악 작품에 녹여 있는 장르, 형식, 시간, 창작자의 모든 감성을 이해하며 테마가 되는 구성의 상상부터 다양한 효과음, 대사, 여백, 악기의 구성, 곡의 스토리와 연출까지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음악적인 다양한 기술과 기법을 연구한다.

◆ 졸업연주

음악, 이론, 실기, 감상, 평가 등 대학교 4년의 과정에서 학습한 모든 내용들이 합해진다. 보컬,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작곡이 실연으로 합하며 제작, 기획, 마케팅, 연출까지 총합으로 하는 졸업 공연으로 최종 발표한다.

◆ 콘서트기획&리허설

공연, 축제, 행사 등 리허설과 콘서트에 필요한 기획, 조직, 마케팅, 홍보, 운영, 세팅, 테크니컬리허설, 드라이리허설, 드레스 리허설 등 무대 연출의 원리를 세밀하게 학습하며 실무 능력을 향상하는데 목표한다.

◆ 기독교창작과 저작권리

이 과목의 학습을 통해 실용음악의 창작물, 또는 실연 등으로 발생된 자신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예술과 기술이 더해져 산업과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이를 둘러싼 다양한 법리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지식을 함양해 나간다

◆ 기독교컨텐츠의 비평과 분석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다양한 음악과 예술의 장르적 가치와 탁월성의 정도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을 배양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음악의 기술적인 연주방식 및 학습적 기능을 함양하도록 한다. 비평과 <비평>과 <분석>이 가지는 순기능을 대상 작품에 대한 판단등을 공식화하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 음악적 통찰력과 언어의 표현능력을 습득하는데 있다. 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고 표현하는 감수성과 관점을 형성한다.

◆ 가사문학의 기독교적 이해

가사가 지닌 은유적 메타포와 비유적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 노래 속 가사는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가치관, 문화를 반영하며 음가의 고저와 역동성에 맞춰 창작된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 가사문학의 특수성을 충분히 학습하여 음악의 표현적 기능을 활용하도록 한다.

◆ 대중예술과 기독교시민의식

음악은 세계사적으로도 다양한 의식의 방향과 함께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음악의 파급력과 대중의식의 흐름을 이해하고 음악의 커뮤니케이션적 기능을 함양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기독교시민의식이란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 또는 관습, 마음자세 등을 의미한다. 공동체로서 혹은 개인으로서 지녀야 할 대중문화예술인의 마음가짐등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한다.

2024 2025

서울장신대학교 요람

Seoul Jangsin University

Ⅳ 대학원

- 대학원 학칙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목회연구과정 운영내규
-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운영 시행세칙



+ 대학원 학칙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8조와 본 대학교 학칙 제1조에 규정된 교육 목적에 바탕을 두고 교육과 학사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학칙을 제정한다.
- 제2조 (설치대학원) ① 본 대학원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둔다. 일반대학원에는 신학전공과정(Th.M., M.A., Ph.D., D.M.)을 두고, 특수대학원에는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상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자연치유선교대학원, 예배찬양사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영성치유대학원, 예배리더지대학원을 둔다. (개정2016.5.4., 2017.4.5., 2022.3.2., 2024.11.6.)
- 제3조 ①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개정2022.03.02.)
- 제3조의 2 ① 삭제(2022.03.02.)
② 삭제(2022.03.02.)
③ 일반대학원 신학석사(Th.M.)과정은 입학 후 한 학기 종료 후, 1회에 한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 (학과와 정원) ① 각 대학원의 정원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전항의 각 대학원에는 2개 이상의 전공을 둘 수 있고, 전공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 2장 입학·편입학·재입학

- 제5조 (입학) 본 대학원 입학은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또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6조 (지원자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석사과정은 국내 또는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
② 박사과정은 국내 또는 외국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
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M.Div. 학위 소지자는 지도교수의 판단으로 Th.M. 과정에 있는 과목 중 4과목을 선수과목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2022.3.2., 2023.3.8.)
- 제7조 (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면접 및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및 실기시험에 의한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 (외국인전형)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 (지원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편입학)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제11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2015.9.2)

- 제12조 (정원 외 입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제4조의 규정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17>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 <개정 2020.6.17>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신설 2020.6.17>
 4.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신설 2020.6.17>
- ② 정원외 입학정원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기준(미인증)에 따라 대학원별 입학정원의 10%이내를 유지한다. <신설 2020.6.17>
- 제12조의2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계약학과와 명칭·학생정원 및 학위명 등은 계약학과 운영규정과 계약학과 운영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③ 계약학과와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 이수학점, 운영경비, 수업료, 설치·운영기간, 입학자격, 수업연한, 설치·운영기간 만료 전 폐지, 운영위원회 등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운영규정과 계약학과 운영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5.4.2.)
- 제13조 (입학취소) 입학시험의 부정행위 기타 구비 서류의 위·변조, 미제출 및 허위사실의 기재가 발견된 때에는 입학 이후에도 그 합격과 입학을 취소하며, 입학취소 통보 시점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당해학기 개시일(신·편입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수업료의 5/6 해당액
 - 당해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수업료의 4/6 해당액
 - 당해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수업료의 3/6 해당액
 -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제 3장 등록·휴학·복학·제적·자퇴

- 제14조 (등록) ① 매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학위과정 수료 후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연구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15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휴학기간은 수업연한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회의 기간은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위 제 2항은 군입대, 육아휴학으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9.7)
- 제16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은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허가한다.
- 제17조 (제적·자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 만료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4.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한 자
- ② 재학 중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장 수업연한 · 재학연한 · 학점 · 수료

- 제18조 (수업 및 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별표 2>에 의한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 본교 신학대학원(신학과, 목회연구과정)을 졸업하고 본교 석사학위(Th.M., M.A.)를 소지한 자는 1학기(6학점)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3. 6., 개정2025.9.3.)
- 제19조 (수업일수)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제20조 (수업형태) 수업은 일반대학원은 주간, 특수대학원은 특성상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주간 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또는 현장실습 수업 등을 병행할 수 있다.
- 제21조 (이수학점) ①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기를 원하는 자는 <별표 3>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각 학위과정과 다른 전공(분야) 이수자 또는 입학전형에서 선수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전공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 제22조 (교과과정)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23조 (학점교환제) ① 각 대학원은 타 대학 대학원과의 협정에 의하여 학점교환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다만 각 대학원 전공과정 졸업학점의 2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본 대학원 당해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 제24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성적	평점
A+	95 - 100점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F	69-	0

- ② 학점의 인정은 수업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각 대학원 전공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균평점은 3.0이상이어야 한다.
- ③ 신학대학원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해 적용한다.
- 제25조 (과정수료) ① 석사과정수료
1.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학위과정 수료로 인정한다.
 2. 과정수료의 시기는 매 학기 말일로 한다.
 3. 과정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박사과정수료
1.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학위과정 수료로 인정한다.
 (철학박사의 경우 24학점, 음악박사의 경우 24학점)(개정2025.9.3.)

2. 과정수료의 시기는 매 학기 말일로 한다.
3. 과정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 5장 공개강좌·연구과정

- 제26조 (공개강좌)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27조 (연구과정) ① 전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연구과정을 부설한 때에는 그 연구생의 입학자격, 신분,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이 정하는데 따른다.
- ②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소정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6장 학위수여

- 제28조 (학위수여) ①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고, 각 대학원별로 학칙시행 세칙에서 정한 소정의 학위취득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단 학위의 양식은 <별지서식 제1호, 제5호>에 의한다.
- ② 신학대학원에는 복수전공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2016.6.1) (2019.1.25)
- ③ 삭제(2022.03.02.)
- ④ 사회복지상담대학원에는 부전공과정을 둘 수 있으며, 부전공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인정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를 수여하고, 학위기에 부전공을 명시한다. (신설2016.3.2)
- ⑤ 상담심리대학원은 학위수여자에게 총장명의 상담심리사 자격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2025.04.02.)
- 제29조 (학위종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전공분야에 따라 정하되 그 분류는 <별표 4>에 의한다.
- 제30조 (논문작성) ① 학위청구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성하되,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요건으로 비논문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비논문수료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논문 학점에 해당하는 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3> 참조
- ③ 과정수료 후 비교과과정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논문신청서 및 연구윤리준수 서약서와 함께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
- 제31조 (논문제출) ① 학위청구논문은 논문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향 청구논문은 각 과정 수료학기 5월말 11월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학년한 이내에 제출하여 심사 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학위논문심사를 위해 학위청구논문제출자로부터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논문제출자격) 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졸업연주자격심사, 졸업작품 자격 심사)에 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작품, 연주)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6.1)
- 제32조 (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행한다.
- ② 각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위 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논문심사결과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논문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행한다.

④ 논문심사에서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심사위원 전원의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를 합격자로 한다.

제33조 (명예박사) ① 총장은 학술연구, 교계, 사회, 교육, 대학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일반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위의 수여는 명예철학박사(Ph.D), 명예신학박사(Th.D), 명예음악박사(D.M)중 해당되는 분야를 정하여 실행하며, 그 양식은 <별지서식 제 4호>에 의한다. (개정 및 신설 2024.4.3.)

제 7장 상 별

제34조 (장학금)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대학원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 (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한다.

제 8장 직 제

제37조 (조직) ① 각 대학원에는 원장, 교학부장 및 필요한 교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교학업무를 총괄한다.

제38조 (주임교수) ① 대학원 각 학과(전공)에는 1명의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임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분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학생의 이수과목을 지정하며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39조 (행정부서) 대학원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부서와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제40조 (대학원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구성은 교육혁신처장을 포함하여 각 대학원장(당연직)으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41조 (위원임기)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2조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원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
6. 장학 및 연구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3조 (소집 및 의결) ①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제44조 (학사운영위원회) ① 각 대학원에는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전공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 제45조 (위원임기)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6조 (심의사항) 학사운영위원회는 각 대학원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퇴학, 과정의 수료 및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신설과 폐지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 및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
 4. 각 대학원의 규정 등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과(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7조 (소집 및 의결) ① 학사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사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장 보 칙

- 제48조 (준용규정) 본 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단,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49조 (학칙개정절차) ① 본 대학원 학칙변경은 대학원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학원 학칙에 따른 제 규정 제정 및 변경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0조 (시행세칙) 본 학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교역대학원, 목회상담대학원은 폐원하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원되는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한 학생에게는 이 학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3. 이 개정학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 학칙 시행으로 폐전공되는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한 학생에게는 이 학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5. 이 개정학칙은 200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학칙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학칙은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학칙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학칙은 201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3.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 학칙 시행으로 폐전공되는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한 학생에게는 이 학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14.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 학칙 시행으로 대학원명이 변경된 대학원은 2010년 9월 1일부로 새롭게 적용한다.
15.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학칙은 201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학칙은 201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개정학칙은 201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19.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 학칙 시행으로 졸업학점이 변경된 대학원은 2012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20. 이 개정학칙은 2012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21.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 학칙 시행으로 2012학년도 사회복지대학원 신입생부터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을 <별표2>와 같이 적용한다.
22. 이 개정학칙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3.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 학칙 시행으로 2012학년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과 사회복지대학원 입학정원을 <별표1>과 같이 적용한다.
24. 이 개정학칙은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5.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 학칙 시행으로 2012학년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과 사회복지대학원, 자연치유선교대학원 입학정원을 <별표1>과 같이 적용한다.
26. 이 개정학칙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개정학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개정학칙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29.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30.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 학칙 시행으로 2013학년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신학대학원, 사회복상담지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예배찬양사역대학원 입학정원을 <별표1>과 같이 적용한다.
 31.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 학칙 시행으로 대학원명이 변경된 대학원은 2012년 10월 4일부로 새롭게 적용한다.
 3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 학칙 시행으로 2013학년도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부터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을 <별표2>와 같이 적용한다.
 33.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4.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 학칙 시행으로 2013학년도 자연치유선교대학원 신입생부터 수업연한과 행한다.
 39. 이 개정학칙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0. 이 개정학칙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1.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42. 이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3. 이 개정학칙은 201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44. 이 개정학칙은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45. 이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46. 이 개정학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47. 이 개정학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8. 이 개정학칙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49. 이 개정학칙은 201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50. 이 개정학칙은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51.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단, <별표1>의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설전공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52. 이 개정학칙은 2022년 3월2일부터 시행한다.
 53. 이 개정학칙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53. 이 개정학칙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단, 학위수여(표기방법)은 <별표1>과 같이 2024년도부터 적용한다.
54. 이 개정학칙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55. 이 개정학칙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56. 이 개정학칙은 202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57. 이 개정학칙은 2025년4월2일부터 시행한다.
 58. 이 개정학칙은 2025년5월12일부터 시행한다.
 59. 이 개정학칙은 2025년6월4일부터 시행한다.
 60. 이 개정학칙은 2025년9월3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2024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대학원별 학위과정 전공분야 및 입학정원(개정 2014.5.14., 2015.3.26., 2015.6.3., 2015.5.4., 2016.6.1., 2017.4.5., 2018.12.5., 2019.4.3., 2022.3.2., 2022.09.07., 2022.12.7., 2023.10.4., 2024.11.06., 2025.5.12.)

구분	대학원명	과 정	계 열	학위수여(표기방법)	입학정원	비고
정원내	일반대학원	신학석사(Th.M.)	인문사회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예배설교학, 선교학, 상담학, 기독교교육	13	
		문학석사(M.A.)	인문사회	신학, 상담, 기독교교육		
		박사 철학박사(Ph.D.) 음악박사(D.M.)	인문사회	신학(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예배설교학, 선교학, 상담학, 디아코니아, 기독교교육학, 영성학), 사회복지학, 음악학(피아노, 성악, 오르간, 합창지휘), 자연치유학, 음악신학(영어과정_외국인)	16	
	신학대학원	교역학석사(M.Div.)	인문사회	신학, 신학과사회복지학	50	
	사회복지상담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M.S.W.)	인문사회	사회복지학	5	
	문화예술대학원	음악석사(M.M.)	예체능	성악, 오르간, 피아노, 지휘	6	
	자연치유선교대학원	자연치유선교학석사(M.N.M.)	인문사회	자연치유학	10	
	예배찬양사역대학원	예배찬양사역학석사(M.W.M.)	인문사회	예배찬양사역학(예배인도, 예배기획, 예배음악연주, 음악감독(뮤직디렉터))	16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석사(M.C.P.)	인문사회	상담심리	5	
	예배리터지대학원	예배리터지석사(M.W.L.)	인문사회	예배학(예배역사, 예배신학, 예배음악, 의례)	5	
정원외	영성치유대학원	영성치유석사(M.S.H.)	인문사회	영성치유	5	
	글로벌에큐메니칼대학원	에큐메니칼석사(M.Th.)	인문사회	신학	-	
계					131	

■ 별표 1-1. 사회복지상담대학원(계약학과)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

대학원명	명 칭	정 원(명)	학 위 명
사회복지상담대학원	사회복지학	4	사회복지학석사(M.S.W.)

■ 별표 2. 대학원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개정 2016.5.4., 2017.4.5., 2022.3.2., 2024.11.06., 2025.9.3.)

대학원명	과 정	수업연한	재학연한	비고
일반대학원	석사	4학기	4년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경우 7학기
	박사	철학박사	4학기	
		음악박사	4학기	
신학대학원	석사	6학기	6년	
사회복지상담대학원	석사	4학기	4년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4학기	4년	
자연치유선교대학원	석사	4학기	4년	
예배찬양사역대학원	석사	4학기	4년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4학기	4년	
예배리터지대학원	석사	4학기	4년	
영성치유대학원	석사	4학기	4년	

■ 별표 3. 대학원별 전공분야 이수학점(개정2014.11.5., 2015.6.3., 2016.5.4., 2017.4.5., 2017.12.6., 2022.3.2., 2022.10.5., 2023.3.8., 2024.11.06., 2025.9.3.)

대학원명	과 정	최저이수학점	비고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4학점(논문학점 6학점 포함) 또는 과목으로 대체	졸업논문 6학점외에 전공과목 12학점(4과목)이상, 타분야과목 3학점(1과목)이상
	문학석사학위과정	24학점(논문6학점) 포함 또는과목으로 대체	
	박 사	철학박사(Ph.D.)	33학점(논문학점 9학점 포함)
		음악박사(D.M.)	33학점(논문학점 6학점 포함)
신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	95학점	
사회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7학점 (20170이전 입학생은 36학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4학점(연주/논문학점 3학점 포함)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8 학점(연주/논문학점 2학점 포함)
자연치유선교대학원	석사학위과정	36학점	
예배찬양사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40학점(논문학점 4학점 포함) (2008 이전입학생은 30학점 / 논문학점 4학 점 포함)	
		52학점(신학복수전공) : 성서신학분야, 조직신학분야, 교회사분야, 실천신학분 야(3학점 4과목)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7학점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36학점
예배리터지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영성심리치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30학점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36학점



■ 별표 4. 대학원별 수여학위(표기방법) (개정2015.6.3., 2016.5.4., 2016.6.1., 2017.4.5., 2018.5.2., 2024.11.06., 2025.6.4.)

대학원명	전공분야	학위구분	학위수여(표기방법)	비고
일반대학원	신학	학술학위	신학석사, 문학석사	
	신학	학술학위	철학박사, 음악박사	
신학대학원	신학	전문학위	교역학석사(신학전공) 교역학석사(신학전공과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상담대학원	사회복지학	전문학위	사회복지학석사(부전공:상담심리학)	
문화예술대학원	성악, 오르간, 피아노, 지휘	전문학위	음악석사 (성악, 오르간, 피아노, 지휘)	
자연치유선교대학원	자연치유학	전문학위	자연치유선교학석사	
예배찬양사역대학원	예배인도 예배기획 예배음악연주 음악감독(뮤직디렉터)	전문학위	예배찬양사역학석사 (예배인도, 예배기획, 예배음악연주, 음악감독(뮤직디렉터))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	전문학위	전문학위	
예배리터지대학원	예배학(예배역사, 예배신학, 예배음악, 의례)	전문학위	예배리터지석사	
영성치유대학원	영성치유	전문학위	영성치유석사	

[별지서식 제1호]

석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대학교 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장신대학교 총 장 박사 (인)

학위번호 : 서울장신대 (석)



[별지서식 제1-1호]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대학교 신학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
(신학전공과 _____ 전공)을 이수하고 교역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서울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박사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장신대학교 총 장 박사 (인)

학위번호 : 서울장신대 (석)

[별지서식 제2호]

제 호

연구실적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연구과정에서 1년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인)



[별지서식 제3호]

제 호

수료증서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서 소정의
연수를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박사 (인)

[별지서식 제4호]

명박 제 호

학 위 기

국 적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본 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 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장신대학교 총 장 박사 (인)



[별지서식 제5호]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
하고 박사(전공) 학위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장신대학교 총 장 박사 (인)

학위등록번호 : 서울장신대 (박)

[별지서식 제6호]

제 호

수료증서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전공)
에서 소정의 연수를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박사 (인)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서울장신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사회복지상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자연치유선교대학원, 예배찬양사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영성치유대학원, 예배리더지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칙 및 학위수여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 2017. 4. 5., 2024. 11. 6.)

제2장 입 학

제2조 (입학자격) ① 석사과정의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② 박사과정의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자(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제3조 (전형방법) ① 입학에 위한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전형의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입학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의 2 (토요과정) (삭제 2025. 06. 04.)

제3장 등록·휴학·복학·재입학 및 편입학

제4조 (입학등록) ① 소정의 입학전형 절차를 거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제 1항의 등록절차를 소정 기일 내에 마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등록, 감면 및 등록금반환)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처리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기타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면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자퇴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당해학기 개시일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당해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4/6 해당액
- 당해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6 해당액
-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제6조 (학점등록) ① 각 대학원의 수업년한에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족 학점수가 3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족 학점수가 4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점등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논문등록) <신설 2016.9.7>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논문등록을 할 경우에는 석사과정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1/10, 박사과정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1/7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논문 외에 과목을 함께 추가로 수강할 경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휴학원제출) 입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원을 교육혁신처에 제출,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일반휴학) ① 개인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 이상 계속하여 수학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 3/4선 이내로 한다.

- 휴학원서(소정서식) 1통

- 증빙서류

가) 질병으로 휴학하는 경우 : 전문의가 발행하는 진단서 1통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도저히 수학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증빙서류

③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수업일수 1/3선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복학 시 기 납부한 등록금을 인정하고, 수업일수 1/3선을 초과한 시점에서 휴학할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일반휴학의 제한) 당해 학기 신입학자의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등록을 필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일반휴학자의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개시일 30일 이내에 복학원서(소정서식)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적된다. 다만, 대학원 학칙 제 15조에 정한 휴학기간 내에서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연장원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입대휴학) ① 입대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재학 또는 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 의무 개시일 전에 군입대 휴학원서(소정서식)와 병역의무부과통보서(입영명령서 등) 사본을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 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입대휴학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보며, 이때 학적은 입대휴학 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③ 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교육혁신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휴학 처리가 되지 아니한 자는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다.

제11조의 2 (육아휴학) ① 여학생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했을 경우와 만 16세 이하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학 중 1년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7.> <개정 2024.11.06.>

② 육아휴학 기간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1년간 휴학할 수 있다.

③ 육아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원서(소정서식) 1통

- 증빙서류

가) 양육으로 휴학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나) 임신 및 출산으로 휴학하는 경우 : 임신확인서 및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할수 있는 진단서나 서류
- 제12조 (입대휴학자의 복학) ① 입대 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학기에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휴학원서(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입대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서(소정서식)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교육혁신처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입대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된다.
- 제13조 (재입학의 절차 등) ①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입학원서(소정서식)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고 등록횟수와 기취득 학점수에 의한 학기 조정을 받아 재입학 심사에서 재입학 허가를 받은 다음 소정의 재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재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제14조 (재입학심사) 재입학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 (특례재입학) ① 특례 재입학 대상은 본교 대학원 과정에서 재학연한이 경과되어 제적된 자로 학위논문 및 작품을 제출하지 못한 수료자에 한 한다. 단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특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특례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특례 재입학 후 재학연한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위를 받을 수 없다.
 ③ 특례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재입학한 학기부터 석사는 1년, 박사는 2년으로 하며, 휴학을 할 수 없다.
 ④ 특례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특례 재입학 청원서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특례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기의 재입학금과 논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매학기 논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특례 재입학이 허가된 자가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 제16조 (편입학 지원자격)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편입학전 대학원에서의 정규등록 학기 수와 이수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지원자격	
		정규등록학기수	이수학점
석사과정	2	1학기 이상	3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박사과정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4	3학기 이상	18학점 이상
	5	4학기 이상	24학점 이상

- 제17조 (편입학전형) 편입학전형은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 제18조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편입 이전 종전 대학원의 학점 인정은 석사과정의 경우 최대 12학점 까지, 박사과정의 경우 최대 18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제19조 (편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편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각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기에 따라 적용 받는다.

제4장 전공변경·수강신청·시험성적·출석

- 제20조 (전공변경) ① 전공변경은 제출된 신청서를 해당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6.6.1)
- ② 전공변경은 해당 대학원의 입학년도 해당 정원의 결원만큼 승인할 수 있다. (단, 일반대학원Th.M. 과정의 경우 입학 후 첫 학기(2학기 시작 전)에 해당 전공 분야 교수들의 동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 제20조의 2 (복수전공) ① 이중전공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제1전공 학위를 수여하고 학위기에 제2전공을 명시한다. (개정2016.6.1)
- ② 예배찬양사역대학원의 신학이중전공을 선택한 경우 총5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 1) 신학이중전공신청서 제출(개강후 별도 공지함)
- 2) 신학과목 4과목 12학점(성서분야, 조직신학분야, 교회사분야, 실천신학분야)을 예배찬양사역대학원이나 신학대학원에서 수강한다. 과목선정은 예배찬양사역대학원장의 허락을 받는다. (개정2016.6.1)
- ③ 사회복지상담대학원의 상담학 부전공을 선택한 경우 총 27학점 중 상담심리학과목 3과목 9학점을 사회복지상담대학원이나 타 대학원 상담심리학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타 대학원 상담심리학과목 수강은 사회복지상담대학원장의 허락을 받는다. (개정2016.11.2., 2017.12.6., 2025.6.4.)
- ④ 각 대학원의 이중전공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 제20조의 3 (집중강좌) 집중강좌는 교수 및 강좌 특성상 단기간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좌를 말하며, 학기 중이라도 다른 교과과목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집중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제21조 (수강신청 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의 교육과정 특성상 해당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3학점 범위내에서 초과 이수할 수 있으나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 ② <삭제>
-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제22조 ② 복학 또는 재입학생은 복학 또는 재입학이 허가된 날로부터 소정 기일 내에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지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학기 교과목의 수강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며, 임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이 제출되어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⑤ 신청된 수강과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시간표 변경, 폐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변경할 수 있다.
- ⑥ 삭제(2022.3.2.)
- ⑦ Th.M과정의 경우 졸업논문 6학점외에 전공과목 12학점(4과목)이상, 타분야과목3학점(1과목)이상 수강 할 수 있다. (신설2016.6.1)
- ⑧ 박사과정의 경우-타전공과목 6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2016.6.1)
- 제22조의 2 (수강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된 기간(수업일수 1/3선 후 1주내)에 해당 과목 담당교수와 교육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최소이수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단, 징계, 질병 등의 경우는 수강철회 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상에는 “W”(Withdraw)로 기재된다.
- 제23조 (수료학기의 인정기준)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학기를 인정하는 기준은 정규등록학기수와 수료 학기말 시점의 이수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2.)



학위과정	석사·박사	석사·박사	석사·박사	석사·박사	석사	박사
수료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5학기
정규등록 학기수	1학기 이상	2학기 이상	3학기 이상	4학기 이상	5학기 이상	5학기 이상
이수학점	6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24학점이상 (단, 교과목 추가 수강자의 경우 3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제24조 (시험) ① 매 학기마다 실시하는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구분하며, 정기시험은 학사력에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고, 임시시험은 교과목 담당자가 판단하여 실시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교육혁신처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25조 (성적평가) 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평상시의 연구성과와 출석성적, 학과목 시험으로서 평가한다.

② 시험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합격점을 70점 이상으로 한다. 낙제된 과목이 필수 과목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취득성적이 79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를 재수강 할 수 있다.

④ 성적평가는 다음과 같은 표기로 환산한다.

등급	성적	평점
A+	95 - 100점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F	69-	0

제26조 ⑤ 성적 평점 평균은 교과목의 학점 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신청 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성적열람)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최종 성적 제출 전 학생들에게 성적을 공고하여 학생들이 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착오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성적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확인·정정하여 최종 성적을 교육혁신처에 제출한다.

제27조 (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총장의 직권으로 취소한다.

- 시행착오에 의한 성적

- 정확 이상의 정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총 수업일수 3/4이상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학기 전체 성적

- 총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에 미달한 과목의 성적

- 소정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성적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 학점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입대 휴학자에게 주어진 성적
- 시험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 취소한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 ② 교육혁신처에 제출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전산입력 착오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정정을 청원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28조 (출석) ① 학생은 매 학기마다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 ② 매 학기 결석일수가 매 학기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과목의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 ③ 다음의 사유로 결석한 자는 증빙서류를 교육혁신처로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가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사망 (5일 이내) <2014.5.7개정>
 - 병역법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한 소요기간
 - 본인의 중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이와 동등한 질병(2주 이내) <2014.5.7개정>
 -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회의나 행사에 참가한 해당 시간 <2014.5.7개정>
 - 교육실습, 학과 학술 답사여행 등으로 인한 소요기간
 - 기타 총장이 허락한 행사 등의 참석으로 인한 소요기간
 - 배우자의 출산(3일 이내) <2014.5.7신설>
 - 총회 및 노회고시 응시(해당일) <2014.5.7신설>

제5장 이수학점·학점인정·종합시험

- 제29조 (이수학점) ① 각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대학원 학칙 <별표 3> 대학원별 전공분야 이수 학점표를 따른다.
- ② 재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타 전공 또는 타 대학원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타 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학위논문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을 추가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을 논문 학점에 해당하는 학점만큼 추가로 수강하여야 한다.
- ④ 타 대학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석사과정은 12학점까지,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0조 (복학, 재입학자의 학점이수) 복학 또는 재입학자는 입학년도 교육과정으로 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을 경우 복학 학기 기수의 학생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기타의 사유로 인해 해당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임교수와 교육혁신처의 지도를 받아 이수하여야 한다.
- 제31조 (전공변경자의 학점이수) 전공을 변경한 자는 변경전 전공의 성적증명서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 변경된 전공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과목은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제32조 (입대휴학자의 학점인정) ① 재학생이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이수하고 입대 휴학하는 경우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혁신처에 입대 휴학 사실을 신고하고 성적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점인정 신청과목의 담당교수는 입대휴학 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제33조 (학점 및 시간) 학점은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4조 (종합시험) 종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설2016.6.1)



1. (응시자격)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별도로 정한다(박사과정운영세칙 제13조)
 -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3차 학기이상(예배찬양사역대학원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해당학기포함 18학점이상 취득예정자로 2017년도 입학생부터 해당된다.
2.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한다.
3. (시험종류)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회음악대학원, 예배찬양사역대학원의 경우는 졸업연주자격심사, 졸업작품자격심사로 한다.)
4. 종합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①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박사과정운영세칙 제13조
 - ② 일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각 전공마다 학생이 수강한 과목중 학생이 신청한 2과목에 대하여, 1과목 당 시험시간은 1시간으로하며, 학기 중(1학기는 5월, 2학기는 11월)에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한다. 1과목 합격하였을 경우는 나머지 과목을 1학기 후 다시 응시할 수 있다.
5. (출제위원) 출제는 소속 대학원장이 과목별 해당 과목교수에게 의뢰한다. (단, 박사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6. (배점 및 합격기준) 모든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의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각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7. (합격결정) 종합시험의 시험결과는 소속대학원장의 결재로 한다.

제6장 학생활동

- 제35조 (원우회 설치 및 승인)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건전한 학풍을 고취하고, 봉사 활동을 권장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배 동문과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우회(이하 “원우회”라 칭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36조 (운영과 활동 및 승인) 원우회의 기본조직, 회칙의 개정, 예산 및 결산안과 그 집행 및 학생 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혁신처의 지도를 받는다.
- ① 학생들은 학내외에서 정치적 목적의 단체 활동이나 정치활동 그리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
 - ② 학생들의 모든 집회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도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교내외의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혁신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 (단체의 조직) 학생들이 단체(예, ‘동아리’)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학위논문

제38조 (논문지도교수 배정) (삭제 2016.6.1)

제38조의1 (학위논문제출자격) 재학 중 석사·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신설2016.6.1)

1. 석사학위과정

- ① 종합시험(졸업연주자격심사, 졸업작품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 ②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개정2025.9.3.)
- ③ 일반대학원(Th.M., M.A.)과 사회복지상담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자연치유선교대학원은 4학기 이상, 신학대학원은 6학기 이상, 예배찬양사역대학원은 5학기 이상 등록한 자, (단, 편입생의 경우 등록학기는 별도로 한다.)
- ④ 각 대학원이 요구하는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
- ⑤ 예배찬양사역대학원은 졸업논문, 졸업연주, 졸업작품 중 1개를 선택한다.
- ⑥ 교회음악대학원은 졸업연주, 졸업논문 중 1개를 선택한다. (신설2023.10.5.)

2. 박사학위과정

- ① 종합시험에 대해서는 일반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3.2.)
- ②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개정2025.9.3.)
- ③ 철학박사는 5학기 이상(단,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7학기이상), 음악박사는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일반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3.2.)

제38조의2 (논문지도교수배정) (신설2016.6.1)

- ① 각 학생은 논문관련분야에 따라 전공관련 교수(학과)와 상담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되, 교육혁신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학위과정의 마지막 학기 시작 전까지 결정한다. 단, 휴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가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 기간내에 결정해야 한다.
- ② 논문지도교수는 논문분야에 따라 각 대학원 전임교수 중에서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교외 인사 중에서 부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논문지도와 논문심사는 연구학기 중에 있는 전임교수에게도 위촉할 수 있다.
- ③ 선정된 논문지도교수를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혁신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 (논문지도) ① 재학생은 석사과정의 경우 최소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다음 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논문지도를 받아야한다.

- 1. 최소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음.
- 2. 교과과정 내의 '박사연구'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2회(6학점)이내의 개별적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②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지도결과보고서를 논문지도 해당 학기말에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최초 논문지도학기가 개시된 후 60일 이내에 논문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삭제>
- ⑤ 논문지도 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논문지도교수가 판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 해당 학생은 다음 학기에 계속하여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⑥ 효율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 수를 논문지도교수 1인당 5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논문작성을 위하여 실험실습이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39조의 2** (졸업논문 발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Th.M.)과 박사과정 졸업대상자는 A4 20매의 졸업논문 요약본(Proposal)은 1학기 경우 5월 중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5월말에 졸업논문 내용으로 Colloquium에서 발표, 2학기 경우 11월중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11월말에 졸업논문 내용을 Colloquium에서 발표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
- 제40조** (학위논문제출) ① 석사·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고 논문지도교수의 날인 및 승인을 받은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와 논문원고 4부를 소정기일 내에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삭제 2016.3.1)
- ④ 예배찬양사역대학원은 졸업논문, 졸업연주, 졸업작품 중 1개를 선택한다.
- 제41조** (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5월(11월)말까지 실시하며, 논문심사용 원본 4부를 논문심사 2주전까지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내용 심사 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종합 판정한다.
- ③ 논문심사 및 구두시험은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과정의 경우 선정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박사과정의 경우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공히 심사위원 전원의 평가가 각각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 ④ 논문내용 심사와 구두시험에 합격하면 논문이 통과된 것으로 본다.
- ⑤ 논문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논문에 대한 수정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 받은 날(심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의 수정완료 확인을 받은 다음 인쇄하여야 한다.
- 제42조** (학위논문제작) ① 석·박사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통과된 학생은 인쇄논문 9부(검정색 하드카바로 금박양장으로 하고 그 중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위논문의 제작은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제43조** (졸업연주 및 작품)
1. 졸업연주
- ① 교회음악대학원과 예배찬양사역대학원은 졸업연주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
- ② 졸업연주는 과정 수료 후 2년 이내로 한다.
- ③ 졸업연주는 오디션을 거쳐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 ④ 실기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⑤ 과정 평점이 3.0 이상인 자.
- ⑥ 과정 최저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 ⑦ 졸업연주 과제는 20분 내외로 각 전공별 자유곡으로 한다.
2. 졸업작품
- ① 예배찬양사역대학원은 졸업작품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
- ② 졸업작품은 앨범제작, 예배기획등이 포함된다.
- ③ 과정 평점이 3.0 이상인 자.

제8장 교과목 추가수강, 학위과제 또는 학위인정시험

- 제45조 (교과목추가 수강, 학위과제제출 또는 학위인정시험 신청) ① 학위논문제출을 갈음하여 교과목을 추가 수강하거나 학위과제의 제출 또는 학위인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력에 명시된 소정의 기한내에 해당 신청서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 소속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위논문제출을 신청하였으나 중도에 교과목 추가 수강이나 학위과제 제출 또는 학위인정시험을 원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사유서와 함께 변경신청서를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말 까지, 박사과정의 경우 6학기말 까지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6조 (교과목추가 수강, 학위과제제출 또는 학위인정시험 응시자격) 학위논문제출을 갈음하여 교과목을 추가 수강하거나 학위과제의 제출 또는 학위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②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③ 각 대학원이 요구하는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B 이상인자. 다만, 동일한 학기에 학위인정 시험에 응시하고 교과목 수강을 하는 경우 해당학기 교과목을 포함한 평균성적이 B 이상이 되지 못하면 취득한 점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소속 대학원장으로부터 교과목의 추가 수강 또는 학위과제 제출 승인을 받은 자
⑤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 이내인 자
- 제47조 (교과목추가 수강기한) 학위논문제출을 갈음하는 교과목 학점 추가 수강을 수업연한 이내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점등록을 하여 수강할 수 있다.
- 제48조 (학위과제의 심사) ① 학위과제의 심사는 5월(11월)말에 실시하며, 심사 받을 과제를 심사 2주전까지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과제 심사 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종합 판정한다.
③ 학위과제는 총장이 승인한,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3인 이상의,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의, 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5인 이상의 평가가 각각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④ 학위과제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학위과제에 대한 수정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 받은 날 (심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의 수정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49조 (학위인정시험의 실시) ① 학위인정시험은 총장이 과목 및 범위를 지정하여 시행하되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위인정시험은 매 학기중에 실시한다.
③ 학위인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0조 (학위인정시험의 출제 및 채점) ① 학위인정시험의 출제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학위인정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채점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1조 (학위인정시험의 합격) ① 학위인정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학위인정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 응시할 수 있다.



제 9장 연구과정

제52조 (연구과정) 연구과정은 실무에 관련된 학문과 새로운 학문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과정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 10장 제증명

제53조 (제 증명발급) ① 각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국문·영문증명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수료(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재적증명서
- 휴학증명서
- 기타 증명서

② 증명서는 본인 신청(소정서식)에 의하여 총장이 발행한다.

③ 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54조 (증명수수료) 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각 대학원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장 계절학기

제55조 (계절학기) ① 계절학기는 여름,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필요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은 개설하지 아니한다.

② 정규학기 수업을 계절학기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 (개설교과목) ① 개설 교과목은 교육혁신처장이 따로 정하여 발표한다.

② 계절학기 학과목 개설은 본 학기에 개설하지 않은 학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 MOU대학의 학점교류학생을 대상을 한 강의는 교육혁신처장의 승인으로 개설할 수 있다

제57조 (수업시간) 1학점 당 강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7조의2 (수업일수) 계절학기 실 수업일수는 15일 이상, 1일 수업시간이 해당 시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8조 (수강신청)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 (성적처리)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과 학점은 별도학기로 처리하며, 졸업학점 및 총 평점평균에는 포함된다.

제60조 (등록금) ① 계절학기에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절학기 등록금은 본 학기 등록금에 준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목의 특성, 수강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성지순례·수도원순례등 본교가 기획하여 개설한 학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참가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등록금을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6.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 학칙 시행으로 대학원명이 변경된 대학원은 2010년 9월 1일부로 새롭게 적용한다.
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6.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은 2011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1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9.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30.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3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32.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33.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34.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35.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6월4일부터 시행한다.
- 3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9월3일부터 시행한다.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 108조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에 입각한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신학을 깊고 바르게 연구하고 교육하므로 교역자로서 지도자적 인격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여 교회와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 대학원은 서울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신학대학원)이라 한다.
- 제3조 (과정) 신학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주간, 야간)과 연구과정을 둔다. (개정2022.09.07.)
- 제4조 (학과 및 정원) 신학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신학과-50명 (개정2025.5.12.)

제 2장 입학 및 편입

- 제5조 (입학자격) 본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세 후 3년 이상 된 자로 본 교단 산하의 노회장 추천서(타 교단 출신은 교단 소속증명서)를 받은 자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한다. (개정2015.10.2)
- ①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 ② 교육부장관이 위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자.
 - ③ 목사안수를 이미 받은 자는 신학대학원 응시 자격이 없음
 - ④ 특별전형에서 총동문회추천자는 영성과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며 학교, 사회, 교회 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장래가 촉망되는 자로서 총동문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자. (신설 2015.10.2)
 - ⑤ 특별전형에서 본교 학부 및 대학원의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본교 평생교육원 출신인 자. (신설205.10.2)(개정2016.5.4, 2019.1.25, 개정2021.5.6)
 - ⑥ 본 교단 총회 인정 선교사 및 그 배우자로서 5년 이상 봉사한 자, 그 자녀는 현지 거주 5년 이상으로 한국어 수학이 가능한 자(신설2019.1.25)
 - ⑦ 본교가 인정하는 선교단체 및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NGO의 전임 봉사자,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3년, 사회복지기관에서 전임으로 5년 이상 사역한 자 (신학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신설2019.1.25)(개정 2020.9.2)
 - ⑧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점역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기관에서 종사한 자. (신설2019.1.25)
 - ⑨ 안수집사, 장로, 권사로 2년 이상 교회봉사에 시무한 자. (신설2019.1.25)(개정2021.5.6)
 - ⑩ 목사 사모로 5년 이상 사역한 자. (신설2019.1.25)
 - ⑪ 스포츠 및 문화예술계 3년 이상 종사자로서 선교소명이 있는 자(신설2019.1.25)
 - ⑫ 군대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한 자 가운데 목회 혹은 선교소명이 있는 자(신설2020.9.2)
 - ⑬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목회 혹은 선교소명이 있는 자(신설2020.9.2)
 - ⑭ 본교가 인정하는 사회저명인사로서 전임 교역의 사명이 있는 자 (신학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신설2020.9.2)
- 제6조 (전형방법)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9.4.3, 2021.5.6)



- 제7조 (편입)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타 신학대학원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편입학을 할 수 있다.

제 3장 등록·휴학·복학·재입학

- 제8조 (입학등록) ① 소정의 입학전형 절차를 거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제 1항의 등록절차를 소정 기일 내에 마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 (등록, 감면 및 등록금반환)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처리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기타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면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자퇴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당해학기 개시일 (신, 편입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2.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3. 당해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4/6 해당액
4. 당해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6 해당액
5.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제10조 (학점등록) ① 신학대학원의 수업연한에 등록을 필요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학점등록을 허가하며 이에 준하는 수업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② 학점등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제11조 (휴학원칙) 입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원을 교육혁신처에 제출,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 (일반휴학) ① 개인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 이상 계속하여 수학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 3/4선 이내로 한다.
1. 휴학원서(소정서식) 1통
2. 증빙서류
가) 질병으로 휴학하는 경우 : 전문의가 발행하는 진단서 1통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도저히 수학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증빙서류
③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수업일수 1/3선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복학 시 기 납부한 등록금을 인정하고, 수업일수 1/3선을 초과한 시점에서 휴학할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일반휴학의 제한) 당해 학기 신입학자의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등록을 필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14조 (일반휴학자의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개시일 30일 이내에 복학원서(소정서식)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적된다. 다만, 대학원 학칙 제 15조에 정한 휴학기간 내에서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연장원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 (입대휴학) ① 입대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재학 또는 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 의무 개시일 전에 입대 휴학원서(소정서식)와 병역의무부과통보서(입영명령서 등) 사본을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입대휴학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보며, 이때 학적은 입대휴학 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③ 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교육혁신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휴학 처리가 되지 아니한 자는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다.
- 제16조 (입대휴학자의 복학) ① 입대 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학기에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휴학원서(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입대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서(소정서식)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교육혁신처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입대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된다.
- 제18조의 2 (육아휴학) ① 여학생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했을 경우와 만 16세 이하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학 중 1년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7.> <개정 2024.11.06.>
② 육아휴학 기간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1년간 휴학할 수 있다.
③ 육아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원서(소정서식) 1통
- 증빙서류
가) 양육으로 휴학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나) 임신 및 출산으로 휴학하는 경우 : 임신확인서 및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할수 있는 진단서나 서류
- 제17조 (재입학의 절차 등) ①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입학원서(소정서식)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고 등록횟수와 기취득 학점수에 의한 학기 조정을 받아 재입학 심사에서 재입학 허가를 받은 다음 소정의 재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수업 연한·이수과목·학점 및 수료

(수업 연한) 본 신학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3년(6학기)이상으로 하며 재학 연한은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18조의2 (교과과정) 본 과정의 학생이 이수해야 할 과목은 별도의 교과과정 표를 따른다. (신설 2016.6.1)

제18조의3 (복수전공) 신학대학원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 취득을 위한 교역학석사(M.Div)와 사회복지학석사(M.S.W.)의 복수전공과정을 둘 수 있다. 이 복수전공자에게는 교역학석사 학위와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신학비전공자의 경우 기존 95학점 이외에 9학점을 추가하여 104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신학전공자의 경우 기존의 90학점 내에 복수전공학점을 포함해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2017.3.16) (2019.1.25)

제19조 (이수과목) ① 신학대학원 학생이 복수전공수료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별지 교과과정표에 따른다. (개정 2016.6.1)(2019.1.25)

② 정원의 외국인 입학생 :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며, 사역복수전공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제19조의2 (편입필수과목) 편입생은 편입학년 이상의 모든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학전공 상위학위 소유등의 이 유가 있을 때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2016년 편입생은 입학당시에 지정된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

제20조 (취득학점 및 출석) ① 신학대학원 학생은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해야 하고 최종학기를 제외하고는 매 학기 11 학점 이상 23학점 이하를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4.3.5)

②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은 95학점 이상(헬라어, 히브리어 8학점 포함)을 취득해야 하며 본교단 7개신학 대학교 신학과 졸업자는 90학점 이상(헬라어, 히브리어 8학점 포함)을 취득해야 한다. 신학대학원 2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65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3학년 편입시에는 30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14.6.10., 2016.6.1)

③ 신학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6.6.1)

④ <삭제>

⑤ 다음의 사유로 결석한 자는 증빙서류를 교육혁신처로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삼촌이내)의 사망으로 인한 5일 이내
2. 병역법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한 소요기간
3.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2주 이내)
4.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나 행사에 참가한 해당 기간
5. 교육실습, 학과 학술 답사여행으로 인한 소요기간
6. 기타 총장이 허락한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한 소요기간

⑥ 재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타 전공 또는 타 대학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타 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 (졸업학점) ① (삭제2016.6.1)

1. (삭제2016.6.1)
2. (삭제2016.6.1)
3. (삭제2016.6.1)

② 헬라어, 히브리어에 학점 인정에 따른 졸업학점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2014.3.5., 경과규정 부칙 2015.3.4., 2023.11.1.)

구분	인정 기준 점수	이수학점
일반졸업자	해당 없음	95
본교단 7개 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자	두 과목 모두 B+(85점)이상	87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B+(85점)이상	90
	두 과목 모두 B+(85점) 미만	90
정원의외 외국인 입학자	면제(헬라어, 히브리어, 사역복수전공제)	92

③ <삭제>

④ <삭제>

⑤ 신학과 사회복지학의 복수전공자는 신학대학원교과과정표에 따라 사회복지학 과목 24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신설2016.6.1)(2019.1.25)

⑥ 신학과 사회복지학의 복수전공자가 중도에 복수전공을 포기할 경우에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 학점은 전공 선택 학점에 산입한다. (신설2016.6.1)(2019.1.25)

제21조 (수료) 수업 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 5장 공개강좌·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22조 (공개강좌) 신학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23조 (연구생)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본 교단 산하에 세워진 신학대학교 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소속 노회장 추천서를 받은 자로 본 신학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학대학원장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 기간 수업시킨다. 수업연한, 이수학점 및 교과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 (외국인입학) 학력과 신앙을 구비한 외국인이 지원할 경우 그 자격을 심사한 후 정원 외 학생으로 입학할 허가를 할 수 있다.

제25조 (수강허가) 외국인 학생의 입학 허가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한다.

제 6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26조 (장학금 및 연구비) 신학대학원생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 7장 수강신청 및 성적인정

제27조 (수강신청 절차) 학생은 매 학기 수강할 과목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 할 수 없다.

제28조 (신청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과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폐강, 강의시간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28조의2 (수강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된 기간(수업일수 1/3선 후 1주내)에 해당과목 담당교수와 교육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최소이수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단, 징계, 질병 등의 경우는 수강철회 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상에는 “W”(Withdraw)로 기재된다.
- 제28조의3 (교과목의 폐강) ① 해당과목의 수강학생이 5명 미만인 경우 해당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단, 5명 미만이라 할 지라도 담당교수-대학원장-교육혁신처장의 협의하에 해당과목을 폐강하지 않을 수 있고, 겸임교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4.11.5 신설)
- 제29조 (동일과목 중복 수강금지) 취득 성적이 79점 이하인 경우 재수강 할 수 있고, 재수강 과목 성적 인정은 재수강 성적 이의신청자에 한해 우수한 성적을 반영하며, 만일 동일한 과목을 중복하여 수강하였을 때에는 후에 받은 성적은 무효로 한다.
- 제30조 (과목인정) 신대원 신학과는 본교(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수강자) 출신으로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최대 15학점까지 타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교과목명과 학점이 동일하고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어학과목(헬라어, 히브리어)인정은 본교단 산하 신학대학에서 헬라어, 히브리어(각각 4학점) B+ 이상 받은 자로 과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어학과목 신청은 최대 15학점과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4)
- 제31조 <삭제>
- 제32조 (계절학기) ① 계절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장학사정에서 제외된다.
 ② 신대원 신학과 야간과정 학생의 정규교과과정으로 부족한 이수학점을 보강하기 위해 필수과목 중에서 매년 1과목을 계절학기에 개설(방학 중 집중수업)하며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정규교과과정의 수업으로 수업료는 받지 않는다. (신설 2023.11.1.)
- 제33조 (불신청 이수) 수강신청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해당과목의 교수가 그 성적을 제출했어도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강신청 후 중도포기 혹은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수강신청 변경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성적은 F로 처리된다.
- 제34조 (성적평가)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성적 및 출석, 과제물, 연습 등을 종합 평가한다.
- 제35조 (성적평가 등급) 학업성적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급	평점	성적
A+	4.5	95-100
A	4.0	90-94
B+	3.5	85-89
B	3.0	80-84
C+	2.5	75-79
C	2.0	70-74
D+	1.5	65-69
D	1.0	60-64
F	0.0	0-59
P	불계	합격
NP	불계	불합격

제8장 학생활동

- 제36조 (원우회 설치 및 승인)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건전한 학풍을 고취하고, 봉사 활동을 권장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배 동문과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우회(이하 “원우회”라 칭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37조 (운영과 활동 및 승인) 원우회의 기본조직, 회칙의 개정, 예산 및 결산안과 그 집행 및 학생 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혁신처의 지도를 받는다.
- ① 학생들은 학내외에서 정치적 목적의 단체 활동이나 정치활동 그리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
- ② 학생들의 모든 집회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도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교내외의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혁신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8조 (단체의 조직) 학생들이 단체(예. “동아리”)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장 학 위

- 제39조 (학위수여) 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와 신학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교역학석사(Master of Divinity)학위를 수여한다.
- ② 복수전공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학위기에 전공과 복수전공(신학전공과 _____전공)을 명시한다. (개정 2016.6.1)(2019.1.25)
- ③ (삭제 2016.6.1)
- 제40조 (논문절차) (삭제 2019.9.4)
- 제41조 (논문제출기한) (삭제 2019.9.4)
- 제42조 (논문심사) (삭제 2019.9.4)
- 제43조 (논문형식) (삭제 2019.9.4)
- 제44조 (신학계속추천서) 신학대학원 재학생은 학년 진급을 위하여 매년 11월 30일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노회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교단 교단장 추천입학생도 포함 됨)

제 10장 보 칙

- 제45조 (준용규정)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신학대학원 운영내규에 의하며, 그 외는 서울장신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9.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 학칙 시행으로 졸업학점이 변경된 대학원은 2012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10.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0조의2(졸업학점) ②항은 2015학번 이전 학생에 적용한다.
18.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5조 ⑫,⑬,⑭는 2022학년도 입학부터 적용한다.
28.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하며 2022학년도 입학부터 적용한다.
29.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30.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32.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목회연구과정 운영내규

- 제1조 (과정) 신학대학원에 총회인정 목회연구과정을 둔다.
- 제2조 (정원) 신학대학원에 목회연구과정 입학정원은 20명으로 한다.
- 제3조 (입학자격)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세 및 입교 후 5년 이상 된 자로 소속 노회장 추천서를 받은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후 본 교단 총회가 인정한 신학대학교 신학과,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목사안수를 이미 받은 자는 응시자격이 없다.
- 제4조 (수업연한) 본 과정의 수업연한은 4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 (교과과정) ① 본 과정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별도 교과과정표에 따른다.
② 본 과정의 학생이 사역복수전공제를 이수할 경우 4학기 동안 4과목을 이수하고, 사역복수졸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사역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 제6조 (졸업학점) 본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 제7조 (과목인정) 목회연구과는 본교(학부, 학점은행제 수강자)출신으로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최대 15학점까지 타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교과목명과 학점이 동일하고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목회연구과정 학생의 경우 어학과목(B+이상)인정은 본 교단 신학교(대학) 졸업자에 한함.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제8조 (출석 및 취득학점) 학생은 매 학기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해야 하고, 수강신청은 최저 12학점에서 2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 (수료)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 제10조 (졸업논문) 졸업논문을 신청한 자는 신학대학원 시행세칙 및 대학원 시행세칙에 준하여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 (신학계속추천서) 본 과정 학생은 학년 진급을 위하여 매년 11월 30일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소속 노회장의 추천서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교단 교단장 추천입학생도 포함 됨)
- 제12조 (준용규정) 이 운영내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신학대학원 시행세칙 및 신학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운영내규는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운영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운영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운영 시행세칙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운영 시행세칙은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원의 철학박사(Ph.D.), 음악박사(D.M.) 학위과정의 학칙에 규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3.2.)
- 제2조 (전공 과정) 본 대학원 철학박사, 음악박사 과정에 다음과 같은 전공을 둔다.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예배설교학, 선교학, 상담학, 디아코니아, 기독교교육학, 영성학, 기독교사회복지학, 음악학(피아노, 성악, 오르간, 합창지휘), 자연치유학, 음악신학(영어과정_외국인)(개정2016.6.1., 2017.5.4., 2018.12.5., 2022.3.2., 2022.09.07.)
- 제2조의 2 삭제(2022.3.2.)

제 2장 입 학

- 제3조 (입학) 입학 전형 응시자격(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Th.M., M.A. 학위 소지자(예정자) 또는 동등이상 학위 소지자(예정자)(개정2022.3.2.)
 - ② 학사학위 소지자로 신학대학원 목회연구과정 졸업자로서 Th.M. 또는 동등이상 학위 소지자(예정자)
 - ③ 특수대학원 학위 소지자(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 학위 소지자(예정자)(개정2022.3.2.)
 - ④ M.Div. 학위 소지자는 지도교수의 판단으로 Th.M. 과정에 있는 과목 중 4과목을 선수과목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2.3.2.)(개정 2023.3.8.)
- 제4조 (입학지원 서류) 철학박사, 음악박사 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2.3.2.)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 ②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대학, 신학대학원, 대학원) 각 1부
 - ③ 성적증명서(대학, 신학대학원, 대학원) 각 1부
 - ④ 담임목사 추천서
 - ⑤ 연구계획서(A4 10매 내외)
 - ⑥ 이력서
- 제5조 (입학 전형) 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철학박사, 음악박사 과정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발고사를 시행 한다.
(개정2022.3.2.)
 - ① 연구계획서
 - ② 서류(실기) 및 면접
 - (2) 입학 전형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 (외국인 학생 입학) 외국인으로서 지원자가 있을 때에는 시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특별입학생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 (재입학) 본원의 학생으로서 원에 의하여 퇴학한 자는 다음과 같이 재입학할 수 있다.
- ① 재입학은 동일 전공과정에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재입학 원서를 입학원서 접수 기간에 제출하고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재입학자는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자는 재학연한 경과로 학점을 상실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제 3장 수업 및 수학

제8조 (수업연한) 철학박사 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고, 음악박사 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은 5학기(단,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경우의 수업연한은 7학기)로 한다. (개정2022.3.2.)

제9조 (재학 연한) 재학연한은 공히 8년으로 한다.

제10조 (취득 학점) 철학박사 학위 과정 수업연한 중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전공과목 30학점, 논문 9학점 총 39학점(단,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 경우에는 전공과목 42학점, 논문 9학점, 총 51학점)으로 한다. 음악 박사 학위과정은 전공과목 33학점, 논문 6학점 총 39학점으로 한다. 단, 철학박사 학위 과정의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예배설교학, 선교학, 목회상담학, 디아코니아학, 기독교교육학 전공 과정의 경우 전공과목 이수학점 중 신학분야의 타 전공과목 6학점을 이수 할 수 있다.
(개정2016.6.1., 2017.5.4., 2022.3.2.)

제11조 <삭제>

제12조 (교과과정) 교과과정은 일반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종합필기시험) 종합필기시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학생이 수강한 과목 중 학생이 신청한 3과목에 대하여, 1과목당 시험시간은 80분으로 하며, 학기 중 (1학기는 8월10일 이전, 2학기는 2월 10일 이전)에 실시한다. (개정2016.6.1)
- ② 종합필기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은 박사과정수료자에게 해당과목을 강의하였던 교수가 출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하였던 교수가 없거나 출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대학원장이 출제자를 선정하여 출제 및 채점을 하도록 한다.
- ③ 삭제(2022.3.2.)
- ④ 종합필기시험 실시 기간은 2~3주 이내로 한다.
- ⑤ 종합필기시험 응시자격은 철학박사 과정의 경우 5학기(단,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7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하고 박사과정 최저 이수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로 한다. 음악박사과정의 경우 5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필하고 박사과정 최저이수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로 한다. (개정 2022.3.2.)
- ⑥ 종합필기시험은 각 과목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탈락 과목에 대한 재시험은 한 학기 후로 하되, 재시험의 기회는 2회에 한한다.(개정2022.3.2.)
- ⑦ 종합필기시험의 모든 과목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험료를 부과한다.

제14조 (등록) 본 원생의 등록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재입학등록, 연구등록, 논문등록으로 구분한다.
- ② 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위 1항의 구분에 따라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과목 이수 기간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원생은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 ④ 학점만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을 필하지 못하여 아직 논문을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구등록 학기에는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개정 2016.9.7)
- ⑤ 논문을 시작할 경우에는 논문등록을 한다.



- 제15조 (휴학 및 복학) ① 본 대학원의 휴학 및 복학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에 준한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16조 (제적 및 자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제적 및 자퇴 처리할 수 있다.
①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절차도 취하지 않은 자
② 휴학기간 경과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③ 재학연한 내에 졸업논문에 합격하지 못하여 졸업이 불가능한 자
④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하기로 결정한 자
⑤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
- 제17조 (논문연구 신청서 및 계획서) 논문연구 신청서와 계획서는 철학박사 과정의 경우 5학기(단,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7학기), 음악박사과정은 5학기 시작 후 3주 이내에 대학원에 제출한다. (개정2016.6.1., 2022.3.2.)
- 제18조 (학위청구논문 작성 자격) 박사학위 청구 논문 작성 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및 위 17조에 의해 논문 연구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개정2016.6.1)
② 본 대학원에서 수학하여 박사과정 최저 이수 학점(논문 9학점 제외)을 취득자로서, 종합시험을 합격하고 1학기 이상 논문등록을 하여 논문지도를 받거나 교과과정 내의 '박사연구'과목을 수강신청(2회 6학점) 하여, 개별적 논문지도를 받은 자
③ 위 ①,②항에 의하여 일반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논문 작성이 허락되어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자로 한다.
④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교육혁신처에 제출한 자. (신설2025.9.3.)
- 제19조 (논문지도교수 선정, 배정 및 논문작성 시작) ①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위 17조의 신청서 및 계획서를 고려하여 일반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지도교수 배정과 논문작성 허락 사실을 논문학기 개시 전에 논문작성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논문작성 신청자는 일반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통보에 의하여 논문등록 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작성을 시작한다.
- 제20조 (논문의 분량 및 규격) 위 논문의 분량은 A4 컴퓨터 용지에 double space로 150매 이상으로 한다.
- 제21조 (학위 청구 논문의 내용) 논문에는 다음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 표제지
② 인준서
③ 목차
④ 표목차 및 그림목차(필요한 경우)
⑤ 약어표
⑥ 논문개요(본문이 한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영어로)
⑦ 본문
⑧ 참고문헌
⑨ 부록(필요한 경우)
- 제22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논문지도교수의 직위는 원칙적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수로 하되, 본 대학교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강사로 할 경우와 본교 출신 은퇴교수(명예교수 포함)로 할 경우에는 본 일반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0.4.)
- 제23조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논문지도 교수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사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4조 (논문제목 변경) 논문지도 진행 중 논문제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학위논문 제목 변경원을 논문지도교수의 허락

을 받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 ① 학위 청구논문 제출은 위 14조에 의하여 논문 작성 시작 후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9조 1항에 따라 지도를 받은 자로 한다.
 ② 학위 청구논문 제출은 논문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입학일로부터 16학기 이내에 학위 논문의 최종심사 완료 예정자.
- 제26조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절차) ① 박사학위 청구 논문은 5부를 작성,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기일 내에 일반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제출 시기는 8월 졸업 예정자는 4월 중순에, 2월 졸업 예정자는 10월 중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련된 내규에 따른다.
- 제27조 (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일반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가 논문의 접수를 가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주심(심사위원장)으로 하며, 부심은 내부 2인, 외부 2인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은 논문지도교수가 후보를 일반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 일반대학원학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28조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논문심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일반대학원장이 논문심사 위원장에게 통보하여 논문심사 및 구술 시험을 준비토록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구술시험을 통해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결과를 정한다.
 ③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논문구술심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최종 결과를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일반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의 통과는 심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하며, 찬성하는 심사위원 모두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제 4장 학위 수여와 취소

- 제29조 (학위 수여와 취소) ① 박사학위 수여는 총장이 한다.
 ②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박사학위 수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학위를 받은 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총장은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학칙은 200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학칙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학칙은 201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학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학칙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8. 이 학칙은 201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9. 이 학칙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학칙은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학칙은 201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학칙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학칙은 201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14.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은 2011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15. 이 학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학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학칙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학칙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학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학칙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학칙은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개정학칙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학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개정학칙은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9.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외국 정부지원 장학생 박사과정 운영내규

- 제1조 (과정) 일반대학원에 외국인을 위한 박사과정을 둔다.
- 제2조 (정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 정원 외로 한다.
- 제3조 (입학자격) ① 전 과정 지원 자격은 내국인 항목과 동일하다.
 ② 영어능력시험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인 민간영어능력 평가시험을 치른다.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이나 영어권에서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은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대학원)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로 영어 능력시험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입학할 수 있다.
 ③ 상기 어학자격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졸업할 때까지 영어능력 평가 시험을 치르거나, 한국어 연수 3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④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인 경우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가 영어 면접을 실시하여 영어 수업 능력과 논문작성 능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제4조 (수업연한) 본 과정의 수업연한은 6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 이내로 한다.
- 제5조 (교과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별도 교과과정표에 따른다.
- 제6조 (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수업 30학점과 논문 9학점을 포함하여 39학점으로 한다.
- 제7조 (출석 및 취득학점) 학생은 매 학기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해야 한다.
- 제8조 (수료)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 제9조 (졸업논문) 졸업논문을 신청한 자는 대학원 박사과정학위과정 운영 시행 세칙 및 대학원 시행세칙에 준하여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준용규정) 이 운영내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과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본 과정의 수업 강의료는 일반대학원과 별도로 일반 외래 교수의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부 칙

1. 이 운영내규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며,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Ph.D. Programs for Foreign Government-funded Students

- Article 3 (Admission Qualification) ① English proficiency test: 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 points (NEW TEPS 326) or equivalent to a certified English proficiency test.
 ② Students who have a nationality in a country where English is their first language or a legal common language, or who graduated from a university (graduate) in an English-speaking country, may enter the school without applying the English proficiency test supporting documents (certificate of graduation) that they have completed.
 ③ If you don't meet the above linguistic qualifications, you can take an English proficiency test by the time you will have graduated. Or it requires 300 hours of Korean language training.
 ④ For foreign government-funded students, the Academic Steering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may conduct an interview with them in English and allow them to enter the school if the Committee is convinced that they have academic abilities to take classes and write papers in English.
- Article 4 (Length of Class) The term of this course is to be six semesters, and the period of study is to be less than eight years.
- Article 5 (Course of Study) The subjects to be taken by a student are subject to a separate curriculum table.
 (Graduation Grade) The total 39 credits are required for graduation, including 30 credits in classes and 9 credits in a thesis.
- Article 6 (Thesis) Anyone who want to apply for a graduation thesis must submit her/his graduation thesi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for the operation of the doctoral degree program of the graduate school.
- Article 9

Additional Regulation

This operation regulations are with effect from December 23, 2019, and they are first applied to the students who enter the school in 2019.

✚ 대학원 원격수업 운영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 수업을 말한다.
②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수단(수업자료의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3조 (교과목 분류와 개설기준) 감염병 및 국가재난상황 등의 경우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개설할 수 있고 교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정규학기의 전공과목과 교양 과목에 원격수업을 개설하고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대면수업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
- 제4조 (교과목 관리 및 운영) 원격수업과 관련한 교과목의 개설 및 성적평가, 학사운영 등의 관리는 교육혁신처에서 주관하며 기타사항은 본교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5조 (이수기준, 이수가능학점) ①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한 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원격수업으로 이수가능한 학점은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한다.
- 제6조 (평가관리,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기준) ① 원격수업의 평가관리를 위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온라인 또는 출석시험으로 진행하거나 과제물, 퀴즈,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가 원칙이나 위원회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은 모두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7조 (출결관리, 폐강 및 분반기준) ① 원격수업의 출석인정 및 결석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학습관리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격수업의 출석인정기준, 결석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원격수업의 폐강기준은 서울장신대학교 수업관리내규 제11조(폐강과목)을 준용한다.
④ 원격수업의 분반기준은 서울장신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6조의 5(분반)을 준용한다.
- 제8조 (수업시간) 원격수업 콘텐츠 진행시간은 최소 25분(1학점 기준)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제9조 (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원격수업 관련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은 교수학습개발센터가 담당한다.
- 제10조 (외부 콘텐츠 사용 및 인정기준) 다른 대학원 제작 영상 및 타 플랫폼 탑재 영상 등은 원격수업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 (강의평가) ① 교수강의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장신대학교 강의평가기준을 준용한다.
② 강의평가는 학기당 2회 이상(중간강의평가, 기말강의평가) 실시하고 강의평가결과는 학교 인트라넷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한다.
1. 원격교육 계획과 기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
2. 원격교육 강좌 품질 관리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③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일반대학원장, 교육혁신처장, 전략기획처장, 교수학습 개발센터장, 신학대학원장, 사회복지상담대학원장, 교회음악대학원장, 자연치유선교대학원장, 예배찬양사역대학원장, 영성심리치유대학원장 및 학생위원(대학원 원우회장, 원우부회장, 원우회 총무, 원우회 임원 2인 등 4인 이상)을 위



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시설 및 설비)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서버·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갖춘다.

제14조 (학칙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24 2025

서울장신대학교 요람

Seoul Jangsin University

Ⅳ 대학원 교과과정

- 대학원 학칙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목회연구과정 운영내규
-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운영 시행세칙
- 일반대학원(Th.M., M.A.)교과과정
- 신학대학원 교과과정
- 목회연구과정 교과과정
- 사회복지상담대학원 교과과정
- 문화예술대학원 교과과정
- 자연치유선교대학원 교과과정
- 예배찬양사역대학원 교과과정
- 상담심리대학원 교과과정
- 영성치유대학원 교과과정
- 예배리터지대학원 교과과정
- 박사과정(Ph.D., Th.D.)교과과정
- 박사과정(D.M.) 교과과정



✦ 일반대학원 신학석사(Th.M., M.A.) 교과과정

전공별	이수구분	과목별
모든전공	공필	졸업논문(THM1101)
구약학	전필	율법서연구 1, 2
		역사서연구 1, 2
		시가서연구 1, 2
		예언서연구 1, 2
		목시문학연구
		구약세미나 1, 2
		구약성서해석학
		구약과설교
		구약원전강독
		구약과고대근동
		구약의문화
		구약과현대사회
		구약고고학
		성서고고학세미나 1, 2
신약학	전필	로마서특강
		바울신학특강
		신약성서의경제윤리
		신약세미나 1, 2
		신약신학
		역사적예수
		신약시대의문헌연구
		성경해석사
조직신학	전필	신약성서의사회적연구
		개혁신조연습
		개혁신학연습
		교의학방법론
		신론특강
		조직신학세미나
		철학적신학
		최근신학연구
		칼빈문헌연구
		현대신학특강
		바르트신학의이해
교회사	전필	교회사서술방법론
		부흥운동사
		신비신학세미나

전공별	이수구분	과목별
교회사	전필	에큐메니칼운동사
		한국교회사세미나
		한국교회사특강
실천신학 (예배설교)	전필	설교의신학과역사
		성례전연구
		예배신학과역사
		예배와영성
		한국교회설교연구
		현대설교학
		현대예배
실천신학 (목회상담)	전필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이상 심리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성격심리학
		신학과 상담
		집단상담학
실천신학 (목회선교)	전필	목회방법론연구
		문화연구방법론
		미래목회와목회신학
		상황적신학
		세계관의변화
		총체적선교
		현대교회와목회
		현대선교학
		선교적교회세미나
실천신학 (기독교교육)	전필	기독교교육의역사와철학
		인성교육과교사의역할
		생활지도의원리와실제
		교수학습방법과교육평가
		대안학교교육과정
		기독교교육연구방법론
		학부모·학생상담
		기독교세계관으로가르치기



✦ 일반대학원 (Th.M., M.A.) 교과목 설명

◆ 구약과설교 (Old Testament and Christian Preaching)

구약성서를 어떻게 이해하며 설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좋은 설교는 '말씀'의 바른 이해에서 출발한다. 성서는 설교자가 자기 생각을 펼치는데 활용되는 도약판(Springboard)이 아니라, 설교자가 '듣고' '이해하며' '전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verbum dei)이다. 구약성서와 설교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구약성서 본문을 설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설교자들에게 구약성서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해석의 길을 제시하고, 설교자가 '말씀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구약의복음선포 (Preaching the Gospel in the Old Testament)

구약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될 수 있는가를 구약 안에서 살펴보고 신약과의 관계 속에서 구약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여 구약 안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약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구약성서해석학 (Old Testament Hermeneutics)

구약의 성서해석의 역사와 구약해석의 제 방법론들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구약주석의 실제적 방법을 터득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 구약세미나 1, 2 (Old Testament Seminar on Special Topics 1, 2)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목을 받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구약학의 특수한 주제나 본문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특정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도록 한다.

◆ 구약예언서연구 (Study on the Prophecies in the Old Testament)

구약 내의 예언 현상과 문서 예언의 역사와 문서로 기록된 예언서들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예언 내용의 연구를 통해 후기 예언서의 메시지를 알아보며, 이를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다.

◆ 성문서 (The Sacred Writings)

구약의 시가와 지혜와 역사 해석이 담겨있는 성문서 부분은 구약의 꽃과 열매에 해당하는 아름답고도 중요한 내용이다. 시가와 지혜에 대한 신학적 접근을 통해 구약의 성숙된 교훈에 접근한다.

◆ 에스겔연구 (Study on the Book of Ezekiel)

에스겔서를 집중 조명하여 구약성서에서 차지하는 에스겔서의 의미와 에스겔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구약성서의 다른 책에 대한 연구의 틀을 마련한다.

◆ 율법서세미나 (Seminar on the Book of Law)

구약의 율법서 부분인 오경의 연구사, 신학과 각 책의 구조, 신학적 메시지 등을 연구하여 구약의 전반적 이해의 폭을 넓히며, 구약 연구의 능력을 배양한다.

◆ 이스라엘의 지혜 (Wisdom in Israel)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혜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다룬다. 이스라엘의 지혜는 구약성서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서민적이고 국제적이고 우주적인 성격을 띤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경외를 앞세우는 신학적 지혜이다. 외적인 관계에서 이스라엘의 지혜에 영향을 주었던 이스라엘 주변 세계의 지혜 현상을 살피고, 내적인 관계에서 율법, 예언, 묵시와 같은 구약성서의 다른 전승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지혜가 어떻게 발전하고 확립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이스라엘 지혜의 내용, 성격, 영향사를 연구한다.

◆ 성서고고학 세미나 1(Seminar on Biblical Archaeology 1)

구약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 구약성경과 관련한 성서고고학의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본문의 문화적 배경을 통하여 구약 본문 이해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 로마서특강 (Lecture on Romans)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인 책이다. 여기서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복음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여타의 편지와 달리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바울신학을 만날 수 있다. 사도 바울 없이 초대 기독교를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로마서 연구는 또한 기독교의 이해를 위한 근간이다.

◆ 바울신학특강 (Lecture on Pauline Theology)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의’로 요약될 수 있는 바울 신학의 여러 측면들을 전체 바울 신학 체계 속에서 살펴본다. 신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윤리 등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 신약성서의 경제윤리 (Economical Ethics of the New Testament)

예수의 가르침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경제 윤리를 검토하고, 신약시대에 적용된 기독교적 경제 원리를 살펴본 후, 현대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신약성서의 사회적연구 (Study of New Testament in Social Perspective)

신약성서의 사회적 배경을 검토하고 거기에 바탕을 둔 신약 본문의 이해와 더불어 사회학적 해석을 통한 초기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 신약세미나 1, 2 (New Testament Seminar 1, 2)

신약의 주요주제나 인물들을 선정하여,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연구, 고찰함으로써 개별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 지식을 심화시킨다.

◆ 신약 신학 (Theology of New Testament)

신약성서 각 저자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한 신론, 교회론, 종말론 및 윤리(신자들의 삶) 등에 대해 연구한다. 그리고 각 저자의 신학적 사고가 통일성 있게 체계화 되면 전체가 어떻게 기술될 수 있으며 어떤 틀로 설명이 가능한지, 다양성과 통일성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각 성서에대한 안목을 기르고 성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역사적 예수(Historical Jesus)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역사적 예수'라는 주제를 교리적, 신앙적 예수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 예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과 시대적 배경 속에서 활동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선포했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역사적 예수 찾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 개혁신조연습 (Seminar on the Reformed Creeds)

개혁 신조와 교리의 발생과 확장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lex orandi - lex credendi* 그리고 *right opinion - right glorification*의 원리가 신조와 교리의 생성 및 발전의 원리임을 확인하며, 따라서 신조와 교리가 성경의 제 1의 주석임을 확증한다.

◆ 개혁신학연습 (Reformed Theology Practice)

우리 교회는 개혁 전통 위에 있는 교회이다. 개혁 교회의 진리인식을 계승, 전달하며, 교회적 활동이 그 전통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그 일탈을 수정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의무로서 부과된다. 개혁 전통의 심층적 이해에 근거하여 “*semper reformanda*”의 의무를 연습한다.

◆ 교의학방법론 (Prolegomena to Church Dogmatics)

교의는 교회의 진리인식이다. 이 교회의 진리인식이 교회적인 것과 비교회적인 것의 구별의 기준이다. 이 기준이 실제보다 좁혀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 아닌 것으로 배제하게 되며, 실제보다 넓으면 비교회적 활동을 교회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모든 교회적 활동은 교의 확립의 기준 및 근거에 관한 이해를 요청하는 바, 그 응답이 모색된다.

◆ 신론특강 (Seminar on the Doctrin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여러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 조직신학세미나 (Seminar on Systematic Theology)

교전, 개혁, 현대에 걸쳐 조직신학의 핵심적 주제들을 통전적으로 연구한다.

◆ 철학적신학 (Philosophical Theology)

철학적 관점에 의해 조직신학의 교리적 관점들을 분석하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 최근신학연구 (Studies of Recent Theologies)

최근의 현대신학들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교회와 사회에 대한 성찰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신학적 작업을 수행한다.

◆ 칼빈문헌연구 (Seminar on Calvin's Writings)

Corpus Reformationum 또는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에 수록된 칼빈의 저술의 배경 및 발전관계를 이해한다.

◆ 현대신학특강 (Lecture on Contemporary Theologies)

계몽주의 시대이후 오늘날까지의 기독교 현대신학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되 신학사상의 발전사 혹은 경향을 심층 탐구하여 진단하거나, 현대신학의 중요한 주제나 중요 인물을 집중 연구하여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학의 의미와 복음과의 관계를 모색하여 본다.

◆ 교회사서술방법론 (Historiography of Church History)

고전적인 교회사의 사관과 서술 방법론을 연구함으로써 지역 교회사와 지방 교회사를 서술하는 역량을 기른다.

◆ 부흥운동사 (History of Revival Movement)

근대 시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의 역사와 신학을 연구함으로써 한국 교회와 개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한다.

◆ 신비신학세미나 (Seminar on Mystical Theology)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닛사의 그레고리, 위 디오니시우스, 보나벤투라, 무지의 구름, 아빌라의 테레사, 십자가의 요한 등의 신비 신학의 문헌을 읽고, 개혁 신학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 어거스틴신학특강 (Lecture on Augustine Theology)

어거스틴(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을 중심으로 그의 신학을 연구하고 후대의 신학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 에큐메니칼운동사 (History of Ecumenical Movement)

20세기 세계 교회가 교회 일치 운동을 일으킨 과정과 결과를 탐구함으로써 에큐메니칼 운동의 공헌과 문제점을 알아 본다.

◆ 한국교회사세미나 (Seminar on Korean Church History)

한국 교회사의 쟁점들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하여 현대 한국 교회의 논쟁을 조명해 본다.

◆ 한국교회사특강 (Lecture on Korean Church History)

한국 교회사의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료를 정리하는 방법론을 익힌다.

◆ 설교의신학과역사 (The Theology and History of Preaching)

설교의 신학적 주제를 주제별, 인물별,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성서에 나타난 설교의 내용과 신학, 초기 교부들의 설교의 주제, 종교개혁자들의 설교, 청교도의 설교, 미국의 설교가들을 분석하고, 세계교회의 여러 교회들의 설교적 특징과 차이를 비교 관찰한다.

◆ 성례전연구 (The Study of Sacraments)

신학, 묵회, 예배 삶과의 관계에서 성만찬과 세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성례전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역사적 이해를 통해서 성례전 연구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교회에 적용할 것을 목표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찰한다.



◆ 예배신학과역사 (Theology and History of Worship)

세계교회의 다양한 예배신학을 대표하는 예배신학자의 신학을 고찰함으로써 예배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예배를 진단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배와영성 (Worship and Spirituality)

예배의 본질과 내용에 관한 역사적 신학적 고찰을 기본으로 하면서 예배의 요소 즉, 기도, 찬송, 설교, 성찬에 대한 영성적 관점을 탐구한다. 예배의 목표와 주제, 예배 집례자와 예배 참여자의 영성을 예배의 구조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 한국교회설교연구 (The Study of Preaching of the Church of Korea)

세계교회의 설교에 비해 한국교회의 설교의 신학적 특징과 메시지의 독특성을 살펴보고, 설교의 유형을 분류하고 고찰함으로써 미래 한국교회의 설교를 전망한다.

◆ 현대설교학 (Modern Preaching)

현대교회의 설교의 동향을 분석하고, 현대신학자들의 설교를 관찰하면서, 그들의 신학적 특징과 설교 구조를 탐구한다.

◆ 현대예배 (Modern Worship)

이 과목은 현대 교회의 예배의 동향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나누어 예배의 특징을 관찰한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부터 호주의 힐 송 교회 등 현대문화를 반영하는 예배에서부터, 예전적인 교회들의 예배를 대비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통과하면서 추출된 예배의 원리들을 고찰한다. 음악, 예술, 건축, 영상 등 문화적인 접근의 현상들을 토의한다.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Basis of counseling research methodology)

상담연구 방법론에 대한 개론적인 이해를 함으로서 상담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다. 상담연구를 하는 이유는 상담의 실제적 기술의 발전과 내담자의 안전과 이득을 위해서뿐 아니라, 한국적 상담의 기법들을 이론화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상담연구의 주요개념과 방법론들을 학습하고 연구주제의 발견, 연구계획서 작성,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보고서 작성에 이르는 연구방법의 과정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youth counseling)

청소년 상담은 상담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청소년은 발달 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은 예방상담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은 정보화, 세계화, 고령화, 문화적 급변,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하여 문제에 직면해있다. 청소년 발달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청소년 상담 이론의 개념 습득을 토대로 사례와 문제들을 다루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에 적용하도록 하는 과목이다.

◆ 이상 심리 (Abnormal psychology)

주요 이상행동의 증상, 원인, 치료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도모한다. 현대사회는 정신질환적 증상들이 보편적으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병리적 증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상장애의 증상과 진단기준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실제 사역의 현장과 상담장면에서 이런 증상을 지닌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사려깊은 이해로서 평가 및 응용할 수 있는 치료접근법을 학습한다.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Practice of psychological measurement and assessment)

심리측정도구로서의 몇 가지 기본적인 심리검사의 원리 및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심리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평가 및 결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익힌다.

◆ 성격심리학 (Personality psychology)

인간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성격이론의 다섯가지 관점, 즉 정신역동적 관점, 성향적관점, 인본주의적 관점, 행동 및 사회적 학습관점, 인지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다루며 상담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학과 상담 (Theology and Counseling)

이 과목은 목회(기독교)상담학의 학문적 특성과 정체성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응용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기독교 신학과 관련하여 개괄해 보는 과목이다. 따라서 먼저 목회(기독교)상담학의 기독교 신학적 전통과 성서적 전통을 먼저 개괄해 보고, 이러한 전통의 빛 아래서 다양한 현대적 접근법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강자들은 목회(기독교)상담학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제뿐만 아니라 신학과 관련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며 돌봄의 목회와 목회(기독교)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준비한다.

◆ 집단상담학 (Group Counseling & Psychotherapy)(새로 개설과목)

이 과목은 그룹의 역동성, 과정, 현상들을 탐구, 분석하여 그룹상담의 지도자로 훈련받도록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은 이론적 지식의 습득과 실제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 목회방법론연구 (Ministerial Methodology)

목회 원리는 단순하고 불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은 시대와 장에 따라 다양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목은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목회 방법들을 찾아 연구함으로써 자신의 목회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얻게 한다.

◆ 문화연구방법 (Method of Understanding Culture)

문화인류학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익힌다. 특히 민족지적 인터뷰 방법론을 통해서 문화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러한 정보를 분석해서 문화적 주제를 파악하는 훈련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민족지를 작성하게 한다.

◆ 미래목회와목회신학 (Ministry and Pastoral Theology in the Future)

현대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해보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목회 사역이 어떤 형태일지를 모색하고 그런 상황에 접근할 때 어떤 목회신학을 견지해야할지를 탐구한다.

◆ 세계관의변화 (Worldview Change)

인간 문화에서 세계관의 본성과 기능뿐만 아니라 세계관 변화의 역학에 대한 심화 학습을 통해서 세계관과 세계관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틀들을 학습하고 그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는 세계관의 변화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세계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한다.



◆ 총체적선교 (Holistic Mission)

성경에서 총체적 선교를 위한 신학적 근거와 역사적 모델을 찾는 동시에 교회와 선교 역사를 통해서 총체적인 입장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본다.

◆ 현대교회와목회 (Church and Ministry in the 21st Century)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바르게 파악함으로써 그 교회에서의 효과적인 목회를 모색해보려는 과목이다. 성서적 진리나 신학적 진리라는 상품을 현대인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장과 고객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 현대선교학 (Mission and Missiology in the 21st Century)

먼저 선교학의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어서 21세기의 선교신학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선교 현장을 분석 파악함으로써 목회자로서 교회의 선교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얻게 한다.

◆ 선교적교회 세미나(A Seminar for Missional Church)

오늘날 교회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 위기에 대한 진단으로 교회가 선교적 본성을 잃어버린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그러한 위기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는 선교적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선교적 교회론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현장에서 실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론을 수립하고자 한다.

◆ 성격심리학 (Personality psychology)

인간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성격이론의 다섯가지 관점, 즉 정신역동적 관점, 성향적관점, 인본주의적 관점, 행동 및 사회적 학습관점, 인지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다루며 상담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독교교육의역사와철학 (History and Philosophy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이 추구하는 원대한 목표와 지혜로운 교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에 기여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교회와 기독교대안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기독교교육과 기독교대안학교의 역사와 교육철학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기독교교육과 기독교대안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추게 하는 과정을 다룬다.

◆ 인성교육과교사의역할 (Personality education and role of the teacher)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교육이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교사가 역할모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격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따뜻한 배려가 가득한 교실로 만들기 위한 교사의 역할 수행하기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생활지도의원리와실제 (Principles and realities of life coaching)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지도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익힘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과 특성을 이해하여 가정, 학교 및 교회, 사회생활에서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

활 지도상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방법을 회복적 관점에서 다룬다.

◆ 교수학습방법과평가 (Practice of Instructional Systems and Evaluation)

교수 및 학습의 제 이론과 방법론을 이해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교수, 학습의 개념 이해와 현대 교수, 학습 이론을 살피고 대표적인 수업 모형에 대한 적용과 평가의 방안을 다룬다.

◆ 대안학교교육과정 (Alternative Educational Curriculum)

대안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여 교사로서의 교육과정 전개에 필요한 교육적 관점을 형성토록 함과 동시에 수업지도의 실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 및 영역, 유형, 교육과정 개발 및 구성, 수업 전개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다룬다.

◆ 기독교교육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이해를 통하여 가정, 교회, 학교, 사회에서 기독교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안목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능력을 갖추게 한다.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성서적, 신학적, 발달 심리적, 역사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기독교교육 논문 작성 이론을 배우고 익히게 한다.

◆ 학부모·학생상담 (Consultation Study of Parents and students)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에 기초하여 인간생활과 발달 및 변화에 대해 심학 및 심리학의 치료적 맥락 속에서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론과 활동 과정을 배운다. 기독교 상담의 역사적 개관과 다양한 방법론을 살펴봄으로 교사로서 효율적인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독교세계관으로가르치기 (Christian Worldview)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고, 온세상의 제반영역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의 기초과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므로 가르치는 이들에게 이를 적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학대학원 교과과정

학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비고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비고
전체	전필	채플1 3 5 7 / 실천 1 3 5 7	0-0-1 0-0-1	경건 실천처	채플2 4 6 8 / 실천 2 4 6 8	0-0-1 0-0-1	경건 실천처
1	전필	하나님의 선교와 세계교 회사	3-3-0		개혁신학	3-3-0	
		신약개론	3-3-0		구약개론	3-3-0	
		조직신학1	3-3-0		헬라어		
		히브리어			목회실천1/p	3-3-0	
2	전필	한국교회사	3-3-0		신약주석과설교		
		조직신학2	3-3-0		선교학		
		설교학개론	3-3-0		예배학개론		
		설교실습1/p	1-1-0	폐지	설교실습2/p	1-1-0	폐지
		목회실천2/p	3-3-0	폐지	목회실천3(기독교교육)/p		
		설교를 위한 구약주석	3-3-3				
3	전필	교회헌법					
		설교실습3/p	1-1-0	폐지			
		목회실천4/p	3-3-0				
매년	전선	기독교윤리와목회	3-3-0		초급라틴어	3-3-0	
		교회개혁목회와설교	3-3-3		기독교공동체연구	3-3-0	
		설교구성방법론1	3-3-0		설교구성방법론2	3-3-3	
		교회양육이론	3-3-0	폐지	교회목회와목회메뉴얼	3-3-3	
		기독교영성개론	3-3-3		21세기목회의이슈들	3-3-0	
		영적지도의이론과실제1	3-3-0	폐지	영적지도의이론과실제2	3-3-0	폐지
		신약원전강독	3-3-0				
짝수 년도	전선	오경해석	3-3-0		구약신학	3-3-0	
		아모스연구	3-3-0		예언서연구	3-3-0	
		바울서신1	3-3-0		구약원전강독	3-3-0	
		일반서신	3-3-0		공관복음서연구	3-3-0	
		바르트특강	3-3-0		현대신학	3-3-0	
		예배와현대문화	3-3-0		신조학	3-3-0	
					에큐메니칼운동사	3-3-0	
					신비신학	3-3-0	

학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비고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비고
짝수 년도	선교	복음과한국문화	3-3-0		선교의성경적기초	3-3-0	
		선교현장연구와실습(방학)	3-3-3				
	교육	가정사역론과목회적용	3-3-0		발달심리와기독교교육	3-3-0	
	성경	성서지리	3-3-0		제자훈련과성서교수법	3-3-0	
	상담	심리검사의목회활용	3-3-0		이상심리	3-3-0	
	교회 성장	교회성장학	3-3-0		도시교회개척론	3-3-0	
		현대사회와복음전도	3-3-0		교회의개혁과윤리	3-3-0	
	리더십	리더십과제자훈련	3-3-0		리더십의실행과전략	3-3-0	
	디아	한국교회와디아코니아	3-3-0		디아코니아신학	3-3-0	
	사복	별첨확인			별첨확인		
	기획	자연치유와선교	3-3-0		발성법과찬송가인도	2-2-0	
홀수 년도	전선	교의학원전강독	3-3-0		구약원전강독(2014)	3-3-0	
		역사적예수	3-3-0	신규	신구약중간사	3-3-3	
		위기시대에 읽는 바울	3-3-0		역사서	3-3-0	
		미디어로 읽는 성문서	3-3-0		요한계시록연구	3-3-0	
		성례전과영성	3-3-0		구원론	3-3-0	
		요한복음연구	3-3-0		인간론	3-3-0	
		창세기연구	3-3-0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3-3-0	
		칼빈신학특강	3-3-0		교회론과현대목회	3-3-0	
		전공현장실습	3-3-0		전공현장실습	3-3-3	
	선교	타문화권선교	3-3-0		선교인력개발	3-3-0	
		선교동영상 제작 및 편집	3-3-3		세계선교운동사	3-3-0	
	교육	현대교회와다문화교육	3-3-0		교육목회와교회성장	3-3-0	
		성경연구방법과그룹성경 연구	3-3-0		성서지리와설교	3-3-0	
	성경	여러유형으로설교준비하기	3-3-0				
		목회상담의이론과실제	3-3-0		집단상담	3-3-0	
	교회 성장	소그룹과공동체목회	3-3-0		성찬과교회성장	3-3-0	
		영적지도의이론과실제	3-3-0	폐지	복음적교리와목회패러다임	3-3-0	
	리더십	영적리더십개론	3-3-0		교회지도력개발	3-3-0	
	디아	디아코니아목회	3-3-0		디아코니아적성서이해	3-3-0	
	사복	별첨확인			별첨확인		
	기획	OneClass, One School	3-3-0	신규	컴퓨터실무(동영상 촬영 및 편집)	3-3-0	신규
					총회선교대학	3-3-0	신규
					통일과 북한선교	3-3-0	신규

※ 선교, 교육, 성경, 상담, 리더십, 디아코니아는 2019년 2월 28일 자로 전공선택으로 분류



■ 신학대학원 이중전공 교과목 배정

사회복지

2급자격증 요건: 24학점(8과목) = 전공필수 6개 교과목(실습 포함), 전공선택 2개 교과목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필수
2019년 1학기	사회복지법제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실습
2019년 2학기	사회복지행정론	아동복지	
2020년 1학기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실습
2020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노인복지	
2021년 1학기	사회복지실천론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실습
2021년 2학기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보장론	

※ 상기 개설과목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 신학대학원 교과목 설명

◆ 개혁신학 (Reformed Theology)

우리교회는 개혁교회이며, 우리 교회의 신학은 개혁신학의 전통에 서 있다. 따라서 개혁신학의 근원은 어디에 있으며, 언제 어떻게 개화되고 심화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한 이해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필요하다. 개혁신학은 여기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 공관복음서연구 (Study of the Synoptic Gospels)

공관복음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본문 해석을 위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함을 목표로 한다. 앞부분에서는 공관 복음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신학적 해석법(자료비평, 양식비평, 편집사비평 등)을 살펴보고, 뒷부분에서는 각 복음서의 주제와 신학적 특성을 고찰하고 더 나가서 공관복음 본문의 실제적 해석을 익히도록 한다.

◆ 교의학원전강독 (Reading of Doctrinal Document)

개혁교회의 근간이 되는 교리적 문서들을 정한후 함께 독해하고 토의한다.

◆ 교회양육의실제 (Reality of Church Nurturing)

교회 안 평신도의 위치를 재고하면서 평신도의 역량강화와 교회 안 사역의 헌신도를 함양시키는데 그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 교회양육이론 (Church Nurturing Theory)

평신도지도자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양육을 목회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 교회의개혁과윤리 (Church Reform and Ethics)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복음적 가치를 따르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복음적 실천의 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과목이다.

◆ 교회지도력개발 (Church Leadership)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바람직한 영적지도자로서의 목사상을 정립한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상을 갖추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하여 바람직한 지도력을 함양시키려는 과목.

◆ 교회헌법(A Study of Book of Order)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헌법을 배우는 과목이다.

◆ 구약개관 (Survey of Old Testament)

구약성서의 신앙사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근거하여 구약의 각 책 별 역사배경과 그에 따른 메시지를 연구하고, 구약의 연구방법에 접근하여 구약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구약신학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구약신학 I 은 창세기부터 이사야서까지 본문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일관된 구약성서 이해에 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강의는 현대 구약 연구에 주도적인 길을 제시한 전승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되 이러한 연구와 다른 입장을 가진 방법과도 비교하여 진행된다.

◆ 구약원전강독 (Reading the Old Testament in Hebrew)

히브리어 문법을 기본적으로 이수한 자가 약동사 등 진전된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고 시편1편, 시편23편, 십계명, 쉼마, 잠언1장 등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을 것이다. 이로써 성서해석과 선포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인 구약을 반드시 히브리어로 읽어야 할 필요성을 이해토록 하며, 또한 히브리어로 읽음으로써 구약의 풍부한 메시지를 원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신학도로서 하나님 말씀의 풍부한 의미를 접하며, 히브리어 성서 독서에 자극을 받기 위함이며, 나아가서 히브리어 구약성서를 읽는 기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 구약주석과설교 (Old Testament Exegesis and Preaching)

성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주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교회의 기초가 성서라면, 교회의 성서해석의 전문적인 능력은 성서주석 능력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석을 할 수 있는 자질은 목회자로서 필수적인 능력이다. 신대원 고학년으로서 구약을 어떻게 주석하며, 이를 선포적 상황에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서해석의 다양한 방법들에 관해 강의하며, 강의 참여자들이 직접 성서주석과 설교작성을 실습하게 될 것이다.

◆ 구원론 (Soteriology)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구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여, 목회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설들을 성서적으로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독교적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죄의 정황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 성취로서의 속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며, 여기에 근거하여 전통적 ordo salutis를 단계별로 논구한다.

◆ 기독교교육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에 관한 이론적 개론을 통해 목회적 기능의 교육적 수행을 향한 기초 이해와 지혜의 자료를 제공함에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내용은 크게 3부로 나누어 제 1부는 기독교교육의 학문적 기초론으로 신학적 기초, 발달 이론적 기초, 사회-문화적 기초 그리고 역사적 고찰을 개괄함으로써 기독교교육의 개념과 정의와 교육 철학적 기초 이해를 돕는다. 제2부는 교육 현상론으로 교회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 전파미디어를 통한 교육 등을 다루고 제3부는 교육과정과 방법론으로 교수-학습론, 커리큘럼, 교육방법론, 지도력개발, 교육행정 등을 다룬다.

◆ 기독교영성공동체탐방 (Study of christian spiritual community)

국내외 기독교 영성공동체에 대한 탐방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목회 사역과 방향성 정립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 기독교윤리 (Christian Ethic)

기독교윤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기독교윤리학과 일반윤리학의 관계, 기독교윤리의 기본 요소, 기독교인으로서의 도덕적 판별의 문제, 법과 양심의 관계, 규범과 맥락,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 기독교

교 사회윤리에 대한 기본 이해를 검토 등이 본 강의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 기본보컬 (Basic Vocal)

교회에서의 음악 활동시 개인의 보컬 능력을 확장하여 좋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팀 운영시 보컬 지도의 역할도 가능하도록 교육하는 과목이다.

◆ 도시교회개척론 (Urban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근거를 고찰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교회 개척의 원리와 실재를 탐구하고, 도시 교회 개척의 상황에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디아코니아개론 (Introduction of Diakonia)

디아코니아 신학(이론)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교회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를 살피고(역사),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디아코니아적 해석과 적용(실천)을 함께 살펴보는 과목이다.

◆ 디아코니아신학 (Diakonia Theology)

디아코니아 신학은 실천을 위해서 이론적으로 정립된 학문이며,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실천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과목이다.

◆ 리더십과 제자훈련 (Leadership and Discipleship Training)

선교와 목회 현장에서의 리더십과 제자훈련의 접목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다.

◆ 리더십의실행과전략 (The Practice and the Strategy of Leadership)

리더십의 이론과 기초 입문을 전제로 한 과목으로서 리더십의 실천신학적인 실행 원리와 목표 수행을 위한 소통의 행사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를 배우는 과목이다.

◆ 목회상담학 (Pastoral Counseling)

21세기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목회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또한 신학함에 있어서 목회적인 관점을 가지고 상담의 이론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 또한 성경에 나타나있는 예수의 상담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이다.

◆ 목회와신학 (Ministry and Theology)

신학대학원 각 신학 분야의 신학방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계, 학술지 소개하며, 해당 신학과 타 신학 분야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그리고 해당 신학의 목회적 적용과 비전을 제시하는 과목이다.

◆ 목회와디아코니아 (Ministry and Diakonia)

디아코니아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실천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다.

◆ 목회현장과기독교교육



기독교 교육의 현장을 분석함으로써, 포스트모던 시대에 합당한 교회 교육의 비전을 갖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교회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도록 가르치는 과목이다.

◆ 목회현장세미나1,2 (Seminar for ministerial field)

현대목회의 다양한 현상을 관찰하고, 교회론적 입장에서 조명한다. 현장 목회자의 경험을 청취하고 평가한 후에 토의한다.

◆ 바르트특강 (Theology of Karl Barth)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인 칼 바르트의 신학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부적으로 여러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 바울서신1,2 (Pauline Epistles)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의 선교활동을 통하여 초기 기독교는 로마 세계에 확고히 뿌리를 내렸으며, 이로써 세계 종교가 되는 기초가 다져졌다. 바울은 많은 서신들을 기록했고, 그 중에 다수가 신약성서 안에 남아 있다. 따라서 바울 서신들의 내용과 그 안에 담긴 주요 사상들을 파악하고 고찰하는 것은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포함한 신약성서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 발성법1,2 (Study of Vocalization)

설교와 찬양 인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발성법을 배우는 과목이다.

◆ 복음과한국문화 (Gospel and Korean Culture)

한국문화에 전래된 복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수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한국문화의 옷을 입은 복음은 무엇이며 그러한 복음 이해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바람직한 복음화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문화 변혁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선교와문화인류학(Mission And Culture Anthropology)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화의 이해와 복음을 전달하는 데에 문화 인류학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고, 생소한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 인류학적 방법을 체득하는 과목이다.

◆ 선교의성경적기초 (Biblical Foundations of Mission)

성경의 기본 주제는 선교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되 약속의 형태로 계시하셨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지만 그것은 결국 천하만민에게 증거하고자 하시는 목적을 갖고 선택하신다는 것이다. 결국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을 이루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것과 같이 자신도 또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오늘날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다.

◆ 선교인력개발 (Developing Missionary Leadership)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백성들을 직접 키우시고 훈련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인력을 키우시는 데에는 세가지 중요한 변수가 내재한다. 그것은 과정(Processes), 시간(Time), 그리고 반응(Response)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인력을 개발하신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지도자들의 삶을 고찰해보면 약 50여 가지의 과정들이 발견된다. 그러한 과정들을 인식하고 각 과정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나갈 때 그/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맺음을 잘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들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이 촉진될수도 저지될 수도 있다.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함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선교인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은 중요한 변수이다. 초기와 중기 그리고 말기에 각각 개발의 초점이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시간상의 위치를 바르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바르게 응답할 때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 선교학 (Missionology)

선교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선교적 목회 또는 선교하는 교회나 선교사역을 위한 기초를 쌓게한다.

◆ 선교현장연구와실습 (Research and Practice in Mission Field)

특정한 선교지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역사, 종교, 언어, 문화등)를 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의 종교와 문화, 기독교 역사 및 선교활동 등을 탐구하며 현장 선교활동에 참여하여 실습한다.

◆ 설교와커뮤니케이션 (Preaching and Communication)

설교학 개론은 설교의 신학적 이해와 작성과 설교전반에 관한 기초적 이해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설교의 실체는 설교를 연습하는 과목이라면, 본 과목은 설교의 대상인 회중의 이해와 그들에게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 지침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성경연구방법과 그룹성경연구(Bible Study Method and Group Bible Study)

다양한 성경연구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목회현장에서 성경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성경공부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성경공부의 이론과 실재를 익혀서 1:1 성경공부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공부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성례전과영성 (Sacrament and Spirituality)

성만찬과 세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성례전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역사적, 영성적 이해를 통해서 성례전 연구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교회에 적용할 것을 목표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찰한다.

◆ 성문서 (Writings)

구약성서의 세 번째 부분인 성문서의 책들 가운데 주요 책들(예전대, 율기와 시편)을 주석적 방법을 통해 본문의 의미와 신학적 중요성을 탐구하여 본문이해와 현실문제에 대한 적응능력을 기른다.

◆ 성서교수법 (Bible Teaching Method)

성서를 교회현장에서 실제로 교육하는 교수하는 다양한 가르침의 기술을 터득케 함에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 성서지리 (Geographic Study of Bible)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성서지리를 알기 위하여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들의 지리적인 특성을 연구하여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지방과 우리나라와의 지리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하며 성지순례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 성서지리와설교 (Bible Geography and Preaching)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성서지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설교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특히 지명강해 설교와 본문을 명확하게 해주는 설교와 성서지리에서 생생한 예화를 찾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성찬과교회성장 (Lord's Supper and Church Growth)

성찬의 성서적, 역사적,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교회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사례들을 조사 분석한다.

◆ 세계교회사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고대 교회와 중세 교회와 종교개혁 시대까지 교회사의 흐름을 파악한다. 기독교와 로마제국, 이단 논쟁과 교리의 발전, 수도원 운동, 교회의 제도적 발달,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교황권의 성장, 삼위일체론과 기독교 논쟁, 어거스틴, 프랑크족의 교황청, 샤를마뉴, 교황청의 개혁, 서임권 논쟁, 십자군 운동, 탁발 수도회, 스콜라주의 신학, 신비주의, 교회의 대분열, 인문주의, 독일의 종교개혁, 스위스의 종교개혁, 재세례파, 로마 가톨릭의 개혁, 영국의 종교개혁, 종교전쟁, 정통주의 신학 등을 다룬다.

■ 세계선교운동사

◆ 신구약중간사 (Interstament History)

기독교는 헬레니즘이라는 배경하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초기 유대교를 모태로 탄생한 종교이다. 따라서 신약성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탄생의 배후로서 구약과 신약시대의 연결고리인 중간사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헬라 세계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이와 맞물려 있는 유대의 상황 및 관련 유대 문헌들을 살펴봄으로써 신약성서의 배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 신비신학사 (History of Mystical Theology)

수도원 운동, 동방 정교회의 신비 신학, 중세 가톨릭 신비 신학, 반종교개혁의 신비 신학, 근대 신비 신학의 역사를 다루어, 신학과 영성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얻게 한다.

◆ 신약개론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신약성서의 형성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 시대의 유대 역사를 개관하고, 그 시대와 관련된 유대 문헌의 성격을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신약성서의 정경화 과정과 사본들의 전달 과정을 공부하므로 신약성서의 본질과 그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그와 더불어 신약성서 각 책의 주제, 개요 및 중요한 신학적 문제들을 다루며, 저자와 저술 연대를 검토하므로 각 책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도록 한다.

◆ 신약원전강독 (Reading of the Greek New Testament)

회랍어 원문 신약성서 중 문법적으로 가장 평이한 본문을 강독하므로 이미 공부한 신약성서 회랍어 문법에 대한 지식을 더욱 익히고, 더 나가서 신약성서 원문을 스스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한다.

◆ 신약주석과설교 (New Testament Exegesis and Preaching)

주석(註釋)이라함은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한다”는 의미로서 주해(註解) 또는 석의(釋義)와 일맥상통하는 단어이다. 단어 ‘석의(exegesis)’가 헬라어 ex(밖으로) + egesis(이끌어 낸다)에서 유래된 것처럼, ‘주석’이란 성서가 말하는 바를 쉽게 풀어서 설명함으로서 그 의미를 밖으로 올바르게 끄집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신약주석과 설교’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며 이로서 본문을 올바르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과목이다.

◆ 신조학 (Christian Creeds)

신조는 신앙의 제 1규범으로써의 성경-norma normans-에 근거한, 진리의 요약-norma normata-이며, 교회의 신앙고백이다. 따라서 교회의 진리 선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고백된 신조에 대한 직접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신조학은 이 과제를 수행한다.

◆ 실물설교론 (Preaching Method)

설교능력의 실제적 향상을 목표로 하며, 실물설교의 기능과 효과를 이해하여 활용한다. 또한 창의적인 시청각 설교를 작성하는 법을 상호간에 비교하고 이해한다. 그리고 설교자의 일방적인 웅변에서 벗어나 청중과 더불어 대화하고 공감하는 설교능력을 기른다.

◆ 아동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Children)

유아와 학동기 어린이들의 발달 특징들을 기초로 하여 이들의 기독교적 양육을 위한 교육이론과 실제방안을 모색한다.

◆ 아모스연구 (Study on The Book of Amos)

아모스서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아모스서의 메시지를 주석적으로 연구하여 아모스서의 메시지에 대한 이해 및 적용에 이르고자 함.

◆ 에큐메니칼운동사 (History of Ecumenical Movement)

20세기 교회 일치 운동으로서 ‘신앙과 직제,’ ‘생활과 실천,’ ‘선교와 복음 전도’의 역사와 신학을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세계 교회의 과제를 전망한다.

◆ 역사서 (Historical Book of the O.T.)

오경의 후속 역사로서 구약의 역사서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에 담겨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역사서의 메시지를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역사적예수 (Historical Jesus)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삼위일체적 신앙의 근간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이다. 이 예수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적 신앙의 근본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예수’와 관련한 제반 지식과 신학적 논쟁점들을 반드시 검토하고 숙지하고 익히는 것은 신학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 영성훈련 (Spirituality Practice)

영적 묵상을 통한 실제적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영성 형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과목이다.

◆ 영적 리더십 개론

리더십의 주요 이론들을 고찰하고 실제 사례들을 기독교적인 접근으로 이해하여 기독교 사역 현장에 수렴되는 영적 리더십 모델을 세우도록 한다.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리더십의 이론적 토대와 함께 영적 리더십의 고유한 적용을 모색한다.

◆ 예배기획 (Worship Planning)

현대의 문화예배흐름과 특징을 분석하여 기획, 조직구성, 운영, 진행, 역할에 대한 이해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연구하며 각 교회와 예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예배사역이론과실제 (Worship Ministry Theory And Practice)

예배사역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원리들(예배신학, 사역관, 문화관, 세계관, 영성등)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그 개념으로 예배현장사역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 예배와설교의실제 (Practice in Worship and Preaching)

예배디자인과 준비, 예배관찰과 평가, 설교를 듣고 평가하기를 통해 향후 설교 연구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설교의 중요 요소들에 대한 인지능력 발달을 꾀한다. (Sermon listening and Evaluating) 설교문을 작성(composition)하고, 설교함(delivery)을 통해 설교자로서 필요한 소양을 기른다.

◆ 예배와설교 (Worship and Preaching)

이 과목은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하는 사역으로, 목회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목이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전반부에는 예배를, 후반부에는 설교를 다룬다. 전반부에 예배의 신학적 기초, 역사적 고찰, 목회적 적용을 시도하고, 설교의 경우 이후에 설교의 실체라는 필수과목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론적 기초, 설교의 정의를 중심으로 한 설교신학, 설교의 역사, 설교작성법의 개요를 다룬다.

◆ 예배와현대문화 (Worship and Modern Culture)

급변하는 문화의 물결 속에서 예배의 모습이 급격히 변화해가는 것을 주목하면서, 예배의 환경으로서 문화의 여러 요소, 즉 음악, 건축, 예술, 멀티미디어 등에 관해 관찰 및 토의한다. 예배의 상황으로서 문화에 대한 이해, 예배의 문화적 적용에 기초적 이해, 예배 회중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찰을 꾀한다.

◆ 예언서연구 (Study on the Prophets)

구약의 후기 예언서 부분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12 소예언서의 역사 배경과 그 역사 배경에 따른 예언자들의 신학과 그에 따른 신학적 메시지를 알아봄으로써 예언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오경해석 (Interpretation of the Pentateuch)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정경화 과정에서 초기 200년간은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해왔다.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했다. 오경의 구조와 그에 따른 신학과 메시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요한계시록연구 (Study of the Revelation of John)

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본문에 대한 적합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계시록과 관련된 신학적 문제들을 고찰코자 한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특수한 성격을 살펴보고 그 역사적 배경 연구에 관심을 둔다. 그와 더불어 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본문 해석을 시도한다.

◆ 요한복음연구 (Study of the Gospel of John)

요한복음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먼저 요한복음의 형성 배경을 살펴본다. 그것을 위해 역사 비평방법(자료, 편집, 문학비평 등)을 통해 본문을 공부하며, 요한 공동체의 삶의 정황을 초기 교회의 여러 공동체와 관련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주요 신학사상(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등)을 공부하므로 본문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간론 (Doctrine of Man)

인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대상이다.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성경에 근거하여, 개혁신학의 전통에 따라 추구한다.

◆ 일반서신 (Study of Letters)

바울서신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저자, 연대, 일반적인 서론을 취급하고 바울 신학의 교의 및 교회론의 제반문제와 각 권의 내용을 분해하여 연구한다. 공동서신의 문서상 성격, 신학등 개론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본문을 석의하여 오늘의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고찰한다.

◆ 전공현장실습 (Practice of Field Work)

전공과 관련된 현장에서 미리 실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현장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현장의 필요를 보다 공감적으로 볼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미래의 사역과 학업에 대해서 통합적인 안목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 제자훈련 (Disciple Training)

제자훈련의 이론을 습득하여 목회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경건의 훈련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제자훈련과 성경공부와 설교와 목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매카니즘을 연구하고 목회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조직신학 1 (Systematic Theology 1)

이 강좌의 목표는 기독교 조직신학 이해를 위한 기초적 소양을 갖게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신학의 과제, 요소, 신학의 학



문성, 계시등을 다루는 신학 방법론이 집중적으로 소개되며, 여기에 따라 신론, 기독교론, 성령론, 삼위일체론의 기본적 교의가 논의된다.

◆ 조직신학 2 (Systematic Theology 2)

조직신학 I 을 기초로하여 신론, 기독교론, 성령론, 삼위일체론의 세부적 주제들과 함께 교회론과 종말론등이 논의된다.

◆ 집단상담학 (Collective Counselling)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재를 겸하여 학습하여 기독교 사역자로서의 자기성장과 타인 이해의 깊이를 갖춘 지도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 찬양인도의실제1,2 (Practice of Praise and Worship)

찬양인도와 연결된 사역현장의 다양한 쟁점을 주제로 독서보고와 영상자료 세미나를 진행하여 현장사역에 있어 발생하는 실제적인 쟁점을 이해하고 실천적용 및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목이다.

◆ 창세기연구 (Genesis)

창세기의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의 고대 또는 초기에 기록된 것은 아닐지라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The Old Testament at hand) 안에서 우리가 율법서(오경)를 읽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우주와 인류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초의 상황에 대한 기록인 창세기에 서부터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며 창세기 속에서 우리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를 위해 창세기 본문을 깊이 있게 주석 하면서 연구하여, 교회의 선포에 더불어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 청소년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Youth)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도덕적, 종교적 여러 특성들을 이해하고 가정, 사회 그리고 교회와의 연관 속에서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방안을 제시한다.

◆ 초급라틴어 (Latin 1)

교부시대이후 근세까지 신학적 개념들은 주로 라틴언어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라틴언어로 쓰여진 신학저술들을 읽는 것 이외에도 신학적 개념 이해를 위해서도 라틴언어의 초보적 이해는 필요하다.

◆ 치유와상담 (Healing & Counseling)

치유와 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담의 개념들을 익힘으로서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타인을 수용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 치유적전인영성 (Healing Spirituality)

목회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처하여 그들의 전인적인 건강과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우며, 만남과 관계의 기술, 문제 해결의 기술, 위기 중재의 방법,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해 나가는 방법 등을 배운다.

◆ 칼빈신학특강 (Theology of John Calvin)

칼빈의 신학을 주제에 따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 타문화권선교 (Cross-cultural Mission)

신구약성서에 나타난 선교개념, 세계선교역사,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핵심 요소 연구를 통한 교회관 및 선교관을 정리하며, 세계화와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의 복음증거 전략, 타종교에 대한 연구 및 타문화권에서의 선교를 위한 이론들을 정립한다.

◆ 한국교회사 (Korean Church History)

한국교회의 역사에 대한 특수문제를 세미나 형식으로 연구, 주제별로 문제를 구성하여 해석, 종합한다.

◆ 한국교회와디아코니아 (Diakonia of Korean Church)

한국 역사와 교회사 속에, 한국 교회의 디아코니아 현장 방문을 통해, 디아코니아를 살펴봄으로써 무엇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양해야할지를 디아코니아 신학적으로 고찰,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나아갈 디아코니아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목이다.

◆ 헬라어 (New Testament Greek)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성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번역은 반역이라”는 로마속담처럼 번역과정을 거치면 원래 언어의 어감과 뜻이 반감되며, 심지어 의미가 왜곡되어 지기도 한다. 따라서 헬라어 기초 단어와 필수 문법을 익힘으로서 직접 원문을 읽고 해석하여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현대신학 (Modern Theology)

19세기 계몽주의 이후의 현대신학을 연구하여 전통적인 신학의 문제들을 오늘날의 세계관과 경험의 지평에서 새롭게 고찰하고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올바른 미래의 신학적 전망을 수립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필요한 복음의 의미를 재발견한다.

◆ 히브리어 (Hebrew Grammar)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읽는 것이 옳다. 특히 신학을 이수하여 교회의 성서해석을 담당하며 성서적 묵회와 삶을 위해서는 구약을 히브리어로 읽는 것은 기본적 소양에 속한다. 특히 신대원 상급 학년에서 구약 강의에 참여하고 연구하게 될 때 기초 히브리어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어의 기초적 내용을 공부하며, 중급 이상의 히브리어는 구약 원전강독을 통해 심화하여 이수토록 한다.



✦ 목회연구과정 교과과정

학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비고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비고
전체	전필	채플1357 / 실천1357	0-0-1 0-0-1	경건 실천처	채플2468 / 실천2468	0-0-1 0-0-1	경건 실천처
2	전필	구약개관	3-3-0		신약개관	3-3-0	
		조직신학원론	3-3-0		기독교윤리학개론	3-3-0	
	전선	그리스어기초	3-3-0		히브리어기초	3-3-0	
		구약신학	3-3-0		현대기독교사상	3-3-0	
		구약주석과 설교	3-3-0		구원론	3-3-0	
		신학적인간론	3-3-0		신약주석과설교	3-3-0	
		21세기 교회론			요한복음해석	3-3-0	
		요한계시록 해석					
3	전필	선교신학	3-3-0		에큐메니칼운동사	3-3-0	
		교회헌법(합강)	2-2-0	학기 변경	예배와설교	3-3-3	
	전선	구약원전강독	3-3-0		한국교회사	3-3-0	
		신구약중간사	3-3-0		한국문화와기독교	3-3-0	
		현대선교학	3-3-0		신조학	3-3-0	
		신학적인간론	3-3-0		신약원전강독	3-3-0	
		발달심리와기독교교육	3-3-0		교회와성례전	3-3-0	신규
		예배세미나			시편해석	3-3-0	
		세계교회사					
		설교를 위한 구약원전					
		신학성서의 목회적적용					

✚ 목회연구과정 교과목 설명

◆ 교회헌법 (Church Constitution)

본 교단 헌법을 배우고, 현장 목회에서 적용사례들을 검토한다.

◆ 구약개관 (Old Testament Survey)

구약의 역사 배경에 의해 구약의 히브리 사상을 연구하고 이에 따라 구약 각 권의 개괄적 연구를 통해 구약성서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함양함에 그 목적이 있다.

◆ 구약신학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구약신학은 창세기부터 이사야서까지 본문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일관된 구약성서 이해에 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강의는 현대 구약 연구에 주도적인 길을 제시한 전승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되 이러한 연구와 다른 입장을 가진 방법과도 비교하여 진행된다.

◆ 구약원전강독 (Reading the Old Testament in Hebrew)

히브리어 문법을 기본적으로 이수한 자가 약동사 등 진전된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고 시편1편, 시편23편, 십계명, 쉼마, 잠언1장 등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을 것이다. 이로써 성서해석과 선포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인 구약을 반드시 히브리어로 읽어야 할 필요성을 이해토록 하며, 또한 히브리어로 읽음으로써 구약의 풍부한 메시지를 원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신학도로서 하나님 말씀의 풍부한 의미를 접하며, 히브리어 성서 독서에 자극을 받기 위함이며, 나아가서 히브리어 구약성서를 읽는 기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 구약주석과설교(Old Testament Exegesis and Preaching)

구약 주석 방법론 이론과 실습, 주석에 의한 설교 작성 실습하는 과목이다.

◆ 구원론 (Soteriology)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구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여, 목회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설들을 성서적으로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독교적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죄의 정황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 성취로서의 속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며, 여기에 근거하여 전통적 ordo salutis를 단계별로 논구한다.

◆ 그리스어기초 (Basic Greek)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성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번역은 반역이라”는 로마속담처럼 번역과정을 거치면 원래 언어의 어감과 뜻이 반감되며, 심지어 의미가 왜곡되어 지기도 한다. 따라서 헬라어 기초 단어와 필수문법을 익힘으로서 직접 원문을 읽고 해석하여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기독교교육개론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에 관한 이론적 개론을 통해 목회적 기능의 교육적 수행을 향한 기초 이해와 지혜의 자료를 제공함에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내용은 크게 3부로 나누어 제1부는 기독교교육의 학문적 기초론으로 신학적 기초, 발달 이론적 기초, 사회-문화



적 기초 그리고 역사적 고찰을 개괄함으로써 기독교교육의 개념과 정의와 교육 철학적 기초 이해를 돕는다. 제2부는 교육 현 장론으로 교회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 전파미디어를 통한 교육 등을 다루고 제3부는 교육과정과 방법론으로 교수·학습 론, 커리큘럼, 교육방법론, 지도력개발, 교육행정 등을 다룬다.

◆ 기독교윤리학개론 (Christian Ethics)

기독교 윤리의 주제, 목적, 표준 및 원리가 제시된 성경을 토대로 연구하면서 교회와 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윤리적 문제들 에 대한 성경해석학적 답변을 모색한다.

◆ 목회와신학 (Ministry and Theology)

신학대학원 각 신학 분야의 신학방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계, 학술지 소개하며, 해당 신학과 타 신학 분야와의 상호보완 적 관계, 그리고 해당 신학의 목회적 적용과 비전을 제시하는 과목이다.

◆ 목회현장세미나 (Seminar for ministerial field)

현대목회의 다양한 현상을 관찰하고, 교회론적 입장에서 조명한다. 현장 목회자의 경험을 청취하고 평가한 후에 토의한다.

◆ 선교학(Missiology)

선교학 제 분야의 기본적인 이해와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 관련하여 선교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대 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결단하며 미래에 대한 선교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목이다.

◆ 설교학개론 (Introduction to Preaching)

설교의 기초적 이해를 위해 설교의 정의, 설교의 내용, 설교의 목표, 설교자의 자세와 정체성, 설교의 전달과 설교의 환경 을 연구한다.

◆ 시편해석 (Interpretation of the Psalms)

구약성서 가운데 '인간의 응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을 연구하되 시편의 '삶의 자리'와 해석의 역사를 밝혀 각 시편이 오 늘날 우리 시대에 의미하는 바를 탐구한다.

◆ 신구약중간기문헌연구 (Study of Intertestamental Documents)

구약의 말라기 이후 그리스도 탄생 전까지의 4세기 동안 나타난 유대의 역사와 그 역사의 과정에서 발생된 문헌을 다룬다.

◆ 신론 (Doctrine of God)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의 타당성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삼위일체의 제 1위로서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서적 및 교회사적 고백들을 이해, 종합한다. 여기에 근거하여 초월자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에 대한 개혁 신학적 이 해가 추구되도록 한다.

◆ 신약개관 (New Testament Survey)

신약성서의 형성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 시대의 유대 역사를 개관하고, 그 시대와 관련된 유대 문헌의 성격을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신약성서의 정경화 과정과 사본들의 전달 과정을 공부하므로 신약성서의 본질과 그 신학적 의미를 이해 하도록 한다. 그와 더불어 신약성서 각 책의 주제, 개요 및 중요한 신학적 문제들을 다루며, 저자와 저술 연대를 검토하므로 각 책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도록 한다.

◆ 신약원전강독 (Reading of the Greek New Testament)

회랍어 원문 신약성서 중 문법적으로 가장 평이한 본문을 강독하므로 이미 공부한 신약성서 회랍어 문법에 대한 지식을 더욱 익히고, 더 나가서 신약성서 원문을 스스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한다.

◆ 신약주석과 설교 (New Testament Exegesis and Preaching)

주석(註釋)이라함은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한다”는 의미로서 주해(註解) 또는 석의(釋義)와 일맥상통하는 단어이다. 단어 ‘석의(exegesis)’가 헬라이어 ex(밖으로) + egesis(이끌어 낸다)에서 유래된 것처럼, ‘주석’이란 성서가 말하는 바를 쉽게 풀어서 설명함으로서 그 의미를 밖으로 올바르게 끄집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신약주석과 설교’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며 이로서 본문을 올바르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과목이다.

◆ 신조학 (Christian Creeds)

신조는 신앙의 제 1규범으로써의 성경-norma normans-에 근거한, 진리의 요약-norma normata-이며, 교회의 신앙고백이다. 따라서 교회의 진리 선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고백된 신조에 대한 직접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신조학은 이 과제를 수행한다.

◆ 신학적인간론 (Theological Anthropology)

신학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이며 또한 이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인식과 인간의 인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본 과목에서는 인간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를 도모하되 교의학적인 인간론과 인간에 대한 타 학문과의 연구 성과를 주목하면서 목회와 신학에 기여할 지도자들을 위한 균형 잡힌 미래지향적 기독교 인간상을 추구하도록 한다.

◆ 에큐메니칼운동의역사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20세기 교회 일치 운동으로서 ‘신앙과 직제,’ ‘생활과 실천,’ ‘선교와 복음 전도’의 역사와 신학을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세계 교회의 과제를 전망한다.

◆ 예배와설교의실제 (Practice in Worship and Preaching)

예배디자인과 준비, 예배관찰과 평가, 설교를 듣고 평가하기를 통해 향후 설교 연구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설교의 중요 요소들에 대한 인지능력 발달을 꾀한다. (Sermon listening and Evaluating) 설교문을 작성(composition)하고, 설교함(delivery)을 통해 설교자로서 필요한 소양을 기른다.

◆ 예배와설교 (Worship and Preaching)

이 과목은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하는 사역으로, 목회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목이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전반부에는 예배를, 후반부에는 설교를 다룬다. 전반부에 예배의 신학적 기초, 역사적 고찰, 목회적 적용을 시도하고, 설교의 경우 이후에 설교의 실제라는 필수과목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론적 기초, 설교의 정의를 중심으로



한 설교신학, 설교의 역사, 설교작성법의 개요를 다룬다.

◆ 요한복음해석 (Interpretation on John's Gospel)

요한복음서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요한복음서 1-21장까지 자세히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과목이다.

◆ 조직신학원론 (Systematic Theology)

이 강좌의 목표는 기독교 조직신학 이해를 위한 기초적 소양을 갖게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신학의 과제, 요소, 신학의 학문성, 계시등을 다루는 신학 방법론이 집중적으로 소개되며, 여기에 따라 신론, 기독교론, 성령론, 삼위일체론의 기본적 교의가 논의된다.

◆ 종교개혁사 (History of Reformation)

루터교회, 개혁신교회, 영국성공회, 재세례파의 역사와 신학 등 종교개혁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공부하고, 현대 복음주의 교회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검토한다.

◆ 한국교회사 (Korean Church History)

한국교회의 역사에 대한 특수문제를 세미나 형식으로 연구, 주제별로 문제를 구성하여 해석, 종합한다.

◆ 한국문화와기독교 (Culture and Christianity in Korea)

한국 문화에 대한 심도 높은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문화인류학의 문화이해 방법론을 사용하여 한국 문화를 분석하도록 한다.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과 또한 성경적 세계관에 비추어서 변화시켜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한다.

◆ 현대기독교사상 (The Modern Christian Thought)

현대 신학자들의 견해를 연구하여 전통적인 신학의 문제들을 오늘날의 세계관과 경험의 지평에서 새롭게 고찰하고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올바른 미래의 신학적 전망을 수립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필요한 복음의 의미들을 재발견한다.

◆ 히브리어기초 (Hebrew Grammar)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읽는 것이 옳다. 특히 신학을 이수하여 교회의 성서해석을 담당하며 성서적 묵회와 삶을 위해서는 구약을 히브리어로 읽는 것은 기본적인 소양에 속한다. 특히 신대원 상급 학년에서 구약 강의에 참여하고 연구하게 될 때 기초 히브리어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어의 기초적 내용을 공부하며, 중급 이상의 히브리어는 구약 원전강독을 통해 심화하여 이수토록 한다.

+ 사회복지상담대학원 교과과정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3차수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전필	사회복지법제론	3	전선	교정복지론	3	부전공	사회복지상담이론과	3
	사회복지실습	3		청소년복지론	3		실제	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노인복지론	3		상담과자기이해	3
	사회복지실천론	3		장애인복지론	3		청소년상담	3
	사회복지정책론	3		아동복지론	3		위기상담	3
	사회복지조사론	3		가족복지론	3		집단상담의실제	3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보장론	3		가족상담및가족치료	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지역사회복지론	3		개별독립학습	3			
				논문 I	3			
				논문 II	3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없는 학생은 전공필수 과목 중 6개 교과목(사회복지실습 포함)과 전공선택 과목 중 2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는 학생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부전공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27학점을 이수한다.

※ 상담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부전공 과목 중 3개 교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상담대학원 교과목 설명

◆ 가족복지론 (Social Work Practice with Family)

한국의 아동·여성·가족복지정책과 과제를 이해하고 특히 빈곤층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분석하며 그 해결 방안들을 이론적으로 학습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별독립학습 (Independent Study)

사회복지분야 가운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특정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사회 복지사로서의 지식과 자질을 함양한다.

◆ 교정복지론 (Correctional Social Work)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자들이 사회에 재적응하고 사회적 기능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망 구축에 대해 연구한다.

◆ 노인복지론 (Social Welfare for the Aged)

노화의 과정과 노인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통해 자신



이 경험하게 될 노화와 부모나 그 밖의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는 노화를 이해하며 노인 내담자와 일하게 될 전문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할 노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 사회보장론 (Social Security)

사회보장의 이론과 연혁, 선진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 연구하며, 현존 우리 나라의 보장제도를 분석 비판, 타당한 미래의 제도를 학습한다.

◆ 사회복지법제론 (Social Welfare Laws)

우리 나라 사회복지법과 사회사업실천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연구함으로써 전문사회복지사로서의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뿐 아니라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 등도 총괄적으로 학습한다.

◆ 사회복지실습 (Social Welfare Practicum)

전문사회복지 교육과정의 통합적 부분으로서 학교에서 학습한 모든 내용과 개인적 경험을 사회복지현장에 나가서 전문적 지도감독을 받는 가운데 직접적 서비스 활동과 간접적 서비스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실습의 내용은 행정적 측면, 이론 및 기술의 학습측면 그리고 전문적 가치관 및 윤리를 실천하는 전문적 자아 형성의 측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개인, 가족, 집단,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체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과 기법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 사회복지실천론 (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실천의 의의, 이론 및 개입기술을 학습하여 전문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문제 사정, 치료계획과 개입, 종결과 평가 등의 개입과정을 습득하여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학습하도록 한다.

◆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갖춘 실천 그리고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에 변화를 도입하는 노력에 분별 있고 책임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국내외의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기능과 비기능의 요소들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사회복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의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목이다. 교과목의 내용은 조사를 위한 문제제기, 조사방법, 조사설계, 결과분석, 보고서의 작성에 이르는 전과정을 다루게 된다. 사회복지조사론에서는 사회사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집단조사방법을 주로 학습한다.

◆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조직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하나의 조직체를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행정상의 기술과정 및 문제점을 조직론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복지론 (Social Welfare for Children)

건강한 아동의 성장발달에 관련되는 제반 사회제도 및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배우고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아동문제 전반의 예방과 치료대책에 관해 학습한다.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전문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시각인 환경 속의 개인이라는 초점을 유지하면서 개인이 생활주기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 집단,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발달하는 인간발달에 대한 지식과 개인들이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그리고 생태학적 체계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 부정적 영향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 장애인복지론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장애인복지의 개념, 영역, 재활 및 장애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전문 사회사업적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회사업으로써 지역사회조직의 특성과 조직방법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는 활동으로써 지역사회조직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한다.

◆ 프로그램개발및평가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관련된 전 과정을 단계별로 학습한다. 이 과정은 프로그램 설계나 계획뿐만 아니라 설계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한 수정 및 보완,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이에 대한 재평가 및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전략방법들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상담 이론과 실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담의 이론을 학습하고, 역할극을 통해 상담의 실재를 익힘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상담 업무를 이해하도록 한다.

◆ 상담과 자기이해

상담자의 올바른 자기이해는 성공적인 상담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MBTI 성격유형검사, 감정 반응유형 검사, 의사소통 유형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를 통해 상담자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유능한 상담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청소년상담

청소년상담의 개념과 목적,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청소년 대상 상담 업무를 이해하도록 한다.

◆ 위기상담

상실, 이혼, 폭력, 중독,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상담개입의 전략을 학습함으로써 내담자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다.

◆ 집단상담의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집단상담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로 하여금 집단상담의 개념을 학습하고, 집단상담을 이끌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개인 및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 실천기술로서 가족치료의 주요 모델과 실재를 학습하며, 사례분석과 역할연습을 통하여 가족치료의 과정 및 기법을 훈련한다.

✦ 문화예술대학원 교과과정

이수구분	교과과정		
	차수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공통필수	모든차수	전공실기 1.2.3.4	2-1-1
	1학기	음악이론	2-2-0
	2학기	서양음악 세미나	2-2-0
	4차수	졸업연주, 졸업논문	3-1-1
전공필수	성악	홀수해	예술가곡클래스 1
			안간 행동과 음악
		짝수해	예술가곡클래스 2
			예술경영
	피아노	홀수해	피아노세미나 1
			안간 행동과 음악
		짝수해	피아노세미나 2
			예술경영
	지휘	홀수해	지휘세미나 1
			합창문헌 1
		짝수해	지휘세미나 2
			합창문헌 2
	오르간	홀수해	오르간세미나 1
			안간 행동과 음악
		짝수해	오르간세미나 2
			예술경영
전공선택	매년	모든 차수	합창음악연구1.2.3.4.
			부전공실기 (성악, 피아노, 오르간, 지휘)
		2.4 차수	성악 세미나 1.2
			피아노 교수법 1.2
			교회음악사
			교회음악(오르간) 실습

✚ 문화예술대학원 교과목 설명

◆ 전공실기 (Major - Piano, Vocal, Organ, Conducting)

전공실기를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연주하도록 한다.

◆ 졸업연주, 졸업논문 (Graduate Recital, Master's Thesis)

◆ 음악이론 (Music Theory)

서양음악의 여러 작품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해함

◆ 서양음악세미나 (History of Music Seminar)

서양음악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각 시대별 대표 작곡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이해함

◆ 인간 행동과 음악 (Music and Human Behavior)

인간 행동과 음악의 관계를 역사적, 과학적, 사회적 이론으로 살펴보고, 음악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하여, 음악인으로서 역량 강화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표를 두며, 인간 행동과 음악의 관계를 시대에 따른 인간관, 정서 및 사회적 관점, 음악 요소등으로 파악해보면서, 음악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실연(實演)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음악치료사를 하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필수로 필요한 과목입니다.

◆ 예술경영 (Art Management)

예술과 문화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학문 분야로써,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예술경영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예술경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적인 기술과 예술과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 예술가곡 클래스 1·2 (Vocal Seminar 1~2)

각 나라의 예술가곡을 시대, 나라, 작곡가별 특성을 연구하며 연주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성악세미나 1·2 (Arts songs class1~2)

성악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배우는 과목으로 성악 기법, 발성법, 보컬 테크닉 등을 다루며, 한국가곡과 오라토리오등 성가곡을 연구하며 연주함을 목적으로 한다.

◆ 피아노세미나 1·2 (Piano Seminar1~2)

피아노문헌과 연주법 등 매 학기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피아노교수법 1·2 (Piano Pedagogy1~2)

그룹지도와 개인지도를 위한 현대교재 및 보충교재 자료와 레퍼토리의 내용 및 효율적인 사용방법을 연구, 모색함으로써



창의적인 피아노 교수 내용을 연구한다.

◆ 지휘세미나 1-2 (Conducting Seminar 1-2)

합창 지휘와 관련된 주요 주제 (음악형식, 문헌, 연주 실제, 작곡가 연구 등)들을 선정하여 연구발표와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지휘자에게 요구되는 학문적 지식과 연주 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 합창문헌 1-2 (Choral Literature)

중세시대,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합창 음악에 관한 문헌 연구로서, Mass, Motet, Chanson, Madrigal, Oratorio, Passion, Anthem 등에 관한 장르 연구가 주 목적이다.

◆ 오르간세미나 1-2 (Organ Seminar 1-2)

오르간 문헌상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악파들의 문헌 및 Performance Practice를 깊이 연구한다.

◆ 교회음악사 (History of church music)

기독교 음악의 기원과 발달과정을 시대별로 연구하고 더불어 한국교회 음악의 역사를 연구하여 기독교음악의 전통을 이해하므로 이를 계승발전 시킴에 그 목적이 있다.

◆ 교회음악(오르간) 실습 (Church Music(Organ) Practicum)

예배 및 교회 음악활동을 위한 오르간 작품들을 연구하고 실습을 통해 레파토리를 확장한다.

◆ 합창음악연구 (Choral Music Study)

합창지휘 전공자로서 필요한 시대별 합창음악에 대한 이해와 연주양식뿐 아니라 합창음악의 여러 장르(국악합창, 재즈합창, 가스펠합창, 아프리카합창 등)의 음악에 대한 기초지식, 연주양식, 창법 등을 익히고 이에 맞는 지휘법을 병행해 배운다.

◆ 부전공실기 (Minor - Piano, Vocal, Organ, Conducting)

한 가지 전공 외에 또 다른 전공을 공부함으로써 음악 전반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폭넓게 익힌다.

✚ 자연치유선교대학원 교과과정

과목 구분	1차수	2차수	3차수	4차수
1	자연치유 학개론	형상체질과 진단학	임상체질 푸드테라피	자연치유 세미나
2	이혈상담학/ 운동치유학	경락치유학	오라분석/ 칼라테라피	성경과치유/ 카이로플래틱
3	기독교자연치유학/ 숲치유학	해부생리 병리학	홍채영양학	임상 아로마테라피



✦ 자연치유선교대학원 교과목 설명

◆ 경락치유학 (Meridian Healing Therapy)

경락과 인체의 음양(陰陽), 오행(五行), 장부(臟腑), 영위(營衛), 기혈(氣血) 관계를 이해하고 상호관계를 학습한다. 12정경, 8기경의 순행과 병 증후, 유주방향, 주요혈과 경혈의 위치, 주치 등을 학습한다. 석사과정에서는 심화 학습을 통해 활용성을 높이고자한다.

◆ 성경과치유 (Bible and Naturopathy)

성경에 나타난 천지창조와 다양한 치유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지금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자연치유가 의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안에 있음을 학습하고자한다.

◆ 오라분석 및 칼라테라피 (Aura Analysis and Color Therapy)

개인마다 고유의 오라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분석하여 상담학에 적용하고자한다. 칼라테라피는 빛과 색인 칼라가 우리의 삶과 궁극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원리를 활용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서양의 7단위 색과 동양의 5단위 색의 조화를 배운다.

◆ 운동치유학 (Naturopathy in Exercise therapy)

중력을 저항, 적응하면서 생명활동을 하는 우리인체는 체질에 따라 중력 저항도가 상이하며 이때 사용되는 근육도 상이하게 된다. 본 교과목은 체질과 건강도에 따른 합당한 운동을 통해 보다 건강할 수 있는 이론과 운동법을 실습하고자 한다.

◆ 이혈상담학 (Ear counseling Therapy)

서양의 반사학과 상담학을 접목한 귀건강상담학으로 건강을 향상시키고 가정에서는 물론 선교와 봉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임상아로마테라피 (Practice in Clinical Aromatherapy)

후각을 이용한 자연치유인 AROMATHERAPY(아로마테라피), 즉 향기요법 과정으로, 향기로 인체를 조화롭게하여 항상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로마 DIY를 통해 에센셜오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을 직접 경험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증상별로 아로마테라피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를 직접 임상 실습을 통해 배우게 된다.

◆ 임상체질푸드테라피 (Clinically Constructed Food Therapy)

임상체질푸드테라피는 음식의 7대 속성과 형상체질을 기반으로 가장 합당한 음식 섭취를 통해 생활습관병인 고혈압, 당뇨, 아토피등 만성적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스스로 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사례 연구와 실습을 통해 현장감을 익히며, 푸드테라피 처방이 가능하도록 돕는 교과목이다.

◆ 자연치유세미나 (Seminar of Naturopathy)

다양하게 학습한 자연치유학을 개인별로 심화 학습하는 과정으로서 각자의 주 관심분야 이론을 정립하고 임상 사례들을 모아 발표하는 과정으로 연구,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문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 자연치유학개론 (Introduction of Naturopathy)

우리 인체가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이해하며, 자연치유력 향상을 위한 기초 지식과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눈, 코, 귀, 입, 촉 오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인체가 하나 되어 조화와 균형을 유지·회복하는 항상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 카이로플래틱 (Chiropractic)

인체의 구조적 불균형이나 부분탈구 또는 배열이상 등으로 인한 신경계의 이상과 오장육부의 이상을 수기나 기계적 방법을 통해 인체의 불균형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는 치유 과학을 학습한다. 또한 척주와 근육, 신경의 압력과 순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마사지, 도수요법, 재활운동요법 등을 비롯하여 각종 생리적, 기능적 조절요법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 학습한다.

◆ 해부생리병리학 (Naturopathy physiological pathology)

인체 질병의 발생원인, 생리, 병리, 근골격해부학 등을 서양 의료적 관점에서 학습한다. 자연치유를 위해 필요한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과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체의 세밀함과 건강을 위한 우리인체의 흐름을 학습하여 인체의 구조와 기능, 상호 작용 등을 학습한다.

◆ 형상체질과 진단학 (Shape constitution and Diagnosis of Naturopathy)

자연치유 적용을 위해 기질적 특성인 체질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천적, 후천적 건강 요인들로 인해 불균형되어 나타나는 불건강 요소들을 찾는 교과목이다.

◆ 기독교 자연치유학(Christian Naturopathy)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는 음식(먹거리)에 대해 신학적 성찰을 시도한 학자들이 있다. 음식(food)은 자연치유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독교자연치유학은 신학자의 저서를 함께 읽고 기독교 자연치유적 접근을 시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독교 자연치유의 개념과 기독교 자연치유사로서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홍채영양학 (The theory of iris dietetics)

홍채에 나타나는 모양과 색깔, 혈관 등의 변화를 관독하여 조직의 질병상태 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건강 정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외부로 질병이 나타나기 전 조직 수준에서 일어난 변화를 홍채 상에서 확인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에 도움을 주는 예방학이다.

◆ 숲 치유학(Forest Naturopathy)

숲의 치유 효과에 대한 이해와 숲의 치유 기능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숲 치유학은 숲이 지니고 있는 치유기능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심신의 쾌적함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켜 질병을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과 기능을 학습한다.



✦ 예배찬양사역대학원 교과과정표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차수	학점	비고	과목명	차수	학점	비고
공통 필수	채플1,3	1,3	0		채플2,4	2,4	0	
	워십양상블1	1	2		워십양상블2	2	2	
	워십양상블3	3	2		대중문화와선교	2	3	
	예배사역이론과실제	1	3		졸업프로젝트(논문)	4	3	
	예배와문화해석학	3	3		졸업프로젝트(음반,기획,연주)	4	3	
	전공실기1,3	1,3	1		전공실기2,4	2,4	1	
	졸업논문및작품	5	4		졸업논문 및 작품	5	4	
공통 선택	예배와성서		3		예배학		3	
	양상블1		3		양상블 2		3	
	예배음악편곡		3		현대예배와음악사		3	
	화성학		3		예배디렉팅워크샵		3	
	예배와공연기획		3		송라이팅		3	
	이벤트기획		3		무대연출의기초와실제		3	
	보컬클리닉		3		예배곡목상과콘티작성		3	
	워십리더십		3		장르별스타일연구		3	
	미디		3		사운드디자인과편곡		3	
	전공실기지도5	5	1		전공실기지도5	5	1	
	채플5	5	0		채플5	5	0	

+ 예배찬양사역대학원 교과목 설명

◆ 위클리1·2·3·4 (Weekly)

무대 연주와 예배인도를 통해 무대 및 강단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가고, 개인이 그동안 준비하고 훈련한 과정의 내용을 발표함으로 구체적으로 검증받아 수정 및 보완을 이룬다.

◆ 현대예배학 (Theology of Modern Worship)

예배사역의 기본이 되는 현대예배의 뿌리인 예배신학의 역사와 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배신학 원리들(예배신학, 사역관, 문화관, 세계관, 영성을 이해하고 그 개념으로 예배 현장사역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예배와공연기획 (Worship Planning Theory)

현대 예배의 흐름과 특징을 분석하여 기획, 조직구성, 운영, 진행, 역할에 대한 이해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연구하며 각 교회와 예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현대예배와음악사 (Modern worship & Music history)

음악사와 예배음악의 흐름을 배우고 현대에서 사용되는 음악들의 뿌리를 배움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배음악의 방향과 다양성을 토론하며 만들어 가는 수업이다.

◆ 예배팀운영실제 (Introduction to Worship Leading)

청년과 장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예배(Blended Worship)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과, 예배사역팀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들을 나누고 실습한다.

◆ 예배곡구성과편곡 (The organization and arrangement for worship music)

예배인도자가 가져야 할 음악적 구성능력을 연주자에 의존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예배팀 내의 음악적 대화와 설득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이 세미나의 1차적 목적이 있다. 더불어 각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음악을 배치하고 간단한 편곡능력을 길러 예배인도자의 문화 토착화를 돕는 데 2차적 목적이 있다.

◆ 예배음악작사와작곡 (Worship Songwriting)

번역된 외국의 예배곡과 기존 국내 예배곡들로 충분히 담아낼 수 없는 '나만의', '우리만의', '지역교회현장의' 고백들, 그리고 더 다양한 주제의 예배곡들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몇 가지 과제와 워크샵을 통해 실제로 예배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단순한 예배곡을 창작해보도록 한다.

◆ 워십리더십 (Worship Leadership)

예배사역의 관점 안에서 예배사역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하는 리더십 적용을 실습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공연기획실무와기획서작성 (Art Management & Planning document)

공연, 예배, 축제, 행사 등 공연기획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기획, 조직, 인력, 재무, 마케팅, 홍보, 관객 개발의 원리를 세밀하게 밝히는 실무수업과 기획안 문서작성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표가 있다.

◆ 홍보마케팅과프로모션 (Marketing & Promotion)

스스로의 생각이나 계획·활동·내용 등을 현대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널리 알리는 활동을 의미한다. 음반, 행사, 예배, 전도의 활성화와 마케팅, 프로모션을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과정을 배우고 숙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예배이벤트기획 (Worship Event Planning)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창의적인 인물 및 사례들을 바탕으로 예배, 이벤트,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하여, 창의적인 사람들이 일하고, 이벤트를 만들고, 예배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고찰해보고, 예시된 사례들처럼 보다 나은 삶, 예배, 문화를 창조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 무대연출의기초와실제 (Stage Direction: foundation and Reality)

상상하던 생각의 이미지를 무대라는 공간에 현실화하며 음향, 조명, 영상, 특수효과, 무대 등의 하드웨어와 연출과 리허설, 큐시트 작성법을 공부하여 실제 무대와 예배현장에서 더 좋은 흐름을 완성해 가는 데 목표가 있다.

◆ 앙상블1·2·3·4 (Ensemble)

실용음악에 사용되는 장르와 스타일을 배우고 실제로 연주하는 과목이며 블루스, R&B, 소울, Funk, 락, 팝 음악과 삼바, 보사노바, 차차차 등의 라틴음악을 다룬다. 리더, 찬양인도자, 연주자, 보컬의 위치에서 우리가 듣고 부르고 연주하는 음악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더욱 전문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 예배음악작곡과편곡 (Songwriting and Arrangement)

직접 창작한 곡을 사용하여 예배인도, 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이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예배음악들을 분석하고 예배음악 작곡을 위한 음악적인 기본지식을 익혀, 스스로 예배음악 및 연주음악을 작곡할 수 있도록 돕는다.

◆ MIDI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녹음 및 편집의 과정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음악적 기술 및 컴퓨터 기술을 배운다.

◆ 사운드디자인과믹싱 (Sound Design and Mixing for Music Director)

신앙 공동체가 고백하고자 했던 바를 음반이라는 기록예술 안에서 예배음악 감독이 창의적인 사운드로 담아내려 할 때, 이에 요청되는 기본적 사료들을 연구하고, 여러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분석함과 DAW 내에서 실습함을 통해 사운드 엔지니어와의 소통방법을 이해하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음악감독이 꼭 가져야 할 사운드에 대한 예술적 주체성의 토양을 마련하는 데 본 세미나의 목표가 있다.

◆ 음반편곡과녹음 (The sound recording and arrangement for worship album)

음반이라는 한정된 디지털 공간에 창작과 소통의 감동을 시간을 거슬러내기까지 담아낸다는 것은 특별한 연구와 실습이 전

제되어야만 한다. 본 세미나는 이것을 위한 기초적인 레코딩 이론과 편곡이론을 연구하고 홈 레코딩을 기반으로 뮤직디렉터의 능동성을 고민하는 것을 토대로, 각 곡의 이미지 연출과 보컬리스트에 따른 음악적 배치, 그리고 레코딩 상황 내에서 연주자들과의 소통까지 실습을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 예배와문화해석학 (Worship and Cultural Hermeneutics)

문화의 의미 및 문화의 해석방법을 파악하며, 현실의 반영 또는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와 깊은 관련이있는 예술 장르를 살펴본다. 나아가, 한국교회가 자체 문화를 잘 세우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 대중문화와선교 (Popular Culture and Mission)

문화명령의 내용 및 문화명령과 선교의 관계를 파악한다. 오늘날의 대중문화가 의미하는 것을 문화와 윤리, 문화의 개별성과 보편성,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성서 및 교회사가 보여주는 선교의 여러 패러다임을 확인한다. 이 시대에 적합한, 대중매체를 통한 선교의 전략을 모색한다.

◆ 보컬클리닉 (Vocal clinic)

보컬은 예배찬양사역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수업은 그룹 실기지도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컬리스트로서의 부족한 부분을 진단, 수정하여 예배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 보컬앙상블 (Vocal ensemble)

보컬리스트로 하여금 예배, 공연, 레코딩의 실제 현장에서 ‘함께 노래하는 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팀원들과 밴드구성원을 적절하게 교육하도록 돕는다. 가장 주된 목적은 예배현장에서 예배팀의 보컬 파트를 예배에 적합한 형태로 풍성하게 만들고 팀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 장르별스타일연구 (Popular music style)

블루스, R&B, 소울, Funk, 락, 팝 등의 영미음악과 삼바, 보사노바, 룸바 등의 라틴음악을 다룬다. 리더, 찬양 인도자, 연주자, 보컬 등의 위치에서 우리가 듣고 부르고 연주하는 음악이 어떤 장르의 스타일인지 알고 더욱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리듬연구 (Musical Rhythm)

이 수업의 핵심 목표는 한 박자 길이의 리듬이 만들어질 수 있는 15가지의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읽고 쓰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기초화성학 (Basic Harmony)

연주 및 창작을 돕기 위한 음악의 기초이론들을 학습한다. 음악을 이해, 분석, 학습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화성이론을 공부한다.

◆ 고급화성학 (Advanced Harmony)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악을 분석하고 응용하는 훈련을 통해 예배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 뮤직디렉팅워크숍 (Music Directing Workshop)

음악의 편곡과 리허설 및 무대에서의 음악적 진행을 책임질 뿐 아니라 원활한 흐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배우고 실제로 디렉팅에 참여함으로써 경험을 쌓는 수업이다.

◆ 퍼포먼스워크숍 (Performance Workshop)

음악이 연주되는 곳에서 공연자의 자세와 매너는 현대뿐 아니라 과거부터도 중요시 되어왔다. 이에 공연 혹은 집회에서의 연주자의 자세를 훈련함으로써 수준 높은 공연자의 모습을 갖게 한다.

◆ 예배와문화세미나 (Worship & Culture Seminar)

예배문화와 현장의 실재적 문제를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면서 학문적 능력을 개발한다. 본인이 직접 발표하고 또한, 외부 전문강사를 통해 세미나를 경험하고 토론하는 실습 위주의 수업이다.

◆ 예배와성서 (Worship & Bible)

예배의 갱신과 본질을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히브리인들의 삶의 자리와 문화 속에 함축된 예배의 본질적 요소들을 찾아보고 토론한다.

◆ 뮤직비즈니스 (Music Business)

예배찬양사역에서 음반 제작 및 음원 제작의 방법과 원리들을 발견하고, 음원 및 음반제작, 음악적 재능, 제작기획, 제작투자유치, 녹음운영, 프로듀서, 미디어, 음원유통, 저작권, 법적 권리 등의 복합적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경험해 본다.

◆ 창조적문화개발 (Creative Cultural Development)

현대 기독교 문화들인 음반, 출판, 콘텐츠, 공연과 함께 교회의 예배흐름과 사례들을 분석하여 기획, 운영, 진행,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론과 실습을 통해 연구하며 다양한 문화컨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상담심리대학원 교과과정

이수구분	교과과정			
	차수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국 문	영 문	
전공필수	1	가족상담	Family Counseling	3-강의
		장애아동청소년 심리재활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y	3-강의
		정신분석과상담	Psychoanalysis and Counseling	3-강의
전공필수	2	심리측정및평가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Diagnosis	3-강의
		재활상담현장실습	Rahabilitation counseling practicum	3-강의-실습
		청소년상담의실제	Practice of youth counseling	3-강의
전공필수	3	상담사례실습및지도	Counseling Case Practice and Direction	3-강의-실습
		재활상담	Rehabilitation Psychology and Counseling	3-강의
		상담심리학의 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Psychology	3-강의
전공필수	4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3-강의
		장애아동의이해	Understanding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3-강의
		이야기치료와 상담	Narrative Therapy and Counseling	3-강의



✦ 상담심리대학원 교과목 설명

■ 발달재활서비스제공인력 자격 관련 과목(매 학기 필수로 개설되어 졸업 후 자격취득)

◆ 재활상담 (Rehabilitation Psychology and Counseling)

재활의 전체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측면과 직업적 측면 등에 대한 이해와 상담방법을 연구한다. 본 강좌는 상담심리학의 기본적인 이해 위에서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경발달장애 ADHD등을 기본으로 “재활 상담가”의 소양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 장애아동의이해 (Understanding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관련법, 장애아동의 정의 및 특성, 진단방법, 중재방법, 교수방법 및 전략, 지원환경 등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때 좀 더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장애아동청소년심리재활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y)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재활을 위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의 이해를 토대로 장애아동청소년의 독특한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재활심리 서비스를 제공할 이론적 토대를 익힌다.

◆ 재활상담현장실습 (Rehabilitation counseling practicum)

재활서비스 현장에서 실제 경험을 해봄으로서 심리재활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상담현장실습을 통해서 실무적이고 실천적인 감각을 양성한다.

■ 이론 및 실천을 위한 과목들

◆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Psychology)

본 과목에서는 상담과 관련된 각종 심리학이론들을 살펴보는 데, 이론의 철학적 배경, 인간관, 발전과정, 상담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상담 실재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도록 한다.

◆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심리적 부적응 및 정신장애에 대한 입문과정이다. 마음의 이상을 이해하는 응용심리학으로서 심리학적 이론들과 정신장애의 주요 진단기준에 대해 배운다. DSM-5에서 변화된 진단기준을 검토하고, 주요 심리장애의 원인과 양상을 숙지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제반 고려사항을 다룬다.

◆ 심리측정및평가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Diagnosis)

심리학적 면담 및 행동관찰, 심리검사, 배경 정보를 통합하여 내담자에 대한 심리평가를 진행하고 심리진단에 이르는 과정을 배운다.

◆ 정신분석학과 상담 (Psychoanalysis and Counseling)

정신분석은 인간의 정신현상을 이해하는데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심리치료를 실시함에 있어 길잡이가 된다. 정신분석 이론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병리와 심리치료 실제에 관한 지식을 넓혀간다.

◆ 가족상담 (Family Counseling)

가족 상담이론은 한 개인의 문제와 행동을 가족간의 관계 맥락에서 체계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가족 상담 이론들을 개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문제에 대한 체계적 관점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 청소년상담의 실제 (Practice of youth counseling)

청소년은 발달 중인 과정에 있기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은 정보화, 세계화, 고령화, 문화적 급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하여 문제에 직면해있다. 청소년 발달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청소년 상담에 적용함으로써 청소년 이해도를 높이고 청소년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본 과목의 목표가 있다.

◆ 이야기치료와 상담 (Narrative Therapy and Counseling)

우리 삶의 저변에 깔려 있는 문제 이야기를 내담자의 정체성에서 분리해 내어 객관화시킨 다음 대안적 이야기들을 개발하여 문제 이야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도울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 상담사례실습및지도 (Counseling Case Practice and Direction)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이해를 돕고 상담의 실재를 배운다. 갈등, 심리적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심리과정이 해 및 심리적 자료를 이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영성치유대학원 교과과정

이수구분	교과과정			
	차수	과목명		학점-강의
		국 문	영 문	
전선	1	고급발달심리학과 치유	Advanced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	심리진단평가와 치유	Psychology Diagnosis & Evaluation	3-3
	3	정신병리학과 상담치유	Psychopathology & Counseling and Healing	3-3
	4	위기 및 트라우마 상담치유	Crisis and Trauma Counseling	3-3
전선	1	기독교상담과 영성치유	Christian Counseling and Spiritual Healing	3-3
	2	가족상담과 치유	Family Counseling and Healing	3-3
	4	치유상담사례 실습 및 지도	Counseling Practice & Guidance	3-3
전선	1	성경적 영성신학	Biblical Theology of Spirituality	3-3
	2	기독교영성사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3-3
	3	영성지도 수퍼비전	Spiritual Direction Supervision	3-3

✚ 영성치유대학원 교과목 설명

◆ 고급발달심리학 (Advanced Developmental Psychology)

발달심리학은 변화하는 인간을 다양한 측면에서 즉, 신체, 인지, 언어, 성격, 사회성의 분야에서 전생애에 걸친 발달 과정을 연구한다. 이러한 전단계의 변화를 심리적, 영적 발달단계의 관점으로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게 하는 연구 방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다룬다.

◆ 심리진단평가와 치유(Psychology Diagnosis & Evaluation)

개인에 대한 정확하고 총체적인 이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치유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리평가의 의미 및 방법, 성격, 인지, 정서 및 정신병리에 대한 이해와 심리검사를 포함한 심리평가 기법을 실제 치유상담 사례에 적용한다.

◆ 정신병리학과 상담치유(Psychopathology & Counseling and Healing)

이상행동의 개념과 종류, 이상행동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치유상담을 위한 기초 지식을 연구한다. 정신병리의 특징, 원인, 발달적 과정, 상관, 원인, 결과 등을 연구하여 영성치유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치유의 모형을 연구한다.

◆ 위기 및 트라우마 상담(Crisis and Trauma Counseling)

심리적 위기 발생 및 재난, 사건, 상황 발생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위기상담의 이론을 익히고,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의 심리상태를 진단하며, 위기에 처한 개인을 실제로 상담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적절한 개입의 정도를 모색한다.

◆ 기독교상담과 영성치유(Christian Counseling and Spiritual Healing)

인간을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부분이 통합된 인격체로 이해하고, 상담과 치유의 영역에서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고찰하고 연구한다.

◆ 청소년상담과 치유 (Adolescent Counseling and Healing)

청소년 영성발달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청소년기의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 영성발달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청소년 영성치유상담자로서 공감능력을 향상하고 배양한다. 청소년 영성치유상담의 실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알아보고 실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영성치유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습득하는 기회를 갖는다.

◆ 가족상담과 치유 (Family Counseling and Healing)

가족의 트라우마와 상처는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가족역동을 이해하고 대물림을 끊기 위한 가족치료 및 치유적 접근을 학습한다.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어 가족에 대한 치유적 이해와 실제 치유상담 현장의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가족치유상담사로서의 능력을 함양한다.



◆ 치유상담사례 실습 및 지도 (Counseling Practice & Guidance)

치유상담의 실제 과정을 이해하고, 각 과정에 적합한 치유상담 기법에 대해 이론적이며 실천적 지식을 습득한다. 학생들은 치유상담의 실제 흐름에 대한 기본 원리를 학습하고, 실제 치유상담 장면에서 필요한 면접기법을 배운다. 실제 치유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치유상담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쌓고, 치유상담자로서 자신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 성경적 영성신학(Biblical Theology of Spirituality)

성경의 하나님 나라 신학과 통전적 인간론에 근거하여 영성신학의 제반 주제를 고찰하고 연구한다.

◆ 기독교영성사(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다양한 기독교 전통 안에서 발전된 기독교 영성으로서 복음주의 영성, 은사주의 영성, 수도원 영성, 사회정의 영성의 역사와 신학을 공부한다.

◆ 영성지도(Spiritual Direction)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성도의 여정을 동행해 주는 영성지도의 이론과 실재를 배운다.

◆ 영성지도 수퍼비전(Spiritual Direction Supervision)

영성지도자(디렉터)가 피지도자(디렉티)의 영적 여정에 동행할 때 일어나는 여러 주제에서 수퍼바이저의 도움을 받는 법을 배운다.

✦ 예배리터지대학원 교과과정

이수구분	교과과정			
	차수	과목명		학점-강의-실습
		국 문	영 문	
전공필수	1	교회력: 절기 예배 기획	Liturgical Calendar: worship design	3-3-0
전공필수	1	예배와 예술: 예배 공간	Worship and Art: liturgical space	3-3-0
전공필수	2	세례 신학과 실천	Baptism: Theology and Practice	3-3-0
전공필수	2	성찬 신학과 실천	Eucharist: Theology and Practice	3-3-0
전공필수	3	아나포라: 성례전과 기도	Anaphora: Eucharistic Prayer	3-3-0
전공필수	3	예배와 영성	Worship and Spirituality	3-3-0
전공필수	4	리터지 고전 읽기	Liturgical Classic Reading	3-3-0
전공필수	4	성서정과: 절기 설교	Lectionary: Liturgical Preaching	3-3-0



✦ 예배리터지대학원 교과목 설명

◆ 교회력: 절기 예배 기획 Liturgical Calendar: worship design

교회의 달력 즉 교회력은 부활절-성탄절의 두 축으로 이뤄져있다. 이 절기를 중심으로 사순절과 성령강림절, 그리고 대림절과 주현절이 교회의 예배 리터지에 중요한 신학적 구심점이 된다. 이 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이 절기가 지닌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삶에 적용 가능하도록 예배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을 함양케 한다. 또한 각종 절기의 상징적 의미와 실천에 대해 배운다.

◆ 예배와 예술: 예배 공간 Worship and Art: liturgical space

교회 예배는 건축과 공간 활용에 영향을 받는다. 예배 리터지를 집례하기에 적절한 이미지와 상징을 지닌 예배공간에 관해 배운다. 바람직한 삼위일체 신학을 담은 리터지가 집례될 수 있도록 돕는다.

◆ 세례 신학과 실천 Baptism: Theology and Practice

세례가 지니고 있는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변천 과정에 관해 배운다. 현대 문화에 맞는 세례 신학과 실천적 예식을 마련한다. 초대교회의 성인세례가 규범이던 것이 중세를 거쳐 유아세례가 보다 광범위하게 행해진 결과 종교개혁자들이 경협해보지 못한 성인세례예식, 즉 RCIA에 관해 배운다.

◆ 성찬 신학과 실천 Eucharist: Theology and Practice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찬 예식이 오늘날 바람직하게 행해질 수 있는 실천적 모범 예식과 신학에 관해 배운다.

◆ 아나포라: 성례전과 기도 Anaphora: Eucharistic Prayer

아나포라, 즉 성찬기도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전달되어온 매우 귀중한 신앙 유산이요 기도의 방법이다. 바람직한 성찬기도문이 갖춰야할 신학적 요소 및 역사적 변천, 그리고 오늘 교회에 맞는 기도문에 관해 배운다.

◆ 예배와 영성 Worship and Spirituality

예배의 영성은 공동체 영성이다. 개인 식별과는 다르다. 예배 공동체가 바람직한 삼위일체 신학에 근거해서 삶의 역동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신학적 지식에 관해 배운다.

◆ 리터지 고전 읽기 Liturgical Classic Reading

예배 리터지 연구에 가장 중요한 도서를 읽고 예배 신학에 관해 배운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전해져오는 예배 전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에 관해 익힐 수 있다.

◆ 성서정과: 절기 설교 Lectionary: Liturgical Preaching

리터지에 따른 설교문 작성법에 관해 배운다. 특히 대부분의 목회자가 쉽지 않게 여기는 절기 설교에 관해 배운다.

✚ 박사과정(Ph.D., Th.D.) 교과과정표

공통과목	박사연구
전 공	과 목 명
구약학	율법서세미나1·2, 역사서세미나1·2, 시가서세미나1·2, 예언서세미나1·2, 구약세미나1·2, 구약신학세미나1·2, 구약원전강독, 히브리어와아람어문법, 고대근동종교와문화, 고대근동어, 고대문헌연구, 구약해석학과주석, 포로후기문학, 구약해석사, 칠십인경연구, 사회화적성서해석, 문학적정서해석, 한국적성서해석, 구약과신약, 구약의윤리, 성서고고학연구방법론, 성서고고학지역연구, 고고학적성서해석, 성서고고학최근동향
신약학	누가의신학, 요한복음의신학, 공관복음서특강, 신약원전강독, 바울서신연구, 바울서신연구II, 신약성서와윤리, 신약성서신학, 신약세미나1·2·3·4, 사도행전1·2
조직신학	기독교강요연습, 인식론연습, 개혁교회교의학사, Anselm-Barth-Torrance연습, Augustine-Via Moderna-Calvin 연습, 최근신학세미나, 포스트모던신학연구, 현대신학과신학자연구, 신론세미나, 창조론연습, 기독교론과인간론세미나
교회사	역사연구방법론, 교부학세미나, 중세신학세미나, 종교개혁세미나, 에큐메니칼운동사, 서울장신학, 에큐메니칼신학세미나, 복음주의신학세미나1·2, 웨슬리세미나, 뉴비긴세미나, 한국기독교인물사, 한국선교사신학연구, 한국장로교회사연구, 한국교회와사회사상, 순교의 역사, 한국교회사료연구1·2
예배설교	신약과성찬, 예배연구방법론, 예배와환경, 예배신학세미나, 성서속의설교의수사학적탐구, 설교신학세미나, 설교와영성, 한국교회설교역사, 설교와문화세미나, 성찬신학과실제
선교학	세계관의비교분석, 세계종교연구, 현대선교신학의이슈, 문화의관찰해석방법, 교회성장과현대문화, 변화를 위한전략, 실천신학방법, 실천신학의현대적추세, 복음의상황화세미나, 성경적선교신학
음악신학	Foundation of Christian Worship(기독교예배기초), History of Modern Worship(현대예배역사), Cultural Mission(문화적선교), Cross Cultural Worship Music Study(문화교류적예배음악연구), Cultural Criticism(문화비평), Church History with culture(문화와 함께 한 기독교역사), Study for Worship Movement(예배운동연구), Popular Culture Criticism(대중문화비평), Research for Practical Issues(실재적주제연구), Leadership for Cultural Ministry(문화사역리더십), Theological Analysis for Praise(찬양의신학적분석), Research Methodology(연구방법론)
목회상담	상담사교육및사례지도, 상담연구방법론의실제, 위기상담, 중독상담, 종교심리학, 목회상담연구, 대상관계이론 세미나, 융 심리학과 상담, 정신분석학 개론, 심리검사와 상담, 집단상담 실습, 가족치료, 발달심리학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론, 기독교사회복지조사론, 고급통계분석, 빈곤과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정책론, 기독교사회복지실천론, 기독교지역사회복지, 기독교와사회복지법, 기독교사회복지의역사, 기독교가족복지, 기독교노인복지, 기독교아동·청소년복지, 기독교장애인복지, 기독교사회복지기관행정론, 기독교자원봉사론, 기독교의료사회복지론, 기독교사회복지세미나, 종교개혁과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와복지국가, 박사연구, 기독교사회문제분석론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신학, 디아코니아와성서, 한국교회사에나타난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현장실습, 디아코니아와장애인, 디아코니아와목회, 디아코니아연구방법론, 교회자원봉사조직과운영, 디아코니아와예배, 디아코니아성서적모델연구, 디아코니아와세상
자연치유	자연치유제철학세미나, 자연치유진단학세미나, 자연치유동종요법세미나, 자연치유논문연구방법론, 자연치유응용근육신경학, 신약성서의이해, 구약성서의이해, 임상푸드테라피세미나, 임상아로마테라피세미나, 임상향체영양학세미나, 임상오감멀티테라피세미나, 중독의이해와성경적자연치유, 임상이혈상담치유학세미나, 자연치유장상학세미나, 임상자연치유방법론세미나, 임상경혈치유학세미나, 자연치유자율신경면역학, 황제내경영추소문세미나, 임상운동치유학세미나, 자연치유에너지테라피개발론, CST두개골학세미나, 산림치유프로그램개발론, 임상혈액진단학, 자연치유와심신의학세미나, 자연치유푸드테라피



✦ 박사과정(Ph.D., Th.D.) 교과목 설명

구약학 전공

◆ 고대근동어 (Old Near Eastern Languages)

구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근동언어들을 배워서 관련 문서들을 해독하는데 목표가 있다.

◆ 구약과신약 (The Old and New Testament)

구약성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로 이루어진 기독교회의 정경이 보여주는 통일성과 특수성을 연구한다.

◆ 구약묵시문학연구 (Study on the Apocalyptic Literature in the O.T.)

구약 내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묵시문학은 구약 내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이다. 구약의 묵시 현상과 역사적 상황 및 구약의 묵시문학의 발전과정을 신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묵시문학이 구약 내에서 가지는 신학적 위치와 신약과의 관련성을 살펴 봄.

◆ 구약세미나 (Old Testament Seminar on Special Topics)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목을 받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구약학의 특수한 주제나 본문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구약본문의 현실적용 능력을 키우며 특정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도록 한다.

◆ 구약신학세미나 (Seminar on Old Testament Theology)

구약성서의 신학의 연구역사와 방법론, 그리고 창조, 계약, 율법, 역사, 정경, 여성, 계시 등 구약신학의 중심 주제를 집중 연구한다.

◆ 구약원전강독 (Old Testament Reading in Hebrew)

구약 원전의 중요한 본문들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구약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수성에 따라 본문을 이해하며, 본문의 의미를 히브리어 본문을 통해 깊이 있게 발견하는 연습을 하고자 한다.

◆ 구약지혜문학연구 (Study on the Wisdom Literature in the O.T.)

구약의 지혜문학 중 특히 룻기, 에스더, 욥기, 잠언을 통해 구약의 지혜자와 지혜에 대해 연구하며, 본서들의 심층적 연구를 통해 각 책이 구약 내에서 가지는 신학적 위치와 구약 내의 다른 책들과의 연관성을 살펴 봄.

◆ 구약해석학과주석 (Old Testament Hermeneutics and Exegesis)

구약의 해석학과 해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구약 본문의 실제적 주석을 연습함으로써 구약 해석과 그에 따른 본문해석 능력을 심화시키고자 한다.

◆ 성문서세미나 (Seminar on the Writings)

구약 성문서 가운데 대표적인 책들을 집중 연구하여 성문서가 보여주는 구약성서의 다양한 세계를 탐구하여 구약성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

◆ 성서고고학(Archaeology)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에 있어서 성서고고학은 구약의 역사적 실제성을 입증하는 데 빛을 던져주는 중요한 학문적 분야이다. 성서고고학과 구약의 상관성 및 성서고고학의 이론과 실제를 알아봄으로써 구약 연구에 도움을 얻고자 함

◆ 성서와사회복지 (The Bible and Social Welfare)

성서의 율법사상과 예언자 신학을 중심으로한 구약의 공동체 사상을 통해 기독교 사회복지의 성서적 근거를 탐구한다.

신약학 전공

◆ 신약세미나1·2·3·4 (Seminar on New Testament)

신약성서의 연구사, 연구방법론, 주요 신학자의 신약신학 이해, 시대사, 초대교회사, 역사적 예수 문제, 공관복음서 문제, 예수와 바울, 초기 바울과 후기 바울, 요한복음과 요한 문서와의 관계, 히브리서와 유대주의, 요한계시록 신학과 해석방법론 및 각 성서기자의 신학 등 신약의 여러 중심 주제에 대해 연구한다.

◆ 누가의신학 (Thology of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공관복음서 중 하나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에 의해 기술되므로 그 둘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음이 주목된다. 그 두 책을 결합시켜주는 중요한 신학사상으로 누가의 구속사관이 제시되는데 그러한 신학적 해석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

◆ 요한복음의신학 (Theology of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복음서 중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의 특성은 그 고유한 신학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요한복음의 신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한계 서신들과의 관계성과 함께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요한공동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공관복음서특강 (Lecture on the Synoptic Gospels)

공관복음서를 연구함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중요한 중심주제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근년에 공관복음서에서 제기되는 대표적 주제는 역사적 예수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그 중에서도 역사적 배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시대 갈릴리 사회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문헌적 연구로는 예수말씀 자료인 Q 문서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신약원전강독 (New Testament Reading in Biblical Greek)

신약성서의 헬라어 원문을 자유롭게 읽고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복음서와 바울서신의 본문을 강독한다. 우선은 정확한 문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문의 문맥을 바르게 파악하고 더 나아가 본문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밝혀 낼 수 있도록 한다.



◆ 바울서신연구 I,II (Study on the Pauline Epistles I,II)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헬라세계에 소개하고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친 바울은 실로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유대 문화와 신앙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헬레니즘이라는 당시 선진 문명권 안에서 자라났고 교육받았다. 따라서 바울은 두 문명권의 사상과 가치체계에 익숙했고 이 두 세계를 능숙하게 넘나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편적인 관점으로 이방인들에게 설명했다. '바울서신 연구 I,II'에서는 이 같은 바울의 사고와 사상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들을 그의 서신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규명한다.

◆ 신약성서와 윤리 (New Testament and Ethic)

신약성서는 상이한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 저자들에 의해 저술되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미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설명한다. 그들이 믿는바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권면하고 있다. '신약성서와 윤리'는 각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는 과목이다. 각각의 성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신자들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바라는지 연구한다. 이 제안된 신앙의 형태는 독자들의 상황, 시대상과 관련하여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도 검토한다.

◆ 신약성서신학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2차 세계대전 이후 G.보른캄에 의해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부상된 편집사연구의 공헌은, 특히 복음서 부분에서 각 복음서 기자들을 단순한 예수 전승의 전달자가 아니라 이 전승을 각 공동체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용한 해석자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 방법론에 의해 부각된 바와 같이, 신약성서 각 저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나름대로 수용하고 소화한 내용을 전파하고 증거했다. 본 과목은 이처럼 다양한 성서 기자들의 목소리와 체계화된 사고체제를 살펴보고 서로 비교함으로써, 각 성서에 내포되어 있는 고유한 신학적 사고의 틀과 특징들을 파악해 본다.

◆ 시가서연구(Study on the Poetic Books)

구약의 시가서 중 특히 시편, 전도서, 아가, 예레미야 애가의 심층적 연구를 통해 각 책의 신학적 메시지와 각 책이 구약 내에서 가지는 신학적 위치 및 구약 내의 다른 책들과의 연관성을 살펴 봄.

◆ 역사서세미나(Seminar on the Historical Books)

오경의 후속 역사로서 신명기 역사서(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역대기 역사서(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각 책이 구약 내에서 가지는 신학적 위치와 구약 내의 다른 책들과의 연관성을 살펴 봄.

◆ 예언서세미나 (Seminar on the Prophets)

구약의 예언 현상과 구약 예언의 역사, 후기 예언서의 문서 예언자들의 시대적 배경과 그에 따른 메시지를 연구함으로써 구약 예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얻고자 한다.

◆ 오경세미나 (Seminar on the Pentateuch)

오경의 해석사 및 오경의 구조와 신학, 각 책의 구조와 신학, 다양한 메시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오경 해석과 적용에 이르고자 한다.

조직신학 전공

◆ 인식론 연습 (Seminar on Theological Epistemology)

지식은 대상에 대한 합리적 생각이다. 또는 정당하거나 옳은 생각이다. 대상에 대한 생각들 가운데서 이치에 합한 것 또는 정당하고 옳은 것이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다. 따라서 지식의 성립에는 “이치에 합함, 옳음, 정당함”의 기준의 정립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그런데 이 기준은 보편적인가· 모든 대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치에 합함”의 기준이 존재 하는가· 계몽주의가 꿈꾸었듯이 또는 논리실증주의가 주장하듯이, 물리적 대상과 생명 그리고 정신적 대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 하는가· 그리고 이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성립에도 꼭 같이 작용하며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모색된다.

◆ 개혁교회교의학사 (Historical Understanding of Reformed Dogmatics)

현대 교회는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 장로교회와 그에 의해 세워진 신학교에서조차 그러하며 심지어 자신에 대한 이해 자체가 억압이며 위선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교의학자의 책임이다. 교의학이 교의학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은 훼손된다. 개혁교회 교의학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행한 신학적 투쟁을 이해한다.

◆ Anselm-Barth-Torrance 연습(Seminar on Anselm-Barth-Torrance)

신학 (Science of God) 은 하나님에 관한 담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담론의 대상 즉 제3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은 이 사실 위에서만 구축될 수 있다. Barth의 신학적 선구는 Anselm이며, Barth 자신이 그의 후계자로 원했던 사람이 Torrance이다. Anselm이 Barth의 최선의 사전적 이해라면, Torrance는 Barth의 제1의 주석이다. 이 신학적 연계를 이해한다.

◆ Augustine-Via Moderna-Calvin 연습(Seminar on Augustine-Via Moderna-Calvin)

칼빈은 복음을 “하나님의 주권” 또는 “예정”으로 요약한다. 이것은 후기 프란시스파의 신학적 입장이며 어거스틴의 가르침이다. 즉 칼빈의 예정론은, 그 신학적 선구인 via moderna가 선행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허무주의 또는 운명론으로 오해된다. 칼빈주의의 요약 또는 복음의 요약인 예정론이 회피되고 그래서 복음이 단지 삶의 기술 (ars vitae)로 전락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오해를 제거하여 복음 그 자체로서의 예정론을 회복한다.

◆ 최근신학세미나 (Special Seminar in Contemporary Theology)

최근 새로운 조류로 떠오르는 신학이나 주제들을 심층 연구하여 현재와 미래의 신학을 가늠하고 전망하며 오늘의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한다.

◆ 포스트모던신학연구 (Studies in Postmodern Theology)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전통적인 신학의 주제들이 때로는 어떻게 도전받고 새롭게 변화하며 계승되어가는 지를 가늠하고 전망하며 이를 포스트모던 시대에 필요한 신학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 현대신학과신학자연구 (Study in Modern Theology and Theologians)

현대신학에서 영향력이 있는 신학을 신학자 중심으로 심층 연구하여 방법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전통적인 신학이 현대



에 어떻게 계승발전하고 있는지 연구하며 때로는 비교연구를 통해서 더욱 심화된 연구를 수행한다.

◆ 신론특강 (Special Seminar in the Doctrine of God)

신론은 조직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신론의 주제들과 더불어 현대신학의 새로운 신론에 대해 심층 연구한다.

교회사 전공

◆ 교부학세미나 (Seminar on the Patristics)

아우구스티누스, 크리스소스톰 등 교부들의 문헌을 연구한다.

◆ 교회와사회 (Church and Society)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교회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회를 통해 경험된 기독교적 사회관, 교회가 사회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다.

◆ 동방정교회와로마가톨릭교회 (Eastern Orthodox and Roman Catholic Church)

동방정교회와 로마가톨릭교회의 역사와 신학을 공부함으로써 개신교회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길을 모색한다.

◆ 중세신학세미나 (Seminar on the Theology of Middle Ages)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같은 중세 신학자의 문헌을 연구한다.

◆ 종교개혁세미나 (Seminar on Reformation)

루터, 츠빙글리, 칼뱅, 부처, 메노 시몬스 같은 종교개혁자의 삶과 신학을 연구한다.

◆ 웨슬리세미나 (Seminar on John Wesley)

근대 부흥운동을 이끌고 감리교회를 탄생시킨 웨슬리의 삶과 신학을 연구한다.

◆ 19세기개신교사상사 (History of the 19th Protestant Thought)

19세기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신학을 전개한 자유주의 신학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연구한다.

◆ 에큐메니칼운동사 (History of Ecumenical Movement)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문헌을 읽으며, 에큐메니칼 신학이 현대 교회론과 선교학에 공헌한 내용을 정리한다.

◆ 한국교회사 세미나 (Seminar on Korean Church History)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특수한 문제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문제를 구성하여 해석하고 종합하는 연습을 한다.

◆ 한국교회사특강 (Study in Korean Church History)

한국교회 인물과 사건의 일차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역사연구방법론(Historiography)

역사 서술에서 사료 검토, 사실 선택, 해석 관점 등의 방법론을 익히고, 모범적으로 서술된 역사서를 연구한다.

◆ 한국선교사신학연구(Missionary Theology in Korea)

초기 한국 교회 역사를 형성한 한국 선교사들의 생애와 신학을 연구한다.

예배설교 전공

◆ 신약과성찬 (New Testament and Lord's Supper)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에 나타난 최후의 만찬과 주의 만찬을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 예배연구방법론 (Methodology of Worship Research)

예배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연구를 한 교회를 모델로하여 탐구한다.

◆ 예배와환경 (worship and environment)

예배를 이루는 환경, 즉 공간, 예술, 건축, 빛과 조명에 대한 신학적, 역사적, 심미적 연구를 한다.

◆ 예배신학세미나 (Worship Theology Seminar)

최근 예배학과 예배현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예배신학의 흐름을 찾아 신학적 목회적 담론들을 분석하고 토론한다.

◆ 성서속의설교의수사학적탐구 (Rhetorical Study of Preaching in the Bible)

신약과 구약 안의 예언자, 제사장, 예수, 제자들의 설교의 수사학적 요소들을 비교 분석한다.

◆ 설교와영성 (Preaching and Spirituality)

설교자와 회중의 설교에 대한 이해, 메시지에 대한 이해, 가치관을 분석하며 예배 안에서 설교의 위치를 영성적 차원에서 고찰.

◆ 한국교회설교역사 (History of Preaching in the Church of Korea)

한국교회의 설교에 대한 역사연구인데, 설교 내용의 특징과 변천과정, 그리고, 설교자를 수사학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 설교신학세미나 (Preaching Theology Seminar)

포스트모던시대의 설교적 담론, 즉 메시지, 설교자의 위치, 설교의 공공성등에대해 자료분석과 담론들을 토론한다.

◆ 설교와문화세미나(Seminar on Preaching and Culture)



설교가 청중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회중이 속한 현대 문화의 요소들에 대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설교자로서 필요한 현대문화 이해, 현대문화를 반영하는 설교에 대한 실제적 관찰과 적용, 현대 설교자 연구를 연구한다.

◆ 성찬식학과 실제(Eucharistic Theology and Practice)

성찬의 신학적 주제들을 역사적, 에큐메니칼적 관점으로 연구하고, 현대교회에서 실행하는 성찬의 실제에 대한 워크숍을 훈련한다. 성찬 자료들을 통해 성찬을 믿음과 목회의 원천과 선물로 확신하도록 연구한다.

목회선교 전공

◆ 세계관의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Worldviews)

각 민족마다 다양한 세계관을 소지하고 있다. 그러한 세계관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해서 특정의 민족 내지는 집단이 가진 세계관의 특징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때에 그러한 세계관의 변화 내지는 세계관을 활용한 복음 전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세계종교연구 (Research of Major World Religions)

문화의 핵을 형성하고 있는 세계의 고등 종교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인해서 그러한 고등 종교의 영향하에 놓여져있는 민족 내지는 집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등 종교의 사상체계, 의례체계, 실천체계, 공동체 의식 등을 파악함으로써 인해서 그러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동시에 접촉점을 찾아본다.

◆ 현대선교신학의이슈 (Issues in Contemporary Mission Theology)

현대 선교 신학에서 제기되는 이슈들과 그것들이 제기되는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인해서 현대 신학의 동향과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한다.

◆ 문화의관찰해석방법 (Methods for Observing and Interpreting Culture)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인류학에서 방법론으로 개발된 참여 관찰법을 학습하고 민족의미론적 접근법(Ethnosemantic approach)을 통해서 관찰된 자료들을 분석해서 문화의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 교회성장과현대문화 (Church Growth and Contemporary Culture)

현대의 급변하는 문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현대인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메시지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다.

◆ 변화를위한전략 (Strategies for Change)

기업체와 학교 등을 비롯한 현대의 모든 조직들은 급변하는 상황에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및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교회도 조직이란 차원에서 볼 때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시대에 뒤쳐진 유물로 남고 말 것이다.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제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동시에 바람직한 변화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화의 역학을 아는 변화의 요원들이 협력하여 단계와 과정들을 전략적으로 밟아 나갈 때 바람직한 변화를 도출해 낼 수 있다.

◆ 실천신학방법 (Methods for Practical Theology)

이론신학을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신학과 현장에서의 실천을 연결지어줄 수 있는 실천신학이 필수적이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지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 신학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본다.

◆ 실천신학의현대적추세 (Current Trends in Practical Theology)

실천신학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것들이 제기되는 사상적, 실천적 맥락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슈들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와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본다. 그러한 해결책을 현장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보도록 한다.

목회상담 전공

■ 전공필수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Counselor Education & case supervision)

학교와 상담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학생이나 내담자와 만났을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자세를 학습하고, 상담이 한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상담의 기초이론을 상담의 사례에 적용할 뿐 아니라, 사례에 대한 심층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전문적인 상담자로서의 자질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다.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Practice of counseling research methodology)

상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과정생들이 상담학 연구방법론을 심도있게 고찰하는 과목이다. 상담연구의 방법론들에 대한 개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인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특히 표준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을 강조하는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심층학습과 연구주제와 연구 문제를 규정하여 실제로 적용한다.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산출된 기존의 이론들과 연구결과들을 분석해봄으로서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보고, 기독교 상담학의 연구방법론으로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어떻게 자신의 연구과제들에 연관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 실습해본다.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은 질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표본 연구를 직접 수행한다.

◆ 위기상담 (Crisis Counseling)

이 과목은 인간의 위기 경험에 대한 상담학적 대응을 학습하고 목회의 현장에서 그 응용에 관한 준비들을 다룬다. 교회의 목회 전통 안에는 위기를 만난 인간들에게 인도, 지탱, 치유, 화해의 요소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의 경험들이 인간 성장과 성숙의 계기가 되도록 이끄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기독교 교회전통의 위기 대처의 지혜의 틀 안에서 현대 심리학의 여러 이론들을 개괄해 보고 현대 사회를 살면서 겪게되는 인간위기의 다양성들 즉, 이혼, 인간관계의 갈등, 사별, 건강의 잃음, 직장의 상실 등등에 대해서와 그 대처법에 대해서 학습 및 응용해 본다.

◆ 중독상담 (addiction counseling)

중독의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꼭 갖추고 있어야 할 다양한 영역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중독의 이론, 역사부터 중독 상담 현장에서 필요한 기법, 지식, 기술까지 담고 있다. 부부와 가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상담 전략은 물론



론, 중독으로부터의 재활 과정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 종교심리학 (Psychology of Religion)

이 과목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종교적인 성향과 경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성장과 발달을 다룬다. 기도, 회심, 불안, 성례전, 그 밖의 종교적 상징들과 같은 종교적인 표현들을 심리학자들의 관심에서 연구한다.

◆ 목회상담연구 (Seminar on Pastoral Counseling)

상담이론에 관한 깊은 연구가 진행된다. 목회상담에 있어서의 문제점들과 더불어 죄책감, 좌절감, 공포심과 불안감, 괴로움, 고독, 무의미성, 불안정, 결혼문제 등에 관한 상담 문제가 상세히 연구된다.

◆ 대상관계이론 세미나 (Seminar on Object Relations Theory)

이 세미나는 기본적으로 대상관계이론의 대표적 학자들의 기초문헌을 습득하며 임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토의 적용한다.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과 패어벤, 말리, 컨버그에 이르는 이론들을 살펴보고 각 이론가들이 펼치는 심리구조와 병리학을 검토해 본다.

■ 전공선택

◆ 두뇌신학과 상담(Neurotheology and Counseling)

이 과목은 최근의 연구분야인 두뇌과학과 신학과의 관련성을 목회 상담의 배경 하에서 개괄해 보는 과목이다. 합리주의 문화에 길들여진 현대 문화의 한계점 극복의 길은 인간 두뇌의 전일성 회복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여 현대 두뇌과학이 주는 통찰들을 학습하며 이러한 배움들을 목회 상담의 현장에 적용시켜 인간 전인성(Wholeness)회복의 길을 점검해 본다.

◆ 융 심리학과 상담(Analytical Psychology and Counseling)

이 과목에서는 융 심리학(분석 심리학)의 전반의 체계를 개괄해 본다. 프로이드와는 달리 무의식의 창조적-치유적 기능과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 의미추구의 목적론에 치중하였던 융의 심리학을 살펴봄으로서 현대인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심리학적, 신학적, 목회 상담적 입장에서 조명해 보고, 오늘의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 정신분석학 개론(Introduction to Psychoanalysis)

이 과목은 프로이드로부터 시작된 현대 정신분석학을 개관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은 프로이드와 자아심리학, 대상관계이론과 코흐의 심리학의 이론들을 주제별로 살펴보고 각 이론들의 중심 과제들을 파악하며, 그에 따른 상담학적 통찰을 이해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담의 사례들과 연관지어 창의적 상담가로서 자신을 준비토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 심리검사와 상담(Psychological Assessments and Counseling)

상담을 위한 기본적인 심리검사의 방법 (MBTI, MMPI 등)을 습득하고 실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된다.

◆ 집단상담 실습(Group Counseling Practicum)

이 과목은 그룹의 역동성, 과정, 현상들을 탐구 분석하며, 그룹경험을 통하여 상담지도자로서 훈련받도록 수업이 진행된다.

다양한 이론에 바탕한 변화있는 그룹을 통해 이론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고 담당교수와 그룹구성원의 Feed-Back과 매 회기마다 녹화된 테잎 분석을 통해 그룹상담이론을 체험하고 상담그룹의 발달과정과 제반문제에 대한 대처방법들을 습득한다.

■ 교양필수

◆ 가족치료(Family therapy)

가족치료 과목은 목회상담의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현대사회의 가족의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적 관점을 다루며 가족치료의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학습하게 된다.

◆ 발달심리학(Developmental psychology)

발달심리학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기독교사회복지 전공

◆ 기독교와 복지국가 (Christianity and Welfare State)

기독교의 가치와 사상이 복지국가의 가치와 사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기독교가 복지국가 형성과정에 어떠한 기여를 하여 왔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성서적 정의에 입각한 복지국가모형을 탐구함.

◆ 기독교와사회복지 (Christian and Social Welfare)

기독교사회복지의 기본 이념과 가치를 탐구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기관들과 기독교인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서적 근거, 역사, 형태, 서비스 내용 등을 연구한다. 교회 및 기독교 단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복지사업자로서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분석한다.

◆ 고급기독교사회복지정책론 (Advanced Christian 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이념과 가치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 수립, 대안형성,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성서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며, 사회복지정책급여가 사회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한다.

◆ 고급기독교사회복지실천방법론 (Advanced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개인과 집단, 가족, 공동체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을 행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성서적 관점과 접근방법을 이해하고, 기독교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이론과 기술 등을 터득한다.

◆ 기독교사회복지의역사와사상 (Christian Social Welfare History & Philosophy)

기독교사회복지가 발달해 온 역사와 이념적 배경을 고찰하고, 특별히 세속화와 탈세속화과정에서 기독교가성서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기울여 온 기독교의 역사적 노력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사상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며, 성서적으로 올바른 기독교사회복지의 이념과 철학을 정립한다.



◆ 고급기독교가족복지 (Advanced Christian Social Work with Families)

현대사회의 가족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의 기능, 생활주기, 가족문제 등을 연구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 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기독교가족복지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며 개선방안을 색한다.

◆ 고급기독교노인복지 (Advanced Christian Social Work with the Aged)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복지기관들이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공적인 노인복지제도의 변화에 따른 기독교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 고급기독교아동·청소년복지 (Advanced Christian Social Welfare with Children & Adolescents)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복지기관들이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 정책, 전달체계와 사회복지실천의 방법론을 학습하여,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동과 청소년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을 연구한다.

◆ 고급기독교장애인복지 (Advanced Christian Social Work with the Disabled)

장애문제를 사회복지의 다차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장애의 발생과 실태, 그리고 한계를 분석한 후, 이를 기독교사회복지적 이론과 이념의 틀 위에 재배열함으로써 성서적으로 합당한 장애문제의 해결방안과 욕구충족대안을 연구한다.

◆ 고급기독교사회복지기관행정론 (Advanced Christi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for Welfare Institutions)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인사관리체계, 조직관리체계, 재무관리체계, 정보관리체계 등을 연구하고,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섬김의 자세로서 복지사역에 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분석한다.

◆ 고급기독교자원봉사론 (Advanced Christian Volunteer Management)

복지사회를 촉진하고 민주사회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자원봉사의 의미와 형태를 기독교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기관들이 섬김의 자세로 헌신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한 대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 고급기독교의료사회복지론 (Advanced Christian Social Work in Health Care)

의료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개입의 이론과 모형, 그리고 의료사회사업가의 역할과 개입방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교회와 기독교기관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모형을 개발하며, 나아가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서적으로 연구한다.

◆ 고급기독교사회복지세미나 (Advanced Seminar of Christian Social Welfare)

현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제반 연구방법과 최근의 쟁점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기독교사회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한다.

◆ 종교개혁과 기독교사회복지(Religion Reform and Christian Social Welfare)

칼빈, 루터 등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의 종교개혁사상과 실천내역을 학습하고, 성화론과 이신칭의론 등이 갖고있는 기독교사

회복지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종교개혁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한 기독교사회복지 사업들을 정리하고 연구한다.

◆ 박사연구(Doctoral Study)

박사과정의 심화학습과정의 하나로써 특정한 기독교사회복지분야의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성과를 이루도록 연구를 진행한다.

디아코니아 전공

◆ 디아코니아신학 (Theology of Diakonia)

‘섬김(diakonia)’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다. 디아코니아 신학 전반을 이해함으로써 이 시대의 새로운 문제들을 디아코니아적으로 해석하며, 교회 예배 및 교육을 디아코니아 신학에 기반을 두고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 디아코니아와성서(Diakonia and the Bible)

신구약성서에 나타난 디아코니아를 연구함으로써, 디아코니아의 성서적 의미가 무엇이며, 디아코니아가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바르게 알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섬김의 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교회사에나타난디아코니아 (Diakonia in the Korean church history)

한국(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디아코니아를 살펴봄으로써 무엇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향해야 할지를 고찰하여 이 시대의 교회가 나아갈 디아코니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아코니아현장실습 (Practical field work of Diakonia)

디아코니아 신학은 실천을 위해서 이론적으로 정립된 학문이면서 또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신학이다. 이에 다양한 현장 실습이 중요하여 국내외의 현장을 실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디아코니아와장애인 (Diakonia for the Disabled)

장애에 대한 성서적인 접근과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위한 디아코니아적인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한다.

◆ 디아코니아와목회 (Diakonia and Ministry)

목회 현장에서 디아코니아적인 실천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회 현장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목회 현장에 적용하고 고찰한다.

◆ 디아코니아연구방법론 (Methods and theories of Diakonia)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디아코니아 방법론 소개와 현대 그리고 미래 사회에 나타날 디아코니아 분야를 찾아 연구 방법론을 찾아보고자 한다.



◆ 교회자원봉사조직과운영 (Organization skills and knowledge for volunteers within the Church)

최근 교회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방법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계획하여 실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 디아코니아와예배 (Diakonia and Worship)

디아코니아와 예배의 통합과 접목을 시도하고 복음적이며 창의적인 예배 갱신의 모델을 제시하여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되새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합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디아코니아와 세상(Diakonia and the world)

디아코니아와 세상은 마을목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 문화현상 및 다양한 이슈들(다문화, 생태 신학, 새터민, 탈북자, 노인복지등)을 디아코니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점을 찾아나가는 수업이다.

◆ 디아코니아 성서적 모델연구(Study of diakonia biblical model)

디아코니아 성서적 모델연구는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디아코니아적 모델을 현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에 맞게 재해석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수업이다.

자연치유학 전공

◆ CST 두개천골학 세미나(Cranio Sacral seminar)

본 강의는 100년전 정골의사인 Dr. W.G.Sutherland에 의해 창시된 두개천골개념은 일차호흡기전의 원리를 바탕으로 전 인체의 기본적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고 국소적으로 두개천골영역(Craniosacral field)의 해부학, 생리, 병리적 관점은 임상의 물리치료사들이 다루고 있는 두통, 측두하악관절장애, 각종 뇌신경질환 및 기능이상, 안와부, 비강부의 질환과 기능이상, 천장관절의 기능이상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전신적 개념으로 신경계, 순환기계, 근골격계, 내장기계, 내분비계, 면역기계등에 걸친 상호작용과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 구약 성서의 이해(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구약 성서의 이해는 구약의 배경, 역사, 지리, 신학등을 통해 구약을 개괄하고자하며, 구약 각권의 내용뿐 아니라 구약의 문학과 성장 배경, 그리고 역사를 신학적으로 규명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교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구약성경의 문학적 구조와 양식을 공부한다. 2) 구약성경에 담겨있는 신학적 사상을 탐구한다. 3) 구약성경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종교를 연구한다. 4) 구약성경을통해 자연치유신학적 소양을 쌓는다. 5) 구약성경의 교훈을 오늘의 사회와 교회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 산림치유프로그램개발론(Forest Healing program Development Theory)

본 과목은 자연치유의 중요한 부분인 산림치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자연자체인 산림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세부적 교과내용으로는 산림치유 개요, 숲을 활용한 육체적,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 숲을 활용한 영적치유 프로그램, 숲 치유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 산림치유의 국내, 국외 최신동향 연구 및 활용, 산림치유를 활용한 오감치유의 적용, 산림치유를 통한 면역계 활성화 방안연구, 산림치유와 이완요법 등이며, 발제 및 토의 수업진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 신약 성서의 이해(Understanding of New Testament)

이 수업에서는 신약성경을 통전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을 각 권별로 살펴 보는데, 특히 각 권의 구조, 내용, 특징에 주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각 권이 담고 있는 신학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새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개역개정과 함께 대한성서공회의 공식번역으로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신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임상오감멀티테라피 세미나(Clinical Five Sensibility Multi-Therapy seminar)

본 과목은 인체의 오감을 활용한 치유방법에 대한 세미나로서, 시각을 활용한 컬러테라피, 청각을 활용한 소리테라피, 후각을 이용한 향기 및 아로마테라피, 촉각을 활용한 수기테라피, 미각을 활용한 푸드테라피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강의 진행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일상생활에서 오감멀티테라피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와 연구방식으로 진행된다.

◆ 임상아로마테라피세미나(Clinical Aromatherapy Seminar)

자연치유의 한 분야인 Aromatherapy(아로마테라피), 즉 향기요법의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하며, 허브 식물에서 추출한 아로마 에센셜오일의 정의, 추출방법, 작용원리, 보관 취급법, 사용방법, 그리고 33종의 에센셜오일과 8종류의 캐리어 오일, 6종류의 플로럴 워터에 대한 특징과 사용방법, 효능 등에 대해 임상 학습하게 된다. 또한 아로마테라피 실습과 임상 발표를 통해 에센셜 오일의 효능을 직접 체험해보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 임상운동치유학세미나(Clinical Physical Exercise Therapy)

임상운동치유학세미나는 다양한 운동법중 우리 선조들이 실천하였던 몸펴기 생활(生活)운동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기존에 학습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과 임상 발표를 병행하며 인체 내에 존재하는 자연치유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치유방법을 터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임상운동치유학세미나는 실용적 기능을 배우고 실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임상이혈상담치유학세미나(Clinical Ear Health Counseling Seminar)

이혈상담치유학은 WHO에서 인정한 자연치유 학문으로 귀의 반응점을 자극하여 신체의 각 기관의 면역력 증진과 신진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자연치유력 증진과 질병 예방, 회복에 도움을 주는 건강법이다. 본 교과목은 서양의 반사학과 상담학을 접목시켜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 주며, 가정과 선교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임상에 집중하여 실질적 상담치유가 가능하도록 학습한다.

◆ 임상자연치유방법론세미나(Clinical Natural Healing Methodology Seminar)

임상자연치유방법론세미나는 자연치유 현장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에게 가장 합당한 자연치유를 전개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치유를 적용하려는 내담자들은 체질이 상이하고 현재의 육체적 건강 상태와 육체적 건강 정도도 각각 상이하므로 자연치유상담자들이 이를 모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호협력가운데 주도적으로 자연치유방법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교과목은 체질분석, 건강분석, 자연치유적용을 원활히 전개하도록 임상 실습 한다.

◆ 임상홍채영양학세미나(Clinical iris nutrition seminar)

홍채와 영양학을 통한 예방의학의 중요성과 먹거리의 중요성 등을 학습한다. 홍채 분석을 통한 건강증진과 장기의 고유 기능이 떨어진 원인을 분석하여 자연치유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되는 것을 눈의 홍채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자한다. 본



교과목은 인체의 구조와 계통별 기능을 학습하며, 무엇보다 홍채에 발현되는 장부의 건강 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치유에 대한 신뢰가 증가된다.

◆ 자연치유 논문 연구 방법론(Naturopathy Research Methodology)

자연치유학 전공분야에서 배운 학문을 논문을 통해 전문화, 체계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양적 또는 질적 연구방법에 대해 이론과 실재를 겸한 학습과정입니다. 다양한 통계를 활용한 분석방법 및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학습함으로써 한 사람이 주신 선물인 자연치유 학문에 대해 더 깊은 학문적 연구를 위한 도구를 습득하고자한다. 수업 과정에서 박사학위 논문과 학회지 소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실질적 논문 작성을 진행한다.

◆ 자연치유 에너지테라피 개발론(Natural Healing Energy Therapy Development)

자연치유 에너지테라피 개발론은 개인마다 기질과 건강 정도가 상이하다는 전제하에 가장 합당한 기죽교적 에너지의학으로 접근하고자한다. 인체의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불건강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전적인 생물학적 접근 뿐 만아니라 양자역학적 방법도 필요하다. 본 교과목은 V-SPREAD, 차크라힐링, 손빛치유, 쿼터터지, 기적의 손치유, 빛의 힐링, 기의학으로 고친다 등의 전문서적들의 핵심을 모아 실질적 치유에 적응, 응용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있다.

◆ 자연치유 장상학 세미나(Natural Healing “Chang Sang Hak” Seminar)

장상학은 외부에 발현되는 다양한 증상은 5장6부 부조화와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이론이다. 본 과목은 자연치유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질인 5장 6부의 건강정도를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질의 부조화로 발생되는 다양한 건강 증상과 현상을 이해하여 자연치유를 적용할 수 있는 자연치유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 자연치유 동종요법 세미나(Naturopathy Homeopathy seminars)

동종요법은 같은 에너지를 소유한 자연물질을 통해 인체 건강의 질을 향상시키는 치유법이다. 동종요법의 일종인 영국 배치 박사가 정립한 플라위에센스를 통해 감정치유에 집중하는 과목으로 내재된 본질의 감정들을 자연물질 중 나에게 합당한 것을 선택하여 희석하여 알리지를 조율하여 감정적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하고자 한다.

◆ 자연치유와 심신의학세미나(Natural Healing and psychosomatics Seminar)

본 과목은 자연치유의 관점에서 심신의학의 접근 및 활용을 위한 강의로서, 강의내용은 심신의학의 개괄적 이해, 다양한 접근방법, 심신의학의 실제적 활용을 위한 임상 실습, 자연치유 관점에서 심신의학의 이해 및 활용 등이다. 본 강의를 통해 현재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심신의학에 정확한 이해 및 자연치유영역에서의 실제적인 활용을 배울 수 있다.

◆ 중독의 이해와 성격적 자연치유(Understanding of addiction and biblical natural healing)

사회와 가정에서 중독의 문제는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정과 사회의 불안함은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중독으로 인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본 과목은 중독(행위중독, 약물중독)에 대한 생리적, 심리적인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중독 치유의 핵심인 성경적이고 영적인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다양한 중독의 치유과정에 있어서 자연치유가 어떠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적용해보고자 한다.

✚ 박사과정(D.M.) 교과과정표 (개정2017.5.4., 2021.5.6.)

학 점	과 목 명	학 점
공통과목	전공실기1-5	각2
	연주1-4	각1
	논문1-2	각3
피아노	실내악연구1-2, 낭만.현대소나타연구1-2, 피아노세미나1-2, 중세및르네상스, 바로크및고전, 낭만및현대음악, 고등음악분석,	각3
성악	예술가곡연구1-2, 오페라연구1-2, 한국가곡연구1-2, 중세및르네상스, 바로크및고전, 낭만및현대음악, 고등음악분석	각3
오르간	오르간세미나1-4, 오르간연주방식연구1-2, 중세및르네상스, 바로크및고전, 낭만및현대음악, 고등음악분석	각3
합창지휘	합창마스터워크클래스1-2, 합창세미나1-2, 중세및르네상스, 바로크및고전, 낭만및현대음악, 고등음악분석	각3



✦ 박사과정(D.M.) 교과목 설명

◆ 전공실기 1~5 (Applied Music 1~5)

주1회 전공분야 개인교수를 통하여 지도 받아 전공실기를 연마하여 매 학기말 전공실기 시험을 치루어 평가를 받는다.

◆ 연주 1~4 (Doctoral Recital 1~4)

전공실기를 통하여 배운 전공분야를 실제로 연주함으로써 연주 경험의 훈련을 쌓는다.

◆ 논문작성법 (Music Bibliography)

학위 논문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방법, 논지구성, 학술적 기술방법 등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을 한다.

◆ 고등음악분석 (Advanced Analysis of Music Literature)

중세에서 고전에 이르는 작품들을 곡의 구성적 차원에서 분석, 연구한다.

20세기까지의 작품들을 곡의 구성적 차원에서 분석, 연구한다.

그레고리안 성가로부터 고전시대에 이르는 음악 작품들을 각기 당시 음악이론을 적용하여 분석, 연구한다.

낭만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음악 작품들을 각기 당시 음악이론을 적용하여 분석, 연구한다.

◆ 박사논문 1·2 (Doctoral Dissertation 1~2)

◆ 신학 1, 2 (Theology)

◆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음악 (Music of the Medieval Music, Renaissance Music, Baroque Period, Classic Music, Romantic Music, Twentieth-Century Music)

문헌과 작품을 통하여 바로크, 중세, 고전, 낭만, 현대음악을 연구한다.

◆ 예술가곡연구 1·2 (Research in the Art Song 1~2)

예술가곡의 발달사 및 대표적 작곡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을 연구한다.

◆ 실내악연구 1·2 (Research in the Chamber Music 1~2)

실내악곡을 선정하여 집중 연구한다.

◆ 낭만, 현대소나타연구 1·2 (Research in the Romantic, Twentieth - Century Sonata 1~2)

낭만, 현대시대의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각 작품들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 작품의 형식, 작곡가의 음악적 특성과 작품의 올바른 해석 등을 연구한다.

◆ 낭만 및 현대음악 (Romantic and Twentieth-Century Music)

문헌과 작품을 통하여 낭만 및 현대 음악을 공부한다.

◆ 바로크 및 고전 음악 (Baroque and Classic Music)

문헌과 작품을 통하여 바로크 및 고전시기의 음악을 공부한다.

◆ 오르간문헌세미나 1·2·3·4 (Seminar in Organ Literature 1~4)

르네상스와 바로크(1), J.S.Bach(2), 고전과 낭만 시기(3), 20세기 이후(4)의 오르간 작품들을 스타일, 역사, 형식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 오르간연주방식연구 1·2 (Study on Performance Practice 1~2)

오르간음악의 레퍼토리는 매우 광범위한 시간에 걸쳐있다. 각 시대의 작품이 가지는 본연의 성격이 반영된 연주를 위해 16세기 이래 나타난 연주법에 관한 문헌을 연구한다. 이와 함께 악기의 메커니즘을 시대별로 이해하고, 동시대 다른 악기들의 연주 관행을 포함한 포괄적인 연주방식에 관한 지식을 넓힌다. 그리하여 정격연주를 비롯한, 창의적인 연주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오페라연구 1·2 (Research in Opera 1~2)

오페라 곡을 선정해 각각의 역할을 학생에게 부여하고 맡은 역할을 무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습을 한다.

◆ 중세 및 르네상스 음악 (Medieval and Renaissance Music)

문헌과 작품을 통하여 중세 및 르네상스 음악을 공부한다.

◆ 피아노세미나 1·2 (Seminar in Piano Literature 1~2)

대표적 피아노 곡들을 역사적으로 문헌을 통하여 연구한다.

◆ 한국가곡연구 1·2 (Studies of Korean art Songs)

한국가곡을 작곡자별 시대별로 구분하여 학습하며 자음과 모음의 연결발성을 배워 더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연습한다.

◆ 합창세미나 1, 2 (Seminar in Choral Conducting 1, 2)

합창 지휘와 관련된 주요 주제(음악형식, 문헌, 연주 실제, 작곡가 연구 등)들을 선정하여 연구발표와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지휘자에게 요구되는 학문적 지식과 연주 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 합창마스터워크 클래스 1, 2 (Chord Conducting Master Work 1, 2)

실제로 합창 지휘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지휘법, 발성법, 연습 법, 등을 다루어 실제 경험을 얻는다.

2024 2025

서울장신대학교 요람

Seoul Jangsin University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업무안내

- 전략기획처
- 교육혁신처, 학생성장지원처
- 경건실천처
- 행정지원처
- 학술정보관
- 평생교육원
- 산학협력단, 출판부



+ 전략기획처

기획·평가업무

1. 장단기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수립
2. 대학구조조정 업무
3. 대학 관련 제반 정보 수집
4. 대학의 조직 관리 및 기구 설치
5. 부처 간 사무의 분장 및 업무조정
6. 업무 공간·교사시설 배정 및 개선
7.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정부기관·지역사회 등과의협력 및 자매결연
8. 대학의 규정 제정 및 개폐 관련 업무
9. 행정편람의 제정 및 개폐 관련 업무
10. 대학자체진단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 업무
11. 대학구조개혁평가감사 업무
12. 대학기관인증평가감사 업무
13. 대·내외 감사업무
14. 대·내외 평가업무
15. 평가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고
16. 교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1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기획·예산업무

1. 자산의 조성과 기획 업무
2. 예산편성 및 운용 관련 제반 업무
3. 예산 집행시 내부통제 업무
4. 학생 등록금 책정 업무
5. 교직원의 보수 및 제수당 책정 업무
6. 교직원연봉제 책정·계약 업무
7. 각종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
8. 대학정보공시 관리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교육혁신처, 학생처

교원인사·연구업무

1. 교원 신규임용
2. 교원승진 및 재임용
3. 교원휴직
4. 교원면직
5. 연구비 지급 (학술 · 일반)
6. 교원연구업적 관리
7. 서울장신논문단 발간
8. 교원 연구학기 연구비 지급
9. 교원 국외여행 신청 업무
10.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자 연구비 지원
11. 교원관련 위원회 위원 임명
12. 교원과 관련된 각종 통계 업무(정보공시포함)
13. 교원과 관련된 각종 평가 업무
14. 교원정원 책정 계획 관련 업무
1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16. 교수연구촉진규정지원사업

입시기획·홍보업무

1. 학부 및 대학원 신·편입 입시업무
2. 학부 및 대학원 입시 홍보
3. 입시와 관련된 각종 통계 업무(정보공시포함)
4. 입시와 관련된 각종 평가 업무
5. 대학 및 대학원 학과조정 및 정원조정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입학관리업무

1. 대학원 신·편입 입시업무
2. 대학원 입시 홍보
3. 입시와 관련된 각종 통계, 평가 업무(정보공시 포함)
4. 대학원 학과 조정 및 정원조정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수업·학적업무

가. 수업업무

1. 교과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지침
2. 수업시간표 편성, 수업계획서 관리
3. 수강신청 지침,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 수강철회
4. 전공현장실습, 사회봉사 관리
5. 출석, 공결, 휴강, 보강, 특강 관리
6. 교수 담당시간관리 및 강사료 계산
7. 복수전공
8. 경인지역대학(교) 학점교류
9. 수업평가, 시험관리, 계절학기 관리
10. 조기졸업, 졸업사정 관리
11.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수강안내
12. 수업용 기자재 대여
13. 강사 임용관련, 경력증명, 강사 선정 Pool제, 전력조회
14. 학사일정 수립
15. 수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 평가 업무(정보공시 포함)
1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나. 학적업무

1. 학생 현황관리
2. 휴학, 복학, 제적, 졸업 관리
3. 재입학, 편입학 여석 산출
4. 학적부 기재사항 관리
5. 한국교육개발원 재적생 변동, 고등교육통계 관리
6. 증명 발급 및 정산
7. 학력조회
8. 신학계속추천서
9. 학위인정시험

10. 학적과 관련된 각종 통계, 평가 업무(정보공시 포함)
11. 외국인 학생 관리
12. 기타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장학업무

1. 교내장학금 업무
2. 외부장학금 업무
3. 국가장학금 업무
4. 학자금융자 업무
5. 장학통계 업무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학생복지업무

1. 학생상담 및 지도 업무(학생지도위원회)
2. 학생포상 및 징계업무
3. 학생회조직, 관리, 운영 업무
4. 학생단체(학회)행사 지도 업무
5. 학생활동 및 장소사용 지원 업무
6. 동아리등록 및 활동 지원 업무
7. 학생게시물 및 인쇄물 관리 업무
8. 학생보험(학교경영자배상보험)운영 업무
9.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업무
10. 학생증 발급(신규·재발급) 업무
11. 학생 후생복지 업무(학생복지위원회)
1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업무
1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학생통합업무

1. 교내·외 사회봉사활동운영 업무
2. 학생 국외봉사활동운영 업무
3. 국외대학과의 학생교류 업무
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 업무
5. 학생취업업무(취창업지원센터)
6. 학생상담업무(학생상담센터)
7. 학생사회봉사업무(사회봉사센터)
8. 장애학생업무(장애학생지원센터)
9. 학생의 보건사항 업무
1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경건실천처

1. 학생 경건 훈련에 관한 사항
2. 학내 예배 주관(개강, 종강,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찬식 등)
3. 목회 실천에 관한 업무(재학 중 실천교회 주선)
4. 학생 교회실천확인서 관리 및 경건생활 평점 관리
5. 학생 신앙 수련회에 관한 사항
6. 군종사관 후보생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행정지원처

■ 총무과

총무업무

1. 총장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 보안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출결, 상벌, 기강에 관한 사항
4. 출장명령 및 교통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직원 신분증,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6.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학연금 및 4대보험 관리 업무
8. 직원의 고충처리 관련 업무
9. 직원의 국내외 연구
10. 교직원 경조사 처리
11. 문서수발 및 분류 통제에 관한 사항
12.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직원의 승진, 포상, 징계 등)
13. 직원의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업무
14. 직원의 인사관련 규정업무
1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회계업무

1. 교직원급여, 강사료 지급 및 연말정산
2. 자금 및 각종 기금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3. 학교 재정의 세입 및 세출
4. 회계 장부 정리 및 보관
5. 원천세 보고 및 납부
6. 학교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7. 부속기관 자금의 회계관리 및 장부보관
8. 수입증지 취급
9. 특별회계(평생교육원, 생활관 등)수지 결산
1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시설지원·구매과

1. 교사공사 및 관계사항
2. 청소 및 경비 용역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사, 정원, 교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미화 보수에 관한 사항
4.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사무용·교육용 비품 및 기계기구 관리에 관한 사항
6. 비품대장 및 카드정리에 관한 사항
7. 생활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내외 통신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9. 시공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10. 교지 및 시공공사 건물도면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11.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2. 변전실, 보일러실 및 기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무용·교육용 비품 및 기계기구 구입에 관한 사항
14. 시설 사용 승인대여 업무
15. 일반 소모품의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학술정보관

학술정보과

가. 수서 업무

1. 자료구입 (단행본)
2. 정기간행물, 신문, 비도서 구입
3. 자료수증 및 기증
4. 국내 및 해외DB공동구매(구독)

나. 정리 업무

1. 자료 정리 (분류 및 DB구축)
2. 자료 재정리
3. 폐기도서
4. 도서원부

다. 참고열람 업무

1. 장서관리
2. 참고자료 열람서비스

3. 학술정보관 출입관리
4. 상호대차 서비스
5. 신입생/편입생 학술정보관 이용교육
6. 학술정보자료 이용자교육
7. 타 기관 자료열람협조의뢰
8. 학술정보관 출입증 발급 (외부인 도서대출증)
9. 각 열람실 운영관리
10. 국가근로생 및 일반근로생 교육 및 관리
11. 각종 서비스 업무 : 복사카드 판매 및 관리, 팩스, 스캔
12. 성경문제집 안내 및 판매(방학중)
13. 교내 발간물 관리(졸업앨범, 논문, 학보, 예배순서지, 기타 발간물 전반)
14. 기타 전화 및 데스크 응대업무

라. 대출 업무

1. 도서대출
2. 도서반납
3. 변상도서 처리
4. 연체도서 처리
5. 불용도서 처리
6. 자료 무단 반출자 처리
7. 이용자 과일 관리
8. 도서대출통계
9. 이메일 통보서비스
10. 신간도서 코너 관리
11. 취업관련도서 코너 관리
12. 기독교고전도서 코너 관리

마. 정기간행물 업무

1. 정기간행물/신문/비도서 열람 및 관리
2. 정기간행물 기사 색인 DB구축
3. 원문복사(상호대차) 서비스
4. 전자저널 관리
5. 정기간행물 제본
6. 비도서 자료 대출 및 반납
7. 장비관리

바. 행정 업무

1. 학술정보관 사업
2. 학술정보관 일지
3. 이용자 안내 주요 서식 자료
4. 학술정보관과 관련된 통계 업무(정보공시포함)



5. 학술정보관과 관련된 각종 평가 업무
6. 기타 학술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
7. 학술정보관 운영관련 예산 지출 및 수입관리 - 유니베이스
8. 공문 및 업무연락 수발신 관리
9. 학술정보관 집기 및 비품 구입 관리
10. 학술정보자료의 장서개발
11. 학술정보관 각종 이벤트 및 행사

사. 학위논문관리

1. 학위논문 수집 및 납본
2.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 관리

전산정보과

가. 학술정보관 업무

1. 학술정보관 진산화 추진 및 관리
2.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및 관리
3. 학술정보관리프로그램 및 서버 운영관리

나. 학사업무

1. 학부/대학원 학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2. 학부/대학원 인트라넷 유지보수
3. 고등교육 통계 전산업무

다. 입시업무

1. 유웨이 어플라이 연계 업무
2. 본교 입시 프로그램 유지보수
3. 교육부 NEIS 연계 업무

라. 경건업무

1. 채플 동영상 서버 관리 / 유지보수
2. 채플 영상실 지원 업무

마. 기부금 업무

1. 본교 기부금 프로그램 유지보수

바. 개인정보/정보보안 업무

1.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련 뉴스 게재
2. 교육부 사이버 안전센터 연계-본교 침해사고 및 악성 바이러스 대응

3. 개인정보보안의 날 행사 진행
4. 개인정보/정보보안 모니터링

사. 홈페이지 유지보수

1. 본교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침해 대응 및 기타 행정 지원

아. 서버 유지보수 업무

1. 교내 서버 백업 및 점검, 유지보수
2. 기기점검 및 유지보수

자. 전산기자재 관리 업무

1. 강의실 및 행정실 PC 유지보수 (수리 및 점검)
2. 전산실 관리
3. 라이선스 구입 및 관리
4. 기타 전산 기자재 유지보수

차. 기타 전산업무

1. 메일서버 관리
2. 문자전송 프로그램 관리
3. 공용 S/W 대출 및 반납
4. 기타 전산작업 의뢰 대응
5. 전자교탁 및 무선랜 점검



+ 평생교육원

1. 업무개요

시대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사용,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열린교육 취지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의 기능을 올바로 실현할 수 있는 강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가. 프로그램 개발 기초: 정보조사, 잠재적 요구조사, 환경변화 연구
- 나. 목표설정 및 사명분석: 프로그램의 성격 및 전체 방향성 결정
- 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 현존 자료 분석, 심층자료수집, 소집단 회의 등
- 라. 결정 및 실행: 프로그램 자원 확보(강사, 강의실, 기자재), 프로그램 운영
- 마. 피드백: 강의평가, 성공 및 실패 연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등

3. 교육과정 운영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신학, 사회복지학	15주
일반과정	문화강좌	자격증, 자연치유, 건강, 음악, 신학, 상담, 인문학 등	1~12주
	콘서트바토리	과정: 일반/전문연주자 과정 전공: 성악, 오르간, 합창지휘, 피아노, 피아노 반주, 작곡, 플루트 등	8~12주
	실용음악아카데미	과정: 일반/전문연주자 과정 전공: 실용보컬, 실용건반, 싱어송라이터, 기타(일렉/어쿠스틱/베이스), 드럼 등	8~12주
	목회자직업교육(목공)	인테리어 내장목수 전문가 양성과정, 건축목공기능사 자격증 과정	양성반(9주) 자격증반(9회)
	목회자세미나	광주시 관내 기독교 연합회와 협력하여 목회자 재교육 및 목회자 세미나 개최	
광주시	지자체 사업	광주시 공고에 의한 위탁 사업 진행	

4. 학사관리 내용

- 가. 강사 섭외(초빙)
- 나. 강의시간표 작성 및 강의실 배정
- 다. 강사 및 학생정보관리(재학생 및 졸업생, 유관기관 정보 관리)
- 라. 학적 및 성적관리
- 마. 각종 증명서 발급
- 바. 학생복지 및 시설관리
- 사. 입학 및 졸업(수료식) 행사 진행
- 아. 강의평가(설문 및 분석), 강의평가 환류(우수 교강사 표창 등)

5. 예산운영

- 가. 업무내용 :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이루어지는 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모든 업무.
- 나. 업무흐름 : 예산안 작성, 예산결의, 예산 집행, 수입/지출 결의서 결재



+ 산학협력단

1. 산학협력단 제반 행정업무
2. 산학협력단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 및 이행
3. 산학협력단내 사업팀의 관리 및 운영
4. 산학협력사업의 수행 및 결과 보고
5.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6.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8.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훈련
9. 산학협력 연구비·연구 간접비 관련 업무
1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출판부

1. 서울장신논단, 학술저서 및 논문 출판 관련 업무
2. 출판과 관련된 통계업무(정보공시포함)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2024 2025 서울장신대학교 요람

Seoul Jangsin University

VI 학생생활

- 대학 장학금 지급 규정
- 국가장학금 운영 규정
-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 서울장신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공익제보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 장애학생 지원 규정
- 학생복지위원회 규정
- 학생복지시설 운영 규정
- 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
- 학생공상처리 내규
- 대학 경건실천처 규정
- 신학대학원 경건실천처 규정
-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 군종사관(장교) 후보생 지원안내
- 학생예비군 사무안내
- 국외대학과의 학생교류 규정
- 총학생회 회칙
-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 신대원 회칙
- 선거 시행세칙
- 학생생활 준칙



✦ 대학 장학금 지급 규정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을 통해 서울장신대학교 학부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2조 (선발 기준)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준은 아래에 따른다.
1. 장학생 선발은 매학기 공고하여 신청한다.
 2. 장학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며 재학생의 장학금 수혜기간은 정규학기를(수업연한/ 학부8학기) 초과할 수 없다.
 3. 본교 장학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4.5 이상이고, 경건회 PASS인 학생으로 15 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단, 4학년은 학칙시행세칙에 따른 최저이수 요구학점 (6학점)에 따른다. 또한, 장애학생 이수학점 기준은 미적용하며, 가계곤란, 근로, 공로 장학금의 성적기준은 평점평균 1.5/4.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9.4>
 4. 경건회 NP자, 학점등록자, 징계대상자 및 기타 학칙 위반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5. 장학금은 특별히 규정한 장학금(신입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교외장학금) 외에는 학생이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6.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성적미달 및 서류미비로 인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7.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8. 본교 대학 장학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은 소득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구간 까지의 학생으로 한다.
- 제3조 (재원) 본교 장학금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회계
 2. 외부 기탁금
 3. 장학기금으로부터의 과실수입
- 제4조 (업무관장) 1. 장학업무 중 예산안의 수립 및 장학생의 선정은 학생성장지원처장이 관장하고, 장학기금의 관리 및 운영은 기획예산부서에서 관장하며, 장학금 지급은 회계부서에서 관장한다.
2. 학기별 정기 장학위원회를 제외한 추가로 선발 및 지급되는 장학금은 별도의 장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생성장지원처장이 총장의 재가를 얻어 지급할 수 있다. (단, 외부장학금은 선정기준을 정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총장의 재가를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제 2장 장학위원회

- 제5조 (설치)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 제6조 (구성) 1. 위원회 위원은 학생성장지원처장, 전략기획처장, 직원대표, 및 각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생성장지원처장이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복지·장학담당이 맡는다.

-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4. 기타 장학 관련 사항
- 제8조 (결의) 1.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 3장 장학금 지급내역

- 제9조 (종류와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10조 (지급시기 및 방법) 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에 선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총액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등록금은 필수 경비만 인정하며 선택 경비는 제외한다.)
- 제11조 (장학금지급 중지 및 회수) 장학금 수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하거나 회수한다.
1. 휴학 및 제적(자퇴)자
 2. 학칙위반자
 3. 학업성적(평점평균 2.0이하)
 4. 시험 부정행위자
 5. 경건회 NP자
 6. 허위로 장학금 신청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제12조 (장학금이연 및 반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복학시까지 이연 등록 처리할 수 있다. (단 장학금을 받은 후 제적 또는 자퇴시에는 해당 학기에 지급 받은 장학금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 (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 결정을 받고도 해당 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4조 (공고) 학생처는 장학생 명단을 학사인트라넷에 게시함으로써 학생 개인이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5조 (규정개폐) 본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6조 (이중수혜금지) 1.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2. 이중 지급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한다.
 3. 다음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다만, 이중수혜범위는 최대 4개까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국가근로장학금은 이중수혜범위와 관계없이 수혜가능하다.)
- ① 교내·교외 장학금 합이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② 1회성 포상성격의 장학금, 총학정책, 근로, 채플봉사, 공로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③ 이중수혜가 가능한 장학금은 가계곤란, 공로, 근로, 장애인, 학교사랑, 동문가족, 성적향상, 실기성적우수, 채플봉사, 국가, 외부기탁 장학금이다. (단, 학교사랑과 동문가족 장학금 간의 이중수혜는 불가하다.)
- 제17조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세부 국가장학금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18조 (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세칙은 폐기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 2012년에 한하여 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세칙은 폐기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 2013년에 한하여 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8.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① 단, <별표1>의 총학(정책)장학금의 경우 2015년도 집행분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12.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8월 8일부터 학생처장을 대학교학처장으로 한다.
17.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8월 8일부터 학생처를 대학교학처로 한다.
18.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3월 2일부터 대학교학처를 학생처로 한다.

■ 대학 장학금 종류 및 지급 기준표<개정 2019.5.23>

장학금 종류	선발 기준
신입생성적우수	학과별 수석 합격자(수시전형 합격자 대상)에게 지급한다.
편 입	편입생 중 전적대학 최종학기 2.0이상인 자에게 입학 첫 학기에 지급한다.
성적우수	수혜 학기 학과, 학년별 성적우수 지정 학생에게 지급한다. (동점일 경우 취득학점순 → 환산총점순 → 환산평균순)
성적향상	성적향상A : 이전학기 평점 1.5이하인 자 중에서 직전학기 평점2.5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성적향상B : 이전학기 평점 2.5이하인 자 중에서 직전학기 평점3.5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성적향상C : 이전학기 평점 3.5이하인 자 중에서 직전학기 평점4.0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재학기간 중 1회만 수혜가능)
실기성적우수	교회음악과 직전학기 전공별 실기성적이 우수한 지정 학생에게 지급한다.
공 로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이중수혜가능)
근 로	학내 부서에 배치되어 봉사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이중수혜가능)
보 훈	대학수험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또는 보훈처에서 정하는 법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교직원가족	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재단 직원 포함)의 배우자, 자녀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8학기 수료 후 편입학한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사랑	본 대학교에 직계가족 2인 이상 모두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가족 1인에게 지급한다. (2인의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동문가족	본교를 졸업한 자의 가족이 입학할 경우 지급한다.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교역자가족	본 교단 미자립교회(개척교회 포함) 및 면단위 이하 교역자자녀 또는 사모 (노회확인서, 미자립교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는 학생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는 부모가 있는 학생 (기존 장애등급 1~3급에 해당)에게 지급한다. (*이중수혜가능)(장애인증명서)
외국인	다문화(외국인)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이중수혜가능)(외국인등록증)
총학(정책)장학금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가계곤란(국가2매칭)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 (국가장학금 선발기준 적용) 다만, 국가장학금2유형 운영 시 제외한다.
가계곤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중 교내 장학금규정 지급대상자(*이중수혜가능)
교 외	국가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 외부장학금 선발 학생에게 지급한다.
학과장 추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선별하여 지급한다(학기중지급)
채플봉사	교내에서 시행하는 채플과 관련된 활동에 배치되어 봉사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이중수혜가능)
지역인재	경기 광주, 하남, 이천, 여주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본교 입학생에게 입학 첫학기 지급
우수인재	관련분야의 유명인사, 영향력이 큰 인물 또는 학과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큰 성장의 자질을 갖춘 자에 대하여 학과추천을 통해 지급



✦ 국가장학금 운영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국가장학금(I, II 유형)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 (수혜대상) 매 학년도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정한 선발자격을 충족한 학생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학생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1. 소득분위별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분위 1분위~8분위 대상 가구의 학생(한국장학재단의 심사자료에 근거)
 2. 취득학점 및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성적 100점 만점의 80점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70점 이상으로 적용하며, 소득구간 1~3 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를 통해 재학 중 2회 구제가능하다. (단,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경우, 교내자체 선발기준을 통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9.5.23>
※ 신, 편입생은 입학 첫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기준 미적용
 3. 학기 기준 : 재학 8학기 이내
- 제4조 (수혜기간)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장학금 수혜기간은 신청한 해당 학기로 한다.
- 제5조 (장학금액) ① 국가장학금 I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분위 1분위~8분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금액에 따른다.
- ②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분위 1분위~8분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교가 지원 받은 장학금액 범위 내에서 본교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종교계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12학번 이후 신·편입생 해당) <개정 2019.5.23>
- 제6조 (이중수혜) ① 국가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 ② 단, 등록금 보전 목적이 아닌 교내·외장학금에 대하여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 제7조 (지급방법) ① 국가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에 선 감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신입생, 편입생, 휴학 후 복학생 등 본교 등록금 수납기간 동안 등록금을 기 완납한 학생에 대하여는 현금지급(계좌이체)할 수 있다.
- 제8조 (장학금 반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등록금의 반환)에 준하여 반환액을 산정하고 본교 내규에 의해 반환 처리한다.
1. 학기 중에 자퇴, 제적된 자
 2. 미등록 휴학한 자
 3.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지원 받은 자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
- 제9조 (장학사정관) 장학사정관을 두어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한다.
-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국가장학금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장학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1조 (국가장학금 운영위원회) 국가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금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 전략기획처장, 직원대표, 및 각 학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정기 운영위원회를 열며, 추가 국가장학금 선발에 관하여서는 장학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운영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운영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 장학금 운영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6학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9학년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3월 2일부터 대학교학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을 통해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원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2조 (선발 기준)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준은 아래에 따른다.
1. 장학생 선발은 매학기 공고하여 신청한다.
 2. 장학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며 재학생의 장학금 재학생의 장학금 수혜기간은 정규학기를(수업연한)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6.)
 3. 본교 장학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4.5(신학대학원은 2.0/4.5)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한다.(학칙시행세칙에 따른 최저이수 요구학점에 따른다. 단, 장애학생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개정 2017.11.16.)
 4. 경건회 NP자(신학대학원), 학점등록자, 징계대상자 및 기타 학칙 위반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16.)
 5. 장학금은 특별히 규정된 장학금(신입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교외장학금) 외에는 학생이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된다. (개정 2017.11.16.)
 6.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성적미달 및 서류미비로 인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16.)
 7.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8. 본교 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은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기준에 충족되는 학생으로 한다.
- 제3조 (재원) 본교 장학금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회계
 2. 외부 기탁금
 3. 장학기금으로부터의 과실수입
- 제4조 (업무관장) 1. 장학업무 중 예산안의 수립 및 장학생의 선정은 학생성장지원처장이 관장하고, 장학기금의 관리 및 운영은 기획예산부서에서 관장하며, 장학금 지급은 회계부서에서 관장한다.
2. 학기별 정기 장학위원회를 제외한 추가로 선발 및 지급되는 장학금은 별도의 장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생성장지원처장이 총장의 재가를 얻어 지급할 수 있다.(단, 외부장학금은 선정기준을 정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총장의 재가를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제 2장 장학위원회

- 제5조 (설치)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 제6조 (구성) 1. 위원회 위원은 학생성장지원처장, 전략기획처장, 신대원장, 직원대표 및 일반대학원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생성장지원처장이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간사는 대학원 장학담당이 맡는다.

-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4. 기타 장학 관련 사항
- 제8조 (결의) 1.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 3장 장학금 지급내역

- 제9조 (종류와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10조 (지급시기 및 방법) 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에 선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총액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장학금지급 중지 및 회수) 장학금 수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한다.
1. 휴학 및 제적(자퇴)자
 2. 학칙위반자
 3. 학업성적(평점평균 3.0이하/신학대학원 2.0이하)
 4. 시험 부정행위자
 5. 경건회 NP자
 6. 허위로 장학금 신청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제12조 (장학금이연 및 반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복학시까지 이연등록 처리할 수 있다. (단 장학금을 받은 후 제적 또는 자퇴시에는 해당학기에 지급 받은 장학금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 (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 결정을 받고도 해당 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4조 (공고) 학생처는 장학생 명단을 학사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학생 개인이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5조 (규정개폐) 본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6조 (이중수혜금지) 1.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2. 이중지급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한다.
 3. 다음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 ① 장학금은 교내·외 장학금 합이 등록금 전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장학금 기탁자가 예외적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 1회성 포상성격의 지원금, 생활비 보조 지원금은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2019.10.31)
 - ② 이중수혜가 가능한 장학금은 가계곤란(일정액), 공로, 근로, 장애인, 학교사랑, 동문가족, 외부기탁 장학금이다. 단, 위 장학금 중 1개의 장학금만 수혜 가능함. (개정 2018.9.17)
 - ③ 채플 만주자나 지휘자의 해당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신설2019.10.31)
- 제17조 (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세칙은 폐기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 2012년에 한하여 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8.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세칙은 폐기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 2013년에 한하여 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0.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5년 1월 26일 주터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1.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3월 2일부터 대학교학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22.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 장학금 종류 및 지급 기준표 <별표1>

장학금 종류	선발 기준	적 용
신입생성적우수	일반전형 수석학생에게 한 학기 수업료를 지급한다.	신학대학원
실기성적우수	입학 실기성적 93점 이상 해당자 (교회음악대학원, 예배찬양사역대학원 35%)	교회음악대학원
본교출신우대	본교 출신자 수업료의 30% 감면 (문화예술대학원, 예배찬양사역대학원 35%)	신학대학원 제외
목회자	①목사, 목회자 사모, 전도사 관계서류 제출시(교회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업료 30%감면 (문화예술대학원, 예배찬양사역대학원 35%)	신학대학원 제외
관련 기관(학과) 종사자 및 졸업자	①현직 사회복지기관 관련 종사자, 전문직 및 공공교육기관 종사자, 공무원(현재 기관재직증명서 및 기타) ②자연치유 관련학과 졸업자 (보건의료행정, 한방건강학, 대체의학과, 중의학 전공자(5년제)) ③자연치유 관련 분야 개인사업자 (개업5년 이상인 자) *수업료의 30% 감면	사회복지상담 자연치유선교 상담심리 영성치유 예배리터지
전문직 종사자	①전·현직 교수, 의사, 한의사, 약사(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②해당 대학원의 탁월한 업적을 가진 자(심사 후 결정) *수업료의 35% 감면(자연치유선교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영성치유대학원, 예배리터지대학원 30%)	예배찬양사역 자연치유선교 상담심리 영성치유 예배리터지
기능보유자	①기능보유로 인정되는 자(해당 자격증) (푸드테라피, 상담심리, 색채심리, 경락치유사 등) ②문화예술대학원은 시립합창단 3년 이상 근무한 자(Full Time 증명서) ③지휘, 반주, 독창자, 학원강사 5년 이상 경험자로 대학 3년 재학 이후부터 경력 인정(사실관계증명서) ④찬양사역자, 반주자, 연주자, 찬양팀원은 5년이상 경험자 관계서류 제출시 (소속교회담임목사 추천서) *수업료의 35% 감면 (상담심리대학원, 영성치유대학원, 예배리터지대학원, 자연치유선교대학원 30%)	자연치유선교 문화예술 예배찬양사역 상담심리 영성치유 예배리터지
성적우수	신학대학원 직전 학기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한다	신학대학원
공 로	원우회 및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이중수혜가능)	각 대학원
근 로	학내 부서에 배치되어 봉사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이중수혜가능)	각 대학원
교직원가족	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재단 직원 포함)의 배우자, 자녀에게 등록금의 50% 감면 (정규학기에 한함). (해당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대학원
교직원역량	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진학 시 등록금 100% 감면 (해당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각 대학원
학교사랑	본 대학교에 직계가족 2인 이상 모두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가족 1인에게 지급한다. (2인의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17.11.16>	각 대학원
MOU 체결대학 출신	① MOU 체결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MOU 체결 조항에 의거 지급)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신학대학원 제외)



장학금 종류	선발 기준	적용
동문가족	본교를 졸업한 자의 가족이 입학할 경우 지급한다.(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대학원
사회봉사	학교 주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및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다.(사회봉사센터 추천, 사회봉사활동증명서 등)	각 대학원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한다. (*이중수혜가능) (장애인증명서)	각 대학원
외국인	외국인(정원외)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외국인등록증) * 수업료의 30% 지급	각 대학원
가계곤란1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업료의 30% 감면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본 교단 미자립교회확인서, 단독목회자 및 가족, 건강보험료납부일정액 이하(국가산출표기준), 기타 소명자료)	특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제외)
가계곤란2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일정액을 감면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본 교단 미자립교회확인서, 단독목회자 및 가족, 건강보험료납부일정액 이하(국가산출표기준), 기타 소명자료)	신학대학원
대학원 추가	대학원에 2개 과정 이상 등록 시 추가된 대학원의 10% 추가 감면 (2개 재학증명서)	각 대학원
교 외	국가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 외부장학금 선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각 대학원
우수인재	관련분야의 유명인사, 영향력이 큰 인물 또는 학과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큰 성장의 자질을 갖춘 자에 대하여 학과추천을 통해 지급	

✚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및 학칙 제15장에 의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들의 상벌 및 학교생활과 단체 활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그 방침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학생성장지원처장, 경건실천처장, 각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교직원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행정지원처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② 학생성장지원처장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학생복지 담당이 간사가 된다.
- 제3조 (기능)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지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② 학생자치기구 운영상의 제반사항(총학생회, 각 학부(과) 학생회 등)
③ 학생 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학생활동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제4조 (회의) ① 학생성장지원처장은 제3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필요시 학생성장지원처장 및 학생지도위원회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학생 또는 지도교수를 출석시켜 해명 또는 참고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 (회의록) 모든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8월 8일부터 학생처장을 대학교학처장으로 한다.
4.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3월 2일부터 대학교학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장 및 제15장에 명시된 학생의 포상과 징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생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재학생에 대한 포상과 징계의 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따르되 학업성적, 출결사항 및 미등록 등 교무행정상의 이유가 포상 및 징계 사유가 될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3조 (학생지도위원회) 이 규정대로 포상과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조 (상벌의 기록) 상벌을 행하였을 때에는 상벌대상 및 해당 학생의 학적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 (공개) 포상과 징계는 공고로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제 2장 포 상

- 제6조 (포상의 대상)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와 국가의 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
 2. 학교 발전과 학생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봉사정신과 선행이 뛰어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5. 기타 포상의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하거나 업적이 인정된 자.
- 제7조 (포상의 발의) 학생성장지원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1. 공적조서 1 부.
 2. 지도교수 및 학과장 또는 학생성장지원처장 추천서 1부.
- 제8조 (포상절차) ① 학생성장지원처장은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학생이 추천되면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포상을 결정한다.

제 3장 징 계

- 제9조 (대상)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총장의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1. 교내·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2.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
3. 교직원(교수 및 직원)에게 불손한 행위 및 폭력을 행사한 자.
4. 학우를 협박, 폭행한 자.
5. 교내에서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 또는 탈취한 자.
6. 학생회 간부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총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복한 자.
7. 시험 및 경진회 중 부정행위를 한 자.
8. 허가 없이 간행물을 제작, 게시 또는 배포한 자.
9. 교내 게시물을 무단제거, 훼손한 자.
10. 학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선동을 한 자.
11. 금품 및 물품을 갈취한 자.
12. 학생회비 및 공금을 임의로 유용한 자.
13. 교내 및 단체 외부 활동시 음주, 흡연을 한 자.
14. 기타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동을 한 자.

제10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11조 (징계의 발의) 학생성장지원처장은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 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하고 심의한다.

1. 사건경위서 1부.
2. 본인의 진술서 1부.
3. 지도교수 의견서 1부.

제12조 (징계시 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학칙 및 본교 제 규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은 학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특별 지도를 받거나 권리가 정지된다.

1. 퇴학 이외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근신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교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4.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제 4장 심의 절차

제13조 (심의 절차) 포상자와 징계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포상대상자
 - 가. 학생성장지원처장은 포상대상자로서 제6조의 요건을 갖춘 학생이 추천되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한다.
 - 나. 학생성장지원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징계대상자
 - 가. 학생성장지원처장은 제9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제11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 나. 학생성장지원처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지도교수를 출석



시켜 해명 또는 참고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다. 학생성장지원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징계의 해제) 지도교수 및 학과장으로부터 징계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 보고서와 징계 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되면 학생지원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 제15조 (징계의 감면) 총장은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 (통보) 학생지원처장은 징계의 결과를 지도교수, 학과장, 관련부서, 본인 및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 제1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8월 8일부터 학생처장을 대학교학처장으로 한다.
5.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3월 2일부터 대학교학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 서울장신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정: 2022.04.01.

개정: 2024.09.11.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장신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 19조의 3(인권센터)항에 따라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 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한 성별·연령·인종 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와 성희롱·성폭력, 권위를 남용한 괴롭힘 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3.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성폭력”이란 「형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본교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2. “본교 구성원”이란 서울장신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4조 (구성)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인권센터(이하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4.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둔다. <신설 2024.9.11.>



제 2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제5조 (사건처리의 원칙 및 절차적 권리의 보장)

1.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센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모든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 가.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다. 기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라.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마.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시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 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대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사건의 신고와 접수)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2. 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3.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이미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제7조 (사건의 조사)

5.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의 처리는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4.9.11.>
1.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건의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가.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 다.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가. 진술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자와 관계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장은 조사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사건의 처리)

1. 센터장은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가. 각하

나. 조사종결처분

다. 중재 또는 조정에 의한 사건의 처리

라. 센터에 의한 인권구제 및 예방조치

마.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회부

2.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각하) 센터장은 다음의 사건은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6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제6조 제4항과 제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제10조 (조사종결처분)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종료로써 사건을 종결한다.

1. 사건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관계의 파악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제11조 (긴급조치) 센터장은 인권구제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전이라 하더라도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행위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피해자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4.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5.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센터장에 의한 조정)

1.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4. 조정위원은 사안 별로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5. 센터장 또는 조정위원회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6.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권센터운영위원회에 6. 회부하지 아니한다.
7. 피해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3조 8. 기타 조정에 관련된 것은 내규로 정한다.

(인권구제 및 예방조치 등)

1. 센터장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에 대하여 사과 권고, 교육이수, 봉사, 접근금지, 기타 사건해결에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제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부처에 대하여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예방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전항의 구제조치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처분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구제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사건을 인권센터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 3장 인권심의위원회 <개정 2024.9.11.>

제14조 (구성)

1. 본교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9.11.>
2. 인권센터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생 위원은 최소 2명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11.>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심의가 종결되는 때 만료된다
4. 특별위원은 교직원, 외부 전문가 중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5. 한 성별이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위원은 성별 산정에서 제외한다.
6. 인권센터운영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5조 (업무) 인권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심의 및 의결
2. 인권침해 등 행위에 대한 징계요청
3. 인권에 관한 중요한 사안의 심의와 의결

제16조 (회의)

1.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침해사건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 센터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인권센터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위원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제척 및 기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업무에서 제척된다.
 - 가.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센터장은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제척 및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하며 제척 및 기피신청을 3. , 받은 위원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8조 (징계요청)

1. 인권센터운영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징계기관 또는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2. 인권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기관 또는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가. 심의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당사자가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다.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 라.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마. 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방해하는 경우
3. 징계요청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를 담은 징계요구서를 해당 징계기관 또는 총장에게 송부해야한다.

4. 징계요청은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결정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5. 당사자가 외부인일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에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6. 징계요청을 받은 해당 징계부처는 징계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최종결정사항을 10일 이내에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7. 인권센터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징계요청과 별도로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가. 서면사과
 - 나.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 다.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 상담
 - 라. 기타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8. 인권센터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징계기관에 당사자의 징계를 요청한 경우 징계처리의 결정 및 징계가 집행 완료되기 전까지 당사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을 승인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4장 기타

- 제19조 (당사자의 권리)
1. 당사자는 센터장과의 사전 협의 하에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제20조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21조 (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22조 (비밀유지)
1. 센터장, 연구원, 직원, 심의위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센터장, 연구원, 직원, 심의위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23조 (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되어 조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공익제보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2.01.23.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장신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공익제보(이하 ‘신고’라 한다)”란 대학 소속 교직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 (신고의무)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제5조** (신고 등의 접수)
- ①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이메일·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는 전략기획처에서 접수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과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 제6조** (신고의 이첩) 전략기획처장은 신고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른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신고 취소)
-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제8조** (조사위원회)
- ① 총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기획처장 또는 신고가 이첩된 부서장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 제9조** (신고 조사 및 처리)
- ① 신고처의 부서장은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신고처의 부서장은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에 설명 또는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신고처의 부서장은 신고 사항을 처리하기 전에 신고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④ 신고처의 부서장은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신고처의 부서장은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 ①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신고자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② 총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진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진술 등으로 인해 조직의 공익침해방지 및 부패행위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근무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 신고 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3조

- ②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공익제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1.04.19.

개정: 2024.09.11.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장신대학교 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가해자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1.>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9.11.>
 - ② “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하며 성범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9.11.>
 1.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2.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교직원(비전임교원, 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피해자 또는 가해자 중 1인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 (고충상담창구)
-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11.>
 -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③ 고충상담창구에는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 (고충의 신청)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 (상담 및 조사)
-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④ 조사 과정에서 인권센터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1.>

- ⑤ 고충상담원은 가해자 미상으로 신고된 사건이나 자체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인 경우 신속히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수사토록 한다.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 ① 인권센터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11.>

제8조 (조사결과와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인권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1.>

제9조 (조사의 종결)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인권센터장이 되고 경건실천처장, 행정지원처장(직원대표)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인권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4.4., 2024.3.6., 2024.9.11.>
- ④ 추천위원은 교원대표 2인(여교원, 1인 포함) 과 직원대표 2인(여직원 1인 포함)과, 학생과 관계한 사안일 경우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 대표 1인(총학생회의 여학생 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직원대표의 경우 사건이 직원과 관계 되었을 경우에만 참여한다.

제11조 (위원 기피신청)

- ①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이 기피신청 대상일 경우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받았을 때.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⑥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 ① 총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공개사과, 배상책임, 일정기간의 봉사명령, 부서전환, 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 ② 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요령 및 학생징계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되어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 또는 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처분을 유보한다.

제14조 (재심청구)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제13조 제1항에 정한 조치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조치의 집행)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조치 처분은 확정되며, 총장은 확정된 후 2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은 서울장신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으로 하며 고충 상담원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총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7.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3월 2일부터 대학교학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2024.3.6. > (직제규정)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9. 제2조 생략
10. 이 규정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장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외국인 학생, 재외국민 학생, 다문화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새터민)학생(이하 “소수집단 학생”이라 한다) 수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소수집단 학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외국인학생”이라 함은 국적법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이외의 자로서 본교에 입학할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2. “재외국민학생”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본교에 입학할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3. “다문화학생”이라 함은 국적법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자로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교에 입학할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4. “북한이탈주민(새터민)학생”이라 함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자로서 부모 혹은 본인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본교에 입학할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 (지원자격) 소수집단 학생으로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학사과정의 경우 외국에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의 전 교육과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 ② 대학원과정의 경우 외국에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의 전 교육과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과 정규대학 전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에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의 전 교육과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과 국내외 정규 대학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제4조 (전형) 소수집단 학생의 전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외국인학생 및 재외국민학생은 본교에서 이력, 인품, 건강 등과 한국어 및 수학에 필요한 교과목의 필기, 구술,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전형한다.
 - ② 문화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은 본교에서 이력, 인품, 건강 등과 수학에 필요한 교과목의 필기, 구술,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전형한다.
- 제5조 (입학 등) ① 소수집단 학생의 입학(조건부입학 포함)은 소수집단 학생 특별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② 필요한 경우 조건부로 입학할 수 있으며, 조건부로 입학된 학생은 1개 학기간의 수학결과에 따라 수학능력이 인정된 경우 정규과정 입학신청을 받아 입학할 수 있다.
- 제6조 (정원) 소수집단 학생의 입학은 정원 외로 선발한다.
- 제7조 (장학지원) ① 학부 소속 소수집단 학생의 장학금 지급 여부는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되, “학부 장학금 지급규정”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 ② 대학원 소속 소수집단 학생의 장학금 지급 여부는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되,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 제8조 (활동 및 재정 지원) ① 소수집단 학생의 정착 및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활동 및 재정 지원) 소수집단 학생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내규 시행이전부터 재학 중인 소수집단 학생은 총장의 결정사항을 적용한다.



✦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제정: 2001.04.19.

개정: 2024.09.11.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장신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법이 정하는 사항
-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센터소장, 전략기획처장, 학생성장지원처장, 행정지원처장(직원대표), 학술정보관장, 생활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6.>
- ②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소장이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 제4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수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총장에게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총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6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심사대상 청구사건의 책임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7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8월 8일부터 학생처장을 대학교학처장으로 한다.
4.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3월 2일부터 대학교학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부 칙 <2024.3.6.> (직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심사청구서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재심청구의 취지			
⑥ 재심청구의 이유			
⑦ 기타입증 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 ① 사건명 : ○○ 처분 취소 청구
 - ② 피청구인 : 처분권자를 말함
 -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 년 월 일자
○○ 처분
 - ④ 심사청구의 취지 :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 ⑤ 심사청구의 이유 :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 ⑥ 기타 입증자료 : 본 건과 관련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심사결과통지서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결과			
⑥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			



+ 장애학생 지원 규정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장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교육, 학내활동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였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

제 2장 장애학생 차별금지

- 제3조 (장애학생 차별금지) ① 교직원 및 학생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② 장애학생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 3장 장애학생지원 서비스

- 제4조 (원칙) 장애학생에게 교육, 수업, 학내활동 및 진로지도 등에 있어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강신청) 장애학생에게 수강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 (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6조 (학술정보관 이용) 장애학생의 학술정보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서비스를 공한다.
- 제7조 1. 장애학생 전용 열람석
2. 장애학생 전용 사물함
3. 도서대출 기간의 연장적용
4. 기타 장애학생의 학술정보관 이용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 등
(장애학생 상담) ① 장애학생의 교수·학습·학내활동·진로선택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 제8조 서 한다.
② 제1항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도우미 서비스) ① 장애학생의 요청이 있을시 다음과 같은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 1. 학습 도우미
2. 이동보조 도우미
3. 학술정보관 도우미
4. 생활관 도우미
② 장애학생 도우미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 (교육 기자재 보유)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교육 기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생활관 이용) ① 장애학생이 생활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 ② 장애학생의 생활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편의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전용시설)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 1. 장애학생 전용 주차장
2. 장애학생 전용 화장실
3. 기타 장애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 4장 기 타

- 제13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준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학생복지라 함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학생, 사업자, 재단 및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행하는 노력을 말한다.
- 제3조 (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는 학생처장이 관장한다.



제 2장 학생복지위원회

- 제4조 (설치) 본 위원회는 학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5조 (구성) ① 본 위원회는 학생성장지원처, 원우회 회장 및 부회장, 총무,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총무, 사업체 대표 및 기타 관련 당사자로 구성한다.
② 학생성장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간사는 학생복지 담당이 겸한다
- 제6조 (회의) 본 위원회는 매 학기 시작 전에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위원 $\frac{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 $\frac{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제7조 (의결) 본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에 대화를 통해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학교 당국이 중재를 행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 출석위원 $\frac{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실시한다.
- 제8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가 시행하는 교내 학생복지 관련 사항.
2. 사업자가 운영하는 학생복지와 관련 사업 운영 사항.
3. 학생자치기구가 시행하는 학생복지 관련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9조 (규정) 본 규정의 개·폐는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 (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6.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8월 8일부터 학생처장을 대학교학처장으로 한다.
7. (직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3월 2일부터 대학교학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 학생복지시설 운영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장신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학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범위) 학생복지시설은 체력단련실, 족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남학생휴게실, 여학생 휴게실, 학교 입점 업체 등을 말한다.
- 제3조 (관장부서) 학생복지시설은 학생성장지원처에서 관장하며, 청소 및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은 관리팀에서 관장한다.
- 제4조 (운영위원회) ① 학생복지시설 사용의 기본방침과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 학생복지위원회가 그 임무를 담당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성장지원처장이 되고, 위원은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복지시설 사용의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학생복지시설 사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 (이용자) 학생복지시설은 본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인 이용자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 (이용시간) 학생복지시설 이용시간은 시설사용 기준에 준하며,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08:00-22:00 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 (이용의 제한)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2.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제8조 (준수사항) 학생복지시설 이용자는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가 정한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이용수칙 준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 (이용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 이용자는 학생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학교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피해보상 보험가입) 학교는 이용상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 (재정) 학생복지시설 운영의 재정은 교비지원금으로 한다.
- 제12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8월 8일부터 학생처장을 대학교학처장으로 한다.
3.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3월 2일부터 대학교학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 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장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학중인 학생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의 예방과 적절한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고 본교 자산을 유지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재학중인 학생에 적용된다.
- 제3조 (정의) 안전관리(安全管理, Safety Control)는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켜 동종 또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으로서 불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행동을 발생시키는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온갖 조치나 대책을 말한다.
- 제4조 (안전업무 우선) 각 대학(원) 및 행정부서 장은 학생의 사고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려, 조치하여야 한다.

제 2장 조직과 직무

- 제5조 (학생안전관리 조직) 학생안전관리 조직 설치, 운영 규정은 본교 “안전 관리 규정” 제2장 제5조의 내용에 따른다.
- 제6조 (학생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책임) 학생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책임 규정은 본교 “안전 관리 규정” 제2장 제6조의 내용에 따른다.
- 제7조 (학생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학생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본교 “안전 관리 규정” 제2장 제6조의 내용에 따른다.

제 3장 안전교육 및 관리

- 제8조 (학생안전교육) 교내 모든 재학생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 제9조 (화재예방 및 교육) 교내 모든 재학생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다.
- 제10조 (연구실 및 실험실의 안전관리) 모든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방치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따로 정하는 바는 본교 “안전 관리 규정” 제9장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 (전기시설 안전관리) 모든 재학생은 전기시설 취급 시 “전기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 (가스시설 안전관리) 모든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방치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따로 정하는 바는 본교 “안전 관리 규정” 제9장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장 사고조치 및 대책수립

- 제13조 (사고조사 및 보고) ① 안전 관리자는 재해발생시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학생안전관리책임자(정, 부)는 재해발생시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보고 및 현장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 까지 현장의 변경 및 훼손 없이 원상태로 보존하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④ 사고 발생시 그 사고의 경중에 따라 교내 구성원들에게 공표할 수도 있다.
- 제14조 (손해배상의무) 학생의 고의 또는 안전 수칙을 무시한 과실로 인해 사고, 재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본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15조 (보상) 학생의 고의 또는 안전 수칙을 무시한 과실 아닌 사고 발생 시에는 본교 “학생공상처리내규”에 따라 보상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공상처리 내규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서울장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의 공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공상의 기준) 공상으로 처리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러나 학생의 고의성과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부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내외 공식행사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2. 교내외 시설물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3. 교내 수업 중 부상을 당한 경우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 제3조 (공상처리 주관부서) ① 공상처리 주관부서는 학생성장지원처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공상처리에 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처리절차의 책임을 진다.
- 제4조 (공상처리 절차)
1. 교내에서 부상을 당한 학생이 제2조에 해당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본교 보건실에서 치료가능 여부의 확인을 받는다.
 - ② 보건실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직원 보호 하에 협력 의료기관(경기도 광주시 참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 ③ 전2호의 과정을 거친 학생은 1주일 이내에 사건 경위서와 지도교수확인서(제2조제1호의 경우) 또는 해당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서(제2조제3호의 경우)를 공상처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외에서 부상을 당한 학생이 제2조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부상을 당한 즉시 주관부서로 통보한 후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② 주관부서는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한 후 공상처리에 관한 확인여부를 결정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치한다.
 - ③ 전2호의 과정을 거친 학생은 전 항 제3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공상처리 절차준수) 제4조를 위반한 학생은 공상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 (공상치료비 한도액) 공상치료비 100만원 까지는 학교와 계약된 보험을 통해 부담하고 100만원 초과분 중 25만원에 대해서는 학교가 부담한다. 총 125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 및 보호자가 그 반액을 부담 한다. 다만, 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학교의 총부담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 (예외규정)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의 경우에도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내규 시행이전부터 공상치료중인 학생은 총장의 결정사항을 적용한다.

✚ 대학 경건실천처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본교 학생으로 하여금 경건실천을 통하여 학교의 창학이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 제2조 (경건실천처 업무) 경건실천처는 경건실천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3조 (경건실천의 구성) 경건실천은 채플, 수련회, 교회봉사로 구성된다. 본교 학생은 세가지 모두를 수행해야 한다.
- 제4조 (수강신청) 채플과 교회봉사는 매 학기마다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수련회는 수강신청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 제5조 (이수여부) 채플, 수련회, 교회봉사의 이수여부는 P(pass, 합격)와 NP(non-pass, 불합격)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채플과 수련회의 경우, 한번이라도 NP를 받은 경우 졸업이 보류된다. 또한 장학금 및 기타 수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채플 또는 수련회의 NP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제10조의 구제방안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교회봉사의 경우, 이수하지 못하면 해당 학기 교회봉사 과목의 성적은 NP를 받는데, NP를 한번 또는 그 이상 받더라도 졸업과는 상관 없다. 교회봉사의 NP는 구제방안이 없으므로, 해당 학기 성적표의 교회봉사 과목 NP는 변경할 수 없다.
- 제6조 (채플) 채플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신학과, 목회사역학과 학생은 수요일, 목요일에 시행하는 채플에 모두 참석해야 한다. 상기 신학과, 목회사역학과 학생 이외의 모든 학과 학생은 목요일에 시행하는 채플에 참석해야 한다.
 2. 채플 참석을 평가하기 위해서 채플참석평점제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
 - 가. 평점의 방법은 1회 불참 시에 2점 감점, 1회 지각 시에 1점 감점한다. 지각은 채플 시작 시간부터 20분까지 이고, 20분 경과부터는 불참으로 간주한다.
 - 나. 채플 시작 후 도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10분 경과 시점까지 재입실하지 않으면 불참으로 간주한다.
 - 다. 한 학기 평점을 모두 합산하여 학기말에 평가를 실시한다. 신학과, 목회사역학과 학생은 한 학기 감점이 10점을 초과할 때 NP, 신학과 및 목회사역학과 학생 이외의 학과 학생은 한 학기 감점이 6점을 초과할 때 NP를 부여한다.
 3. 채플에 대리 참석하거나, 출석카드를 대리 제출하는 경우는 의뢰한 학생과 제출한 학생 모두를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두 학생 모두 1년 유기정학에 처하며, 채플 성적은 NP를 부여한다.
 4. 군 입대의 경우는 입대 전까지의 참석에 따라 성적이 부여된다.
- 제7조 (수련회) 수련회는 1학기에 춘계수련회, 2학기에 추계수련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본교 학생은 춘계수련회와 추계수련회에 모두 참석해야 한다. (방법과 절차는 경건실천처와 학과장 회의에서 정한다)
 2. 수련회 참석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련회참석평점제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
 - 가.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P를 받을 수 있다.
 - 나. 지각은 1번만 허용되고, 2번부터는 NP를 부여한다. 지각은 프로그램 시작 시간부터 20분 까지이고, 20분 경과부터는 불참으로 간주한다.
 - 다. 중간에 퇴실하는 경우는 10분 경과시점까지 재입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불참으로 간주한다.
 - 라. 음주, 흡연 등 경건실천을 교육하기 위한 수련회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NP를 부여한다.
- 제8조 (교회봉사) 본교 학생은 교회에 나가 어떤 부서에서든지 봉사를 해야한다. 봉사한 내용을 매 학기 기말시험 주간의 금요일까지 교회봉사확인서에 기록하여 경건실천처에 제출해야 한다. 교회봉사 확인서에는 교회의 직인과



- 당회장의 도장 또는 사인이 기입되어야 한다. 교회봉사확인서를 제출하면 P, 제출하지 않으면 NP를 부여한다.
- 제9조** (예외 사유의 인정) 다음의 경우로 경건실천에 불참하는 경우는 증빙서류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받을 수도 있다.
1. 노회고시 및 신학계속추천 관계로 노회에 참석하는 경우
 2.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3. 가족의 상, 결혼, 질병
 4. 학교가 인정하는 교육 및 견학
 5. 학교가 인정하는 대외활동
 6. 마지막 학기의 취업 및 전임사역과 관련한 경우
 7. 그 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10조** (구제방안) 채플 또는 수련회의 NP에 대한 구제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경통독(2박 3일 이상, 경건실천처에서 인정하여 준 곳) 1회 수행할 경우 구제방안수행 점수 1점 획득
 2. 사회봉사(36시간 이상, 경건실천처에서 인정하여 준 곳) 1회 수행할 경우 구제방안수행 점수 1점 획득
 3. 채플과 수련회의 NP 갯수 만큼 구제방안수행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4. 필요한 구제방안수행 점수를 모두 획득하여 경건실천처에 제출해서 확인을 받은 시점부터 졸업 유보, 장학금 수혜 중단 등의 상태가 해제된다.
 5. 졸업예정자의 경우, 필요한 구제방안수행 점수를 모두 획득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사일 이전에 경건실천처에 제출완료하여야 졸업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
 6. 졸업이 유보된 학생 중에서 구제방안수행을 못하거나 포기한 학생은 수료로 처리한다.
- 제11조** (경건실천 학점의 확인) 경건실천 학점의 확인은 학생이 직접 해당 학기의 성적이의 신청기간 이전에 해야 한다. 이것은 경건실천처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성적이의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학점의 정정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2조** (그 외의 경건실천 지도) 임지결정 및 사임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항의가 접수되었을 때,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사안을 논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1. 재학생인 경우는 해당 년도의 채플을 NP 처리한다.
 2.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졸업을 1년 보류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신학대학원 경건실천처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본교 학생으로 하여금 경건실천을 통하여 학교의 창학이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 제2조 (경건실천처 업무) 경건실천처는 경건실천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3조 (경건실천의 구성) 경건실천은 채플, 수련회, 교회봉사로 구성된다. 본교 학생은 세가지 모두를 수행해야 한다.
- 제4조 (수강신청) 채플과 교회봉사는 매 학기마다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수련회는 수강신청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 제5조 (이수여부) 채플, 수련회, 교회봉사의 이수여부는 P(pass, 합격)와 NP(non-pass, 불합격)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채플과 수련회의 경우, 한번이라도 NP를 받은 경우 졸업이 보류된다. 또한 장학금 및 기타 수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채플 또는 수련회의 NP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제10조의 구제 방안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교회봉사의 경우, 이수하지 못하면 해당 학기 교회봉사 과목의 성적은 NP를 받는데, NP를 한번 또는 그 이상 받더라도 졸업과는 상관 없다. 교회봉사의 NP는 구제방안이 없으므로, 해당 학기 성적표의 교회봉사 과목 NP는 변경할 수 없다.
- 제6조 (채플) 채플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신대원 신학과 학생은 수요일, 목요일에 시행하는 채플에 모두 참석해야 한다. 신대원 목연과는 목요일에 시행하는 채플에 참석해야 한다. 신대원 신학과 야간반은 매 수업 시작 전 시행하는 채플에 2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2. 채플 참석을 평가하기 위해서 채플참석평점제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
 - 가. 평점의 방법은 1회 불참 시에 2점 감점, 1회 지각 시에 1점 감점한다. 지각은 채플 시작 시간부터 20분까지이고, 20분 경과부터는 불참으로 간주한다.
 - 나. 채플 시작 후 도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10분 경과 시점까지 재입실 하지않으면 불참으로 간주한다.
 - 다. 한 학기 평점을 모두 합산하여 학기말에 평가를 실시한다. 신대원 신학과 학생은 한 학기 감점이 10점을 초과할 때 NP, 신대원 목연과 학생은 한 학기 감점이 6점을 초과할 때 NP를 부여한다.
 3. 채플에 대리 참석하거나, 출석카드를 대리 제출하는 경우는 의뢰한 학생과 제출한 학생 모두를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두 학생 모두 1년 유기정학에 처하며, 채플 성적은 NP를 부여한다.
 4. 군 입대의 경우는 입대 전까지의 참석에 따라 성적이 부여된다.
- 제7조 (수련회) 수련회는 1학기에 춘계수련회, 2학기에 추계수련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본교 학생은 춘계신앙수련회와 추계신앙수련회에 모두 참석해야 한다. 신대원 신학과 야간반 학생은 매학기 학교에서 지정하는 신앙수련회에 참석해야 한다.
 2. 수련회 참석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련회참석평점제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
 - 가.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P를 받을 수 있다.
 - 나. 지각은 1번만 허용되고, 2번부터는 NP를 부여한다. 지각은 프로그램 시작 시간부터 20분까지이고, 20분 경과부터는 불참으로 간주한다.
 - 다. 중간에 퇴실하는 경우는 10분 경과시점까지 재입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불참으로 간주한다.
 - 라. 음주, 흡연 등 경건실천을 교육하기 위한 수련회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NP를 부여한다.
- 제8조 (교회봉사) 본교 학생은 교회에 나가 어떤 부서에서든지 봉사를 해야한다. 봉사한 내용을 매 학기 기말시험 주간의 금요일까지 교회봉사확인서에 기록하여 경건실천처에 제출해야 한다. 교회봉사 확인서에는 교회의 직인



- 과 당회장의 도장 또는 사인이 기입되어야한다. 교회봉사확인서를 제출하면 P, 제출하지 않으면 NP를 부여한다.
- 제9조** (예외 사유의 인정) 다음의 경우로 경건실천에 불참하는 경우는 증빙서류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받을 수도 있다.
1. 노회고시 및 신학계속추천 관계로 노회에 참석하는 경우
 2.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3. 가족의 상, 결혼, 질병
 4. 학교가 인정하는 교육 및 견학
 5. 학교가 인정하는 대외활동
 6. 마지막 학기의 취업 및 전임사역과 관련한 경우
 7. 그 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10조** (구제방안) 채플 또는 수련회의 NP에 대한 구제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경통독(2박 3일 이상, 경건실천처에서 인정하여 준 곳) 1회 수행할 경우 구제방안수행 점수 1점 획득
 2. 사회봉사(36시간 이상, 경건실천처에서 인정하여 준 곳) 1회 수행할 경우 구제방안수행 점수 1점 획득
 3. 채플과 수련회의 NP 갯수 만큼 구제방안수행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4. 필요한 구제방안수행 점수를 모두 획득하여 경건실천처에 제출해서 확인을 받은 시점부터 졸업유보, 장학금 수혜 중단 등의 상태가 해제된다.
 5. 졸업예정자의 경우, 필요한 구제방안수행 점수를 모두 획득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사일 이전에 경건실천처에 제출완료하여야 졸업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
 6. 졸업이 유보된 학생 중에서 구제방안수행을 못하거나 포기한 학생은 수료로 처리한다.
- 제11조** (경건실천 학점의 확인) 경건실천 학점의 확인은 학생이 직접 해당 학기의 성적이의 신청기간 이전에 해야 한다. 이것은 경건실천처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성적이의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학점의 정정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2조** (그 외의 경건실천 지도) 임지결정 및 사임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항의가 접수되었을 때,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사안을 논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1. 재학생인 경우는 해당 년도의 채플을 NP 처리한다.
 2.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졸업을 1년 보류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장신대학교 학생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방침) 학생단체(동아리)는 본교 학생에 한하여 구성되며, 외부인의 가입을 불허한다.
- ① 각 동아리의 결성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② 각 동아리는 학생회 산하에 소속되며 지도교수 아래서 동아리장이 활동을 관장한다.
 - ③ 각 동아리 활동이 학교 교육목표 및 국가 정책에 위배되거나 건전치 못한 활동으로 학교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을 때는 총장이 이를 해산 조치한다.
- 제3조 (단체구분) ① 인준 동아리
: 인준 동아리란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동아리 규정 및 준칙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로서 학생자치기구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동아리를 말한다.
- ② 신고 동아리
: 신고 동아리란 목적과 활동 방향을 학생지도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쳤으나 인원 부족으로 총장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한 동아리를 말한다.
- 제4조 (등록및자격요건) 학생 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등록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등록 요건
 1. 학생들의 취미 및 학술적 공동 연구를 위한 활동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단체의 설립취지와 이념에 찬동하는 20명 이상의 회원 연명부와 회원 각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설립목적과 활동방향이 타 단체와 중복되어서는 안되며, 한사람이 이중으로 타 단체(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
 4. 부정적이며 건전하지 못한 대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단체등록은 허락하지 않는다.
 - ② 자격 요건
 1. 단체장(동아리장) 자격은 학업성적이 평균3.0이상 인지,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 사상이 건전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2. 단체 구성원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 하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3. 지도교수는 단체(동아리)에서 자율적으로 추대하고 학생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 (등록 절차) 학생단체는 신규 및 재등록으로 구분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다음의 서류를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학생성장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등록은 인정치 않는다.
- ① 신규 등록
 1. 동아리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지도교수 승락서(별지 제3호 서식)
 3. 임원 및 회원 명단(별지 제4호 서식)
 4. 연간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5. 회장단 각서(별지 제6호 서식)
 6. 회칙
 - ② 재등록
 1. 동아리 재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지도교수승락서 및 평가서
 3. 임원 및 회원 명단
 4.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5.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회장단 각서
 7. 회칙
- 제6조** (단체승인) 본 규정 제5조에 의거 등록 신청을 마친 단체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성장지원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인정된다.
- 제7조** (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 단체로부터 추대 받은 후 총장이 승인한다.
 ②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 지도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가 해외 연수나 출장, 기타 개인 사정이 있을 때는 지도교수 본인이 타 교수를 위촉 대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학생성장지원처장을 거쳐 총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 이상 단체에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다
- 제8조** (활동 예산 및 재정 지원) ① 학생 단체 활동 예산은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총학생회 및 대학본부의 지원을 받는다.
 ② 교외로부터 재정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학생처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제9조** (단체 활동) ① 등록된 단체는 학교 행사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모든 행사는 수업 시간이나 학교 및 총학생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2주전 집회 허가원을 학생처에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야간 옥외 집회 (불꽃놀이, 횃불, 모닥불 등)는 학교 환경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 의견서를 첨부 총장의 허가를 받는다.
 ④ 유인물 제작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기타)은 초안을 작성,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사전 지도와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⑤ 학기 간 또는 방학 중의 계획과 모든 활동 행사는 2주(14일) 전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집회(행사)신청서(목적, 일시, 장소 등 구체적으로) (별지 제8호 서식)
 2. 예산서
 3. 행사계획서(참가자 명단 등)(별지 제9호 서식)
- ⑥ 활동이 끝난 단체는 5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총학생회 회비 보조를 받은 행사는 총학생회장을 경유한다.)
1. 활동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2. 결산서
 3. 자체평가서
- 제10조** (집회 허가원 제출) 집회 허가원 제출 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학과단위 학생행사
 1. 행사 및 집회 허가원을 학생처에 제출,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총학생회 회비의 보조를 요청 할 때는 총학생회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② 동아리 단위 학생 행사
 1. 지도교수로부터 행사 및 집회 허가원의 승인을 받아 총학을 경유 학생성장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학생 봉사 활동) ① 봉사 활동은 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방학 10일 전에 다음과 같이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성장지원처장에게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활동계획서(행사 신청서)
 2. 예산계획서

3. 행사계획서(참가자 명단 등)

4. 봉사활동 인원은 10명 이상, 봉사 기간은 3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봉사 완료 후 활동 결과보고서, 결산서, 자체 평가서를 7일 이내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 취소 및 해산)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 학생지도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에 대한 등록 취소 및 해산을 명한다.

- ①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
- ② 과거 1년간 실적이 없거나 학생 단체 활동이 부진할 때
- ③ 학생 단체 활동이 학칙 및 제 규정 위반으로 학내 질서를 문란케 할 때
- ④ 지도교수 사임 수리된 후 14일이 경과 되어도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았을 때
- ⑤ 재등록 시 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는 단체 등록 마감일 이후 자동 해체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4.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8월 8일부터 학생처장을 대학교학처장으로 한다.
- 5.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3월 2일부터 대학교학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 군종사관(장교) 후보생 지원안내

1. 대상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의 신학과 2학년에 재학 중 인자로서 군인사법 제 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만 28세까지 목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소속대학총장의 추천과 소속교단의 성직취득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사실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참고 : 2021년도 응시연령은 2001. 1. 1. 이후 출생자

2.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2)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또는 휴학)증명서 1부
- 3) 소속 종교단체 대표자의 성직자격취득부증서(소정양식) 1부
- 4) 병적증명서(지방 병무청장 발행) 1부

나. 필기시험 합격자의 신체검사 당일 제출서류

- 1) 기본증명서 2부
- 2) 가족관계증명서 2부
- 3) 신원진술서(소정양식) 2부

3. 모집시기

매년 4월

4.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객관식) : 국어, 사회, 국사, 윤리, 영어

나. 면접시험

- 1) 평가항목
 - 가) 조직역량 평가 : 군가관, 안보관, 대적관, 외적자세 등에 관한 사항
 - (1) 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의 기본자세
 - (2) 성실성, 용모, 예의, 품행
 - 나) 직무역량 평가 : 직무지식 및 군인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 (1)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2) 창의력·의지력 및 군종장교로의 발전가능성

5. 합격자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 119조에 의하여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병적 관리되고, 현역병 징병검사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직자격 취득(목사)후 교육수료와 동시 군종장교(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된다.

✚ 학생예비군 사무안내

1. 개 요

예비역 재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대학 내 예비군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예비군 부대 편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며 교육 훈련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교에 대학 직장 예비군부대를 편성 운영

2. 대학 직장 예비군 편성 및 신고

가. 편성

(1) 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보직교수 및 전임강사) 및 고용원 중 예비역 (실역필, 군복무 미필 포함)

나. 진출·입 신고

(1) 관련법규

(가) 예비군 설치법 제3조

(나) 예비군 시행령 제5조

(2) 전입신고 : 입학, 복학생은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필하고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 본부로 신고

(3) 진출신고 : 휴학·제적·유급·정학·졸업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은 변동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예비군 본부로 진출신고

(4) 주민등록지(거주지)를 옮길 때 마다 14일 이내 학교 예비군 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3. 예비군 교육(훈련)

연간 교육시간은 수임군 부대에서 지정한 시간만 교육훈련 함.

4. 예비군 훈련 참고사항

가. 교육 훈련시 복장은 규정된 복장 착용(예비군 모자, 요대, 훈련화, 예비군복)

나. 예비군 교육시에는 학교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며 교육 통보서는 본인이 도장 지참 예비군 본부로부터 개별 수령 및 개인별 메일로 발송한다.

다. 기본 교육은 모든 혜택(공결)을 받을 수 있으나 보충 교육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국외대학과의 학생교류 규정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장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국외대학과의 상호 교환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 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 제3조 (지원대학) 학생 교류 대학은 본교와 MOU를 체결한 국외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 (지원자격)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국외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
1. 모집기간 중 국내 체류 중인 휴학생은 지원가능하나, 연수를 실시하는 다음 학기에는 등록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2. 지원당시 해외 체류 중인 휴학생은 지원 불가
 3. 마지막 파견 시점이 과정별 학기 이하 일 것(학부 7학기, 일반대학원 3학기, 신학대학원 5학기, 특수대학원은 과정별 학기 이전으로 한다.)
 4.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기 참가자는 제외(지원자 미달시만 선발함)
 5.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7. 지원 직전학기까지의 전학년 평점평균 3.0/4.5 이상인 자
 8. 경건회 PASS한 자
- 제5조 (지원신청) 지원자는 수강신청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 서류를 학생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지1)
 2. 서약서(별지2)
 3. 소속 학과장 추천서
 4. 재학증명서
 5. 성적증명서
- 제6조 (선발기준) 공인성적에 의하여 선발한다.
1. 전학년 평점평균이 높은 자(환산점수 적용)
 2. 고학년 순
 3.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많은 자
 4. 기타 선발자
- 제7조 (의무사항) 국외대학 선발자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교의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등록금 이외의 비용은 자비부담으로 파견 대학에 직접 납부한다)
 2. 파견학생 결과보고서 및 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중도에 포기하거나 출석률이 80%이하일 경우에는 대학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제8조 (대학지원금) 파견이 확정된 후, 대학지원금을 선발자 통장으로 지급한다. (대학지원금은 교육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기타 제비용에 관련하여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학칙준수) 지원자는 수학대학과 본교의 학칙 및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하며,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총학생회 회칙 <2012년 11월 30일 개정>

全 文

서울장신대학교는 진리와 경건, 학문의 장으로써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경건한 의식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나아가 복음에 기초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계승 발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닮아 민족의 민주, 통일, 자주 그리고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평화의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려는 자세로 선봉에 설 것을 천명한다. 또한 민주적인 사고와 의식을 연마하고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공동체 의식 속에 소외된 모든 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초석이 된다. 이에 전 서울장신인은 총의를 모아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민족의 자주적인 발전과 대동 단결을 위한 소명과 책임, 의무를 실천하고 시대의 부름에 부응코자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자치 기구로서의 총학생회를 보강해 이 회칙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장신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민주적이고 자주,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경건과 학문을 연마하고 창조적인 기독교의 대학 문화를 건설하며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를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3조 (설치) 본회는 서울장신대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에 있는 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 제5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1)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회원으로써의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2)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서 정하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사업 계획, 재정, 그 밖의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제2조 목적에 한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정당한 학생 활동에 있어 본회 및 회원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는다. 본회의 회원은 학칙에 벗어난 부당한 처벌이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
- 제6조 (기구)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생총회, 총학생회, 졸업 위원회, 운영위원회, 각 과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를 두고 각 기구는 상대적 독립성을 갖는다.
- 제7조 (자문 및 협의) 본회는 필요한 경우 총장, 각 과 학과장 및 교수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자치 활동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3장 학 생 총 회

- 제8조 (지위) 학생 총회는 본 회의 최고 기구이다.
- 제9조 (구성) 학생 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0조 (의장) 학생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 제11조 (권한) 학생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학생 총회는 본 회의 예산, 결산 사업 계획의 의결 사항을 받는다.
 - 2) 학생 총회는 회칙 개정 및 학생회 운영 전반의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 이를 논의 결정한다.
 - 3) 학생 총회는 학생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의 의결권을 갖는다.
 - 4) 학생 총회는 정, 부회장의 탄핵권을 갖는다.
- 제12조 (소집) 학생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1) 정기총회는 매년도 3월과 11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원 50인의 서면과 요구 시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학생 총회의 소집은 1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과 운영 위원들의 공동 명의로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제13조 (의결)
- 1) 정기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frac{1}{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11조4항의 경우는 투표에 의하여 재적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총 학 생 회

제 1절 총학생회 정·부회장

- 제14조 (지위) 1)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생 총회, 운영 위원회, 집행위원회의장이 된다.
- 2) 총학생회장은 대외적으로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각계 각층과 연대 활동을 관장한다.
 - 3) 총학생회장은 대학 자치 및 학생 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학교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 4) 총학생회 부회장은 총학생회를 보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 5) 총학생회의 정, 부회장은 학생 징계 및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학교 당국에 제시 할 수 있다.
- 제15조 (임기) 총학생회 정,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매년 2학기 정기 총회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단, 1달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갖는다.)
- 제16조 (신분 보장) 총학생회의 정, 부회장은 본인의 의사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그 지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 제17조 (선출) 총학생회의 정, 부회장은 공동 입후보하여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제18조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의 정,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학생회와 학생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심의, 조사할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2) 집행위원회의 각 임원을 임명한다.



- 3) 학생 총회, 운영 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 4) 총학생회의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학생 총회에 안건을 제출한다.
- 5) 총학생회의 예산 집행을 결재한다.
- 6) 대내외 활동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다.
- 7) 기타 필요 부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 2절 운영 위원회

제19조 (지위) 운영 위원회는 본 회 최고의 운영 기구이다.

제20조 (구성)

- 1) 운영 위원회는 총학생회 정·부회장, 각 과 학생회 정·부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집행위원회 총무, 총학생회 서기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 서기는 서기록 작성의 목적으로만 참여하고 본 회의에 대한 발언권 및 투표권이 없으며 집행위원회 총무는 발언권만 가진다.)
- 2) 각 과의 학생회 정·부 회장 중 한 명이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시 각 과 학생회 총무가 대리 참석이 가능하다. (단, 동아리 연합회는 회장의 부재시 해당 연합회 임원이 대리 참석이 가능하다.)
- 3) 운영위원회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각 학회 서기의 참석이 가능하다. (단, 각 학회 서기는 서기록 작성의 목적으로만 참여하고 본 회의에 대한 발언권 및 투표권이 없으며 학회 서기록 또한 총학 서기록과 같은 공식적인 서기록으로 인정한다.)

제21조 (의장) 운영 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총학생회 부회장이 된다.

제22조 (업무 및 권한)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학생 회비의 심의 승인권
- 2) 예산안 및 결산 심의 승인권
- 3) 사업 계획 및 사업 보고의 심의승인권
- 4) 학생 자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학교 행정에 관한 발의권
- 5)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권
- 6) 집행위원회의 각 국별의 업무 진행 사항을 점검하여 총학생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7)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학생회의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 8)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 (소집) 운영 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가 있다.

- 1) 정기 회의는 매월 1회로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 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 위원회 3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 3) 운영 위원회 소집은 3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시는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 운영 위원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22조5항은 재적 의원 $\frac{2}{3}$ 이상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절 집행위원회

제25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26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정·부회장, 각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집행 위원은 필요한 경우 총학생회장의 동의를 얻어 그 산하의 특위를 둘 수 있다.)

- 제27조** (업무 및 권한)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운영 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2) 총학생회의 일체의 사업 계획 예산안을 수립하여 운영 위원회에 제출한다.
 - 3) 총학생회의 일체는 사업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운영 위원회에 제출한다.
 - 4) 각 국별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국 산하에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 5) 특별 기구는 임무 완료시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체한다.
 - 6) 집행 위원의 제반 활동을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 서기, 회계, 예배위원회, 연대정책국, 문화국, 사무국, 여학생 복지국, 홍보국, 방송국들을 두고 각 임원을 둘 수 있다. (단, 각국 산하부서는 필요시 부원을 둘 수 있다.)
 - 7) 각 국별의 업무 및 권한
 - 총 무 : 집행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 서 기 : 제반 서류를 기록, 보관, 발송한다.
 - 회 계 : 본 회의 경리 및 회계 운영을 담당한다.
 - 문화국 : 본 회의 회지를 제작, 출간하며 복지를 담당한다.
 - 사무국 : 본 회의 학습 활동에 관한 업무 및 모든 활동들의 사무품을 관리한다.
 - 예배 위원회 : 본 회의 예배 및 선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연대국 : 학내, 외의 연대 사업 및 학생복지 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국 : 교내외의 모든 사업 활동의 기획 및 홍보를 담당한다.
 - 정책국 : 내외의 모든 사업 활동질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 방송국 : 교내외의 행사와 관련된 방송 및 학생들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제 5장 졸업위원회

- 제28조** (구성) 1) 본교의 졸업생 전체로 구성하여 졸업생 정·부위원장, 집행부로 구성한다.
- 2) 졸업위원회 정·부위원장 전년도 총학생회 정·부회장 및 각 학생회 회장과 해당년도 4학년 1학기 과대표가 회의를 거쳐 선출한다. (3월안에 선출)
- 3) 졸업위원회 집행부는 각 학과 대표 1인과 각과 4학년 1학기 과대표를 포함한 총 6인으로 구성한다.
- 제29조** (위원장) 졸업위원장은 졸업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30조** (임기) 졸업위원장의 임기는 졸업위원회 정·부위원장 선출일로부터 해당년도 졸업식까지로 한다.
- 제31조** (업무 및 권한) 1) 졸업위원회는 본 회의 졸업생 자치기구이다.
- 2) 졸업위원회는 졸업생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제32조** (회칙) 졸업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질 수 있다.

제 6장 과 학 생 회

- 제33조** (지위) 각과 학생회는 해당 학과의 최고 기구이다.
- 제34조** (명칭) 각과 학생회는 해당 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 제35조 (구성) 각과 학생회는 해당 학과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 제36조 (회장) 각과 학생회장은 해당 학과를 대표하며 운영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제37조 (임기) 각과 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로 한다.)
- 제38조 (업무 및 권한) 1) 각 학과 학생회는 해당 학과의 활동에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해당 학생회의 사업 계획서, 예산안, 사업보고서,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 제출한다.
3) 본 회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해당 학생회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 제39조 (회칙) 각 학과 학생회는 총학생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과 학생회의 별도의 회칙과 조직을 가질 수 있다.

제 7장 동아리 연합회

- 제40조 (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된 본 회의 모든 동아리로 한다.
- 제41조 (회장) 동아리 연합회의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 제42조 (업무 및 권한) 1) 동아리 연합회는 대학 문화 창달을 위하여 학술, 취미, 교양, 공연활동을 관장한다.
2) 사업 계획서, 사업 보고서를 운영 위원회에 제출한다.
3) 타 대학 동아리 연합회와 연합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다.
(회칙)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본 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회칙을 둘 수 있다.
- 제43조

제 8장 재 정

- 제44조 (경비 및 회비) 1) 본 회의 재정은 22조 1항을 준수하여 회원이 납입하는 학생 회비와 찬조금,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 학생회 회비는 회계가 관리하며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3) 전 항의 회비는 본 회 활동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45조 (회계년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의 임기에 준한다.
2) 전 항의 회계연도는 1기로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 제46조 (예산 편성) 1) 총학생회장은 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운영 위원회는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 승인한 후 학생 총회에 보고한다.
- 제47조 (예산 집행) 예산의 집행 시에는 일체의 경비에 지출 결의서, 영수증을 첨부하며 각 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출납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제48조 (감사 위원회) 본 회의 회계감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감사 위원이 감사하여 총회시 이를 보고한다.
1) 감사위원장 : 증경 회장
2) 감사위원 : 증경 부회장, 증경 회계
- 제49조 (결산)
1) 총학생회장은 당회계년도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운영 위원회는 결산 보고서를 심의, 승인한 후 학생 총회에 보고한다.

제 9장 학생지도 위원과 학교와의 협의

- 제50조 총학생회장과 운영 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학교 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 1)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징계에 관한 해당 학생은 자기를 위하여 변론할 수 있다.)
 - 2) 학생 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계된 학칙 개정에 관계된 사항.
 - 3) 기타 본 회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한 사항.

제 10장 고 문

- 제51조 다음과 같은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 1) 구성 : 총학생회 정·부회장을 역임한 자와 동문회 회장으로 한다.
 - 2) 권한 : 학생 총회, 운영 위원회, 집행위원회, 기타 총학생회가 요구하는 제반 모임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 3) 의무 : 학생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 11장 선 거

- 제52조 (정·부회장) 1) (경선) 총학생회장은 본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동입후보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재적 과반수 투표에 족다 투표자로 한다. (단, 무효표가 후보자간의 표차를 상회할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무효표가 후보자간의 표차를 상회할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
- 2) (단독) 총학생회장은 본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동 입후보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재적 과반수 투표에 $\frac{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 제53조 (학과 학생회장, 졸업위원장, 동아리 연합회) 학과 학생회장, 졸업위원장, 동아리 연합 회장 각 기구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 제54조 (선거 방법) 본 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로 한다.
- 제55조 (선거시기)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11월에 실시한다. (단, 학과 학생회장, 졸업위원장, 동아리 연합회장은 각 기구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 제56조 (선거관리위원회)
- 1) 본 회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 2) (구성) 총학생회장, 부회장, 각 과의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집행위원회 총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 3)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20일 전에 작성 비치해야 한다.
 - 4)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종료후 자동 해체된다.
- 제57조 (보궐선거) 총학생회 정·부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을 경우 궐위된 일시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 제58조 (선거 시행 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12장 회 칙 개 정

제59조 (발의) 본 회의 회칙 개정의 발의는 다음과 같다.

- 1) 운영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발의
- 2) 본 회의 100인 이상의 서명 발의

제60조 (의결 공고) 발의시 7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친 후 학생총회에서 의결하여 3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이를 공고한다.

부 칙

- 1) 준칙 : 본 회칙의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규례에 준한다.
- 2) 발효 : 본 회칙은 총학생회장의 공포함으로써 시행된다.
- 3) 본 회칙 제11장 52조에 관한 회칙과 선거 시행 세칙 제3조 2항에 관한 회칙은 1996년 12월 10일부로 개정 발효된다.

+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 1장 선거권, 피선거권

- 제1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교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단, 휴학 중인 자는 기간 내에는 제외한다)
- 제2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다음 항에 준한다.
- ①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사명감이 투철하여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 ②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전체 평점이 2.5 이상인 자.
 - ③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④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로 한다.
- 제3조 (선거 관리 위원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 관리 위원과 선거 관리에 관계가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2장 선거 관리 위원회

- 제4조 (구성) 선거 관리 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 회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업무 및 권한)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 ①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 ② 선거인 명부의 작성
 - ③ 선거 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 작성
 - ④ 선거 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
 - ⑤ 선거장의 질서 유지 및 감독
 - ⑥ 선거 및 당선 유효 확인
 - ⑦ 재선거 여부 심사 및 공고
 - ⑧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
- 제6조 (개회 및 의결) 선거 관리 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선거일의 공고) 선거 관리 위원회는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일 20일 전에 공고한다.

제 3장 후보등록자 및 투표, 개표, 당선 공고

- 제8조 (후보자 등록) 후보자는 선거 개시 15일전 선거 관리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등록 서류) ① 사진(15×20) 2매
- ② 재학증명서 2통
 - ③ 총학생회장 후보 등록원 (선거 관리 위원회에 비치)
 - ④ 회원 50인 이상의 서명 날인 추천서



- ⑤ 성적 증명서 2통
 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의된 소정의 입회지
- 제10조 (투표 및 개표) 투표 및개표는 반드시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관리하며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이 실시한다.
- 제11조 (참관) 각 입후보자는 각 투·개표장에 2인에 한해 입회시킬 수 있다.
- 제12조 (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② 선거 관리 위원회의 검인이 없는 것.
 ③ 투표 용지에 필요한 표식 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 (단, 이외 판정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한다.)
- 제13조 (이의제기) ①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 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때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제소 사실을 즉시 공고해야 한다. (단, 이의 제소시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② 전 항의 제소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선거 관리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결과로 그 당선을 취소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 제14조 (당선 공고) 선거 관리 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당선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4장 선거운동

- 제15조 (유세) 후보자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합동 유세를 가지며 개인 유세도 허락한다.
 ① (합동 유세, 공개 토론회)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후보자 전원이 합동 유세와 공개 토론회를 가진다.
 ② (개인유세) 유세기간중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학내 장소에서 개인 유세를 허락한다.
- 제16조 (선거본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학내 일정장소에 한해 선거 본부를 둘 수 있다.
- 제17조 (홍보) 벽보, 현수막, 기타 유인물을 통해 할 수 있다.
- 제18조 (금지) 선거의 순수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 금품 수수, 접대, 폭행, 협박, 납치 행위 등을 피한다. 위반시에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 신대원 회칙 <2014년 4월 1일 임시총회 현재까지 최종 개정된 회칙>

제 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서울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 제2조 (위치) 본회는 서울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내에 둔다.
- 제3조 (목적) 본회는 신학도들의 자치활동 모임으로서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 신학과 신앙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며, 건학 이념을 따라 이 시대의 한 알의 밀이 되어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교회에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제 2장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제4조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으로 한다.
-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을 갖는다.
- 제6조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치회비 납부 및 제반 결의 사항을 실천할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임원 및 부서

- 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선출), 부회장(추천)
- 제8조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 직무의 대행은 (선출) 부회장, (추천) 부회장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제9조 (부서)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정책기획부, 서기부, 재정부, 문화부, 학술부, 예배부, 복지부, 선교부, 홍보부, 전산부, 사역정보부
(2) 부서의 역할은 본 회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조정된 부서는 대위원회의 재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 제10조 (부서의 직무) 각 부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총무부: 본 회의 모든 행사를 운영하고 각종회의 개최 및 일련의 사무를 담당한다.
정책기획부: 본 회의 기획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대외적인 행사를 담당한다.
서기부: 본 회의 제반 기록 및 사무를 담당한다.
재정부: 본 회의 회계를 담당한다.
예배부: 본 회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영성과 경건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선교부: 본 회의 선교 분야 전반을 담당한다. 별도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홍보부: 본 회의 모든 대 내외적인 홍보를 담당한다.

복지부: 본 회의 복지 분야 전반을 담당한다.

학술부: 본 회의 학술 분야 전반을 담당한다.

전산부: 본 회의 전산 및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전반 분야를 담당한다.

사역정보부: 본 회 원우들의 사역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 4장 신대원 여원우회

- 제11조 (지위) 여원우회는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여원우회들의 대표기구이다.
- 제12조 (회원) 여원우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여원우회들로 한다.
- 제13조 (회장 및 선거) 여원우회 회장은 여원우회 회원전체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제14조 (임무) ① 여원우회는 여원우 회원들의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여원우회 회장은 본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 (재정) 여원우회의 재정은 본 회의 재정 10%를 지급한다.
- 제16조 (회칙) 여원우회는 자치활동 및 업무에 따르는 독자적인 회칙을 갖는다.

제 5장 대의원회

- 제17조 (지위) 대의원 총회는 본 회의 심의 및 의결 기구이다.
- 제18조 (구성) (1) 대의원은 각 과의 학년별 선출 2 명으로 구성된다.
(각 학과와 원우회의 임역원 및 각 단체의 임역원은 구성에서 제외한다.)
(2) 대의원장과 총무 서기를 두며, 대의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3) 대의원장과 원우회장은 서로 다른 과에서 맡는다.
- 제19조 (업무와 권한)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사전 동의권
(2)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권
(3)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권
(4) 회장 탄핵 요구권
- 제20조 (임기) (1) 대의원회의 임기를 7월부터 익년 8월까지로 한다. (단, 감사가 완료될 시점까지로 한다)
궐석된 자리는 궐위된 시점부터 7일 이내 충원한다. 대의원은 중임할 수 있다.
- 제21조 (회의) (1) 대의원 회의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원우회 정기총회 전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1/3 이상 또는 원우회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최초의 회의는 전 학년도 의장이 소집한다.
(4) 대의원회 의결은 그 재적의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6장 장학 위원회

- 제22조 (설치) 본 회에 장학 위원회를 둔다.

- 제23조 (구성) 장학위원회는 정·부회장 및 각과 대표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 제24조 (임무) (1)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 장학지도 위원회에 추천한다.
(2) 장학 위원회는 본 회의 장학 기금을 조성한다.
- 제25조 (소집) 본 회의 소집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7장 졸업 위원회

- 제26조 (졸업위원) 본 회의 졸업 위원회를 두며, 졸업준비분과, 목회 및 선교파송분과를 둔다.
- 제27조 (졸업위원의 임무) (1) 졸업준비분과는 졸업여행, 사은회, 졸업식 등 졸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목회·선교파송분과는 회원들의 목회파송 및 선교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제28조 (졸업위원회의 구성) 졸업위원회는 필요인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은 졸업반 재적인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위원은 위원장과 졸업학년 각 과대표 1명, 각과 선출 1명을 포함 5명으로 하되 필요 인원을 졸업반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 8장 자문 · 참여 위원

- 제29조 (구성) (1) 자문 위원 : 원우회 정· 부회장을 역임한 자와 동문회 회장으로 한다.
(2) 참여 위원 : 각 학년의 과대표와 부과대표, 행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 한다.
- 제30조 (임무) 운영위원회 및 학생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 9장 재 정

- 제31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자치회비·수익사업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32조 (회비) (1) 본 회의 회비는 납입금의 3% 이내의 소정금액으로 입학 시 3년(신과), 2년(목연과) 원우 회비를 일시 불로 납부한다.
(2) 납입된 원우회비 사용은 학기별로 균등 분배해서 사용하며, 인출 및 집행은 원우회 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3) 원우회비 미납 시 원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며, 원우회에서 추천하는 장학금 수여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한다.
- 제33조 (회계 년도) (1) 본 회의 회계 년도는 원우회의 임기에 준한다.
(2) 예산과 결산은 전 항의 회계 년도에 준하여 실시한다.
- 제34조 (예산 편성 및 심의) 예산은 임역원이 편성하며, 대의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전의 예산 집행은 각 사안별로 대의원회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
- 제35조 (감사) 본회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가 있다.
- 제36조 (정기감사) 정기감사는 결산 감사로서, 정기총회 3주 전부터 1주일간으로 정하며, 감사의 내용은 정기 총회 1주일 전부터 게시하여 공고한다. 단 회장은 감사시 당해연도 예산편성계획서, 총계정원장, 입출금통장 사본, 영수증 철등을 반드시 대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 (특별감사) 특별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의원장이 실시하고, 회장은 대의원장이 요구하는 문서 및 자료들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는 감사 완료 후 3일 내 게시 공고한다.
- ① 대의원회 재적 인원의 2/3이상 발의 시
 - ② 회원 30인 이상의 서명 발의 시
- (특별감사의 시기는 12월에 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장 선 거

- 제38조 (정·부회장) (1) (경선) 원우회 정·부회장은 본 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한다.
- (2) (단독) 원우회 정·부회장은 본 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동 입후보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3) (추천) 부회장 1인은 선거가 끝난 뒤 (선출) 부회장이 나오지 않은 학과에서 추천을 받아 임시총회 또는 회의의 재석인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인준을 받는다.
- 제39조 (선거 방법)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로 한다. 선거시 1차 투표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만일 1차 투표에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시, 다 득표자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이 중 다(多)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제40조 (선거 시기) 원우회의 정·부회장은 매년 5월 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제41조 (원우회 정·부회장 지위) (1) 원우회 회장은 원우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원우회장은 대외적으로 원우회를 대표하며 각계·각층과 연대 활동을 관장한다.
- (3) 원우회장은 대학 자치 및 학생 자치활동에 관계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학교 당국과 협의 할 수 있다.
- (4) 원우회 부회장은 원우회장을 보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 (5) 원우회 정·부회장은 학생 징계 및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학교당국에 제시 할 수 있다.
- 제42조 (정·부회장 임기) 원우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당해 년도 7월부터 차기 년도 6월까지 1년으로 하되 전임자와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인수인계를 한다.
- 제43조 (신분 보장) 원우회의 정·부회장은 본인의 의사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그 지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 제44조 (탄핵 기준) 탄핵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헌법에 규정한 목회자의 탄핵 사유나 본 교 학칙의 정학사유에 준하는 행위 및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로 제한되며, 탄핵안은 본 회의 30인 이상 또는 대의원회 재적 2/3 이상에 의해 발의되고, 임시총회를 통해 재석 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발의된 탄핵안을 위한 임시총회의 의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맡는다.)
- 제45조 (보궐선거) 회장과 부회장이 불신임, 탄핵, 휴·퇴·정학, 사망 등으로 유고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1) (공고) 회장과 부회장의 유고시 원우회는 이를 3일 이내에 공고한다.
 - (2) (선거) 모든 선거의 규정은 선거 시행 세칙의 규정을 따른다.
 - (3) (임기)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6조 (선거관리 위원회) (1) 본 회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우회 추천 2인, 대의원회 의장과 총무, 각 과대표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맡는다.
- (3)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 2 주전에 작성 비치해야 한다.
- (4) 선거관리 위원회는 당선 공고 후 3 일 후에 자동 해체된다.

제47조 (선거 시행 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11장 회 의

제48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기총회 : 매년 5월중 회칙개정 및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결산 감사보고를 받는다.
- (2) 임시총회 : 임원회, 대의원회의 소집요구 및 회원 30인 이상의 서명에 의한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이 이를 소집 하되 상정된 안건만을 처리한다.
- (3) 본 회의 각 중 회의는 재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최되며, 모든 결의는 회칙이 정하는 의결 기준에 따르 며,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석 인원의 과반수찬성으로 한다.
- (4) 회의소집 : 각종 회의의 소집은 7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 12장 회칙 개정

제49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년 1회 정기총회와 회칙개정을 위한 발의에 의거한 임시총회를 통하여 개정한다. (단, 부칙과 선거시행 세칙은 각 칙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50조 (발의) 본 회의 회칙 개정의 발의는 다음과 같다.

- (1) 대의원회의 재석 과반수이상의 발의
- (2) 본 회의 30인 이상의 서명 발의

제51조 (의결 공고) 위 49조에 의거하여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7일 이상 공고 후 정기총회나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1) 공포 : 개정안이 의결되면 원우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고, 3일 이상 공고한다.
- (2) 발효 : 본 회칙은 원우회장의 공포시 그 효력을 발한다.

제52조 (준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규례에 준한다.

부 칙

부칙의 개정 : 본 부칙은 모든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의 발의와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1) 공포 : 개정안이 의결되면 원우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고 3일 이상 공고한다.
- (2) 발효 : 본 부칙은 원우회장의 공포시 그 효력을 발한다.

2003년 5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제정 공포되다.

2004년 9월 8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공포되다.

2005년 5월 26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공포되다.



+ 선거 시행세칙

제 1장 선거권, 피선거권

- 제1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교 신학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인 자와 원우회비 미납자는 기간 내에는 제외한다.)
- 제2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다음 항에 준 한다.
(1) 학업에 충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하여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목연은 1학기 이수중인 자, 신학과는 3학기 이수중인 자
(3) 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로 한다.
(5) 원우회비 납부 및 경건학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3조 (선거 관리 위원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 2장 선거 관리 위원회

- 제4조 (구성)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은 원우회 회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업무 및 권한) 선거 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3) 선거 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 심의 및 관리
(4) 선거 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
(5) 선거장의 질서 유지 및 감독
(6) 선거 및 당선의 유효 확인
(7) 재선거 여부 심사 및 공고
(8)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
- 제6조 (개회 및 의결) 선거 관리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선거일의 공고) 선거 관리 위원회는 원우회 정·부회장 선거일 20일 전에 공고한다.

제 3장 후보등록자 및 투표, 개표, 당선 공고

- 제8조 (후보자 등록) 후보자는 선거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등록 서류) (1) 사진 (15×20) 2 매
(2) 재학증명서 2통
(3) 원우회 정·부 후보 등록원 (선거 관리 위원회에 비치)
(4) 회원 15인 이상의 서명 날인 추천서

- 제10조 (투표 및 개표) 투표 및 개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하며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
- 제11조 (참관) 각 입후보자는 각 투·개표장에 2인에 한해 입회시킬 수 있다.
- 제12조 (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선거 관리위원회의 검인이 없는 것.
 (3) 투표용지에 필요한 표식 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
 (단, 이외 판정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한다.)
- 제13조 (이의제기) (1)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 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 때 선거관리 위원회는 제소 사실을 즉시 공고해야 한다. (단, 이의 제소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2) 전 항의 제소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선거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그 당선을 취소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 제14조 (당선공고) 선거 관리 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당선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거 운동

- 제15조 (유세) 후보자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합동 유세를 가지며 개인의 유세도 허락한다.
 (1) (개인유세, 합동 유세, 공개 토론회)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학내 장소에서 개인 유세를 허락한다.
 (2) (선거 운동 기간)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로부터 선거 전 일 24시까지로 한다.
- 제16조 (선거본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학내 일정장소에 한해 선거 본부를 둘 수 있다.
- 제17조 (홍보) 벽보, 현수막, 기타 유인물,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1) (홍보물 심의) 배포 및 게시된 홍보물은 반드시 선거개시 2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2) (인터넷 홍보)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학교 홈페이지, 신대원 원우회, 각과 홈페이지의 게시판으로 제한하며, E-mail을 통한 홍보는 금한다.
 (금지) 선거의 순수성을 건지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 금품 수수, 불법행위 등을 피한다. 위반 시에는 피
- 제18조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제 5 장 선거시행세칙의 권한 및 개정

- 제19조 (선거시행 세칙의 권한) 본 선거시행 세칙은 회칙의 하위 법으로 회칙 내에서 그 효력을 갖는다.
- 제20조 (선거시행 세칙의 개정) 본 부칙은 모든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기간에는 개정할 수 없다.)
 (1) 공포 : 개정안이 의결되면 원우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고 3일 이상 공고한다.
 (2) 발효 : 본 선거시행 세칙은 원우회장의 공포 시 그 효력을 발한다.



+ 학생생활 준칙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서울장신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학생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범위) 이 준칙은 본 대학교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학생증

- 제3조 (교부) 입학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학생복지·장학부서를 방문하여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 제4조 (휴대)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학교 관계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 (재교부) 학생증을 분실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을 지참하여 소정의 재발급 비용을 납부하고, 학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 제6조 (무효) 학생이 졸업 또는 자퇴하거나 제적되었을 때, 학생증의 내용을 임의로 정정하였을 때에는 학생증을 무효로 한다.

제 3장 집회·게시·간행물·광고물·인쇄물 배포

- 제7조 (활동사전승인) 학칙 제72조 학생활동에 관한 교내외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장학부서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집회내용을 기재한 후, 장소허가 담당자 및 학과장,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아래표에 정한 제출기간 내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제출기일
동아리의 일반집회	5일전
교내 집회 및 행사	7일전
교외 집회 및 행사	14일전
타 대학과의 연합행사	1개월전

- 제8조 (간행물 배포)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 (광고물 등의 부착 허가) 교내에서 학생이 광고물, 인쇄물 및 현수막 등을 붙이거나, 배포하거나 할 때에는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집회금지) 학생은 시험기간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일까지는 교내외 집회와 행사를 할 수 없다.

- 제11조 (활동정지 및 해체) 학생활동이 불건전하거나,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학칙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총장은 활동정지 및 해체를 명할 수 있다.

제 4장 총학생회·원우회·과학생회 및 기타 일반준칙

- 제12조 (학교행사도우미) 학교의 주요행사에는 총학생회, 원우회, 과학생회, 동아리가 학교 행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 제13조 (외부행사 및 현장학습) ①외부행사에는 반드시 학과장(지도교수)이 참석 및 숙박하여야 한다.
② 현장학습은 중간고사기간에 실시하며, 해당 학과 학년 재학생의 80%이상 참여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학생복지사업제) 학교버스 외 외부차량 이용, 학생식당 외 외부도시락, 외부업체 이용시에는 학생처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운동경기 참가

- 제15조 (사전허가) ① 학생이 대외 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제1항의 허가 없이는 대외단체 운동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③ 정기시험기간 중에는 제1항에 정한 허가 외에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학생이 대외운동경기에 단체로 응원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장 학생생활 일반준칙

- 제16조 (신상변동의 신청) 학생은 입학시에 제출한 학생신상에 관한 변동(현주소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학사인트라넷에 수정하여야 한다. (미변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7조 (외부활동) 학생은 본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단체 등에서 일할 수 없으며, 학교수업시간과 중복되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곳에서는 외부활동을 할 수 없다.
- 제18조 (야간활동금지) 학생은 교내활동 중 학술정보관을 제외한 기타 장소에서 22시 이후에는 일체의 학교출입 및 야간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야간 교내활동 허가원을 학생복지·장학부서에 제출하고,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장 기타

- 제19조 (세부사항) 이 준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8월 8일부터 학생처장을 대학교학처장으로 한다.
3.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3월 2일부터 대학교학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2024 2025

서울장신대학교 요람

Seoul Jangsin University

VII 부속기관

- 학술정보관 규정
- 출판부 규정
- 출판부 시행세칙
- 생활관 규정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 사회봉사센터 운영 규정
- 사회봉사활동 운영 규정
-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 학생상담 및 지도 규정
- 보건소 운영 규정
- 취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 학술정보관 규정

1994. 03. 02. 제정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장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술정보관(이하 “본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본관은 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연구지원 기관으로서 학술정보 및 전산정보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제 2장 기 구

- 제3조 (학술정보관장) 본관은 총장 직속기관으로 하며 총장이 위임하는 권한에 의하여 제반 업무를 관할한다. 학술정보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며 본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제4조 (조직) 본관에 학술정보과와 전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7.11.01>
- 제5조 (학술정보과) 학술정보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1.01>
1. 본관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행정업무
 2. 교수의 연구 및 교육, 학생의 학업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이용
- 제6조 (전산정보과) 전산정보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전산실의 관리 <개정 2017.11.01>
 2. 전산시스템에 관한 업무
- 제7조 (사서 및 전문직원) 사서 및 전문직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본관에 대학학술정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2명 이상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 3장 학술정보관운영위원회

- 제8조 (설치) 본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학술정보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장이 위촉하는 교수 3인과 직원 1인 등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은 각 학과별 조교수 이상의 소속교원 중에서 1인과 직원 중에서 1인을 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제1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결원시에는 제 8조 제 2항에 따라 보선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본관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정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개정 2018.06.07>
 2. 학술정보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6.07>
 3. 학술정보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6.07>
 4. 학술정보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6.07>
 5. 학술정보관의 시설 및 학술정보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6.07>
 6. 학술정보관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6.07>
 7. 대학학술정보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6.07>
 8. 학술정보관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6.07>
 9. 그 밖에 학술정보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06.07.>

제 4장 운 영

- 제13조 (예산) 예산 책정 및 집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본관의 예산은 본 학교의 예산중 책정된 금액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관장은 회계년도 말에 예산집행 결산보고서와 신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3. 관장은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위원회에 통보하여 각 학과별 도서구입비를 심의 배정한다. 다만, 각 학과별 장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 배정에 적정을 기한다.
 4. 예산 책정 시 전산기기는 각 행정부서, 학과, 기타 관련 부서에서 의뢰받아 책정한다.
 5. 기타 수입금은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 할 때는 관장이 그 용도를 정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다만, 본관에 수입되는 일체의 금액은 회계부서에 입금한다.
 6. 학술정보관은 교수연구와 학생 학습을 위한 학술정보관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 <신설 2024.4.1.>
- 제13조 2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① 관장은 법률에서 정한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 이라 한다.)
 2.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발전계획”이라 한다.)
- ② 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8.06.07.>
- 제13조 3 (연도별 발전계획의 수립)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연도별 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도서관 발전사업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8.06.07.>

제14조 (자료구입절차) 자료의 구입은 연도별, 학기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집행한다.

제15조 (장서점검) 장서점검은 열람 기능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제16조 (시설 및 학술정보관자료) 본관의 시설 및 도서 관자료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본관의 연면적은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최소 기본도서는 학생 1명당 70권 이상을 보유하도록 한다.

3. 최소 연간 증가 책은 학생 1명당 2권 이상을 구입하도록 한다.

제 5장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제17조 (자료의 구분) 본관에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기증자료

3. 교환자료

제18조 (도서의 선정 및 구입) 도서의 선정 및 구입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집행한다.

1. 학과별 전문도서의 적절한 선정을 위하여 매 학기말에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자료선정을 의뢰하며 접수된 자료는 학과별 배정 예산한도 내에서 우선 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생의 신청에 의한 도서. 단, 적당하다고 인정된 도서에 한한다.

3. 각 학과에 공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고도서와 정기간행물은 별도로 선정하여 구입한다.

제19조 (납본의 의무) 본교에서 간행되는 모든 간행물과 전임교수가 발행한 저작물은 3부 이상, 우리 본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납본된 간행물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개정 2017.10.11>

1. 소장용

2. 교환용

3. 기증용

제20조 (등록날인) ① 수입된 도서는 원부에 등록하고 정기간행물은 합철제본 후 등록한다.

② 수입된 도서는 장서인, 측인, 기증인(기증도서에 한함), 은인을 정해진 위치에 날인한다.

제21조 (본관 자료의 교환) 본교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은 필요한 경우 본관 자료교환 방법의 일환으로 해당 각 기관에 발송할 수 있다.

제22조 (도서의 분류 및 목록) 본관의 분류는 다음과 같은 분류와 목록을 채택하고 있다.

1. 자료분류는 듀이 십진분류법(D.D.C) 20판을 사용한다.

2. 동양서 저자기호표는 장일세 저자기호표를 참조한다.

3. 서양서 저자기호표는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를 참조한다.

4. 철학, 법학, 언어, 음악, 문학, 역사는 부분적으로 한국십진분류법 제3판을 응용하고 있다.

제 6장 자료의 폐기 및 제적

- 제23조 (폐기 및 제적자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본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1. 분실 또는 대출도서 중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
 2. 이용 불가능한 오손, 훼손도서
 3. 동일 자료의 부수 과다로 보관에 어려움이 있는 도서나 기타 자료의 일부
 4. 학술적 가치가 없는 고본
 5. 1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도서라 할지라도 발견 또는 회수할 경우는 이를 재등록한다.

제 7장 이 용

- 제24조 (개관 및 휴관) ① 개관시간 : 09:00~21:00(학기 중 월,화,목,금), 09:00~17:00(학기 중 수요일) / 09:00~16:00(방학 중) <개정 2024.4.1>
- ② 토요일, 일요일, 국정공휴일, 학교행사일은 휴관한다.
- ③ 반송휴 개관시간 : 09:00~21:00(학기 중), 09:00~16:00(방학 중).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4.1.>
- 제25조 (이용자격) 본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교의 교직원 (법인 임직원, 시간강사 포함)
 2. 학부생
 3. 대학원생
 4. 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
 5. 소정의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한 회원 (졸업생, 교계·학계 관계자, 지역주민)
- 제26조 (도서의 종류) 도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도서 - 일반 교양도서 및 대학교재류
 2. 참고도서 (R) - 백과사전, 사전, 연감류
 3. 학위논문 (T) - 석·박사학위논문
 4. 정기간행물 (P) - 학술잡지, 교양잡지
 5. 악보 (S) - 음악관련 악보
 6. 음반 (M) - 음향자료
 7. 비디오 (V) - 영상자료
- 제27조 (대출기간) 도서의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부생 : 5책 14일 <개정 2018.02.26.> <개정 2024.09.01>
 2. 대학원생(특수대학원) : 7책 14일 <개정 2019.02.28>
 3. 일반대학원(석사) : 7책 14일
 4. 일반대학원(박사) : 20책 21일
 5. 교수 : 20책 30일
 6. 직원 및 법인 임직원 : 5책 20일
 7. 시간강사 : 5책 15일



8. 기타이용자 : 3책 7일

- 제28조 (대출, 반납) ① 도서 대출시 신분증 바코드가 부착된 학생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도서 대출 및 반납 시 에러가 발생하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출 및 반납시간은 09:00~21:00(학기 중). 단, 수요일은 17:00까지 / 09:00~16:00(방학 중)으로 한다. <개정 2024.4.1.>
 ④ 매 학기말 시험 7일 전부터 시험종료일까지는 관외 대출을 하지 않는다.
 ⑤ 예약도서대출 - 보고자 하는 책이 대출 중일 경우, 검색단말기를 통하여 예약신청을 하면 그 책이 반납되는 즉시 예약신청자에게 우선 대출된다. 예약된 도서는 반납일로부터 3일간만 보관하며, 대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예약자에게 대출된다.
 ⑥ 대출도서의 연장 - 예약되어 있지 않은 도서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대출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⑦ 다음 경우에는 대출 기한 내라 할지라도 관외 대출된 본관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1. 매 학기말 시험 7일전
2. 본관의 필요에 의하여 반납을 요구하는 때

- 제29조 (도서의 대출제한) ① 대출할 수 없는 도서 - 참고도서 (R), 학위논문 (T), 정기간행물 (P), 악보 (S), 지정도서 (A) 대학논문집은 대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관내에서 보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복사하여 본다.

- ② 음향자료 및 영상자료 (CD, VIDEO, TAPE 등)는 수업에 필요한 경우만 대출하고 개인 대출은 금지한다.

- 제30조 (제재 및 범칙금) <개정 2023.03.08> 대출한 도서를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관장은 해당부서장에게 명단을 통보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학생 - 제증명 발급 및 수강신청 보류
2. 휴학생 - 복학원서 또는 수강신청 접수 보류
3. 졸업, 퇴학, 제적생 - 제증명 발급 보류
4.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 - 제증명 발급 보류
5. 연체일수 만큼 대출 중지 <개정 2023.03.08>
6. 대출 중 분실한 도서의 변상-대출한 도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직원에게 신고하여 분실한 도서와 동일한 도서를 정리비(2000원)와 함께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한 도서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구독가에서 발행연도에 따라 1.5~5배까지 변상하여야 한다.
7. 훼손도서의 변상 - 위의 6호와 같은 조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31조 (관내수칙)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징계 및 퇴실시킨다.

1. 관내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담당 직원의 지시, 요망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자료의 무단방출 및 절취 행위
3. 비품 및 기타 시설의 임의 이동, 훼손
4. 열람실내 음식물 취식 행위
5. 열람실내 휴대용 전화기 통화 행위
6. 컴퓨터게임, 채팅, 음란물 사이트 이용 행위
7.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언행 및 행동
8. 사물을 장시간 방치한 채 이용치 않는 좌석독점 행위

- 제32조 (본관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개정 2023.03.08.>

위반내용	제재조치		비 고
학생증대여	양측 1개월 대출정지		
도서파손	파손한 범위에 관계없이 1년간 출입정지 및 파손도서 변상		제재조치후 게시판에 위반자 게시공고
도서절도	착오인경우	반성문	제재조치후 게시판에 위반자 게시공고
	고의인경우	1년간 출입금지	
연체자	60일 초과	1년간 대출금지	반납기간이 경과한 도서가 있을 때는 반납시까지 대출 정지
	졸업생 장기연체자	반납할 때까지 제증명 발급정지	

- 제33조 (봉사업무) ① 희망도서제도 - 학과목이나 전공에 관련된 도서가 본관에 없을 경우 본관 홈페이지의 도서신청 화면이나 자료검색 단말기에 비치한 희망도서구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신청한다. (서식 제1호)
- ② 신착도서안내 - 새로 구입한 신간도서를 게시판에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의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③ 타 대학자료 열람제도 - 본관에 소장하지 않은 자료의 이용을 위해 타 대학자료 열람의뢰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서식 제2호)
- ④ 개인예약 도서제도 - 자료가 관외대출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할 때에는 열람계에 예약하면 자료가 반납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대출할 수 있다.
- ⑤ 복사업무 - 필요로 하는 자료는 각 열람실내 설치되어 있는 무인자동 시스템 복사기나 프린터기로 출력할 수 있다.
- ⑥ 음악감상 - 가곡 및 오페라 등 명곡들을 CD나 TAPE을 통하여 감상할 수 있다.
- ⑦ PC실습 - 인터넷, 워드작성, 파일출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
- ⑧ 문헌복사 - 국내 신학 석·박사 학위논문, 국회본관 소장 자료 복사 서비스 제공. (서식 제3호)
- ⑨ 콜서비스 - 신체장애자 및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제 8장 정보전산실

- 제34조 (운영) 정보전산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보전산실은 전산장비를 사용한 교육, 학습 및 행정업무를 위해서 활용한다.
 2. 교내 또는 외부기관이 정보전산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1주일 전에 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제35조 (이용자격) 이용자격은 제 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6조 (이용시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관시간 : 09:00~18:00(학기 중 월,화,목,금) 09:00~17:00(학기 중 수요일) / 09:00~ 17:00(방학 중).
 2. 토요일, 일요일, 국정공휴일, 학교행사일은 휴관한다.
 3. 관장은 필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 제37조 (이용절차) ① 본교의 강의계획에 의거한 정규수업을 우선 배정한다.



- ②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는 이용자격 및 이용시간에 따라 정보전산실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학생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책임 하에 학생담당부서를 경유하여 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 (관리) ① 정보전산실 관리담당자는 시설물과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장비가 파손되었을 때는 원인제공자가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장 전산시스템

- 제39조 (적용범위) 전산시스템은 본교에 있는 모든 전산장비와 전산망을 말한다.
- 제40조 (운영) 전산정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전산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관리한다.
 2. 전산자료를 분류하고 보관한다.
 3. 전산시스템실을 관리한다.
- 제41조 (장애 관리)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전산정보과에 통보하고 바로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2조 (전산자료의 분류 및 보관) ① 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파일은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디스크 또는 테이프 등의 보조매체에 백업해두어야 한다.
- ② 전산업무관련 담당자는 직무상 취득한 파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3조 (전산시스템실) 전산시스템실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방재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 대책
 2. 보조기억장치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용기 비치
 3. 품명, 규격, 취득일 등을 부착
- 제44조 4. 각종 대장 기록 유지
- 제45조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보안관리)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보안관리는 본교의 정보보호규정에 따른다.
- (손상, 분실, 이동, 변경, 해제) ① 전산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의해서 손상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하고,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시켜야한다.
- ② 사용자가 설비의 이동, 변경, 해제를 원할 때에는 관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 10장 교육 및 보안점검

- 제46조 (교육) ①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신규 도입 시에는 설치 전에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 ② 자체적으로 업무개발을 하였을 경우 해당 이용자들에게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활용도가 제고 될 수 있도록 한다.
- 제47조 (보안점검) 관장은 중요 파일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요 파일 월 1회 이상 확인
 2.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

부 칙

1. 본 규정은 199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0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0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규정은 201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규정은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규정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규정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23.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출판부 규정

2007. 12. 03. 제정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서울장신대학교출판부(이하출판부)는 학술연구실적 및 학내·외 간행물을 출판함으로써 학문적 성과와 학사업무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설치) 출판부는 서울장신대학교내에 두고 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
- 제3조 (사업)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재 및 학술도서의 출판
 2. 교내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3. 음반, DVD, 소프트웨어 등 관련 자료
 4. 도서관행물의 판매 관리
 5.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기타 부대사업

제 2장 조 직

- 제4조 (조직) ① 출판부는 부장을 둔다.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부장은 출판부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괄한다.
- ③ 출판부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장 출 판

- 제5조 (출판) ① 출판부는 본교의 간행물과 교직원의 저작물 등 교내의 출판물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외의 간행물과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다.
- ② 저작물출판은 출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 (출판계약 및 인세) ① 출판부가 저작물을 출판하려는 경우에는 저작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출판부가 저작물을 출판하려는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인세 또는 원고료를 지급한다. 다만, 출판을 조건으로 본교 또는 출판부가 지급하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저작물에 대하여는 인세나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구비) ① 출판부는 교재개발과 학술도서 출판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서 간행을 위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② 도서관행 연구비 지급에 따른 세부사항은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4장 운 영

- 제8조 (재정) 출판부의 재정은 교비지원금, 출판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제9조 (사업계획) 출판부장은 매 학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익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시설) 출판부는 필요한 경우 출판물 제작설비를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5장 출판위원회

- 제11조 (구성) ① 출판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출판부장이 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는 출판부장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판부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출판부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 또는 세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출판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교재 및 학술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
 5. 기타 출판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6장 보 칙

- 제14조 (세칙) 출판부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출판부 시행세칙

-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출판부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출판물의 간행, 인쇄와 원고료, 발행부수, 표지 디자인 등 출판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출판물의 간행) 출판물을 간행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제3조 (인세) ① 도서 발간시 본 출판부의 비용으로 간행하는 모든 도서의 저작권은 출판부에 있다.
 ② 인세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도서)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물로 지급할 경우에는 정가의 70%를 현물 단가로 셈하여 지급한다.
 ③ 인세가 지급되는 도서는 원칙적으로 학술도서·교재·교양도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세를 지급한다.
1. 저서 : 초판 정가의 10%, 중판정가의 12%
 2. 편저 : 초판 정가의 8%, 중판정가의 10%
 3. 번역서 : 번역료 대신 인세로 지급하며 인세는 초판정가의 8%, 중판정가의 10%로 지급한다.
 4. 편집 및 편찬 : 초판정가의 6%, 중판정가의 8%
 5. 저작권 사용료 : 도서 발간시 제3자의 저작권을 사용할 경우에 그 저작권 사용료는 저자와 출판부(도서 대금에 반영)가 각 50%씩 부담한다.
 7. 각 도서의 홍보용으로 제작된 부수에 대해서는 인세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④ 인세는 도서발행 부수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인세 지급시 소정의 세금을 본 출판부에서 원천 징수한다.
- 제4조 (발행 부수 등) 출판부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의 부수, 장정 및 정가는 출판부가 정한다.
- 제5조 (기증용 부수) ① 저자에 대한 출판물의 기증 부수는 초판에 있어서는 20부 이내, 중판에 있어서는 5부 이내로 한다. <2013.11.19 개정>
 ② 저자가 상기 이상의 부수를 요할 경우에는 70% 단가로 구입할 수 있다.
- 제6조 (출판권의 설정) 출판부에서 간행된 출판물의 저자는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스스로 출판하거나 제3자에게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세칙) 출판부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생활관 규정

제 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생활관은 서울장신대학교 생활관이라 칭한다. 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 제2조 (제정) 생활관의 규정은 본교 학칙 제76조 제1항에 의거 이를 제정한다.
- 제3조 (목적) 생활관은 본교의 건학 이념인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사생들로 하여금 경건생활을 통해 학업, 친교, 협동, 규칙생활 등의 공동생활을 훈련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장 조직 및 운영

- 제4조 (운영위원회)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 제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생활관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생활관 실무 담당자를 간사로 구성하며, 생활관장이 위원장이 되며, 생활관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학생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사감을 둘 경우에는 사감도 운영위원회 회원이 된다.
- 제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생활관 규정과 수칙의 제정 및 개정
 2. 생활관비 책정
 3. 예산 및 결산
 4. 직원채용 및 급여승인에 관한 사항
 5. 생활관 정원의 책정
 6.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 ① 생활관장은 관내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지침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사생들의 모범적 생활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학칙에 의하여 징계 당한 학생을 징계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모범생을 포상 할 수 있다.
- 제8조 (사생회) ① 생활관사생의 자치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관 사생회를 둘 수 있으며, 사생회의 자치 활동은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② 사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생회는 매학기 입주한 학생으로 조직한다.
 2. 사생회 임원은 사생장1인, 부사생장1인, 총무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3. 임원선출은 사생회 총회에서 한다.
 4. 총회는 매년 1학기초에 전임 회장이 소집한다.
 5. 생활관장 및 사감은 사생회 임원회의 감독 및 감사권을 가지고 매 1년단위로 조직 및 규정을 재구성하며, 사생회 임원은 생활관장 및 사감의 지도하에 자치활동을 하며 관내의 규칙 및 일상생활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질서유지, 기도회참석확인, 친교, 환경미화, 청결 등의 일상생활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6. 각 호실마다 최고학년이 우선적으로 호실장을 맡아 자체적 생활 질서를 유지한다.
- 제9조 (수칙) ①단체생활의 질서유지와 명량한 생활관 생활을 위하여 사생은 세부적 생활수칙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단, 생활관장 및 사감의 허락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사생수칙은 다음과 같다.

1. 경건회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2. 생활관 내에서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3. 음주 및 흡연 및 고성방가를 하지 않는다.
4. 오후 11시 이후에는 어떠한 소음도 일으키지 않는다.
5. 외출 및 취침 시에는 반드시 소등(보일러, 에어컨 포함)하며, 쓰레기등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처리한다.
6. 사생이 아닌 외부인 출입 및 유인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생활관장이 승인한 물품 이외의 전열기구 및 위험물, 화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8. 생활관내 공공기물을 아끼고 깨끗이 사용한다. (파손한 자는 실비 변상 조치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퇴관 조치됨)
9. 외출 및 외박시 생활관 귀관 시간을 지킨다. (평일은 23:30, 주일 또는 시험기간은 01:00)
10. 교내 식당에서의 규정된 식사시간을 지킨다.
11. 갑작스런 화재 및 재난시에는 침착하게 재난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하며 관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벌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2.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호실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는 행위
3. 생활관내에서 집기를 지정 장소이외로 운반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생활관내에서의 취사행위
5. 공동생활 공간에 무단으로 집기 및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6. 공고물 훼손, 낙서, 유인물, 공고물 등의 무단게시 및 전시 배포하는 행위
7. 기타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행위
8. 각조 수칙 및 벌칙사항은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경고기준표 적용)

■ 경고사항(한 학기 기준)

항	목	세부내용		경 고
1	경건회 (화~목)	1회 불참시		1회
2		5회 불참시(다음 학기 입사자격 상실)		5회
3		7회 불참시		퇴관
4	외박	사전 연락 없이 무단외박한 경우	[귀가시간] *평일:23:30*주일 또는 시험기간:01:00	퇴관
5		외출하여 귀관시간을 어긴 경우		1회
6	외부인 출입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킨 경우		2회
7		외부인의 출입을 묵인하였을 경우		1회

항	목	세부내용	경 고
8	공동생활 저해행위	관내소란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1회
9		비품의 무단이동 및 반출(청소기, 토스트기 등)	
10		쓰레기 방치 및 무단 투기, 방 청소상태 불량	
11		호실내에 외부(배달)음식물 반입금지(휴게실 이용할 것)	
12		층별 유리문을 열어 놓는 경우	
13	퇴관 및 증징계	인화물질 및 허가 받지 않은 전열기 사용(9조 7,8 참고)	퇴관
14		사감 및 직원 지시에 불응	
15		인화물질 및 허가 받지 않은 전열기 사용(냉장고, 밥솥, 전기장판, 가스버너 등)	
16		절도행위	
17		배정된 방 호실 무단 변경 금지	
18		공동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자	
19		경고 7회	
20		경고 5회 이상	다음학기입사금지
21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퇴관 및 실비변상

제 3장 입·퇴관

- 제10조 ① 입주를 원하는 학생은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고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입주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에 의한다.
1. 학업성과 품행을 고려한다. (학업성적 C이상)
 2. 학생의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를 고려한다.
 3. 가정환경을 고려한다.
 4. 법정전염병 보유자와 학사경고 및 징계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간에 입주를 불허한다.
 5. 이단 및 사이비신앙을 가진 자는 입주를 허락할 수 없다.
- ③ 생활관은 학기단위로 학기 초에 입주 하며, 결원 시 수시로 충원할 수 있다.
- ④ 건강검진서 제출(흉부 X-Ray와 B형 간염검사 결과가 포함된 검진서, 단, 새 학기마다 새로 검진필수),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모든 입주자는 지정된 신청기간에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입주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 ⑤ 정규퇴관 : 종강일 다음 날 오전에 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은 추후에 공지한다. (퇴관시 점검을 받지 않고 퇴관할 경우에는 다음학기 재입주를 불허한다.)
- 학기 중 퇴관 : 학기 중 중간퇴관은 자퇴, 휴학, 질병, 기타 기숙사 사생수칙에 명시된 사유로 제한하며, 퇴관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강제 퇴관 : 강제퇴관 대상자는 생활관장 및 사감의 조치에 따라 즉시 퇴관하며, 퇴관조치 불응시 생활관의 인위적인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추후 생활관에 재입주할 수 없다.

제11조 생활관사생의 지급사용물품은 입주시 직원으로부터 인수하고, 퇴관 시 반납해야 하며 파손, 망실된 물품은 시가로 현금 또는 현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방학 중에는 폐관을 원칙으로 한다. (잔류학생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한다.)

제 4장 재 정

제13조 ① 본 생활관의 운영재정은 생활관비로 한다. 단, 예산집행과정에서 생활관 운영비가 부족 할 경우에는 학교 교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사생회의 운영은 자치회비와 후원금으로 한다.

제14조 퇴관시 환불규정은 생활관 수칙에 의한다. 중간퇴사 시 관리비는 아래와 같이 환불하되, 퇴관자에게는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① 입주 후 1달(30일) 이내는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② 입주 후 1달(30일) 이후 부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생활관의 재정은 총무처에서 관리하며, 재정집행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12.09.01.

개정: 2024.09.11.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장신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9. 11. >
- 제2조 (직무) 센터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교수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2. 학습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교육매체지원 및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9. 11. >
- 제3조 (조직)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비전임교원 혹은 외부 인사를 총장이 임명할 수도 있다.
-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수지원팀, 학습지원팀, 교육매체지원팀을 두고, 각 팀에는 담당 교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교육환경 포함)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④ 센터에는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⑤ 센터의 업무를 보조하는 조교를 약간 명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11. >
-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해 센터는 필요한 사안에 따라 비상시적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교육혁신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4. 9. 11. >
- 제5조 (실행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해 센터는 필요한 사안에 따라 비상시적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보다 원활한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필요에 따라 7인 이내의 교내 구성원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1. >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11.04.06.

개정: 2024.09.11.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장신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직무,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직무) 지원센터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및 편의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 제3조 (기능) 지원센터는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①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지원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 ③ 장애학생을 위한 학사, 진로, 생활 등의 상담에 관한 사항
 - ④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⑤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⑥ 교직원 및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장애학생과 관련된 사항

제 2장 조 직

- 제4조 (센터 소장)
- ① 지원센터에는 센터 소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고, 장애학생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 제5조 (직원 등)
- ① 지원센터에는 행정 및 상담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 ② 장애학생지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원센터의 행정은 학생복지·장학팀에서 관장한다.

제 3장 운영위원회

- 제6조 (운영위원회)
-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해 센터는 필요한 사안에 따라 비상시적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학생성장지원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 개정 2024.9.11. >
- 제7조 (자문위원)
- ① 지원센터의 사업기획 및 수행 등에 관한 센터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본교 또는 타기관의 장애인관련 전

- 제8조 문가(장애인단체장, 장애인복지시설장, 장애인고용센터장, 특수교육전공교수, 재활의학전공교수 등)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 ② 자문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재정) 지원센터의 재정은 교비지원금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8월 8일부터 교육혁신처장을 대학교학처장으로 한다.
5.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3월 2일부터 대학교학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사회봉사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13.01.02.

개정: 2024.09.11.

- 제1조 (명칭) 본 사회봉사센터는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봉사센터(이하 “봉사센터”)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정신을 구현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이웃사랑과, 나라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범위) 사회봉사의 범위는 국내와 국외에서 행해지는 각종 자원봉사활동과 사회봉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항으로 한다.
- 제4조 (기능) 봉사센터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봉사센터의 총괄 계획 수립
 2. 사회봉사 활동 정보제공 지원 및 연구 개발
 3. 사회봉사 기관 확보 및 봉사활동 내용 협의
 4. 사회봉사활동 실적 기록 및 인증
 5. 기타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업무
- 제5조 (조직) 봉사센터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봉사센터의 센터 소장은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센터 소장은 봉사센터를 대표하며 봉사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3. 봉사센터 내 밀알봉사단을 두며, 봉사단장은 센터 소장이 한다.
 4.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직원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 제6조 (운영위원회)
-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해 센터는 필요한 사안에 따라 비상시적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학생성장지원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24.9.11. >
- 제7조 <삭제 2024.9.11. >
- 제8조 <삭제 2024.9.11. >
- 제9조 <삭제 2024.9.11. >
- 제10조 (회의록)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재정) 봉사센터의 예산은 본교의 예산에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 제13조 (회계년도) 봉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8월 8일부터 교육혁신처장을 대학교학처장으로 한다.
5.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3월 2일부터 대학교학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사회봉사활동 운영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봉사 활동 장려를 통하여 본 대학교의 설립정신 구현과 대학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영역) 교직원의 국내와 국외 사회봉사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 활동
 2. 비영리 민간 및 공공단체 지원활동(사회문화단체, 체육단체, 장학재단,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등)
 3. 대학평가 인정제 및 교육개혁 관련 활동
 4. 각종 국가고시 출제 및 채점
 5. 국내·외 학회임원 및 학술지 편집위원
 6.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및 특별강연
 7. 학생봉사활동 지도 및 제6조 학생 사회봉사활동 영역의 활동
 8. 학교가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
 9.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각종 사회봉사 활동
- 제3조 (사회봉사활동 지원) 대학은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 제4조 (사회봉사활동 실적관리)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관리한다.
1. 교원은 학년말 교수업적자체평가보고서(봉사영역)를 교육혁신처장에게 제출한다.
 2. 교육혁신처장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평가결과를 교수업적종합평가기록표에 기재·관리한다.
 3. 직원은 직원인사평정 규정에 따라 기재·관리한다.
- 제5조 (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교직원에게는 교직원 표창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영역) 학생의 국내와 국외 사회봉사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봉사활동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역사회 복지관, 건강가정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 또는 아동 관련 기관 등의 봉사활동
 2. 공공기관 봉사활동 : 구청, 동사무소, 소방서, 우체국, 학술정보관, 보건소,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봉사활동
 3. 공익 봉사활동 : 헌혈, 환경보존활동, 청소년지도활동, 공익단체활동 등
 4.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5. 지역사회봉사활동 : 농촌봉사활동, 탄광촌봉사활동, 재해지역봉사활동 등
 6. 가정 복지활동 : 장애인가정,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봉사활동 등
 7. 학교가 주관하는 봉사활동 등
 8. 기타 및 전공과 관련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
- 제7조 (사회봉사활동 학점제)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학사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봉사 학점을 부여한다.
- 제8조 (봉사상·봉사인증제) 1.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학생에게는 학생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장은 그 실적을 평가하여 봉사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13.01.02.

개정: 2024.09.11.

- 제1조 (명칭) 본 학생상담센터는 서울장신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건전한 인격도야를 목표로 자아개발을 도와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기능) 상담센터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학업지도 및 상담
 2. 전공, 진로 탐색 및 상담
 3.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4. 각종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
 5. <삭제 2024. 9. 11. >
 6. 기타 학생생활에 관련된 사항
- 제4조 (조직) 상담센터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상담센터의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센터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며 상담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3.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상담원 및 담당 직원, 조교를 둘 수 있다.
-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해 센터는 필요한 사안에 따라 비상시적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학생성장지원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 개정 2024.9.11. >
- 제6조 <삭제 2024.9.11. >
- 제7조 <삭제 2024.9.11. >
- 제8조 <삭제 2024.9.11. >
-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학생상담 및 지도규정) 학생상담 및 지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둔다
- 제12조 (재정) 상담센터의 예산은 본교의 예산에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 제13조 (회계연도) 상담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8월 8일부터 교육혁신처장을 대학교학처장으로 한다.
4.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3월 2일부터 대학교학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상담 및 지도 규정

- 제1조 (목적) 학생상담 및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지도학생의 학사지도, 생활지도, 진로 및 취업 지도 등 체계적인 상담을 통하여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기능) 제1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맞는 상담 및 지도를 진행한다.
1. 일반상담
 2. 취업 및 진로상담
 3. 학업부진상담
 4. 위기상담(성희롱·성폭력·자살예방)
 5. 온라인상담(SNS 문자상담)
- 제3조 (상담시간) 1. 전임교원은 적절한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2. 학생 상담시간(office hour)을 지정(주당 2시간 이상)하여 교수연구실 출입문에 공지하여야 한다.
3. 온라인 상담은 48시간 이내에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조 (책임·의무) 본 대학 전임교원은 학생 전원을 분담지도 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학생신상문제
 2. 학업성적 및 출결사항
 3. 학내외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4. 비밀유지 의무사항
- 제5조 (대상) 학생상담 및 지도는 해당 시점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 (운영) 1. 학과장은 학년 초 학년별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학생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학생상담 실적 결과물은 매년 말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 (임기) 1. 지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지도교수가 변경되는 경우 신·구 지도교수 간에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여 지도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 (기록 및 보고) 1. 전임교원은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특별지도상담 내용을 학생상담일지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특별지도 대상자에 대하여는 학생상담센터 및 연계 기관에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3. 학생상담 및 지도내역에 생활상담, 학습상담, 진로상담, 취업상담, 위기상담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 위기상담시(성희롱·성폭력·자살예방) 학생상담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보건소 운영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장신대학교 보건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관장부서) 보건소는 학생성장지원처에서 관장한다. 단, 청소 및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은 시설지원구매과에서 관장한다.
- 제3조 (조직) 보건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근로 장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 (운영위원회) ① 보건소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 학생복지위원회가 그 임무를 담당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보건실 사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 (이용자) 보건소는 본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 (이용시간) 보건소 이용시간은 09:00-18:00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 (이용의 제한)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2.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제8조 (재정) 보건소의 재정은 교비지원금으로 한다.
- 제9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취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13.06.01.

개정: 2024.09.11.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장신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6.>
- 제2조 (설치목적) 본 센터는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을 돕고, 진로 결정을 한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센터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취·창업 관련 총괄 계획 수립
 2.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3.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4. 산학협력을 통한 인턴·취업 연계
 5. 취·창업 통계 조사 및 관리
 6. 기타 취·창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24.9.11.>
- 제4조 (조직) 센터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의 센터 소장은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센터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3. <삭제 2024.9.11.>
 4.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직원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 제5조 (운영위원회)
-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해 센터는 필요한 사안에 따라 비상시적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학생성장지원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4.9.11.>
- 제6조 <삭제 2024.9.11.>
- 제7조 <삭제 2024.9.11.>
- 제8조 <삭제 2024.9.11.>
- 제9조 (회의록)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재정) 센터의 예산은 본교의 예산에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 제12조 (회계년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8월 8일부터 교육혁신처장을 대학교학처장으로 한다.
4. (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3월 2일부터 대학교학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부 칙 <2024.3.6.>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24 2025

서울장신대학교 요람

Seoul Jangsin University



산학협력단 정관

- 산학협력단 정관
-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



+ 산학협력단 정관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하는 서울장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서울장신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145, 서울장신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 (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5.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6.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7.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교직원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 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9. 한국 연구재단 국책사업 신청·관리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10. 계약학과 개설·운영
 11. 기타 산학협력 및 교학협력의 연구 진흥·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조 직

- 제5조 (이사)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 단장이 이사가 된다.
- 제6조 (단장) ① 산학협력단은 단장을 두며, 단장은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 제7조 (단장의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감사) ① 산학협력단에 감사 1인을 두며,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하부조직)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행정지원실을 둔다.
- 제10조 (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 (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③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과 직원의 채용 및 채용된 연구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 사무 이외 대학의 교육·연구 그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한다.

제 3장 운영위원회

- 제13조 (구성)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단장 및 대학의 전략기획처장, 교육혁신처장, 총무처장(공석시 직원대표)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운영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16조 (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

제 4장 보 상 금

- 제18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20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5장 재산 및 회계

- 제19조 (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0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 제20조 (수입) 다음 각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
 6. 서울장신대학교의 출연금
 7. 이자수입
 8.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9. 기타 산학협력에 의한 수입금
- 제21조 (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제18조 제1항에 의한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학교기업의 운영비
 6.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7.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기타 제4조의 업무수행 등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 제22조 (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 제23조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24조 (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 제25조 (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26조 (예·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회계처리) 산학협력단의 회계운영 처리에 관한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하는「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제 6장 보 칙

- 제28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 (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 제30조 (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
- 제3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 제32조 (공고의 방법)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일간지 및 대학신문 등에 공고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

제정: 2018. 10. 01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장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반적 연구비 관리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연구비 주관기관

제2조 (연구비 주관) 산학협력단 소속연구원의 수주 연구비 및 산학협력단장 명의의 수주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한다.

제 3장 연구비(인문사회분야) 비목 및 세목별 집행

제3조 (연구비 비목) ① 비목에 관하여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관의 계상기준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의 지침이 없거나 비목별 세부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본 세칙을 적용한다.

②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한다.

③ 인건비는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로 구분하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세분한다

④ 직접비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신청하여 연구기간내에 집행하는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 활동수당 또는 학술(연구)활동수당 등으로 세분한다.

⑤ 간접비는 연구주관기관 지원인력인건비, 행정지원전담요원인건비, 학술진흥능률성과급, 학술활동 지원비 및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간접경비 등이 해당한다.

제4조 (연구개시 및 연구비 사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 입금에 따른 연구비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연구개시 보고 및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사전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중 관련 연구비 사용 사유 발생시에는 사전에 [별표 2]의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비 비목별 세목별 계상기준) ① 연구비의 구분은 연구(보조)원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의 비목으로 구분하며 연구(보조)원 인건비 및 직접비의 세목별 정의 및 계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보조)원 인건비 :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학부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후 연구원의 수당을 말하며, [별표 3]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계약)기관의 규정이나 지침 및 연구 선정 별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할 수 있다.

2. 직접비는 [별표 4] '인문사회분야 직접비 세목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장비 및 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연구)활동수당 등의 세목으로 구성하며, 연구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써 다음과 같이 계상 집행한다.

가. 연구기자재, 장비·재료비 및 소모품, 시설비 : 연구수행을 위해 직접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포함)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제반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를 말하며, 연구물품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물품구매** : 연구수행을 위해 구매되는 모든 물품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백만원 이내의 기자재, 장비·비품 등의 물품류 및 소모품(재료비)등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별표5]의 '사유서'를 사전 제출하고, [별표6]의 '예산집행품의 및 구입신청서' 제출과 산학협력단 승인 후,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단, 3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류, 시설비는 산학협력단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한다. 물품구매후에는 연구책임자가 [별표7]의 '기자재(비품)구입목록'과 [별표8]의 '기자재(비품)사진철 및 [별표9]의 '도서구입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물품검수** :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기자재, 장비·비품 등의 물품류 검수 시 품질, 수량, 기타 납품조건에 합당한 물품인지를 확인한 후 [별표10]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최종 종료 1개월 이전에 물품(기기·장비 등)이 도착한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해당 물품비는 해당 연구과제 연구책임자의 개인부담으로 한다. 단 해당 연구과제에 사용하는 소모품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물품관리** : 해당물품은 [별표11] '기자재(비품)관리대장' 및 [별표12] '도서대장' 등의 산학협력단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산학협력단 관리하에 둔다.
- 나. **직접비의 세목별 사용 용도**는 [별표4] '인문사회분야 직접비 세목별 사용용도'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과제와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슬라이드제작,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소모성 제잡비 등을 말하되,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포괄성 수용비 및 기타수수료(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포함) 지급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하며, 기술정보활동비는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문헌구입비(해외문헌 포함), 회의비, 국내외정보D/B정보사용료(DNS 사용료), 번역료, 학회·세미나참가비, 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등을 말하며, 연구활동비는 당해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써 연구과제수행에 필요한 식대와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칭하며, 조사연구비는 연구과제 수행에 협조한 정보제공자(인터뷰 포함) 사례비 등을 말한다.
- ② **여비**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행한다.
 1. **적용범위**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로,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에 한한다.
 2. **신청절차** : 출장전 출장비 선지급이 가능하되, 단,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별표13]의 '출장신청서'와 [별표14]의 '출장계획서'를 최소 2주전에 사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15]의 '해외여행신청서'는 별도로 학교 교원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출장후** : 최소한 2주 이내에 [별표16]의 '출장복명서'와 [별표17]의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여비 지급방법** : 국내여비지급은 본교 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직접적 성격의 여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5. **국외여비 지급방법** : 국외여비지급은 본교 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직접적 성격의 여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6.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실비 정산할 수 있으며, 제규정에 적합지 않은 사용은 회수할 수 있다.
 - ③ 연구비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연구비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카드결제가 곤란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나 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연구관련 기자재, 소모품류 등 물품비, 시설비, 수용비 및 수수료, 국내외 연구출장 관련 직접적여비(연구자 및 동행자에 대한 사적 사용부분 제외),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등은 연구비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장 연구비의(인문사회분야) 전용 및 사업완료 정산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연구비 사용에 비목 또는 세목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18] '연구 사업비 전용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을 완료 하였을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19] '연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련 각종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사업완료 정산을 하여야 한다.
- ③ 연구비의 전반적 정산과정에서 부적절 지급 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사유서를 받고 자체회수 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 제정 취지는 2010년 3월 1일 부터 제정 시행한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전면 보완이므로,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0월 1일자로 폐지하고, 2018년 10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별표 1>

연구개시 보고 및 연구비 지급신청서

연구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지원 기관명		연구기간	
사 업 명			
연구 과제명			
예 산 항 목	당해연도실행예산액/ 신청금액	산출내역	지급받는자 성 명
			은행명
			지급계좌번호
인건비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 활동비	조사연구비		
	참고문헌비		
	여비		
	국내캠프비 용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수당			
합 계			
< 유의사항 > 1) 영수증 첨부(연구비 직불카드, 신용카드, 간이계산서(3만원 이하)) 등 2) 원천징수용 금액(인센티브 등) 지급시엔 비교란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주민등록지)를 적어서 제출함			

신청일자 : 년 월 일

산학협력단장 귀하

결 재	담 당	부 장	단 장



<별표 2>

연구비 지급신청서

연구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지원 기관명		연구기간			
사 업 명					
연구 과제명					
예 산 항 목	신 청 금 액	지급받는자 성 명	은행명	지급계좌번호	비고
합 계					
< 유의사항 > 1) 영수증 첨부(연구비 직불카드, 신용카드, 간이계산서(3만원 이하) 등) 2) 원천징수용 금액(인센티브 등) 지급시엔 비교란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주민등록지)를 적어서 제출함					

신청일자 : 년 월 일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 당	부 장	단 장
결 재			

<별표 3>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기준

구분	직급	월기준액 (천원)	자 격	적용기준
연구원	전임연구원	300~600	박사취득 후 3년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참여율 100% 기준
	연구원	300~400	박사취득자, 그와 상응하는 경력	
연구보조원	박사과정	250~350	박사학위 과정생, 그와 상응하는 경력	
	석사과정	220~320	석사학위 과정생, 그와 상응하는 경력	
	학사과정	100~200	학사학위 과정생, 그와 상응하는 경력	

<별표 4> 인문사회분야 직접비 세목별 사용용도

기자재, 장비·재료비 (인건비로 전용시 원래계획대비 20%초과금지)	1.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과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 소모품류 등 2.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및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등
학술연구비 (인건비로 전용시 원래계획대비 20%초과금지)	1. 학술활동 참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현지 교통비 등
	2. 학술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국내외 정보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사용료, 국내외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윤문(潤文) 교열비, 번역 감수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 표준등록활동비, 표준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학술활동수당 (연구수당)	해당 학술활동의 시행과관련된 책임자 및 공동참여자의 보상금, 장려급 지급을 위한 수당 -과제당 1인기준 월40만원 이내 산정 지급원칙



<별표 5>

사 유 서

과 제 번 호	
사 업 명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연 구 책 임 자	
사 유 서 건 명	

사 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 직급(직위): 성 명: (인)

서울장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6>

예산집행품의 및 구입신청서

☐ 기자재
☐ 비품
☐ 소모품
☐ 기타

협 조	내 부 결 재			결		담 당	부 장	단 장	총 장
				재					
제 목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 아 래 ”									
가. 집행사유 :									
나. 상세내역 : 아래 구입요구서 참조									
다. 예산과목 및 예산금액									
	예산 분류	예 산 과 목			예산액	기집행액	금회집행액	예산잔액	
		관	항	목					
라. 구입처									
	상 호		주 소		연락처(A/S)		비 고		
붙임 :									
※이하 신청자 작성란 구입신청서 (☐ 기자재, ☐ 비품, ☐ 소모품, ☐ 기타)									
연번	품 명	규 격		수 량	용 도		비 고		
위의 물품을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 (인) * 칸이 부족하면 명세서를 별도로 붙임.									



<별표 7>

기자재(비품)구입목록

연구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지원 기관명		연구기간		
사 업 명				
연구 과제명				
구입일자	품목	규격	금액	비고

제출일자 : 년 월 일

산학협력단장 귀하

결재	담당	부장	단장

<별표 8>

기자재(비품) 사진철	
(연구자:)	
사진 1 (품명 및 구매일자:)	
사진 2 (품명 및 구매일자:)	



도서구입목록

[illegible]

제출일자 : 년 월 일

산학협력단장 귀하

결 재	담 당	부 장	단 장

<별표 10>

□ 물 품 검 수 조 서 □

품 목 및 수 량							
납 품 자							
계 약 금 액							
계약체결년월일							
납 품 기 한							
검 수 년 월 일							
검 수 장 소							
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직 성 명 (인) 입회자 직 성 명 (인)							
물품대장등기	(인)		물품출납		(인)		
물 품 검 수 내 역 서							
품 목	규 격	단 위	단 가	계 약 상 수 량	전회까지 납품수량	금 회 검 수 량	미납량



<별표 11>

□ 기자재(비품) 대장 □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금액	구입 년월일	구입인	비치 장소	물품번호

<별표 12>

도 서 대 장

[illegible]



<별표 13>

출 장 신 청 서

출 장 신청자	직		성		결	담 당	부 장	단 장	총 장
	위		명		재				
출장목적									
출 장 지									
출장기간									
출장기간중 업무대리담당									
참가회비 (A)	원 (/ 입금완료)	예금주(단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전 출 장 내 역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시간)		출장비		비 고
금 회 출 장 비	교통비								
	일 비								
	식 비								
	숙박비								
	소계(B)	원 (/ 입금완료)			총계 (A+B)		원		
출장비 입금계좌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붙임: 출장계획서 1식.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장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별표 14>

출 장 계 획 서

1. 출장 및 현지조사 계획

1) 출장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인)

2) 기 간:

3) 목적지:

4) 사 유:

5) 체류기간 연락처:

6) 체류기간 이메일:

7) 현지조사 내용

- 자료 수집 및 도서구입

- 전문가 인터뷰

-

-

8) 예산 : 해외 현지조사 등 여비 원 사용 (NRF연구비에서 지원)

*출장복명서 제출시 '출장보고서' 1)현지조사일정표와 2)연구비사용정산서(증빙포함) 별도제출예정

9) 연구과제명

연구 과제명	국 문	
	영 문	



2. 년도 연구비 예산

비용항목	세목	신청금액	산출근거
인건비	전문인건비	천원	
	학생인건비	천원	
직집비	장비·재료비	천원	
	학술연구비	천원	1) 국외이미(현지조사) - - 왕복항공료: - 숙박비: - 식사비: - 일비: - 합계: 천원 이내 2) 자료복사비, 문구류, 기타재료비: - 천원 3) 해외문헌구입비: 천원 4) 학회 세미나 참가비: 천원 5) 전문가초청 자문료: 천원 6) 논문게재료: 천원
	학술활동수당	천원	- 연구책임자 : 인 천원
총액		천원	

3. 연구수행 일정

과제목표		
기간 (추진년월)	내용	비고



<별표 16>

출 장 복 명 서

				결 재	
					단 장
협 조					부 장
소 속			장 소		명 장
직 위			출장일시		
성 명			기안일		
출장목적					
출장 내용 (※출장보고서: 현지일정표와 연구비사용내역, 증빙 별도 제출)					

서울장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별표 17>

출 장 보 고 서

1. 출장 및 현지조사 결과

1) 연구과제명:

2) 출장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인)

3) 기 간:

4) 목적지:

5) 사 유:

6) 현지조사 내용 - 자료 수집 및 도서구입 - 전문가 인터뷰 등

- 연구수행 일정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7) 출장비 정산내역 :

비용항목	세목	사용금액	증빙근거
		원	
		원	1) 국외여비(현지조사) - - 왕복항공료: - 숙박비: - 식사비: - 일 비 : - 합 계 : 2) 자료복사비, 분구류, 기타재료비: - 친원 3) 해외문헌구입비: 4) 학회 세미나 참가비: 5) 전문가초청 자문료: 6) 논문게재료: 7) 기타:
총액		원	



<별표 18>

연구사업비 전용 사용 신청서

연구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지원 기관명				연구기간
사 업 명				
연구 과제명				
예 산 항 목		계획금액	전용사용금액	비고
인건비	연구보조원 수당			
	전문인건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수당			
	연구활동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간접비				
합 계				
< 신청사유 > 당초 신청한 NRF연구비 사용계획에 효율적 연구진행 관련 변경사항 발생함 년 월 일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 당	부 장	단 장
결 재			

<별표 19>

연구 완료 보고서

연구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지원 기관명				연구기간		
사 업 명						
연구 과제명						
예 산 항 목		당해연도실행예산액/ 신청금액	산출내역	지급받는자 성 명	은행명	지급계좌번호
인건비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 활동비	조사연구비					
	참고문헌비					
	여비					
	국내캠프비 용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수당						
합 계						
< 유의사항 > 1) 영수증 첨부(연구비 직불카드, 신용카드, 간이계산서(3만원 이하) 등) 2) 원천징수용 금액(인센티브 등) 지급시엔 비교란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주민등록지)를 적어서 제출함						

일자 : 년 월 일

산학협력단장 귀하

결	담 당	부 장	단 장
재			

서울장신대학교 요람 2024~2025

인쇄일 | 2024년 11월

발행일 | 2024년 11월

발행인 | 한홍신

편집인 | 류삼준

발행처 | 서울장신대학교 교육혁신처

서울장신대학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145

전화 | 031) 799-9000

팩스 | 031) 765-1232